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76-01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Policy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Certification
Bodies for Development of Organic Agriculture

최종보고서

(2016.7.)

책임연구원 유병덕
연구원 유진채
연구원 김난영
연구원 차성령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ISIDOR SUSTAINABILITY RESEARCH INSTITUTE

연구 담당

유병덕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인증기관 발전방안
유진채	연구원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 타당성 분석
김난영	연구원	해외 사례 조사, 인증제도의 국제화 연구
차성령	연구원	인증기관 실태조사, 등급제 평가지표 타당성 분석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요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증기관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인증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농관원은 인증의 신뢰성 제고와 제도 정착을 추진하여, 현재는 인증제도의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이에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인증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에게 전면 이양할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인증기관은 이에 따른 신뢰성 및 전문성 향상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인증기관들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함
- 이를 위해 (1) 인증기관들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2) 인증기준과 규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3) 전문인증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인증기관 운영 현황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음. 이는 저농약 인증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2011년부터는 무농약농산물의 출하량이 저농약농산물을 추월하였음
- 인증농가수는 85,165호(2014)에서 67,617호(2015)로 26% 감소하였음. 이 또한 저농약 인증의 폐지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소재 인증기관은 총 65개로서 광주·전남 지역에 18개소(28%), 서울·경기지역에 13개소(20%)이며 타지역은 4~6개소로 분포하고 있음
- 인증 건수에 대한 실적 점유율은 상위 10개(15%) 인증기관이 전체 인증건의 37.5%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100~1,00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53개 인증기관, 82%), 10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이는 인증기관이 7개(11%) 있음
- 대부분 인증기관(57개, 88%)은 점유율이 3% 미만으로서 소규모 인증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인증 부적격 판정 비율은 전체 인증 건수의 6.1%로서 조사에 응한 55개 인증기관의 총 인증 건수인 21,659건 중 394건이 해당됨
- 64개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농가는 총 2,405 농가로서, 인증기관당 평균 38 농가가 인증 취소되어 인증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인증기관의 평균 연매출액은 약 13억원이며, 과반 이상인 59.4%의 인증기관은 4억 이하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음

- 인증기관의 연매출액 중에서 인증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평균 3.9억원으로 총매출의 30%가 인증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그밖에 다른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음. 81%의 인증기관은 매출액 대부분이 인증사업을 통한 것임
- 2015년도 인증기관 평균 정규직원 수는 10명으로 전년도(9명)보다 평균 1명이 증가하였음
- 2015년도 평균 상근심사원 수는 5명으로 전년도(4명)보다 평균 1명이 증가하였으며(고용증가율 11.5%), 2015년도에 상근심사원 중 퇴사한 이직자는 평균 1명임(이직율 17.3%)
- 인증기관에서 지출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비는 평균 149만원이며, 교육훈련비를 5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인증기관이 28%임
- 55개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경력 분포를 보면 총 256명의 심사원 중 '1년에서 4년 미만'의 심사원이 133명(52%)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인증기관의 1인당 인건비는 평균연봉 32,242천원이며(대표이사 및 임원 포함), 총 인건비 중에서 심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6.6%임
- 전문인증기관이 소재하는 지역(광역행정구역)에서 인증한 비율은 평균 74%이며, 전남(99%), 전북(92%), 경북(86%), 제주(86%)로 높으며, 충북, 충남, 강원 지역은 60% 이하로서 낮은 관내 집중도를 보임
-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이유는 93%가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인증기관이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규정되는 것에 타당성을 보이고 있음

- ISO17065 인정을 받을 의향이 있거나 현재 받은 상태에 있는 인증기관은 27%로, 적극적인 의향을 보인 곳은 15개 인증기관에 불과하여 인증기관의 국제화에는 관심이 낮은 편임

- 적극적으로 ISO17065를 받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대외적 신뢰성 향상(79%)을 기대하고 있음

- ISO17065 인정을 받지 않으려는 인증기관(60%)은 인정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43%)와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부족(36%)으로 비용에 관련된 이유로 인하여 ISO17065 인정을 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국내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비는 30만원/건이며,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260만원/건으로 국내의 8.7배에 달함.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시험분석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미국의 경우 시험분석비는 인증신청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III. 해외의 인증기관 운영 사례

-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정 기준과 규정을 가장 전문적으로 정리한 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규정과 상이하면서도 유의점이 있는 조항들을 나열하였음
- 국내 인증기관들의 운영 실태와 해외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Skal(네덜란드), OFDC(중국), OneCert(인도)의 사례를 조사하였음
- 2015년 인증실적은 각각 5,344건(1,625 농가), 1,500건(800 농가), 680건(124,435 농가)임
- 해외 인증기관의 특이점은 사후관리를 전 생산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인증기관별로 설정한 비율에 따라 불시심사를 실시함. 인증 건수 대비 사후관리 비율은 각각 34%, 2.7%, 12.6%임
- 해외 인증기관들이 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잔류농약 검사 등 시험분석 보다는 생산 및 가공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음. 인증 건수에 대한 시료 검사 비율은 각각 5.2%, 86.7%, 9.9%임
- 해외 인증기관의 관리 정책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서, 현장심사를 통하여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통하여 인증을 유지하면서 생산자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처분 방법과 다른 방법임
- 우리나라는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인증기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심사원의 재평가 절차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IV. 인증제도의 국제화

- 국제적으로 유기농 인증은 ‘프로세스인증’으로 분류되므로(EU, IFOAM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프로세스인증으로 성격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 미국, 유럽연합, 코덱스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현행 인증기준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제안하였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2.나. 1)에서 재배 포장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을 폐지
 - 농관원고시 제2015-55호 별표1의 2.나. 1)에서 버섯배지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을 폐지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2.나. 5)에서 수질 기준을 폐지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실천하도록 개정
 - 농관원고시 제2015-55호 별표1의 2.나. 6)에서 관행종자를 사용함에 따른 잔류농약검사를 폐지하고, 화학적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고시하도록 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2.다. 5)에서 관행 축산업 유래의 축분을 허용하고, 축분의 항생제 잔류 기준을 폐지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2.라. 8) 및 농관원고시 제2015-55호 1.다. 5)가)(2)에서 잔류농약 검사는 의도적 농약사용과 오염관리가 태만히 이루어 졌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도 관행농산물 기준의 5% 이하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1.다. 2)에서 유기가공을 위한 도구와 설비의 세척제를 1, 2, 3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 농관원고시 제2015-55호 별표5의 1.나.에서 인증건 전수(全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인증건 10% 이상의 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선정 방법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을 선정하도록 개정
- 농관원고시 제2015-55호 별표2의 1.바.에서 생산자의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인증기관은 생산자에게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에서 “인증심사”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여 “인증심사”란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문서와 기록, 물리적 관찰, 인터뷰, 시험분석 등의 방법으로 생산과정과 시정조치 등을 평가하는 일로 정의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에서 “시정조치”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여 “시정조치”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적합한 사항의 발생 원인을 개선하는 일로 정의함

V.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 등급제 도입의 목적은 하위 등급의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보다는 상위 등급의 인증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
- 등급제 도입을 통하여 우수인증기관에 대해 차등지원 및 차등관리를 할 수 있음. 예시:
 - 차등지원: ISO17065 인정비, 교육비 등
 - 차등관리: 농관원의 지도점검 및 이중체크의 빈도를 차등화
- 등급제 활용 예시 중에는 우수인증기관의 경우 인증서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인증서에 “우수인증기관”을 표시함으로써, 인증서를 활용하는 자(유통업체의 바이어 등)의 우수인증기관 수요를 높일 수 있음
-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 설정을 위하여 인증기관 조직 성격을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
- 평가지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배분하여 20개 항목을 초안으로 설정하여 55개 인증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3차에 걸쳐 교정한 결과 23개 항목으로 다음 표와 같이 평가지표와 배점을 설정하였음

표 1.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최종안)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75~100% 4
		50~75% 미만 3
		35~50% 미만 2
		35% 미만 1
인증기관 행정처분	(전년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0이면 9
		1~3이면 7
		4~6이면 5
		7~9이면 3
		9초과 1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횟수)	1 건당 -1점 감점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 말 인증사업자수)]/2*100 ※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	1.0% 이상 5
		0.5~1.0% 미만 4
		0.2~0.5% 미만 3
		0.2% 미만 2
		0 이면 1
인증 부적합율	('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5년 인증 건수}+('15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건수)+(연말 인 증건수)]/2]	120% 이상 7
		110~120% 미만 5
		100~110% 미만 3
		100% 미만 1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심사원 총투입일수)*8}/[(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수)]/2] ※ 비상근심사원 포함 ※ 8시간을 1일로, 4시간을 0.5일로 환산	4 이상 7
		3~4 미만 5
		2~3 미만 3
		2 미만 1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 7
		0.5~2.0% 미만 5
		2.0~4.0% 미만 3
		4.0% 이상 1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 (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 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1.5 이상 5
		1.0~1.5 미만 4
		0.5~1.0 미만 3
		0.5 미만 2
		0.0 이면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의 공식 워크 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2회 이상 3
		1회 참가 2
		미참가 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연말상 근심사원수)	7년 이상 7
		5~7년 미만 5
		3~5년 미만 3
		3년 미만 1
인증 갱신율	(연간 인증갱신농가수)/(연초 인증농가수)*100	70% 이상 4
		55~70% 미만 3
		30~55% 미만 2
		30% 미만 1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총시간)/[(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수)]/2]* 100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한 과목에 투여한 총시간을 합산	30 이상 5
		20~30 미만 4
		10~20 미만 3
		10 미만 2
		0 이면 1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 품의 건수 합계	400건 이상 4
		200~400건 미만 3
		100~200건 미만 2
		100건 미만 1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로 간주	1,000명 이상 4
		500~1,000명 미만 3
		200~500명 미만 2
		200명 미만 1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4억원 이상 5
		2~4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3
		0.5~1억원 미만 2
		0.5억원 미만 1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당기말 인증매출액)/(전기말 인증매출 액)}* 100- 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가 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10% 이상 3
		-10~10% 미만 2
		-10% 미만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IOIA 교육, ISO 심사원 교육, HACCP 교육,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교육 의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	1건당 1점 가점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5점 가점
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100% 미만 3 100~200%이면 2 200% 초과 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상근심사원 인건비)/(총매출액)*100	50% 이상 5 40~50% 미만 4 30~40% 미만 3 20~30% 미만 2 20% 미만 1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20% 미만 5 20~30% 미만 4 30~40% 미만 3 40~50% 미만 2 50% 이상 1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60% 이상 3 40~60% 미만 2 40% 미만 1

- 등급의 분류는 우수~미흡의 4단계로 하였으며, 위 평가지표를 적용한 결과 우수 7개(14%), 양호 20개(36%), 보통 14개(25%), 미흡 14개(25%)로 나타났음
- 이에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 활용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함

표 2. 인증기관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제 활용방법 제안

구 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분류 기준	80점 이상	70~79	60~69	60미만
지원방법	ISO65 비용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교육비	교육비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지도점검 주기	2년	연1회	2년 3회	연2회
이중체크	인증건의 3%	인증건의 5%	인증건의 8%	인증건의 10%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공시	인증기관 검색시 상위권 배치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인증서에 표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 이에 등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법령 개정안과 신규 고시안을 제시하였음 (본문 참조)

VI. 표준심사관리비의 개선

- 인증기관이 한 건당 투입하는 총시간은 평균 12시간이고, 한 농가당 4.2시간이며, 심사원이 한 농가당 투입하는 시간은 3시간임
- 유럽 인증기관들이 한 건당 투입하는 시간은 평균 12.5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인증비는 유럽이 705천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07천원으로 유럽의 29% 수준임. 투입시간과 인증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심사관리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표준심사관리비를 고시한 후 바뀐 인증기관의 운영 환경은 다음과 같음
 - 상근심사원의 최소 인원이 2인에서 5인으로 변경
 - 심사원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사업자 수가 500에서 400으로 변경
 - 인증심의관제를 채택하는 인증기관의 증가
 - 수년간의 물가인상
-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인건비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서 5인의 심사원 + 1인의 행정직원 + 1인의 심의관에 대한 총인건비 표준이 209,080천원으로 도출됨
- 인증기관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68%인 것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표준 매출액이 307,470천원으로 도출됨
- 심사원 1인당 최대 사업자 수는 400개이지만, 실제로는 400개에 근접하는 경우 한 명의 심사원을 더 고용하여야 하므로, 심사원 5인이 2,000개의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심사원 1인당 경제적 사업자수는 심사원 6인이 2,001개의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때 심사원 1인당 관리하는 사업자는 334개임
- 따라서 인증기관에서 5인의 심사원이 관리하는 경제적 사업자수(농가 수)는 $5 \times 334 = 1,670$ 명이 되며, 인증 1건당 평균 6.9명의 농가가 인증되므로 표준 인증 건수는 242건이 됨

- 인증기관이 1,670명/242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증비는 { 50천원×242건 + (표준심사관리비)×1,670명 } = 307,470천원이므로, 표준심사관리비는 농가당 177천원이 도출됨

- 1 농가당 표준심사관리비를 177천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현행 표준심사관리비에서 20천원 인상하는 것이며 인상률은 12.7%임

VII. ISO 17065의 도입

- ISO 17065는 현재 국내의 인증기관 중 21개가 있으나, 모두 농업과 식품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의 인증기관들로서, 인정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임
- ISO 17065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은 다음 두 가지 안이 있음
 - 1 유형: 전문인정기관으로부터 ISO 17065 인정서를 받는 방안: 유럽연합, 캐나다의 경우
 - 2 유형: ISO 17065의 각 규정을 재해석하여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미국
- 1 유형의 경우 인정비용 발생, 인정기관의 이원화, 인정기준의 일관성 부재 등의 한계가 있으며, 2 유형의 경우 비용, 일관성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 유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경우 현행 인증기관 지정에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갖도록 규정을 개선
 - 인증기관과 다른 법인이면서도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인으로부터 인증업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
 - 전 인증기관이 법령에서의 인증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인증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신청자의 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하여,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의 기술적, 영업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정보사용 현황을 통보받도록 함

- 인증생산자가 관리 및 생산한 자료와 기록의 소유권은 인증생산자에게 있으므로, 인증심사원이 인증신청자의 기록물 등의 정보를 취하는 경우에도 인증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사본을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업무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에 포함하도록 함
- 인증기관의 역량에 비추어 인증프로세스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절차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신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부적합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개념을 도입하여 ISO 규정과 해외 인증제도 등 국제 규범에 따른 절차를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인증에 대한 제재 규정에서 복원 절차가 필요함. 즉, 표시사용 정지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시정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 함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7
3. 인증기관 운영실태 조사의 개요 9

제2장. 인증기관 운영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11
2. 인증기관 현황 18

제3장. 해외의 인증기관 운영 사례

1. 해외의 인정제도 51
2. 해외의 인증기관 사례 58
3. 해외 인증기관 운영 사례가 주는 시사점 81
4. 해외의 저투입농업 인증제도 85

제4장. 인증제도의 국제화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성격 규정 95
2. 국제 사회와 현저히 다른 유기 인증 규정 101
3. 유기식품 등의 인증 규정 개선 제안 126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1. 등급제 도입의 목적과 적용 방안 135
2. 인증기관의 조직 성격 규정 140
3. 평가지표의 초기 설정 144
4. 평가지표의 초기 설정 값의 검증 및 교정 152
5.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의 법제화 201

제6장. 표준심사관리비의 개선

1. 현행 표준심사관리비 적용에 따른 투입시간 분석 213
2.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의 필요성 226
3. 선행연구에서의 인증수수료 책정안 검토 234

제7장. ISO 17065의 도입

- 1. ISO/IEC 17065:2012의 개요 249
- 2. KS Q ISO/IEC 17065:2014 252
- 3. ISO/IEC 17065 도입의 필요성 255
- 4. ISO/IEC 17065 도입의 방안 260
- 5. ISO 17065 도입을 위한 법령의 보완 265

제8장. 결론

- 1. 인증기관 발전방향 277
- 2. 인증 기준과 규정의 개선 279
- 3. 인증기관 등급제 281
- 4. 표준 심사관리비의 개선 282
- 5. ISO 17065의 도입을 위한 법령의 보완 283

부록

- 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285
- 2. 기업 재무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 293
- 3.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데이터 (초기 설정) 296
- 4.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데이터 (1차 교정) 298
- 5.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데이터 (2차 교정) 300
- 6.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데이터 (3차 교정) 302
- 7. 한국-미국-유럽연합 유기기준 비교표 304
- 8. 한국-일본-중국-영국 저투입 농산물 인증 기준 비교표 319
- 9. ISO/IEC17065와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기준 비교 323
- 10.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의 1차 교정 338
- 11.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의 2차 교정 376
- 12.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운영 요령(안) 380

- 참고문헌 389

표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표 1-1.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황	5
--	---

2. 인증기관 운영현황

표 2-1. 2015년 인증 농가 수 증감율	12
표 2-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12
표 2-3. 2015년 12월 31일 인증기관 현황	13
표 2-4. 품목별·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5)	17
표 2-5. 인증기관 지역별 분포	18
표 2-6. 인증 건수 상위 10위 인증기관	18
표 2-7. 인증 건수 실적 분포	19
표 2-8. 인증점유율 분포	19
표 2-9. 인증농가 실적분포	20
표 2-10. 인증농가 점유율 분포	20
표 2-11. 심의방법비율	21
표 2-12. 조직유형별 인증심의관제 비율	21
표 2-13. 조직유형별 인증위원회제 비율	22
표 2-14. 조직유형별 심의방법 비율	22
표 2-15. 해외인증 진행 비율	23
표 2-16. 해외 인증건수 비율	23
표 2-17. 2015년 인증갱신 농가 수	24
표 2-18. 인증기관별 인증갱신 비율	24
표 2-19. 최종 부적합판정 건수 및 비율	25
표 2-20. 인증 취소 건수에 대한 인증기관 분포	26
표 2-21. 인증 취소 농가 수에 대한 인증기관 분포	26
표 2-22. 총매출액별 민간 인증기관 분포	27
표 2-23. 인증사업 매출액 분포	28
표 2-24. 2015년 인증기관 정규직원 증감률	29
표 2-25. 인증기관 교육훈련비 지출액 분포	30
표 2-26. 심사원 1인당 교육훈련비 분포	30
표 2-27. 인증기관 상근심사원 증감률	30
표 2-28. 심사원 중 상근심사원 비율	31
표 2-29. 상근심사원 인원 분포	31
표 2-30. 상근심사원 이직율	32

표 2-31. 상근심사원 이직자 분포 32

표 2-32. 인증심사원 경력 분포 32

표 2-33. 1인당 인건비 지출액 수준 33

표 2-34. 인증기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분포 33

표 2-35. 인증기관 매출액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율 분포 34

표 2-36. 인증기관 총 인건비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율 분포 34

표 2-37. 인증기관 관내 인증 집중도(%) 35

표 2-38. 인증 집중도와 부적합비율의 상관관계 분석 36

표 2-39. 인증집중도와 기관행정처분의 상관관계 분석 36

표 2-40. 잔류농약 기준 초과 건수 분포 37

표 2-41. 인증기관 지정이유 38

표 2-42. 인증기관 지정이유 문항 간 상대적 비율 38

표 2-43. ISO 17065 인정 획득 의향 비율 39

표 2-44.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는 이유 39

표 2-45.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는 이유 문항 간 상대적 비율 40

표 2-46.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40

표 2-47.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문항 간 상대적 비율 41

표 2-48. ISO 17065가 예시하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 42

표 2-49. 공평성 관련 질문 선택 비율 43

표 2-50. 인증심사원 전문성 자체평가 비율 44

표 2-51.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인원 자체평가 비율 44

표 2-52. 인증심사원 직업전망 자체평가 비율 45

표 2-53. 기밀 유지 상태 자체 평가 비율 45

표 2-54. 인증 시 인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비율 46

표 2-55.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용 자체평가 비율 46

표 2-56.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필요성에 대한 자체평가 비율 47

표 2-57. 인증 결정 근거 불충분시 행동 비율 47

표 2-58. 인증 결정 근거 불충분시 행동의 문항 간 상대적 비율 48

표 2-59. 생산자의 비의도적 문제로 인한 부적합사항 대처 비율 48

표 2-60. 농산물의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예시 49

3. 해외의 인증기관 운영사례

표 3-1. IFOAM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 현황(2016.6.)	52
표 3-2. 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s 목차	53
표 3-3. IFOAM 인증 기준 중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조항 소개	55
표 3-4. Skal 인증사업자 수 변화	60
표 3-5. Skal 인증면적 변화	60
표 3-6. 2015년 신규인증 현황	61
표 3-7. Skal 심사 실적(2014, 2015)	65
표 3-8. Skal에서 유기 기준의 예외의 적용 (2015)	66
표 3-9. Skal 부적합사항 발생 추이	70
표 3-10. kal 예산 및 결산표	72
표 3-11. Skal 인증심사원 역량 관리 및 평가 항목 (태도 부문)	74
표 3-12. Skal 인증심사원 역량 관리 및 평가 항목 (지식 및 기술 부문)	75
표 3-13. 해외 인증기관 사후관리 비율(2015년)	82
표 3-14. 해외 인증기관 잔류농약검사 시료 검사 비율(2015년)	83
표 3-15. 특별재배농산물의 범위	86
표 3-16. 중국의 녹색식품 표준 체계	89
표 3-17. 중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90
표 3-18. Red Tractor 인증 현황	91
표 3-19. Red Tractor 인증기관	92
표 3-20. Red Tractor 인증 범위	92
표 3-21. 작물과 과채류의 인증기준 목록	93

4. 인증제도의 국제화

표 4-1. 제품 등의 인증과 시스템 인증 비교	97
표 4-2. 프로세스 인증과 제품 인증의 비교	98
표 4-3. 토양의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 비교	101
표 4-4. 버섯 배지에 대한 기준 비교	103
표 4-5. 용수에 대한 기준 비교	105
표 4-6. 종자에 대한 기준 비교	107
표 4-7. 축분 사용에 대한 기준 비교	111
표 4-8. 생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 비교	115
표 4-9. 가공시설 기구 및 설비의 세척제 기준 비교	117
표 4-10.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비교	120
표 4-11. 부적합사항 관리에 대한 규정 비교	123
표 4-12.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개선안	128

5.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 표 5-1. 인증기관 등급분류 기준 값의 초기 설정 136
- 표 5-2. HACCP 조사평가 빈도 138
- 표 5-3. 인증기관 등급제 활용 방안 예시 139
- 표 5-4.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의 법인형태 분류 141
- 표 5-5.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 발전 과정 143
- 표 5-6.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항목의 초기 설계 145
- 표 5-7. 평가지표별 설정 의미 146
- 표 5-8. 세부지표별 정량 평가방법 및 배점의 초기 설정 148
- 표 5-9. 세부지표별 정성 평가 방법 및 배점의 초기 설정 151
- 표 5-10. 예비조사 결과 인증기관 등급 분포 152
- 표 5-11.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1차 교정 내역 - 배점 조정 154
- 표 5-12.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1차 교정 내역 - 평가 방법 조정 155
- 표 5-13.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교정 결과 (1차 교정) 160
- 표 5-14. 등급 분류 기준의 조정 (1차) 164
- 표 5-15. 등급 분류 기준의 1차 조정 후 등급 분포 164
- 표 5-16.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2차 교정 내역 - 지표 항목 및 배점 조정 167
- 표 5-17.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2차 교정 내역 - 평가 방법 조정 168
- 표 5-18.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최종안 (2차 교정 결과) 176
- 표 5-19. 등급분류기준의 1차 조정값에 적용하는 경우 등급 분포 180
- 표 5-20. 등급분류기준의 재조정 (2차) 181
- 표 5-21. 등급분류기준의 2차 조정 후 등급 분포 181
- 표 5-22. 2차 교정에 따른 평가지표 분류 183
- 표 5-23.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3차 교정 내역 - 배점 조정 184
- 표 5-24.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3차 교정 결과) 185
- 표 5-25. 인증기관 등급 평가지표 3차 교정 값에 따른 등급 분포 188
- 표 5-26. 인증기관 등급제 지표의 구성 비율 분석 189
- 표 5-27. 인증기관 평가지표(최종안)의 영역별 분류 191
- 표 5-28. 관할지역의 분류 200
- 표 5-29. 기존의 인증기관 지정제와 등급제의 비교 202
- 표 5-30.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련된 친환경농어업 법령 조항 분석 207
- 표 5-31.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을 위한 기존 법령의 제·개정안 요약 211

6. 표준심사관리비의 개선

표 6-1. 현행 표준심사관리비	214
표 6-2. 기관 유형별 심사관리비 체계	215
표 6-3. 단체 인증 시 표준 심사관리비와 인증기관 공시 심사관리비 비교	217
표 6-4. 면적 당 추가비용 징수	218
표 6-5. 인증기관 수수료 체계(농산물 개인 농가 인증비용)	223
표 6-6. 인증기관의 매출 및 심사관리 실적	224
표 6-7.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229
표 6-8. 유럽의 국가별 농가당 평균 인증비 및 인증관리 투입시간	231
표 6-9. 유럽의 국가별 가공사업자당 평균 인증비 및 인증관리 투입시간	231
표 6-10. 우리나라와 유럽의 한 사업자당 인증비 및 투입시간 비교	232
표 6-11. 인증기관의 투입시간 비교 (한국:유럽)	232
표 6-12. 전문인증기관 사무실 한 달 운영비 산출 근거. 이덕만(2011)	234
표 6-13. 인증심사원의 증가에 따른 가상의 전문인증기관 한 달 운영비와 농가당 인증수수료 변화 이덕만(2011)	235
표 6-14. 친환경농산물 농가당 인증심사관리비(안). 이덕만(2011)	235
표 6-15. 인증기관 표준실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신용광(2013)	237
표 6-16. 인증수수료 변화에 따른 손익분기점 및 경영이익 변화. 신용광(2013)	237
표 6-17. 심사관리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설정값 비교	239
표 6-18. 표준심사관리비 도출을 위한 조건 설정	242
표 6-19. 인증기관 연간 운영비 산출	243
표 6-20. 표준심사관리비 산출 프로세스	245
표 6-21. 산출된 표준심사관리비의 지표	246
표 6-22. 농산물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안	247
표 6-23. 축산물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안	247
표 6-24. 유기가공식품 등의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안	247

7. ISO 17065의 도입

표 7-1. ISO/IEC 17065 인정현황	250
표 7-2. ISO/IEC 17065 컨텐츠	251
표 7-3. KAS 인증기관 현황	253
표 7-4. ISO 17065 도입 유형의 비교	260
표 7-5. ISO 17065의 단계적 도입 방안	264

부록

표 10-1. 인증사업 매출 비율의 점수 분포 (예비조사)	338
표 10-2. 인증사업 매출 비율 평가 지표 1차 교정	339
표 10-3.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의 점수 분포 (예비조사)	340
표 10-4. 기관 행정처분 평가지표 1차 교정	341
표 10-5. 인증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의 점수 분포 (예비조사)	342
표 10-6. 기관 과태료 평가지표 1차 교정	343
표 10-7. 인증 사업자 잔류농약기준 초과 비율 순위 분포 (예비조사)	344
표 10-8. 사업자 잔류농약 초과 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345
표 10-9.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입량 점수 분포 (예비조사)	346
표 10-10. 교육훈련비 투입량 평가 지표 1차 교정	347
표 10-11. 인증 갱신을 점수분포 (예비조사)	348
표 10-12. 인증 갱신을 평가지표 1차 교정	349
표 10-13. 인증사업자 교육 실적 점수 분포 (예비조사)	350
표 10-14. 생산자 교육 실적 평가지표 1차 교정	351
표 10-15. 관할지역 인증 비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352
표 10-16. 관할지역 인증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353
표 10-17. 생산자당 투입노력량 점수 분포 (예비조사)	354
표 10-18. 생산자당 투입노력량 평가 지표 1차 교정	355
표 10-19. 이중체크 적발비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356
표 10-20. 이중체크 적발 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358
표 10-21. 상근심사원 퇴사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359
표 10-22. 상근심사원 퇴사율 평가지표 1차 교정	360
표 10-23. 노동소득분배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361
표 10-24. 노동소득분배율 평가지표 1차 교정	362
표 10-25. 매출액 점수 분포 (예비조사)	363
표 10-26. 매출액 평가지표 1차 교정	364
표 10-27. 부채비율 분포 1차 교정	365
표 10-28. 부채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366
표 10-29. 노동생산성 점수 분포 (예비조사)	367
표 10-30. 노동생산성 평가지표 1차 교정	368
표 10-31. 매출 증가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369
표 10-32.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평가지표 1차 교정	370
표 10-33.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 평가지표 1차 교정	371
표 10-34. 핵심역량 보유점수 분포 (예비조사)	372
표 10-35. 핵심역량 보유 현황 평가지표 1차 교정	373
표 10-36. 국제적 인정 보유점수 분포 (예비조사)	374
표 10-37. 국제적 인정 보유 평가지표 1차 교정	375

그림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인증기관 운영현황	
그림 2-1. 친환경농산물 농가 수 변화추이	15
그림 2-2.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변화추이	16
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추이	16
3. 해외의 인증기관 운영사례	
그림 3-1. Skal 인증사업자 수 변화	60
그림 3-2. 특별재배농산물 소개	86
그림 3-3. 특별재배농산물 표시 사례	87
그림 3-4. 특별가이드라인 절감대상 화학합성농약 범위	87
그림 3-5. 시중에 유통 중인 Red Tractor 제품	91
4. 인증제도의 국제화	
5.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그림 5-1. 비영리 기관 - 기업의 스펙트럼. 김순양(2008)	140
6. 표준심사관리비의 개선	
그림 6-1. 민간인증기관 수수료 분포	216
그림 6-2. 유럽 인증기관에 대한 투입시간 및 인증비의 격차(%)	233
7. ISO 17065의 도입	
그림 7-1. KAS 인정절차	254

부록

그림 10-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분포 339

그림 10-2.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환산 값 분포 340

그림 10-3. 인증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의 점수 분포 342

그림 10-4. 인증 사업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 비율 환산값 분포 344

그림 10-5. 1인당 교육훈련비 분포 346

그림 10-6. 인증 갱신을 점수분포 348

그림 10-7. 인증사업자 교육 실적 환산값 분포 350

그림 10-8. 관할지역 인증비율 분포 353

그림 10-9. 생산자당 투입 노력량 환산값 분포 354

그림 10-10. 이중체크 적발비율 점수 분포 (인증취소 처분 비율로 대체) 356

그림 10-11. 상근심사원 퇴사율 분포 359

그림 10-12. 노동소득분배율 분포 361

그림 10-13. 매출액 분포 363

그림 10-14. 부채비율 분포 365

그림 10-15. 노동생산성 점수 분포 367

그림 10-16. 매출 증가율 점수 분포 369

그림 10-17. 핵심역량 보유 점수 분포 373

그림 10-18. 국제적 인정 보유점수 분포 375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1. 인증제의 발전 과정

○ 환경농산물 표시제도(1998)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1997) 환경농산물의 표시기준이 마련되었고, 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에 따른 표시(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신고하도록 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2001)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인증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농관원이 인증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이 함께 인증업무를 하게 됨

※ 외국의 유기농 인증제도 시행 연도는 유럽연합 1992년, 일본 2001년, 미국 2002년임

○ 민간 인증기관이 최초로 지정된(2002, 사단법인 흙살림) 이래 94개의 인증기관이 지정되었고 현재 69개의 인증기관이 활동 중임

※ 국내 법인 65개, 해외 법인 4개

- 2002년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 개시에 앞서 2001년 7월부터 농관원은 각 지원 및 시·군 사무소를 통하여 인증업무를 시작하였음. 이는 동등한 업무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이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품질관리 경험이 낮은 민간 기관에 대하여 농관원이 인증 농가를 확대 및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
-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이 가지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음
 - 인증 수요자(친환경 농업인 등)는 저렴한 가격의 농관원 인증을 선호하여 민간인증기관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
 - ⇒ 민간 인증기관의 경영 및 품질향상에 대한 저해 요인
 -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이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의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음. 즉, 민간 인증기관과 동등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 인증기관(농관원)이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감사활동(Accreditation)을 시행함으로써 업무 체계의 공평성에 한계
 - ⇒ 업무 내용은 동등하나, 시행 구조가 동등하지 않음
 - ⇒ 인정기관은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3년부터 유기가공식품의 국가간 동등성이 추진됨에 따라, 해외의 유기농 인증제도의 원칙과 차별화 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즉,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여 국제적 운영 원칙에 부합하도록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 ※ ISO IEC 17011:2004
 - 4.3.1. 인정기관은 인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객관성과 공평성이 보호되도록 조직화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농관원은 인증의 경험이 약한 민간 인증기관의 시행착오를 관리하며 신뢰성 향상에 힘씀으로써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향상되어 ‘제도 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완전 이양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농식품부(2016)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농관원의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통해 인증체계 재정비”를 추진하여 인증체계를 단일화 하기로 함

- 하지만, 아직도 인증기관 중에는 부실한 인증 업무로 농관원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신뢰성 향상의 과제가 남아 있어, 완전한 민간 이양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의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증기관의 발전을 위한 인증기관 현황 파악과 제도 정비 및 인증기관 육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1.2. 인증기관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

○ 인증기관 신뢰성 저하

- 친환경 인증기관 중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2015년도 17개소로 당해연도 국내 소재 인증기관 65개소의 26%에 이룸¹⁾
 - * 업무정지 6개월: 6개소
 - * 업무정지 3개월: 11개소
- 2013년 전문가조사(유기농학회 관련 회원 등 20명)에서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부실인증에 대해 응답자의 100%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부실인증의 원인으로 인증기관의 감독 미비(45%)와 인증기관의 영리추구(30%)를 지적하고 있음²⁾

○ 인증기관의 낮은 국제경쟁력

- 친환경 인증기관 중 국제기준 「ISO/IEC 17065³⁾」의 인정⁴⁾을 받은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함⁵⁾
 - ⇒ 국내 3%, EU 100%, 캐나다 100%
- 유기가공식품인증의 국가 간 동등성 협약 등 국가 간의 인증기관 비교 시 대외적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미국(2013), EU(2014), 캐나다, 호주, 칠레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과의 동등성 협약 완료 또는 추진 중

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한국농수산대학, 2013, 「친환경인증기관 운영, 관리방안」 이 보고서에서는 부실인증의 원인으로 농관원의 관리 감독 미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20%였으나, 본 연구과제는 인증기관의 개선이 주요 사안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3) KS Q ISO/IEC 17065:2014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4)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CB)을 지정하는 업무를 인정(Accreditation)이라고 하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AB)이라고 함

5) 친환경인증기관 중 ISO 17065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3개이나(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컨트롤유니온써티피케이손코리아), 컨트롤유니온써티피케이손코리아는 친환경인증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유 및 화학제품의 인증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임

표 1-1.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황

인증기관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조직유형	소재지
A인증기관	업무정지 6개월	2015.9.7.	사단법인	경북
B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8.19.	주식회사	충남
C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3.2.	준정부기관	경기
D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3.2.	주식회사	경기
E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3.2.	대학	경기
F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3.2.	주식회사	전북
G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3.2.	주식회사	경북
H인증기관	업무정지 6개월	2015.3.2.	대학	충남
I인증기관	업무정지 6개월	2015.3.2.	대학	전북
J인증기관	업무정지 6개월	2015.3.2.	주식회사	광주
K인증기관	업무정지 6개월	2015.3.2.	주식회사	광주
L인증기관	업무정지 6개월	2015.3.2.	주식회사	전남
M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2.9.	주식회사	서울
N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2.9.	대학	강원
O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2.9.	주식회사	경북
P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2.9.	주식회사	대구
Q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2015.2.9.	주식회사	경남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의 영세성⁶⁾

- 2007년 이후 인증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실경영에 직면한 기관들이 증가
- 2013년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민간인증기관 가운데 적자 경영체가 29.2%, 수익이 제로인 경영체가 8.3%.
모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하면 적자 경영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인증농가수가 1천 농가 미만인 인증기관이 52.3%(33개 기관)를 차지

6) 한국농수산대학, 2013, 「친환경인증기관 운영, 관리방안」

○ 인증기관 간의 과당 경쟁

- 201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식조사에서 인증기관의 58.3%가 인증기관 수를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⁷⁾. 이는 자기 사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응답한 결과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인증기관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6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63개 인증기관 중 4개 인증기관이 전체 민간인증기관 인증면적의 44.3%를 차지하고 있음⁸⁾

○ 인증기관 신뢰성 개선 동기의 부재

- 인증기관 간에 관리 능력 및 신뢰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인증제의 수혜자인 소비자나 유통업체의 구매단계에서는 인증기관별 신뢰도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움
- 인증수요자(친환경 농업인 등)는 투입비를 낮추기 위하여 쉽고 저렴하게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여, 인증기관의 개선 동기를 희석

7) 한국농수산대학, 2013, 「친환경인증기관 운영, 관리방안」

8) 한국농수산대학, 2013, 「친환경인증기관 운영, 관리방안」

2. 연구 목적

○ 인증기관 경영 실태 파악

- 한국농수산대학(2013)은 인증기관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때의 조사는 인증기관의 조수입과 수익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음. 이는 사업 안정성, 생산성, 성장성 등 사업체의 경영관리나 가치평가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재무분석 지표들이 조사되지 않았음 <부록 2 참조>
- 본 연구에서는 매출실적과 수익뿐만 아니라, 사업체 경영평가 자료로 이용되는 재무분석 지표 중에서 인증기관의 경영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조사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경영 상태 평가에 활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지표를 적용

- *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사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상환 부담으로 무리한 실적추진이 발생할 수 있어 인증기관의 절차 준수에 영향이 있음
- *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종으로서의 인증사업은 투입되는 인력(심사원, 심의관 등)의 전문적 노동의 처리 수준에 생산성이 좌우되므로, 1인당 부가가치를 통하여 업무처리 능률(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음
- * **매출액증가율:** 회사의 매출액 변화를 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 인증기관의 인적자원과 품질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심사원 이직율, 교육·훈련, 기준위반 등의 현황을 분석
- 국제기준 ISO 17065에서 요구하는 인증기관의 일반적 신뢰성 요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인증기준과 규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
 -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중에서 해외의 일반적 기준보다 과도한 사항을 검토하여 완화 및 폐지함으로써 생산자의 합리적 노력으로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인증 관리규정에서 해외의 인증관리 규정과 현저하게 다른 사항들을 국제적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인증관리 규정을 진단

- 전문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제시
 - 인증기관 등급제 등 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발
 -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의 부재로 인한 무리한 인증판정의 위험(risk)을 낮추기 위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는 품질관리 개념 제안
 - 인증기관의 국제기준 ISO 17065에 부합하는 인증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증기관 지원 방안 제시
 - 인증기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행 표준심사관리비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

3. 인증기관 운영실태 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발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 시 적용될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정보를 파악

○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 본 조사의 내용은 민간 인증기관들의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자료 및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들의 인식을 수집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에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됨
 -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관한 문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구성함
 -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식 경우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함
2. 조사범위 : 농관원에 의하여 친환경인증 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전국 민간 인증기관 대상
3. 조사대상 기간 : 20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증기관의 재무 및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4. 분석방법 :
 - 인증기관 현황 분석을 위해서 설문에 응답한 인증기관의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응답비율을 분석
 - 등급제 점수 환산을 위하여 응답 데이터를 평가지표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 부여

○ 조사체계

1. 조사대상 : 국내 소재 친환경농산물 등의 민간 인증기관의 실무책임자
2. 유효 응답자 수 : 65개 인증기관 중 55개 기관(84.6%)
3. 조사 횟수 : 2회
4. 조사 기간
 - 1차 : 2016년 2월 4일 ~ 2016년 2월 23일
 - 2차 : 2016년 4월 22일 ~ 2016년 5월 9일
5. 조사방법 : 설문지 배포 및 회수(온라인 이메일 활용)

제2장 인증기관 운영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1.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⁹⁾

- 표2-1은 2015년도 국내에 소재하는 65개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이며, 저농약을 포함하였음
- 국내 인증기관들은 총 28,560건의 64,132 농가를 인증하였으며, 건당 평균 농가 수는 2.2명임
- 친환경농산물 국내 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9부터 2015년까지 농가 수는 연평균 20.4%, 면적은 16.6%, 출하량은 27.1% 각각 감소함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보면, 2009~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과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저농약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2011년도에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이 저농약 출하량을 추월하였음

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농가 수는 2014년에 85,165 농가(기관평균 1,310명)이고 2015년도 64,132 농가(기관평균 1,002명)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기인증농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농약의 감소와 2015년도 저농약의 폐지로 인하여 인증농가 증가율은 계속 정체 또는 하락할 것임

표 2-1. 2015년 인증 농가 수 증감율

구 분	2014년 전체 인증 농가 수	2015년 전체 인증 농가 수
총 농가 수	85,165	64,132
기관당 평균 농가 수	1,310	1,002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저농약 포함)

표 2-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율 (%)	
유기	농가수(호)	9,430	10,790	13,376	16,733	13,957	11,633	11,611	3.5
	면적(ha)	13,343	15,517	19,311	25,467	21,206	18,306	18,143	5.3
	출하량(톤)	108,810	122,243	123,314	168,256	116,991	95,694	94,429	- 2.3
무농약	농가수(호)	63,653	83,136	89,765	90,325	89,992	56,756	48,407	- 4.5
	면적(ha)	71,039	94,533	95,253	101,657	98,237	65,061	56,996	- 3.6
	출하량(톤)	879,930	1,039,576	979,791	841,513	693,296	479,441	365,635	- 13.6
저농약	농가수(호)	125,835	89,992	57,487	36,025	22,797	16,776	7,599	- 37.4
	면적(ha)	117,306	83,956	58,108	37,165	22,208	16,679	7,629	- 36.6
	출하량(톤)	1,369,034	1,053,702	749,136	488,466	371,138	250,348	117,386	- 33.6
계	농가수(호)	198,918	183,918	160,628	143,083	126,746	85,165	67,617	- 16.5
	면적(ha)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47	100,046	82,768	- 13.8
	출하량(톤)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425	825,483	577,450	- 20.9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표 2-3. 2015년 12월 31일 인증기관 현황

지역	인증기관	인증건	점유율 (%)	인증농가	점유율 (%)
강원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396	1.4	419	0.7
강원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334	1.2	482	0.8
강원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649	2.3	912	1.4
강원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한국농심희	407	1.4	626	1.0
서울,경기	(주)오씨케이	531	1.9	661	1.0
서울,경기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1209	4.2	1209	1.9
서울,경기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97	0.3	163	0.3
서울,경기	(주)에코리더스인증원	259	0.9	523	0.8
서울,경기	(사)친환경축산협회	442	1.5	733	1.1
서울,경기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1347	4.7	1482	2.3
서울,경기	(주)한국유기농인증원	537	1.9	1422	2.2
서울,경기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1438	5.0	1438	2.2
서울,경기	(사)농산물품질평가협회	1107	3.9	3011	4.7
서울,경기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206	0.7	707	1.1
서울,경기	네오친환경인증센터(주)	670	2.3	711	1.1
서울,경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96	0.3	96	0.1
서울,경기	가평군농업기술센터	110	0.4	449	0.7
충북	(주)한국농식품인증원	487	1.7	1751	2.7
충북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124	0.4	607	0.9
충북	건국에코씨트인증원(주)	1510	5.3	1815	2.8
충북	영농조합법인친환경농업연구원	172	0.6	254	0.4
충북	진천군농업기술센터	73	0.3	329	0.5
대전,충남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407	1.4	1102	1.7
대전,충남	(주)비씨에스코리아	625	2.2	1059	1.7
대전,충남	(주)대한인증원	612	2.1	454	0.7
대전,충남	(주)친환경인증센터	323	1.1	1556	2.4
전북	농업회사법인 (주)성농	899	3.1	2163	3.4
전북	(사)자연들농식품인증원	144	0.5	375	0.6
전북	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432	1.5	1207	1.9
전북	(주)지리산인증	311	1.1	756	1.2
전북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317	1.1	599	0.9
광주,전남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584	2.0	1629	2.5
광주,전남	한국작물연구소주식회사	464	1.6	1682	2.6
광주,전남	국립목포대학교	378	1.3	1497	2.3
광주,전남	사단법인유기농진흥센터	266	0.9	72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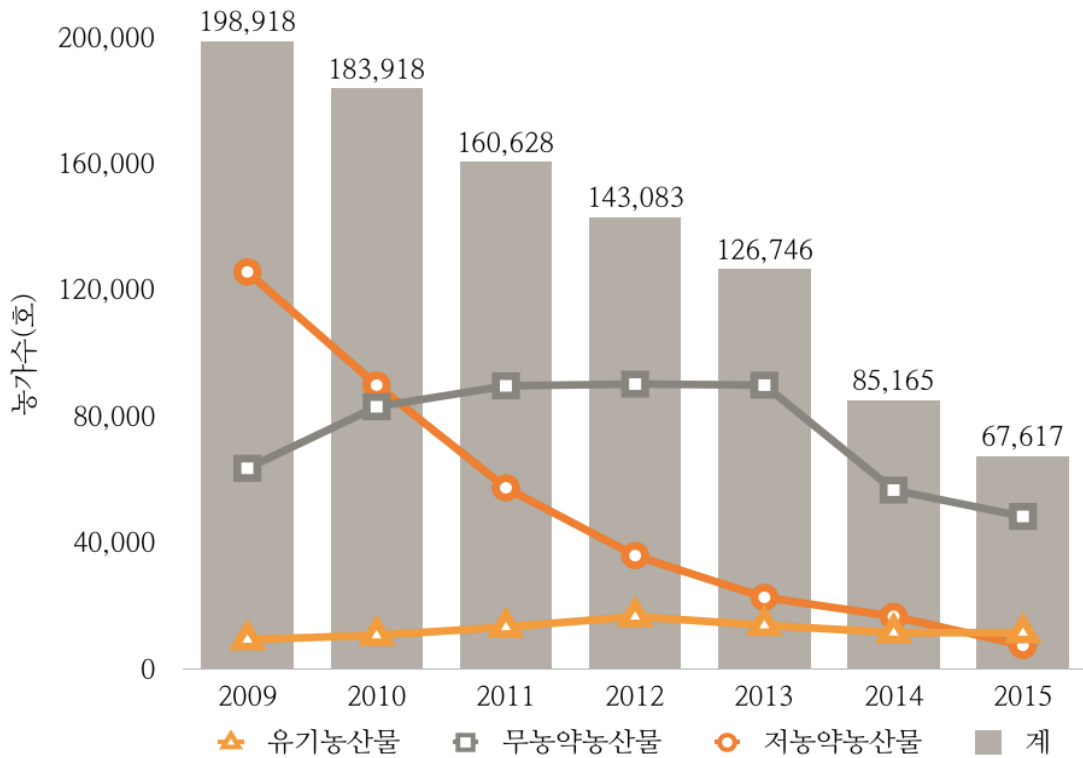
지역	인증기관	인증건	점유율 (%)	인증농가	점유율 (%)
광주,전남	(주)인증포럼	69	0.2	168	0.3
광주,전남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15	0.1	15	0.0
광주,전남	농업회사법인(주)지아이	278	1.0	1260	2.0
광주,전남	스마일친환경(주)	335	1.2	1233	1.9
광주,전남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488	1.7	1778	2.8
광주,전남	도담친환경유한회사	261	0.9	1332	2.1
광주,전남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314	1.1	1821	2.8
광주,전남	농업회사법인제이케이주식회사	329	1.2	1951	3.0
광주,전남	(주)한국농산업연구소	67	0.2	455	0.7
광주,전남	(주)이코이드	416	1.5	1284	2.0
광주,전남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210	0.7	1055	1.6
광주,전남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394	1.4	1431	2.2
광주,전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147	0.6	431	0.7
광주,전남	토지영농조합법인	878	3.1	2011	3.1
대구,경북	(사)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342	1.2	1187	1.9
대구,경북	(주)에버그린농우회	415	1.5	1003	1.6
대구,경북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주식회사	605	2.1	1177	1.8
대구,경북	봉화군농업기술센터	100	0.4	107	0.2
대구,경북	글로벌유농인	645	2.3	916	1.4
대구,경북	주식회사온누리친환경	685	2.4	1028	1.6
부산,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258	0.9	445	0.7
부산,경남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143	0.6	211	0.3
부산,경남	농업회사법인예농주식회사	288	1.0	2012	3.1
부산,경남	(주)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988	3.5	1688	2.6
부산,경남	(주)우리농인증원	539	1.9	1222	1.9
부산,경남	(재)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288	1.0	751	1.3
제주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526	1.8	727	1.2
제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16	1.1	372	0.7
제주	(사)제주농림수산물인증센터	258	0.9	455	0.8
제주	(사)한솔농림수산물인증센터	0	0.0	0	0.0
합계		28,560	100	64,132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저농약 포함)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 수는 2009~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유기재배 농가 수만 2009~2015년도 연평균 증감률이 3.5% 증가하고, 무농약재배는 4.5%, 저농약재배는 37.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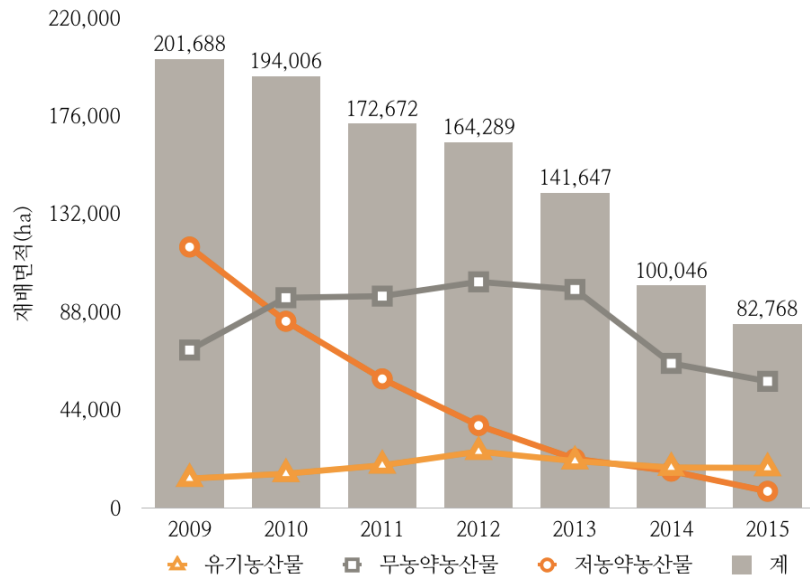
그림 2-1. 친환경농산물 농가 수 변화추이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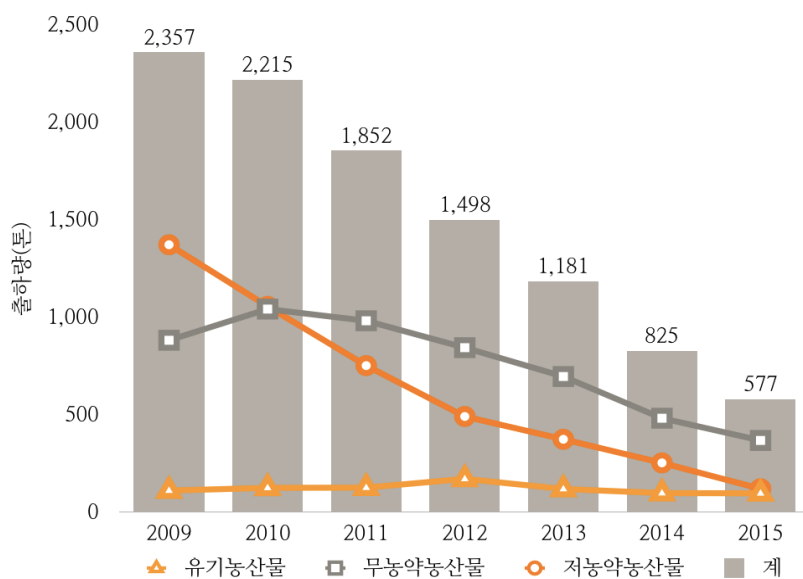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9~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저농약 농산물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됨

그림 2-2.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변화추이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역시 2009년~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저농약 농산물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됨.

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추이



- 2015년 친환경농산물은 총 577,451톤 생산되었으며,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94,429톤, 무농약 365,636톤, 저농약 117,386톤 생산
- 인증단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기 16.3%, 무농약 63.3%, 저농약 20.4%로 나타남

표 2-4. 품목별·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5)

(단위 : ton)

구 분	곡 류	과실류	채소류	서 류	특작류	기 타	전 체
유 기	43,538 (25.6%)	7,874 (6.8%)	31,278 (20.9%)	2,844 (19.6%)	3,078 (2.6%)	5,817 (55.9%)	94,429 (16.3%)
무농약	126,191 (74.1%)	15,361 (13.2%)	95,082 (63.4%)	11,295 (77.7%)	113,298 (97.4%)	4,409 (42.4%)	365,636 (63.3%)
저농약	493 (0.3%)	92,786 (80%)	23,523 (15.7%)	403 (2.7%)	0 (0%)	181 (1.7%)	117,386 (20.4%)
합 계	170,222 (100%)	116,021 (100%)	149,883 (100%)	14,542 (100%)	116,376 (100%)	10,407 (100%)	577,451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2. 인증기관 현황

- 인증기관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광주 지역에 18개의 인증기관이 분포하여 인증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27.6%), 다음으로 경기지역 13개(20%)이며, 그밖에 지역은 도별 4~6개의 인증기관이 분포

표 2-5. 인증기관 지역별 분포

구 분	강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총계
기관 수	4	13	5	4	5	18	6	6	4	65
비율(%)	6.2	20.0	7.7	6.2	7.7	27.6	9.2	9.2	6.2	100

- 인증기관 65개 중 인증 건수가 가장 많은 10개 인증기관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점유율 상위 10개(15%) 인증기관이 인증 건수의 37.5%를 담당

표 2-6. 인증 건수 상위 10위 인증기관

인증기관명	인증 건수	점유율(%)
건국에코써트인증원(주)	1,510	5.3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1,438	5.0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1,347	4.7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1,209	4.2
(사)농산물품질평가협회	1,107	3.9
(주)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988	3.5
농업회사법인 (주)성농	899	3.1
토지영농조합법인	878	3.1
주식회사온누리친환경	685	2.4
네오친환경인증센터(주)	670	2.3
합계	10,731	37.5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저농약 포함)

○ 인증건 실적 분포

- 65개 인증기관 중 1000건을 초과하는 인증을 시행한 기관은 5개(7.7%)인 반면, 20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이는 인증기관이 15개(23.1%)로 나타남

○ 전남, 광주 지역의 인증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및 농가 지원 정책에 따른 결과임

표 2-7. 인증 건수 실적 분포

구 분	1000건 초과	501~1000건	201~500건	51~200건	50건 이하	합계
인증기관 수	5	15	30	13	2	65
비 율(%)	7.7	23	46.2	20	3.1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저농약 포함)

○ 인증건 점유율 분포

- 65개 인증기관의 평균 점유율은 1.6%이며 점유율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유율 상위 10개 인증기관의 점유율 합계는 37.5%
- 민간 인증기관 총 인증 건 중에 절반 정도(50.5%)를 16개(25%) 인증기관이 점유함

표 2-8. 인증점유율 분포

구 분	5% 초과	2~5%	2%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2	14	49	65
비 율(%)	3.2	21.5	75.3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저농약 포함)

○ 인증농가 실적분포

- 65개 인증기관 중 2000 농가를 초과하는 농가 수를 관리하는 기관은 4개(6.2%), 1000~2000 농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28개(43.1%), 500~100 농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14개(21.5%), 500 농가 이하의 농가 수를 관리하는 기관은 19개(29.2%)로 나타남

표 2-9. 인증농가 실적분포

구 분	2000농가 초과	1001~2000농가	501~1000농가	500농가 이하	합계
인증기관 수	4	28	14	19	65
비 율(%)	6.2	43.1	21.5	29.2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저농약 포함)

○ 인증농가 점유율 분포

- 65개 인증기관의 평균 점유율은 1.5%이며 점유율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유율 상위 10개 인증기관의 점유율 합계는 31.2%
- 민간 인증기관 총 농가 수 중에 절반 정도(50.1%)를 18개 인증기관이 점유함
- 민간 인증기관 중 19개(29.2%)기관은 500 농가 이하의 농가 수를 관리하고 있음

표 2-10. 인증농가 점유율 분포

구 분	3% 초과	1~3%	1%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5	38	22	65
비 율(%)	7.7	58.5	33.8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저농약 포함)

□ 인증심의 방법

- 인증심의란 인증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인증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인증심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함
- 인증심의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인증위원회제: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위원회를 이루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
 - 인증심의관제: 인증심사 등 관련 업무 경력이 높은 전문 심의관 한 명이 인증 여부를 결정
(대부분의 해외 인증기관이 채택하고 있으며 Reviewer 또는 Certifier로 칭함)
- 우리나라의 인증기관 중에는 인증심의관제와 인증위원회제를 각각 46.3%와 53.7%로 채택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시행 초기(2002)에는 인증위원회제만 인정되었으나, 2010년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서 '3.인증업무 규정 나)인증업무 실시 방법'으로 인증심의관제 또는 인증위원회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증심의관제를 실시하게 되어 계속 증가하였음

표 2-11. 심의방법비율

구 분	인증심의관제	인증위원회제	총계
기관수	25	29	54
비율(%)	46.3	53.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표 2-12. 조직유형별 인증심의관제 비율

구 분	공공기관	기타	대학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총계
기관수	0	1	3	4	17	25
비율(%)	0	4	12	16	68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표 2-13. 조직유형별 인증위원회제 비율

구 분	공공기관	기타	대학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총계
기관수	3	1	8	4	13	29
비율(%)	10.3	3.4	27.6	13.8	44.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각 조직유형별로 심의관제와 위원회제를 채택한 상대적인 비율을 살펴 보면, 공공기관은 모두 인증위원회제를 선택한 반면(100%) 영리법인은 주로 인증심의관제를 취하고 있음(56.7%)

표 2-14. 조직유형별 심의방법 비율

구 분	공공기관	기타	대학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총계
심의관제	0	1	3	4	17	25
위원회제	3	1	8	4	13	29
심의관제(%)	0	50	27.3	50	56.7	
위원회제(%)	100	50	72.7	50	43.3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해외 생산자 인증

- 민간 인증기관 실태 조사에 응한 55개 인증기관 중 10개(18.2%) 인증기관이 해외에 있는 생산자에 대하여 심사 및 인증을 시행

표 2-15. 해외인증 진행 비율

구 분	해외인증 진행 인증기관	해외인증 비진행 인증기관	합계
인증기관 수	10	45	55
비 율(%)	18.2	81.8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해외 소재 생산자에 대한 인증은 응답한 55개 기관의 2015년 말 실적 합계인 21,659건 중 1.1%(242건)로서, 민간인증 대부분은 국내 생산자 중심

표 2-16. 해외 인증건수 비율

구 분	해외 인증 건수	국내 인증 건수	합계
인증기관 수	242	21,417	21,659
비 율(%)	1.1	98.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 갱신을

- 설문지 응답 오류 및 누락 인증기관을 제외한 55개 인증기관의 2015년 인증갱신 농가 수는 34,853명(기관평균 634명)이고, 2014년도 인증 농가 수는 57,921명(기관평균 1,073명)임
- 2015년 인증갱신¹⁰⁾ 비율을 살펴보면 60.2% 수준, 이는 저농약 인증의 폐지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교체, 단체 간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증농가의 인증기관 변경이 잦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함

표 2-17. 2015년 인증갱신 농가 수

구 분	2015년 인증갱신 농가수	2015년 인증 비갱신 농가수	합계
해당 농가 수	34,853	23,068	57,921
비 율(%)	60.2	39.8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 갱신을 분포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개 인증기관이 제외, 53개 인증기관의 인증 갱신율 평균은 75%이고, 인증기관별 인증 갱신 비율을 보면 5개 평가 기준에 인증기관이 골고루 분포

표 2-18. 인증기관별 인증갱신 비율

구 분	85% 이상	70~85% 미만	55~70% 미만	30~55% 미만	30%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14	7	10	11	11	53
비 율(%)	26.4	13.2	18.8	20.8	20.8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10) 인증사업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기존의 인증기관에서 계속 인증을 받는 비율을 말함

□ 부적합사항에 대한 대응

○ 인증 부적합¹¹⁾ 판정비율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의 2015년도 총 인증 건수는 21,659건이고, 평균 394건임
- 최종 부적합 판정 건수는 1,329건으로 평균 25건임. 55개 인증기관 2015년도 최종 부적합 판정 건수는 전체 인증 건수의 6.1%

표 2-19. 최종 부적합판정 건수 및 비율

구 분	최종 부적합 판정 건수	최종 적합 판정 건수	합계
인증 건수	1,329	20,330	21,659
비 율(%)	6.1	93.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1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인증기준 세부사항에 만족하지 않은 상태를 '부적합'이라 하며, 최종 판정 시에 인증을 허가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도 '부적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전자를 Non-Conformity 또는 Non-Compliance로 부르며, 후자를 Non-Conformance로 칭한다. 세부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와 세부 기준들을 종합하여 인증의 허가 여부를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경우와 같이 두 개념을 분리하여 칭하고자 하며, 전자에 대해 '적합 및 부적합'으로, 후자에 대해 '적격 및 부적격'으로 용어를 구분하였다.

□ 인증 취소 실태

○ 인증 취소 건수

-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건수를 살펴보면 총 건수는 2,283건 이고, 평균 36건임. 인증기관별 인증 취소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42개 인증기관(65.6%)에서 30건 미만의 인증취소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인증 취소 건수에 대한 인증기관 분포

구 분	100건 이상	30~99건	30건 미만	인증취소 없음	합계
인증기관 수	5	17	42	0	64
비 율(%)	7.8	26.6	65.6	0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인증 취소 농가 수

-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농가 수를 살펴보면 총 농가 수는 2,405 농가이고 평균 38 농가임. 인증기관별 인증 취소 농가 수 비율을 살펴보면, 36개 인증기관(56.3%)에서 30 농가 미만의 인증 취소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인증 취소 농가 수에 대한 인증기관 분포

구 분	100농가 이상	30~99농가	30농가 미만	0농가	합계
인증기관 수	7	21	36	0	64
비 율(%)	10.9	32.8	56.3	0	100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인증기관 매출 현황

○ 사업 총매출

- 인증사업과 인증 외 사업을 모두 포함한 2015년 민간 인증기관의 총매출 평균은 1,329,909천원이고, 총매출 합계는 71,815,102천원
- 설문에 응한 55개의 민간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54개 인증기관에서 3개 기관의 총매출액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가장 매출액이 높은 3개 기관과 가장 매출액이 낮은 3개 기관을 제외한 48개 기관의 총 매출액의 평균을 구해보면 493,770천원이고, 48개 인증기관의 매출 총합계는 23,701,244천원

표 2-22. 총매출액별 민간 인증기관 분포

구 분	10억 이상	6~10억 미만	4~6억 미만	2~4억 미만	2억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8	6	12	17	11	54
비 율(%)	12.4	9.4	18.8	42.2	17.2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사업 매출

- 인증 외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인증사업에 관한 매출을 분석하면, 2015년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사업 매출 평균은 385,276천 원으로 민간 인증기관 총매출 평균의 30% 수준
- 설문에 응한 55개의 민간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54개 기관 중 10개(19%) 기관을 제외하고는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음. 이는 현재 민간 인증기관들이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별 인증사업 매출액 분포를 보면 2억 이상 4억 미만의 매출액 비율이 31.5%로 가장 많고 4억 이상의 매출액과 1억 미만의 매출액 비율이 유사함을 알 수 있음

표 2-23. 인증사업 매출액 분포

구 분	6억 이상	4~6억 미만	2~4억 미만	1~2억 미만	1억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9	11	17	9	8	54
비 율(%)	16.7	20.4	31.5	16.7	14.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역량 관리

○ 고용 현황

- 2015년 인증기관 전체 정규직원은 520명, 평균은 10명이고 2014년 인증기관 전체 정규직원은 492명, 평균은 9명임. 15년도 정규직원 증감률을 확인해보면 2014년에 비해 5.4% 증가함

표 2-24. 2015년 인증기관 정규직원 증감률

구 분	2014년 인증기관 정규직원 수	2015년 인증기관 정규직원 수
인증기관 직원 총인원	492	520
기관당 평균 직원 수	9	1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심사원 양성 과정 등 직무교육 및 훈련

- 설문지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5개 기관을 제외한 50개 기관의 총 교육훈련비는 74,630천원이고 기관 평균은 1,493천원
- 교육훈련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인증기관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만원에서 0원까지의 교육훈련비 지출액이 전체 교육훈련비 지출액의 78%를 차지

- 교육훈련비 투입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교육 담당 기관의 전문성과 강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의 순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인증의 품질 향상의 측면에서 중요함. 현재 저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세분화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화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ISO 전문 심사원 교육의 경우 5일 과정의 교육비는 150~250만 원 수준)

표 2-25. 인증기관 교육훈련비 지출액 분포

구 분	300만원 이상	200~3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7	4	15	10	14	50
비 율(%)	14	8	30	20	28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심사원 1인당 교육훈련비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총 심사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8,578천원이고 기관 평균은 572천원
 - 20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인증기관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2-26. 심사원 1인당 교육훈련비 분포

구 분	60만원 이상	40~6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10	3	12	25	50
비 율(%)	20	6	24	50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2015년 인증기관 전체 상근심사원은 262명, 인증기관당 평균인원은 5명이고 2014년 인증기관 전체 상근심사원은 235명, 평균은 4명임. 2015년 상근심사원 증감률을 확인해보면 2014년에 비해 11.5%가 증가(고용증가율)

표 2-27. 인증기관 상근심사원 증감률

구 분	2014년 인증기관 상근심사원수	2015년 인증기관 상근심사원수
상근심사원수	235	262
평 균	4	5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기관 정규직원 중 심사원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심사원 외 직원이 49.6%로 심사원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
 - 그러나 상근심사원 수와 비상근심사원 수의 차이가 너무 큰 인증기관이 1곳 있어 가장 차이가 큰 기관과 가장 차이가 적은 기관 1곳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64.9%로 상근심사원이 비상근심사원보다 큰 비중을 차지

표 2-28. 심사원 중 상근심사원 비율

구 분	상근심사원 수	비상근심사원 수	합계
해당 인원 수	259	140	399
비 율(%)	64.9	35.1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상근심사원 비율
 - 55개 인증기관의 상근심사원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3명 이상 5명 미만의 상근심사원을 운영하는 인증기관이 29개로 52.7%를 차지

표 2-29. 상근심사원 인원 분포

구 분	7명 이상	5~6명	3~4명	합계
인증기관 수	8	18	29	55
비 율(%)	14.6	32.7	52.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55개 인증기관의 2015년 상근심사원 전체 이직자 수는 41명으로 기관 평균 1명임

- 2015년 상근심사원 이직율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상근심사원 수는 235명으로 계산해보면($41/235 * 100 = 17.3\%$) 17.3%의 상근심사원이 이직(이직율)

표 2-30. 상근심사원 이직율

구 분	상근심사원 이직자 수	상근심사원 근무자 수	합계
상근심사원수	35	167	202
비 율(%)	17.3	82.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기관별 상근심사원 이직율 분포를 살펴보면 0명이 5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과반수를 차지, 1명~0명이 이직율 분포의 87.3%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이직율은 낮은 편

표 2-31. 상근심사원 이직자 분포

구 분	4명	3명	2명	1명	0명	합계
인증기관 수	2	3	2	20	28	55
비 율(%)	3.6	5.5	3.6	36.4	50.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의 심사원 수는 256명이고, 경력연수는 평균 3년 8개월임. 그 중 4년에서 1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인증심사원이 52%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표 2-32. 인증심사원 경력 분포

구 분	10년 이상	7~10년 미만	4~7년 미만	1~4년 미만	1년 미만	합계
인증심사원 수	9	37	58	133	19	256
비 율(%)	3.5	14.5	22.7	52	7.3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건비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업체를 제외한 49개 인증기관의 2015년 인건비 지출액 자료를 근거로 한 1인당 인건비는 연평균 약 32,242천원. 이는 대표이사와 임원을 포함한 값임

표 2-33. 1인당 인건비 지출액 수준

구 분	5천만원 이상	4~5천만원 미만	3~4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6	6	12	18	7	49
비 율(%)	12.2	12.2	24.5	36.7	14.4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업체를 제외한 49개 인증기관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분포를 보면, 매출액의 50~70% 사이의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경우가 46.9%로 가장 많음.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의 평균은 50.7%이고 최대비율 93%, 최소비율은 20%임.

표 2-34. 인증기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분포

구 분	70% 이상	50~70% 미만	30~50% 미만	30%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6	23	13	7	49
비 율(%)	12.3	46.9	26.5	14.3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매출액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중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2업체를 제외한 33개 인증기관의 매출액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중의 분포를 보면, 30% 미만의 금액을 심사원 인건비로 지불하는 경우가 36.4%로 가장 많음
- 매출액 대비 심사원 인건비의 평균은 35.1%이고 최대비율은 91%, 최소비율은 0.5%임

표 2-35. 인증기관 매출액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율 분포

구 분	50% 이상	40~50% 미만	30~40% 미만	30%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6	8	7	12	33
비 율(%)	18.2	24.2	21.2	36.4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총 인건비 대비 심사원 인건비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0업체를 제외한 35개 인증기관의 총 인건비 대비 심사원 인건비 분포를 보면, 90% 이상의 금액을 심사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31.4%로 가장 많음
- 총인건비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중의 평균은 66.6%이고 최대비율은 100%, 최소비율은 2%임

표 2-36. 인증기관 총 인건비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율 분포

구 분	90% 이상	70~90%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11	8	7	9	35
비 율(%)	31.4	22.9	20	25.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관내 인증 집중도

-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인증기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와 같은 경우, 즉 관내 인증인 경우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74%로서 대체로 관내 인증 집중도¹²⁾가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99%, 전북지역 92%, 제주지역 86%로 관내 인증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충남, 강원 지역은 관내 인증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37. 인증기관 관내 인증 집중도(%)

구분	강원	경기 서울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전국 평균
관내 인증	57	64	51	57	92	99	86	78	86	74
관외 인증	43	36	49	43	8	1	14	22	14	26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 집중도와 사업자 부적합비율의 상관관계 분석
 -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증집중도(%)¹³⁾와 사업자 부적합비율(%)¹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8과 같음
 - 둘의 상관관계는 21.2%로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게 분석되었으며, 유의 확률¹⁵⁾이 0.121로 상관계수의 유의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즉, 관내 인증 집중도가 높다고 하여 부적격한 인증사업자의 적발률이 높거나 낮은 상관관계는 없음

12) 본 연구에서 “관내”라 함은 인증기관이 속한 시·도를 말함

13) 관내 인증 집중도 : 인증기관 관내 지역 인증건수 / 인증기관 총 인증건수 * 100

14) 사업자 부적합비율 : 외부기관 감사 행정처분건수 / 인증기관 총 인증건수 * 100

15) 유의 확률 : SPSS 분석시에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0 \leq X \leq 0.1$)

표 2-38. 인증 집중도와 부적합비율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1	2
1. 인증 집중도	80.4127	30.77543	1.00	
2. 부적합비율	4.3945	9.10834	0.212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관내 인증 집중도와 기관 행정처분의 상관관계 분석

-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증집중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9와 같음
- 둘의 상관관계는 13.9%로 낮게 분석되었으며, 유의 확률이 0.312로 상관계수의 유의성이 낮은 편임. 즉, 관내 인증 집중도에 따라 인증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에는 상관관계가 낮음

표 2-39. 인증집중도와 기관행정처분의 상관관계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1	2
1. 인증 집중도	80.4127	30.77543	1	
2. 기관행정처분	0.98	1.831	0.139	1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관내 인증 집중도가 생산자 부적격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편이나, 인증기관의 운영 효율 면에서는 출장비의 절감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관내 인증 집중도는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로 다루도록 하였음

□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 설문지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7개 기관을 제외한 48개 기관의 전체 잔류농약 허용 기준¹⁶⁾ 초과 건수는 405건이며 기관 평균 8건임.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건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10건 미만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62.4%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

표 2-40. 잔류농약 기준 초과 건수 분포

구 분	20건 초과	10~20건	10건 미만	총계
인증기관 수	9	9	30	48
비 율(%)	18.8	18.8	62.4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1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라. 7)유기 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양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임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 인증기관 운영에 대한 인식

-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92.7%가 선택하고 ‘소비자보호’를 12.7%, ‘수익성’을 7.3%가 선택하여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함.

표 2-41. 인증기관 지정이유

구 분	선택	비선택	총계	선택(%)	비선택(%)	총계(%)
수익성	4	51	55	7.3	92.7	100
기존 사업에서 확대	1	54	55	1.8	98.2	100
친환경·유기농업 발전	51	4	55	92.7	7.3	100
소비자보호	7	48	55	12.7	87.3	100
기타	1	54	55	1.8	98.2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에서 하나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택한 문항 수는 64문항으로 각 문항들의 상대적 비율을 확인해보면 ‘친환경·유기농업 발전’ 문항이 79.7%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소비자보호’ 문항이 10.9%, ‘수익성’ 문항이 6.2%, ‘기존 사업에서 확대’와 ‘기타’ 문항이 각각 1.6%의 비율로 선택됨

표 2-42. 인증기관 지정이유 문항 간 상대적 비율

구 분	수익성	기존사업에서 확대	친환경·유기농업 발전	소비자보호	기타	합계
문항선택	4	1	51	7	1	64
비 율(%)	6.2	1.6	79.7	10.9	1.6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ISO/IEC /17065 인정을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기 어렵다.’를 41.8%로 가장 많이 선택함. 2위로는 ‘의향이 있거나 혹은 받은 상태이다.’가 27.3%, 3위로는 ‘의향이 없다’가 20%, 4위로는 ‘ISO 17065가 뭔지 잘 모른다.’가 10.9%의 비율로 나타남. ISO 17065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 일단은 판단을 미루고 시장 상황 및 필요 발생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판단됨

표 2-43. ISO 17065 인정 획득 의향 비율

구 분	의향이 있다. 혹은 현재 받은 상태이다.	의향이 없다.	결정하기 어렵다.	ISO 17065가 뭔지 모른다	합계
문항선택	15	11	23	6	55
비율(%)	27.3	20.0	41.8	10.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ISO 17065 인정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24업체 중 ‘대외적 신뢰성 향상’을 78.6%로 가장 많이 선택함. 2위로는 ‘시스템 개선에 실제 유익’가 39.3%를 차지하였고, ‘영업에 도움’과 ‘기타’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임. 대외적 신뢰성 향상 및 시스템 개선이 ISO 17065 인정을 받는 중요 이유로 판단됨

표 2-44.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는 이유

구 분	선택	비선택	총계	선택(%)	비선택(%)	총계(%)
대외적 신뢰성 향상	22	6	28	78.6	21.4	100
시스템 개선에 실제 유익	11	17	28	39.3	60.7	100
영업에 도움	1	27	28	3.6	96.4	100
기타	2	26	28	7.1	92.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설문에 응답한 28개 인증기관에서 하나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택한 문항 수는 36문항으로 각 문항들의 상대적 비율을 확인해보면 ‘대외적 신뢰성 향상’이 61%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시스템 개선에 실제 유익’이 30.6%, ‘기타’가 5.6%, ‘영업에 도움’이 2.8%의 비율로 선택됨

표 2-45.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는 이유 문항 간 상대적 비율

구 분	대외적 신뢰성 향상	시스템 개선에 실제 유익	영업에 도움	기타	합계
문항선택	22	11	1	2	36
비 율(%)	61.0	30.6	2.8	5.6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ISO 17065 인정을 받을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31업체 중 ‘비용이 비싸서’가 42.9%로 가장 많이 선택됨. ‘유지·관리 투입인력 부족’이 35.7%, ‘영업에 도움 안 됨’이 32.1% ‘기준이 까다로워서’가 17.9% ‘기타’가 14.3%의 비율을 차지함

표 2-46.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 분	선택	비선택	총계	선택(%)	비선택(%)	총계(%)
비용이 비싸서	14	17	31	42.9	57.1	100
유지·관리 투입인력 부족	13	18	31	35.7	64.3	100
영업에 도움 안 됨	9	22	31	32.1	67.9	100
기준이 까다로워서	5	26	31	17.9	82.1	100
기타	4	27	31	14.3	85.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설문에 응답한 28개 인증기관에서 하나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택한 문항 수는 45문항으로 각 문항들의 상대적 비율을 확인해보면 ‘비용이 비싸서’가 31.1%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유지·관리 투입인력 부족’이 28.9%, ‘영업에 도움 안 됨’이 20%, ‘기준이 까다로워서’가 11.1%, ‘기타’가 8.9%의 비율로 선택됨

표 2-47. ISO 17065 인정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문항 간 상대적 비율

구 분	비용이 비싸서	유지·관리 투입인력 부족	영업에 도움 안 됨	기준이 까다로워서	기타	합계
문항선택	14	13	9	5	4	45
비율(%)	31.1	28.9	20.0	11.1	8.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ISO 17065에서는 인증기관의 신뢰를 높여주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공정성
 - 역량
 - 기밀유지 및 개방성
 -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성
 - 책임

○ ISO 17065에서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표2-48과 같이 예시함

표 2-48. ISO 17065가 예시하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

<p>A.2.2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치우침을 포함한다.</p> <p>a) 자체이해관계(예 : 서비스 또는 수수료 계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의뢰자를 잃는다는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p> <p>b) 자체검토(예 : 인증기관이, 자문과 같은, 이미 제공한 다른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것.)</p> <p>c) 옹호(예 : 자신의 의뢰자인 특정 회사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동시에 하는 인증기관 또는 그 직원의 행위)</p> <p>d) 과잉친절, 즉 적합성의 증거를 찾는 대신에 지나친 친밀함 또는 과잉 신뢰를 갖고 있는 인증기관 또는 그 인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제품 인증 맥락에서, 이러한 리스크는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매우 세분화된 전문기술자에 대한 필요성이 종종 자격을 갖춘 인원의 가용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p> <p>e) 협박(예 : 인증기관 또는 그 인원은 의뢰자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리스크에 의하여 공정한 행위를 단념하게 될 수 있다.)</p> <p>f) 경쟁(예 : 의뢰자와 계약된 자 간의)</p>
--

○ ISO 17065에서 제시하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실무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함

- 공평성에 관련하여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실적을 높이고 싶은 야망’이 58.5%로 가장 많이 선택됨. ‘다른 팀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은 미안함’이 50.9%, ‘의뢰자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47.2%, ‘질책 또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47.2%, ‘친환경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32.2%의 비율을 차지함. 대부분의 질문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1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나 ‘친환경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은 67.9%가 ‘없다’를 선택함

표 2-49. 공평성 관련 질문 선택 비율

구 분	있다	없다	총계	있다(%)	없다(%)	총계(%)
의뢰자를 잃는다는 두려움	25	28	53	47.2	52.8	100
질책 또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	25	28	53	47.2	52.8	100
실적을 높이고 싶은 야망	31	22	53	58.5	41.4	100
다른 팀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은 미안함	27	26	53	50.9	49.1	100
친환경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두려움	17	36	53	32.2	67.9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역량’에 대한 인식

- 인증심사원 전문성에 대하여 응답한 55업체 중 ‘지금 충분하다’가 5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조금 부족하다’가 40%, ‘많이 부족하다’가 5.5%의 비율을 차지함. 인증심사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설문
에 응답한 인증기관들은 ‘충분하다’와 ‘부족하다’로 나누었을 때 ‘충분
하다’가 5.4% 높게 나타남

표 2-50. 인증심사원 전문성 자체평가 비율

구 분	지금 충분하다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합계
문항선택	29	22	3	1	55
비율(%)	52.7	40.0	5.5	1.8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심사원 인원에 대하여 설문
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조금 부족하
다’가 5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지금 충분하다’가 41.8%,
‘많이 부족하다’가 5.5%의 비율을 차지함. 설문
에 응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심사원들의 인원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함을 유추할 수 있음

표 2-51.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인원 자체평가 비율

구 분	지금 충분하다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합계
문항선택	23	29	3	0	55
비율(%)	41.8	52.7	5.5	0.0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심사원들의 직업 전망에 대하여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일에 만족하며 장기간 근무할 것이다’가 4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체로 만족하지만 장기간 근무할 것 같지 않다’가 32.7%, ‘불만이 많아서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가 12.7%, ‘잘 모르겠다’가 7.3%의 비율을 차지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심사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장기간 근무 여부 전망은 47% 수준임

표 2-52. 인증심사원 직업전망 자체평가 비율

구 분	일에 만족하고 장기간 근무	대체로 만족, 장기간 근무 안함	불만 많고,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잘 모르겠다	합계
문항선택	26	18	7	4	55
비율(%)	47.3	32.7	12.7	7.3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기밀유지¹⁷⁾ 상태에 대하여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비밀유지가 잘 된다’가 9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비밀유지 방침은 있으나 실천이 안 된다’가 7.3%를 차지함. 설문에 응답한 모든 인증기관이 비밀유지 방침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이 기밀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표 2-53. 기밀 유지 상태 자체 평가 비율

구 분	기밀 유지 잘 됨	기밀 유지 방침이 있으나 실천 안됨	기밀 유지 방침 없음	기밀 유지 관심 없고 방침도 없음	합계
문항선택	51	4	0	0	55
비율(%)	92.7	7.3	0.0	0.0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17) 기밀유지란 인증기관이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운영 원칙임

- 인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인증 상태’가 9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인증 기준 조항’과 ‘관련 절차, 규정, 기준서’가 각각 88.9%, ‘심사·인증 추진 상황’이 77.8%, ‘인증기관의 평가 결과’가 14.8%의 비율을 차지함.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대부분의 항목이 약 80% 이상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인증기관의 평가 결과’는 14.8%의 인증기관만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민간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기관의 평가 결과를 인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예측 가능함

표 2-54. 인증 시 인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비율

구 분	제공	비제공	총계	제공(%)	비제공(%)	총계(%)
인증상태	52	2	54	96.3	3.7	100
인증기관의 평가 결과	8	46	54	14.8	85.2	100
심사·인증 추진 상황	42	12	54	77.8	22.2	100
부적합사항에 대한 인증기준 조항	48	6	54	88.9	11.1	100
관련 절차, 규정, 기준서	48	6	54	88.9	11.1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불만 및 이의 제기 절차(클레임 절차)의 운용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절차서 및 매뉴얼대로 잘 운용하는 편이다’가 70.4%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절차서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해 누락이 많다’가 20.5%, ‘절차서는 형식적이므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7.4%, ‘절차서를 잘 모른다’가 1.7%의 비율을 차지함

표 2-55.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용 자체평가 비율

구 분	잘 운용하는 편이다.	절차서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이 불편해 누락이 많다.	절차서는 형식적이므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절차서를 잘 모른다.	합계
문항선택	38	11	4	1	54
비율(%)	70.4	20.5	7.4	1.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는 필요하다’가 7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있으면 좋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가 16.7%,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필요 없다.’가 3.7%의 비율을 차지함. 설문에 응답한 인증기관의 경우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인정함

표 2-56.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필요성에 대한 자체평가 비율

구 분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는 필요	있으면 좋지만 큰 도움 안됨	현실에 맞지 않아 필요 없음	합계
문항선택	43	9	2	54
비율(%)	79.6	16.7	3.7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인증 결정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의 행동 관련 설문에 응답한 55 업체 중 ‘인증 결정을 유보한다’가 90.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생산자가 신뢰감을 주므로 승인한다’가 9.3%, ‘개선을 약속받고 인증한다’가 5.6%, ‘비현실적인 기준때문이므로 승인한다’가 1.9%의 비율을 차지함. 약 90%의 인증기관이 인증 결정의 근거가 충분해지거나 부적합사항이 해결되어 문제가 없을 때까지 인증 결정을 유보한다고 응답함

표 2-57. 인증 결정 근거 불충분시 행동 비율

구 분	선택	비선택	총계	선택(%)	비선택(%)	총계(%)
인증 결정 유보	49	5	54	90.7	9.3	100
생산자가 신뢰감을 주므로 승인	5	49	54	9.3	90.7	100
비현실적인 기준때문이므로 승인	1	53	54	1.9	98.1	100
개선을 약속받고 인증 승인	3	51	54	5.6	94.4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설문에 응답한 55개 인증기관에서 하나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택한 문항 수는 58문항으로 각 문항들의 상대적 비율을 확인해보면 ‘인증 결정을 유보한다’가 84.5%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생산자가 신뢰감을 주므로 인증을 승인한다’가 8.6%, ‘다음에 개선을 약속받고 인증 승인한다’가 5.2%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이므로 인증 승인한다’가 1.7%의 비율로 선택됨

표 2-58. 인증 결정 근거 불충분시 행동의 문항 간 상대적 비율

구 분	인증 결정을 유보	생산자가 신뢰감을 주므로 인증 승인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으로 인증 승인	다음에 개선을 약속 받고 인증 승인	합계
문항선택	49	5	1	3	58
비율(%)	84.5	8.6	1.7	5.2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생산자의 비의도적인 문제로 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설문에 응답한 55개 업체 중 ‘원인 분석 후 수위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 취소’가 74.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무조건 부적격 처리 또는 인증 취소’가 14.8%, ‘원인 분석 후 시정조치 시까지 정지 처분’, 11.1%의 비율을 차지함. 약 70% 정도의 인증기관이 비의도적인 문제의 경우 즉각적인 부적격 처리 및 인증 취소보다는 원인 분석 후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파악됨

표 2-59. 생산자의 비의도적 문제로 인한 부적합사항 대처 비율

구 분	무조건 부적격 처리 또는 인증취소	원인 분석 후 수위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 취소	원인 분석 후 시정조치 시까지 정지 처분	합계
문항선택	8	40	6	54
비율(%)	14.8	74.1	11.1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2016. 인증기관 현황조사)

- 사업자의 부적합사항과 부적격성을 관리하는 업무는 인증기관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음.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농관원 고시¹⁸⁾에 따르면 신규 및 갱신을 위한 심사 시 사업자에게 부적합사항이 나타나는 경우에 부적합사항의 의도성이나 경중에 관계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음
-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기존 인증사업자에게 부적합사항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의 의도성이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표시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함

표 2-60. 농산물의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예시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인증 취소
경영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 취소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유기합성농약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인증품이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인증표시 정지
인증사업자가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시정 명령

18) 농관원 고시 제2015-55호.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2의 1. 바. 1)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이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의도성과 경중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대다수 인증기관(74.1%)은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인증기관 중에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의도성과 경중에 관계 없이 부적격 처리 또는 인증 취소하는 경우(14.8%)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내 장기 잔류하는 농약 성분 등 비의도적인 부적합사항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됨
-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의 국가 인증제도와 ISO 17065에서는 사업자에게 비의도적인 부적합사항이 나타나는 경우에 시정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은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조치가 된 부적합사항은 다음의 갱신 심사 또는 사후관리에서 더욱 자세히 심사하도록 함
- 사업자가 경영 관련 자료의 미제출, 농약 등 금지 물질의 사용 등과 같이 중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후의 재심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언급된 규정이 없음
- 인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사업자에게 나타나는 부적합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부적합사항을 인식하고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유기 제품의 관리 시스템을 적절하게 유지 및 개선하도록 관리하도록 인증업무의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인증제도의 국제화에서 개선안 제시)

제3장

해외의 인증기관 운영 사례

1. 해외의 인정제도¹⁹⁾

1.1. IFOAM

□ IFOAM²⁰⁾의 보증시스템

- IFOAM 인정기준(IAR)²¹⁾은 1992년도에 발표되어, 현재 전 세계 19개의 인증기관이 인정받고 있음. 국내 인증기관은 2개 인증받음. (돌나라 유기인증코리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IFOAM 기본 기준(IFS)²²⁾은 사업자의 재배, 사육, 가공, 취급에 관한 기준서로서 1980에 발표되었고, 2012년에 개정되었음. IFS는 유럽연합의 유기 기준(EEC2092/91)을 제정하는데 참조되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유기식품 생산 및 취급 가이드라인²³⁾을 제정하는 데에도 벤치마킹됨

19) 인정제도(Accreditation Scheme).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인증기관 지정’으로 표현하고 있음

2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21) 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s

22) IFOAM Basic Standards

23) CAC GL 32

표 3-1. IFOAM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 현황(2016.6.)

기관명	국가
ARGENCERT S.A.	아르헨티나
AsureQuality Limited	뉴질랜드
Australian Certified Organic	호주
Bioagricert srl	이탈리아
Biocert International PVT Ltd.	인도
BIOGRO NEW ZEALAND LTD	뉴질랜드
Bolicert	볼리비아
CCPB SRL	이탈리아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한국
Hong Kong Organic Resource Centre Certification Limited	홍콩
IBD Certifications Ltd.	브라질
Japan Organic & Natural Foods Association	일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LETIS S.A.	아르헨티나
NASAA Certified Organic Pty. Ltd.	호주
Organic Agriculture Certification Thailand	태국
Organic Food Development & Certification Center of China	중국
Organizacion Internacional Agropecuaria S.A.	아르헨티나
Uganda Organic Certification Ltd	우간다

- IAR은 IFOAM이 소유하며, 인정업무 집행은 미국에 소재하는 인정기관 IOAS²⁴⁾에 일임하고 있음
- IOAS는 IFOAM 외에도, 유럽연합 유기 인증(EC834/2007), 캐나다 유기농(COR)²⁵⁾, 국제유기섬유(GOTS)²⁶⁾, 국제유기화장품, ISO 17065 등 9가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유기 인증 전문 인정기관임

24) 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

25) Canadian Organic Regime

26)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s

□ IFOAM 인정기준의 시사점

- IAR은 ISO 17065에서 요구하는 인증기관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유기농 심사 및 인증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발전시킨 기준임
- 본 부문에서는 IAR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 인정기준에서 언급되지 않거나 차이를 나타내는 조항들을 검토하여 소개하고 있음

표 3-2. 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s 목차

컨텐츠	번역
1. STRUCTURE	1. 구조
1.1. General Requirements	1.1. 일반 요건
1.2. Responsibility	1.2. 책임성
1.3.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1.3. 공정성 및 객관성
1.4. Consulting and Advising	1.4. 컨설팅 및 조언
1.5. Conflicts of Interest of Individuals	1.5. 개인의 이해 상충
1.6. Finalcial and Personnel Resources	1.6. 재정 및 인적 자원
1.7. Outsourcing	1.7. 업무의 위탁
2. ACCESSIBILITY AND SCOPE	2. 접근성 및 업무 범위
2.1. Accessibility	2.1. 접근성
2.2. Certification Scope and the Chain of Custody	2.2. 인증 범위 및 유통 과정
2.3. Certification Scope and Subcontracted Production or Processing	2.3. 인증 범위 및 외주
3. QUALITY SYSTEM FOR CERTIFICATION	3. 인증 품질의 관리
3.1. Quality Policy	3.1. 품질 정책
3.2. Quality System	3.2. 품질 시스템
3.3. Quality Documentation	3.3. 품질 문서화
3.4. Internal Audit	3.4. 내부 감사
3.5. Management Review	3.5. 경영 검토
3.6. Performance Review	3.6. 실적 검토
3.7. Complaints	3.7. 문제 제기

3.8.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3.8.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4. CONFIDENTIALITY PROVISIONS	4. 비밀 유지
4.1. General	4.1. 일반사항
5. DOCUMENTATION AND DOCUMENT CONTROL	5. 문서화 및 문서 관리
5.1. General	5.1. 일반 사항
5.2.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5.2. 정보의 공개
5.3. Document Control	5.3. 문서 관리
5.4. Records	5.4. 기록
6. APPLICATION AND INSPECTION PROCEDURES	6. 접수 및 심사 절차
6.1. Application Procedures	6.1. 접수 절차
6.2. Review and acceptance of application	6.2. 신청서의 검토 및 접수
6.3. Preparation for Inspection	6.3. 심사 준비
6.4. Visit Procedures	6.4. 방문 절차
6.5. Sampling and Testing	6.5. 시료 검사
6.6. Inspection Report	6.6. 심사보고서
6.7. Specific Inspection Requirements for the Conversion Period	6.7. 전환기에 대한 특별 심사 사항
6.8. Specific Inspection Requirements for Split and Parallel Production	6.8. 분할 생산 및 병행생산 ²⁷⁾ 에 대한 특별 심사 사항
7. CERTIFICATION PROCEDURES	7. 인증 절차
7.1. General Requirements	7.1 일반 사항
7.2. Certification Decision	7.2. 인증의 판정
7.3. The Certification Process	7.3. 인증프로세스
7.4. Certificate of Conformity and Transaction Certificates	7.4. 인증서 및 거래인증서
7.5. Frequency of Scheduled Inspections	7.5. 심사의 빈도
7.6. Unannounced Inspections	7.6. 불시 심사
7.7. Notification of Changes in Licensee's Operation and Extension of Scope	7.7. 변경사항 통지 및 인증범위 확대
7.8. Use of Licenses, Certificates and Certification Marks	7.8.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이용
7.9. Non-conformityies and Sanctions	7.9. 부적합사항과 제재
7.10. Appeals	7.10. 이의제기
7.11. Risk Reduction Between Certification Bodies	7.11. 인증기관 사이의 위험 관리

8.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SPECIFIC CIRCUMSTANCES	8. 특수 조건의 심사 및 인증
8.1. Certification of Wild Products	8.1. 자연산 생산물 인증
8.2. Approval or Certification of Inputs	8.2. 자재의 승인 또는 인증
8.3. Group Certification	8.3. 생산자 단체 인증
9. ACCEPTANCE OF OTHER PRODUCT CERTIFICATION	9. 동등성 적용
9.1. General Requirements	9.1. 일반 사항
9.2. Acceptance of Product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a Certification Body's Program	9.2. 인증기관에 대한 수용
9.3. Acceptance of Products on a case by case basis	9.3. 제품 건별 수용

표 3-3. IFOAM 인정 기준 중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조항 소개

IFOAM 인증기관의 인정 기준	원문
○ 인증의 판정,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appeal)를 처리하는 자는 그 이의제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 이는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요구하는 것임	1.3.13. <i>Persons responsible for a decision that is being appealed may not be involved in the decision on that appeal.</i>
○ 인증기관의 임직원 모두는 이해의 상충 ²⁸⁾ 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출해야 함. 이해 상충 보고서에는 자신의 사적, 공적 활동에 관계된 모든 개인과 법인을 열거하여 직·간접적 이해 상충 발생의 가능성을 보고하여야 함	1.5.1. <i>The certification body shall ensure that a declaration of interest is updated annually by all persons involved in certification, inspection and appeals as well as by the board. Such declarations shall be on file and take into account both direct and indirect interests.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review the declarations and identify what constitutes a conflict.</i>
○ 수탁자가 인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위탁 생산(OEM) 또는 임가공하는 경우 인증서는 위탁자에게 발행함	2.3.1. <i>The certification body shall hav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regulating subcontracted production or processing, where the subcontracted party is not required to be certified in their own right. A certification body may not issue a certificate of any type to the subcontracted operator.</i>

27) 분할 생산(Split Production): 유기와 비유기를 모두 생산하는 것,
 병행생산(Parallel Production): 같은 품목에 대하여 유기와 비유기를 모두 생산하는 것

○ 대신 수탁자는 심사의 대상이 되며, 인증 기준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음	2.3.4.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require that the certified operator shall be held fully responsible for the subcontracted production or processing and be subject to sanction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of the subcontracted parties.
○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내부감사(Internal Audit)를 실시하여 인증기관 서비스의 품질과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내부감사를 통하여 발견한 문제점은 문서화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함 ²⁹⁾	3.4.1.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conduct periodic internal audits such that all procedures are covered in a planned and systematic manner over time, to verify that the certification system is implemented and is effective.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ensure that: f.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g. the results of the audit are documented.
○ 인증기관은 매년 자체 경영검토(Management Review)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함 ³⁰⁾	3.5.3 The management review shall take place at least annually. Records of such reviews shall be maintained.
○ 인증기관은 매년 상근 및 비상근 심사원과 인증에 관계된 직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자체 수행 검토(Performance Review)를 실시하여야 함	3.6.1.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conduct performance reviews of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personnel including employed inspectors at least annually.
○ 인증기관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³¹⁾ 를 실시하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나 잠재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함	3.8.1.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document procedures for identifying and handling certification body (potential) non-conformities and for assuring the effectiveness of any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taken.
○ 심사원을 배정할 때 같은 심사원이 같은 사업자에게 4년을 초과하여 배정되면 안되며, 기준 이탈의 위험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심사원이 배정되는 횟수를 지정하여야 함	6.3.3. The assignment of the inspector shall ensure that the same inspector shall as a rule not be assigned to an operator for more than 4 consecutive years. For highFrisk operators that are inspected more than once a year,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have a policy to further limit the number of consecutive inspections.
○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이나 규정이 바뀌면 반드시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함	7.1.4. The certifications body shall ensure that each certified operator be notified of changes in the standard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in a timely manner.
○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인증할 수 있음. 인증조건이 인증서 발행 후에 곧바로 시정조치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확인할 시간 계획이 세워져야 함. 사업자가 인증의 조건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7.2.2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have the right to impose conditions. Where conditions require corrective actions subsequent to certification, timelines shall be imposed. Mechanisms for monitoring compliance with conditions shall be in place.

<p>○ 인증기준에 대한 예외(관행 종자 사용 등)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의 사유와 정당성이 평가되고 문서화되어야 함</p>	<p>7.2.4. If exceptions are granted there shall b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granting exceptions. Exceptions shall be clearly limited in time and the rationale for any exception shall be properly recorded.</p>
<p>○ 거래 인증서(TC)³²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자, 구매자, 운송일 자/거래일 자, 발행일, 제품명, 수량, 인증 상태, 로트번호, 계산서 번호 또는 선적 번호, 인증기관명, 인증제도명,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메시지 	<p>7.4.2. Where the certification body issues transaction certificates or provides forms for operators to issue self-issued transaction certificates,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ensure that certificates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event fraudulent usage. This shall at least incl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seller; b. the buyer; c. the date of delivery and/ or date of transaction; d. the date of issuing the certificate; e. a clear indication of the product, the quantity and its certification status; f. lot numbers and other identification (marks) of the products; g. reference to an invoice or bill of lading; h. the certification body and the applicable standard; i. a statement that the product is produc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standards.
<p>○ 심사빈도와 심사유형은 사업자의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하며, 최소 연 1회 심사를 실시하면 됨. 즉, 위험평가에 따라 연 1회 이상 심사를 할 수 있음</p>	<p>7.5.2.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have a written policy on inspection frequency of already certified operators. The policy shall require that certified operators are inspected at least annually. Alternatively, (except in the cases of new applicants, operators wholly in conversion or group certification) the policy shall fulfill the following requir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frequency and type of inspections are based on the risks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 operator; b. the risk analysis take into account any relevant threat to the organic integrity of the production and products
<p>○ 불시 심사(Unannounced Inspection)는 사후 관리의 방법으로 인증 건수의 5%를 무작위 또는 계획적 선별을 통하여 실시함</p>	<p>7.6.1.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have a documented policy requiring that at least annually 5% of the operators are subject to unannounced inspection.</p>

2. 해외의 인증기관 사례

2.1. Skal BioControle³³⁾

□ 사업 개요

-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의 유기 인증 규정(EC834/2007 & EC889/2008)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Skal은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유기농 전문 인증기관으로서 Zwolle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임
- Skal의 설립 목적은 유기농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기농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임³⁴⁾
- 네덜란드의 국립 인정기관(RvA³⁵⁾)으로부터 인정(Accreditation)을 받았으며, 유럽 유기인증기관 협회(EOCC³⁶⁾)의 회원사임
- Skal은 유럽연합의 유기 인증 규정인 EC834/2007과 EC889/2008에 따라 자국 내의 농업인 및 가공사업자에 대해서만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인증 사업은 하지 않음

28) Conflict of Interest

29) 내부감사는 ISO 17065에서도 요구됨

30) 경영검토는 ISO 17065에서도 요구됨

31) 시정 조치: Corrective Action, 예방 조치: Preventive Action

32) Transaction Certificate

33) Skal BioControle는 2016년 2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Bio-Fach에서 Skal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Mr. Jan Hoekman 과의 인터뷰 및 2015년 Skal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조사되었음

34) BETROUWBAAR BIO: TOEZICHT IN 2015

DE MISSIE VAN SKAL IS:

Skal houdt op doelmatige en efficiënte wijze toezicht op de naleving van de biologische regelgeving en draagt daarmee bij aan de betrouwbaarheid van de bio-sector.

De organisatie is gevestigd in Zwolle.

35) Raad voor Accreditatie (Dutch Council for Accreditation)

36) European Organic Certifiers Council (www.eocc.nu)

- 인증실적은 2015년도 1,625 농가와 2,352개의 가공사업자를 인증하여 총 3,977건의 인증을 실시하였음
 - 농산물 인증의 경우 모두 개인 농가이며 단체 인증은 없음

- 유기 제품의 관리는 세 가지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자(인증사업자 및 잠재적 인증사업자)와 유기농에 관련된 규정과 기준에 대하여 소통
 - 심사 및 인증: 유기농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관찰
 - 사후관리: 유기농사업자의 적합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집(회사, 국내외의 기관, 소비자의 통지)

-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 기존 이탈의 위험이 큰 인증사업자에 관리 역량을 집중함
 -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효율 증대
 - 예) NVWA(Dutch Food and Authority). Skال은 유기농에 관하여 관리하고 NVWA는 식품안전 및 가축 건강에 관하여 조사하며, 정보를 공유함
 - 유럽 내 다른 인증기관들과의 공조
 - 예) EOCC 회원사들 간의 업무 공조. Skال은 EOCC의 위험평가 전문위원³⁷⁾으로 활동 중

- Skال은 물리적인 생산과정 조사 외에도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문서 모니터링 등)를 함. 이는 주로 생산 시스템 중에서 부적합 사항의 발생 위험(risk)이 큰 가공·취급 단계에 적용됨

- 컴플레인 절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3의 기관, 사업자, 소비자들은 부적합 사항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고, Skال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2015년 외부 기관으로부터 306건의 잔류 검약 검출이 접수되었음

37) Task Force of Risk Assessment

□ 인증 실적

- 2015년 총 3,977건의 인증을 실시하여 2014년에 비하여 239건(6.4%) 증가하였음. 인증을 종료한 사업자는 355건으로, 가공 사업자 262건, 농업 사업자 93건임

그림 3-1. Skal 인증사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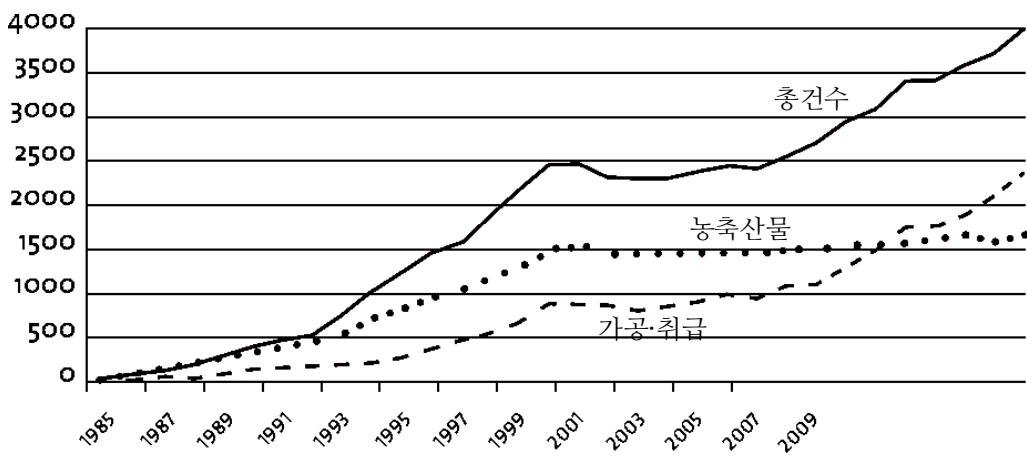


표 3-4. Skal 인증사업자 수 변화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사업자 수	3,133	3,411	3,423	3,601	3,738	3,977

표 3-5. Skal 인증면적 변화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가수	1,600	1,646	1,658	1,647	1,600	1,625
유기재배 면적 (ha)	51,150	52,206	50,736	53,379	57,045	56,729
전환기 면적 (ha)	2,761	2,988	3,046	2,559	1,957	2,391
총면적(ha)	53,911	55,194	53,782	55,938	59,002	59,120

- 1,625개의 농업사업자는 1,508개의 가공사업을 겸하고 있어, 농업사업자의 93%가 가공사업을 동시에 취하고 있음
- 유기농업 면적은 59,002ha에서 59,120ha로 증가하였지만, 이는 신규 생산자들의 전환기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기존 유기 재배 면적은 감소하였음
- 2015년에 890개의 신규 사업자가 인증되었으며, 그중 14%인 127개는 농업인임. 하나의 사업자는 다수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예컨대, 축산 생산자가 경종 농업을 운영하는 것). 이는 표 3-6에서 복수로 등록되었을 수 있음

표 3-6. 2015년 신규인증 현황

구 분	마케팅	수입업	창고업	농업*	축산업	양식업	가공업	합계
신규 사업자	273	62	223	127	49	1	155	890

* 신규 축산업은 대부분 사료포 및 방목지 등 농업(경종) 생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15년 관리 실적

○ Skal의 유기제품 관리는 3대 업무로 정의되어 있음³⁸⁾

- (1)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소통
- (2) 심사 및 인증(심의): 생산 과정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 (3) 사후관리: 적합성 모니터링

(1) 정보의 소통

- 유기농 규정과 절차에 대한 종합 안내서 1,476건 발송(2014년에서 약 400건 증가). 가공사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900건 이상, 농업 생산자에게 236건, 축산 생산자에게 254건의 자료집을 제공. 이는 2016년도의 인증 증가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임
- 홈페이지(www.skal.nl)에서 모든 사업자(인증사업자 및 예비 인증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최신의 규정과 절차를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접속 회원은 총 16,416명이며, 접속 횟수는 약 40,000회임
- 인증사업자는 5회의 소식지(뉴스레터)를 온라인으로 공급받고 인쇄된 보고서는 연 2회 공급되어, 규정과 절차의 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시행
- 예컨대, 2015년도에 변경 및 업데이트된 규정과 주요 정보들이 다음과 같이 통보되었음:
 -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등성 체결(2015.2.1.)
 - 양봉은 1년의 전환 기간을 지난 후에 Skal에 의하여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음(2015.3.21.)
 - 유럽연합에서 해조류 사용에 대해 해석을 하였음
 이러한 정보들은 Skal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있음

38) Skal BioControle (2016). BETROUWBAAR BIO: TOEZICHT IN 2015

- 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심사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리며, 심사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심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심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함
- Skal 서비스에 대한 인증사업자들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업체에 설문조사(전화 조사)를 위탁하였음
 - 조사 결과 심사원에 대하여 평균 7.8/10.0의 만족도를 나타냄
 - 조사 분야는 심사의 명확성, 심사원의 전문성, 규정에 대한 설명이었음³⁹⁾
 -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은 문서작업의 완화, 심사의 계획과 실행시 유연성, 심사 전에 세부적인 정보 제공 등이었음

39) Clear inspections, expert inspectors and good explanation of regulation

(2) 심사 및 인증심의

□ 심사 실적(정규심사 및 사후관리)

- 2015년에 5,148건의 심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정규심사(신규 및 갱신) 3,750건과 569건의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것임. 사후관리 실적은 총 인증 건수의 약 15%임
- 기존의 인증사업자가 품목, 면적, 사업장 등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Skal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함
- 사후관리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Risk-based) 위험이 큰 재배 및 사육 과정을 불시에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후관리의 핵심 업무가 되며 2015년도에 569건을 실시하였음.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⁴⁰⁾
 - 가축이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목 계절에 농가를 방문
 - 양돈 사육 농가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농가를 방문
 - 가공사업자가 적절한 유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공 공정이 있는 시기에 방문
- 2015년에 시료 채취는 196건 있었으며, 시료 채취를 시행하는 이유는 투입 물질 및 유기원료를 적절히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임
 - EU 규정에서는 인증기관의 자율에 따라 시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Skal의 시료 채취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따라서 시행됨

40) 네덜란드의 농업은 재배중심의 경종 농업과 축산업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낙농업 등 축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므로 경종 농업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축산에 관한 내용이 주로 조사되었음

표 3-7. Skai 심사 실적(2014, 2015)

(단위: 건)	2014		201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문서 검토 (approval studies)	350	423	390	515
추가 심사 (품목, 사업장 등의 확대)	80	98	110	125
정규 심사 (신규심사 및 갱신심사)	3,780	3,599	3,689	3,750
재심사	150	171	175	171
사후관리 (targeted inspections)	550	605	550	569
기타 심사 (심화, 유통, 기만행위)	-	12	(해당없음)	18
합계	4,360	4,908	4,914	5,148
시료 채취	-	193	190	196

- 심사과정에서의 예외 적용은 표 3-8과 같이 이루어졌음
- 10두 이하의 소농의 경우 겨울철 어린 송아지는 방목에 예외 적용 가능
 - 유기 축산 농가가 사육 두수를 늘일 경우, 유기 축산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행 축산에서 입식할 수 있음. 이때, 관행 축산에서 도입한 가축은 전환 기간을 거쳐야 함
 - 송아지는 정해진 연령에, 마취를 하고,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각을 1회 실시할 수 있음
 - 관행 종자 사용은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약 20% 증가했음

표 3-8. Skal에서 유기 기준의 예외의 적용 (2015)

예외 적용 내용	2014	2015
소규모 농가에서 가축의 계류(tethering)	2	0
관행 가축의 입식	61	82
제각(dehorning)	26	23
토양 양분 투입량(질소 투입량)	6	2
관행 종자의 사용	1,699	2,071
합계	1,794	2,178

□ 심사 보고서 등의 검토

- 심사를 실시한 사람과 다른 심의팀 직원(심의관)이 심사 보고서를 검토함. 심의관이 심사를 하였다면 해당 심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심의관이 검토해야 함
- 심사 후 인증심의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일임 (2015년). 이는 2014년도의 업무처리 속도에서 크게 향상된 것임 (2014년 가공 51일, 농장 41일). EC834/2007 및 EC889/2008의 규정과 Skal의 자체 인증 규정에도 인증업무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 후 심의까지의 처리 시간은 Skal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개선되었음
- 심의관(들)이 2015년 수출업자에 대해 거래 인증서(TC)⁴¹⁾를 발행한 실적은 72개 수출업자에 대해 1,908건임
- 유기가공식품의 조성(Formulation)은 심의관에 의하여 검토되는데, 제품의 규격서(Product Specific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관이 검토·승인 후에 유기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음
- 심의관(들)이 2015년 승인한 제품규격서는 3,333개이며, 승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9일이었음(2015년)

41) Transaction Certificate. 또는 수출 인증서(EC, Export Certificate)으로 불림

(3) 부적합사항 관리

○ 부적합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함

- 경부적합(輕不適合, Minor Non-Conformity): 제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정이 필요한 부적합사항으로, 시정이 이루어지면 인증이 유지됨
- 중부적합(重不適合, Major Non-Conformity): 제품 또는 유기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으로, 인증기관은 최대 3개월의 시정조치 기한을 제시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 부적합사항으로 전환됨.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할 수 없음
 - 예) Skal의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관행 종자 또는 관행 모종을 사용한 경우
 - 예) 유기가공 공정에서 비유기 원료의 잔류물과 혼입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리점(Control Point)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
- 결정적 부적합(Critical Non-Conformity): 유기농 생산 원칙을 위반하여 제품 생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으로, 이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함
 - 예) 농장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살포된 경우
 - 예) 유기가공 공정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가 투입된 경우, 해당 로트(Lot)⁴²⁾의 제품만 인증 취소 할 수 있음

○ 경부적합 사항은 2015년에 1,564개의 사업자에 대하여 2,572건이 제기되었음. 이는 2014년에 비하여 1,000건 이상 감소한 것임

○ 경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다음 심사 때에 반복하여 발생하면 중부적합 사항으로 상향 적용함. 대부분의 중부적합 사항은 경부적합 사항이 부실하게 시정되어 제기된 것임

42) 같은 조건 하에 생산된 제품군

- 중부적합 사항은 2015년에 712개의 사업자(인증사업자 수의 18%)에 대하여 1,094건이 제기되었음. 이 중 65%는 2014년의 경부적합 사항이 재차 제기되어 중부적합 사항으로 상향 적용된 것임
- 농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중부적합 사항은 다음과 같음
 - (a) 유기 인증을 받지 않은 출처에서 자재(가축, 종묘 등) 구입: 126건
 - (b) 제품 표시(Label) 및 거래 문서 관리 부실: 46건
 - (c) 질소 사용량 위반: 29건
- 위에서 (a)와 (b)는 경부적합 사항으로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나,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부적합 사항으로 상향 적용됨
- 2015년 587개의 가공사업자에게 중부적합 사항이 제기되었음.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 원료의 인증 상태 확인 미비: 143건
 - (b) 제품 표시(Label) 및 거래 문서 관리 부실: 100건
 - (c) 원료의 투입에서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49건
- 위 (a), (b), (c) 모두 경부적합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되어 중부적합 사항으로 제기된 것임
- 하나의 사업장에는 다수의 부적합사항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적합사항이 사업장에 대한 부적격 판정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또는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를 요구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재평가하는 절차를 적용함
- 2015년, 결정적 부적합사항은 10개 농가와 4개의 가공 및 취급자에 대하여 21개가 제기되었음(인증사업자 수의 0.4%). 21개 중 19개는 중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하지 않아서 상향 적용된 것임. 이들 사업자들은 인증 취소 또는 표시 사용 정지 처분되었음

표 3-9. Skal 부적합사항 발생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부적합 (minor)	1,573	1,783	1,831	2,480	3,972	2,572
중부적합 (major)	441	575	411	687	750	1,094
결정적 부적합 (critical)	29	45	19	70	42	21

□ 제재 조치

- 부적격한 제품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Skal 자체적으로 제재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서 법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것과 대조적임
- 부적합사항이 제기되면 심각성 수준을 검토하고, 사업자에게 시정 및 시정조치⁴³⁾를 요구함
- 부적합사항의 심각성이 결정적(critical)이거나, 중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함
- 2015년에 3개의 사업자가 인증 취소 처분되었고, 1개의 농가 및 7개의 사업자가 라이선스가 정지되었음(인증표시 사용 정지)
- 라이선스 정지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부적합사항을 해소하면, 다시 인증 상태로 복귀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정지된 인증기관 중 6개는 다시 인증 상태로 복귀하였으며, 과일 취급업체 1개는 완전히 인증 취소되었음
- 인증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때에도 사업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음
- 인증 취소, 정지 등의 처분 외에도 위험(risk)이 큰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빈도를 높이고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적합사항을 발생시킨 과실에 따라서 벌금(fine)을 부과하는 때도 있음
 - 유기 축산 생산자가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비유기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한 것이 확인되면, 이는 병행생산(parallel operation)이 되어 구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출하를 금지함. 그럼에도 생산자는 계속 출하를 하여, 이에 벌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음

43) 시정(Correction)은 당해 문제를 해소하는 활동을 말하고,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략을 개발하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말함

□ 비용 및 수익

- Skal은 유기인증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증기관으로서 2015년의 경영 수지는 표 3-10와 같음

표 3-10. Skal 예산 및 결산표 (단위: 유러)

	예산 (2016)	예산 (2015)	결산 (2015)	결산 (2014)
농가 수(농업인 수)			1,625	1,600
인증건 수			3,977	3,738
수입				
• 정규 인증	1,262,000	1,455,000	1,487,514	1,398,035
• 정규 심사	1,690,000	1,473,000	1,527,417	1,437,734
• 기타 수입	713,000	543,000	814,385	567,770
소계	1,262,000	1,455,000	1,491,491	1,401,773
지출				
• 인건비	2,157,000	1,861,000	2,005,462	1,694,161
• 관리(심사) 및 분석	75,000	80,000	85,769	43,159
• 장비 및 시설	191,000	222,000	186,609	101,406
• 일반 관리비	357,000	429,000	386,170	416,355
• 정보 및 소통	75,000	76,000	58,260	36,861
• 외주 및 기타 서비스	814,000	800,000	952,510	912,838
• R&D, 혁신, 품질관리 등	40,000	40,000	34,864	40,003
소계	4,117,000	4,123,000	4,213,761	3,693,715
• 경영 수지	-44,000	-37,000	119,672	158,756
• 이자 수입	35,000	37,000	37,386	39,326
• 재무 수입	-	-	-	-
총수익	-9,000	-	157,058	198,082

□ 역량 및 품질 관리

○ 전문성 관리

- Skal의 3대 역량 관리 포인트: 인원수, 책임감, 능력
- 2015년 말 Skal의 정규직원은 25.5명이며, 비정규직원은 11.5명
- 주요 팀 구성 인원은 관리팀 6.1명, 심사팀 18.4명, 인증팀 5.2명
- 2015년 사업자 100개당 0.9명의 인력이 투입됨(비정규직 포함)
- 직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심사 및 사후관리 등 기본 직무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2015년도에는 ‘유기적 조직화’라는 주제에 대해 개인 및 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가적 교육이 시행되었음
- Skal은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사원, 심의관, 사무보조원 등의 업무 역량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교육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품질 보증 시스템

- ISO 17065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인증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삼자 인정이 요구됨. 이는 인정기관(Accreditation Council)의 관리를 따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인정기관은 Skal의 인증 프로세스가 ISO 17065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함
- 내부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요구되는 내부감사(Internal Audit) 체계를 갖추고 있음. 2015년 총 21건의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경부적합 사항들(Minor Non-Conformity)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모두 시정조치 되었음
- 수행능력 평가
신규 심사원은 반드시 Skal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행능력 평가(Witness Audit)를 통과한 다음부터, 심사 활동을 할 수 있음. 이는 4년에 한 번 갱신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5년도에는 신규 심사원이 1명 있었으며, 수행능력 평가는 총 6건 진행되었음

표 3-11. Skali 인증심사원 역량 관리 및 평가 항목 (태도 부문)

평가 항목	설명
Ethical 윤리성	fair, truthful, sincere, honest and discreet 공정함, 진실함, 진지함, 정직, 신중
Open-minded 개방성	willing to consider alternative ideas or points of view 경청의 태도
Diplomatic 소통능력	tactful in dealing with people 사람을 대하는 재치
Collaborative 협조	effectively interacting with other 타인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
Observant 관찰력	actively aware of physical surroundings and activities 물리적 환경과 활동에 대한 지각
Perceptive 직관	instinctively aware of and able to understand situations 상황을 직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Versatile 융통성	adjusts readily to different situations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자세
Tenacious 의지력	persistent and focused on achieving objectives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음
Decisive 결정력	reaches timely conclusions based on logical reasoning and analysis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적시에 결론을 내림
Self-reliant 자립성	acts and functions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Professional 직업정신	exhibiting a courteous, conscientious and generally business-like demeanor in the workplace 예의바르고, 양심적이고, 품위를 지킴
Morally courageous 도덕적 용기	willing to act responsibly and ethically even though these actions may not always be popular and may sometimes result in disagreement or confrontation 인기가 없고 반대와 대립에 부딪히더라도 양심에 따라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Organized 체계적인	exhibiting effective time management, prioritization, planning, and efficiency 시간 배정, 일의 우선순위, 계획, 효율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표 3-12. Skal 인증심사원 역량 관리 및 평가 항목 (지식 및 기술 부문)

평가 항목
Knowledge of audit principles, practices and techniques 심사의 원칙, 수행방식, 기술 등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certification body's process and tools 인증기관의 업무 절차와 심사 도구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normative documents 인증기준, 규정, 법규 등에 대한 지식
Language skills appropriate to all levels within the client organization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
Note-taking and report-writing skills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작성 기술
Presentation skills 발표 기술
Interviewing skills 인터뷰 기술
Audit-management skills 심사 관리 기술
Additional program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program manuals ⁴⁴⁾ 그밖에 프로그램 매뉴얼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44) 프로그램 매뉴얼. 심사 및 인증을 시행할 때의 세부적인 매뉴얼

○ 문제제기⁴⁵⁾ 및 이의제기⁴⁶⁾ 관리

- Skai은 고객 또는 외부로부터 문제제기 사항을 수렴하여 6주 이내에 문제제기에 대해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5년도에 5건의 문제제기가 접수되었고, 그중 2건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건은 조치 완료되었음
- 문제제기 사항의 내용은 행정적 사항에 대한 소통의 문제, 등록을 수행하지 않은 문제, 불공정한 업무 수행, 불명확한 필지 등록, 예외 적용 시의 평가 부실 등이 있었음
- 2015년도에 Skai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15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음. 그중 8건은 비용 청구서에 대한 것이었는데, 2건이 시정되었음. 나머지 7건의 이의제기는 철회되었는데, 4건은 Skai이 정당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3건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의제기 내용 중에는 오염된 용기에 수입된 유기 제품을 보관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와 운작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인증을 정지한 결과에 불응한 경우였음

○ 관리 조직

- 전임 관리자(General Director)가 상시 인증프로세스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이사회(General Board)는 연 3회 개최됨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연 5회 개최됨.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위험평가에 따른(Risk-based) 심사계획 수립, 심사주기(Control Cycle) 결정 등

45) complaints. 우리말로 “불만” 또는 “클레임”으로 쓰이기도 함

46) appeals

2.2. 南京国环有机产品认证中心 OFDC⁴⁷⁾

- 중국의 유기인증기관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의 비준과 중국합격평가국가인가위원회(中國合格評定國家認可委員會, CNAS)의 인가를 받아야 중국에서 유기제품 인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외국의 인증기관이 중국에서 유기 제품 인증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CNCA의 비준을 받아야 함. 현재 28개 인증기관이 인가를 받았음
- CNCA는 2001년 8월에 설립되어, 중국의 인증 및 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AQSIQ)의 관리를 받음
- CNAS는 우리나라의 농관원과 같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국가 기구이며, 국제인가포럼(IAF)⁴⁸⁾와 태평양인가협조조직(PAC)⁴⁹⁾의 회원으로서 인증기관(유기인증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인정기관임
- OFDC는 1994년 설립된 중국의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 인증업무는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시행하고 있는 인증은 중국 유기농 인증, USDA-NOP, GAP 등 유기식품 및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인증하고 있음
- 인증실적은 2014년도 약 1,200건 약 750 농가, 2015년도 약 1,500건 약 800 농가임. 인증 건은 가공식품 사업장을 포함한 수치임
- 총자산 약 2백만 불(약 24억 원) 중 자기자본은 약 50,000불(약 6천만 원)로서 자기자본 비율은 25%임

47) Organic Food Development & Certification Center. OFDC는 2016년 2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Bio-Fach에서 OFDC의 상임 매니저인 张伟超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되었음

48)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49)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인증사업 매출 총액은 2014년 약 4,100,000불(약 49억 원), 2015년 약 5백만 불(약 60억 원)로서 건당 평균 약 4백만 원임⁵⁰⁾
- 2015년 말의 고용 인원은 약 60명이며, 그중 50명은 상근심사원임. 비상근심사원은 10명이 활동하고 있음
- 핵심역량으로서 심사의 품질을 주도하는 장기근속 상근심사원은 6년~10년 근무 중임
- 인증심의회는 11명으로, 심사원 중에는 심의관을 겸직하는 때도 있음. 이 경우 자신이 심사를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의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
- 연간 약 1,500건의 심사를 하며, 이 중 1,400건(93%)이 상근심사원에 의해 시행됨
- 2015년도에 약 40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음. 이는 총 인증 건수의 2.7%의 사후관리 실적임
- 2015년도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등 시험분석은 1,300건 실시하였으며, 이는 총 인증 건(1,500건)의 87%이며, 시험분석 1건당 평균 비용은 \$192(약 23만 원)
-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사항이 보고된 심사 보고서는 약 1,400건이었으나, 인증이 승인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는 없었음. 이는 인증 건 1,500건 중 약 93%의 사업자에게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부적합사항은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부적합사항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치 과정을 통해 재발 위험(risk)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인증제도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음

50) 인증 한 건에 여러 농장과 여러 가공시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2.3. OneCert Asia Agri Certification Pvt. Ltd.⁵¹⁾

- 인도의 유기 인증제도는 인도의 상업산업부⁵²⁾ 장관이 주관하는 유기생산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ion, NPOP)⁵³⁾에 따라 운영됨(2000년 제정)
- 인도의 인증기관은 APEDA⁵⁴⁾의 인정을 받아야 인도에서 유기 인증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APEDA는 2001년에 무역고시(Trade Notice)를 통하여 인정업무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증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음
 - ※ Trade Notice No ORG/004/2001 dated 13.06.2001
- 인도의 유기농 인증 기준 및 관리 규정은 당시 유럽의 유기 인증제 (EEC2091/92), 코텍스 가이드라인(CAC GL 32),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준과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통적 인증제 운영 형식과 매우 유사함⁵⁵⁾
- OneCert Asia는 인도에 있는 인증기관으로 2005년 설립되어 인도 유기농(NPOP⁵⁶⁾), USDA-NOP, EU Organic, 유기 JAS⁵⁷⁾, BioSuisse, COR⁵⁸⁾, GOTS⁵⁹⁾, OCS⁶⁰⁾ 등 다양한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51) OneCert Asia는 2016년 2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Bio-Fach에서 OneCert Asia 대표이사인 Mr. Sandeep Bhargava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되었음

52)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53) 공식 명칭: “National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ion Containing The Standards For The Organic Products“

54) AGRICULTURAL &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55) Mukesh Gupta(2004). Organic Agriculture Development in India

56) National Program for Organic Production

57)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58) Canadian Organic Regime

59)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s

60) Organic Cotton Standards

- 인증실적은 2014년도 514건 91,977 농가, 2015년도 680건 124,435 농가로서, 단체 농업생산자 인증이 주를 이룸. 인증 한 건 평균 183명의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음
- 총자산 778,908불(약 940백만 원), 자기자본 5,882불(약 7백만 원)로서 자기자본 비율은 약 0.8%임
- 2015년 말의 고용 인원은 44명이며, 그중 27명은 상근심사원임. 비상근심사원은 없음
- 심사원 경력은 최단 5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분포하고 있음
- 인증심의관은 상근자 4명과 비상근자 5명이 근무하며, 최종 인증 결정은 상근자 3명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담당
- 2015년 정규 심사(신규인증 + 갱신) 768건을 실시하였고, 사후관리(비정규심사)는 85건 실시하였음
- 2015년 사후관리(85건)는 인증 건수 680건 중 12.6%에 대하여 실시
- 2015년 잔류농약 검사 등 시험분석은 총 67건 실시하여 인증 건수 680건의 9.9%, 인증농가 124,435명에 대해서는 0.55%의 실적을 보임. 시험분석 1건당 평균 비용은 \$565(약 68만 원)
- 2015년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사항이 보고된 심사 보고서는 6건 있었음. 그중 인증이 승인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는 없었음. 이는 부적합사항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치 과정을 통해 재발 위험(risk)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인증 제도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음

3. 해외 인증기관 운영 사례가 주는 시사점

3.1. 위험관리(Risk Management)로서의 부적합사항 대응 (시정조치)

- 사업자에게 부적합사항이 나타난 경우에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부적합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 부적격 또는 인증 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부적합사항의 원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 심사원은 현장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 가능성을 검토함.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증 정지 또는 취소 처분
- 인증기관에 부적합사항이 나타난 경우에도 인정기관⁶¹⁾은 기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시스템이 적정하게 유지 및 개선되도록 하고 있음
 - 예) 네덜란드 인정기관인 RvA 감사 결과, 심사원의 보고서 품질이 미흡하여 심사원의 자격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및 테스트를 실시하고, 당해 심사원이 심사한 보고서 전부에 대한 재검토 시행
- 인증기관 또는 인증사업자는 운영 시스템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비의도적 부적합사항은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모니터링, 평가(심사)를 통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인증의 기능으로 인식됨
-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에서는 인증 사업자에게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적합사항을 의도적인 위반이나 과실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 기준에 부적합한 원인이 의도적인 기만행위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인증사업자에게 시정조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을 계속 유지하도록 인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인증제도의 국제화에서 개선안 제시)

61) IFOAM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은 IOAS임

3.2. 사후관리의 표본 적용

- 해외의 인증기관들은 사후관리를 인증 건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고, 무작위 또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따라 인증 건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표 3-13. 해외 인증기관 사후관리 비율(2015년)

인증기관	사후관리건/인증 건	사후관리 비율
Skal	569/3750	15.2%
OFDC	40/1500	2.7%
OneCert Asia	85/680	12.5%
우리나라 (표6-6 참조)	460/360	127.8%

- 해외의 인증기관이 인증 건 전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 인증제도에서 100%의 사후관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인증기관의 자율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인증 사업자 중에 사후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또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따라 선정함
- 위험평가 방법은 인증 건들 중에 인증기준을 이탈할 우려가 큰 사업자를 분류하여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 우리나라는 인증 건 전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증기준 이탈의 위험이 낮은 사업자도 사후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제한된 비용과 인원으로 전수(全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 사후관리 건당 투입되는 시간이 줄게 되어 사후관리의 강도는 약화할 수 있음, 또한 사업자를 고위험(High Risk)과 저위험(Low Risk)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할 때에 사후관리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수에 대한 사후관리보다는 고위험 사업자를 위주로 사후관리 하도록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제4장 인증제도의 국제화에서 개선안 제시)

3.3. 프로세스 평가로서의 심사방법론

- 해외 인증기관들이 심사를 실시할 때에 잔류농약 검사 등 시료의 시험 분석보다는 생산 및 가공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음

표 3-14. 해외 인증기관 잔류농약검사 시료 검사 비율(2015년)

인증기관	시료검사건/인증 건	시료검사 비율
Skal	196/3750	5.2%
OFDC	1300/1500	86.7%
OneCert Asia	67/680	9.9%
우리나라 (조사된 55개 인증기관)	25498/21659	117.7%

- 유기농 인증심사는 생산 및 가공 과정을 평가하는 일로서, 해외의 인증기관들은 생산 결과물을 검사하는 시험분석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
- 시험분석은 유해 성분의 존재 여부와 농도를 측정하는 일로서, 생산과정이 유기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심사 시에는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생산물의 잔류성분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 GMO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 심사 결과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단체 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 신규 개인 신청농가

- 오염의 우려(Risk)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관리 과정에서 오염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며, 최종 제품 시험분석을 통하여 생산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방법은 오염의 리스크를 상존하게 만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심사방법론은 프로세스 인증의 성격에 맞게 리스크 관리 과정을 심사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시험분석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제4장 인증제도의 국제화 참조)

4. 해외의 저투입 농업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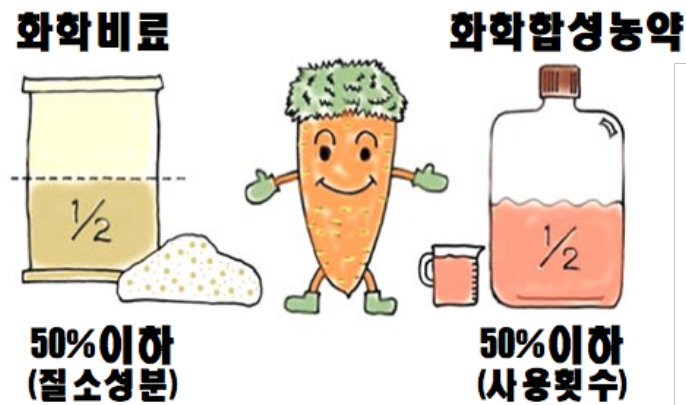
4.1. 저투입 농업 인증제의 예시

-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실행하기 어려운 생산자들을 위하여 농약 사용은 금지하고 화학비료를 일부 허용하는 무농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주변국인 일본, 중국에서도 특별재배농산물, 녹색식품 등 무농약농산물과 유사한 성격의 저투입농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에서는 농약 사용이 가능함(생산지역에 따라 농약의 사용량과 허용되는 농약이 다름)
 - 중국의 녹색식품 중 A등급에서 농약 사용이 허용됨
 - 영국의 Red Tractor 인증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농약 사용량을 감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한국은 무농약농산물 기준을 국가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있으나, 일본과 중국에서는 국가에서는 기본 원칙만을 제시하고 지역의 자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2. 일본, 특별재배농산물(特別栽培農産物)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표시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2004년 4월 특별재배농산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 특별재배농산물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행 농업 사용량의 50% 이하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량을 감축하여 생산한 농산물임

그림 3-2. 특별재배농산물 소개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 가이드 라인

- 특별재배농산물은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화학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감축하며,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배 방법을 원칙으로 함

표 3-15. 특별재배농산물의 범위

절감 대상 비료		절감 대상 농약		
		미사용	50%이하로 감소	관행수준
화학비료 (질소 성분)	미사용	특별 재배 농산물		적용 범위 외
	50%이하로 감소			적용 범위 외
	관행 수준	적용 범위 외	적용 범위 외	적용 범위 외

출처: www.shonai.zennoh-yamagata.or.jp

- 특별재배농산물은 소비자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며, 각 생산지역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무농약”, “무화학비료”, “저농약”, “저화학비료” 등과 같은 표시를 금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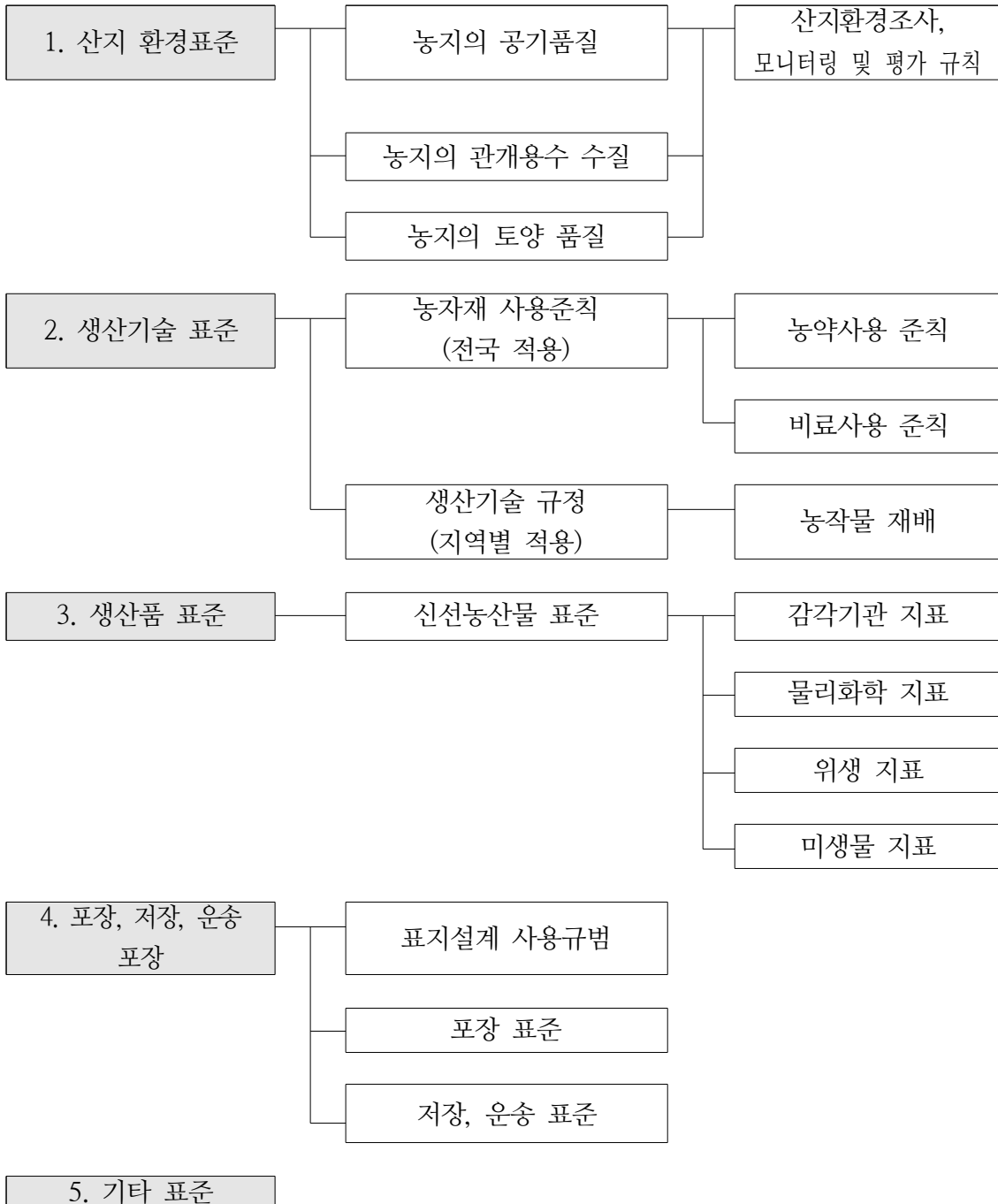
4.3. 중국, 녹색식품

- 중국은 유기산품(有機產品) 인증 외에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무공해식품, 녹색식품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들 인증기준은 별도로 운영
- 녹색식품(綠色食品) 인증은 1992년 설립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CGFDC, China Green Food Development Center, 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에서 관리하고 있음
- 녹색식품 제도는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유기농산물을 제외하면 친환경적 농산물 인증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녹색식품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여부에 따라 AA 등급, A등급으로 나누고 있음
- AA 등급은 한국의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의 중간단계로 비료, 농약, 수의약품, 사료 첨가제, 식품 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에 맞으며 AA 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임
- A등급은 한국의 저농약농산물과 유사하며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량을 제한함
- 무공해 식품은 식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농산물 우수관리(GAP62)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녹색식품은 식품의 안전성 외에도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음.

62) Good Agricultural Practice

- 녹색식품의 인증기준은 산지 환경, 생산기술, 생산품, 포장·저장·운송, 기타 등 5개 분야로 구성됨

표 3-16. 중국의 녹색식품 표준 체계



자료: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2014),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표 3-17. 중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구분		개념 정의
 유기산품 유효기간:1년	유기	생산, 가공, 판매 과정이 국가 표준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 (국가 표준 GB/T19630-2011)
	유기 전환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 (국가 표준 GB/T 19630-2011)
 녹색식품 유효기간:3년	AA 등급	유기 생산방식과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A 등급 녹색식품 로고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
	A등급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에 부합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로고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
 무공해농산물 유효기간:3년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며, 무공해농산물 인증 로고 사용을 허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무공해농산물 관리 방법] 제2조)

자료: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4.4. 영국, 레드트랙터(Red Tractor)⁶³⁾



- 영국에서 1980년 후반 광우병 및 계란 살모넬라균 등 식품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농산물 인증기준을 만들었음

그림 3-5. 시중에 유통 중인 Red Tractor 제품



자료: www.redtractor.org.uk

- 현재 6만여 개의 농가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7만 8천 농가가 소속되어 있으며 6개의 독립된 인증기관에서 Red Tractor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표 3-18. Red Tractor 인증 현황

작물	작물 및 사탕무: 17,844건
축산	낙농: 11,498건
	소, 양: 24,678건
	돼지: 2,035건
	가금류: 2,597건
가공	가공, 취급자: 650건
식당	4,600건
도매업	30건

자료: www.redtractor.org.uk

63) <http://www.redtractor.org.uk/home>

- Red Tractor는 2000년대 ‘식품 보장기준(Assured Food Standard)’이라는 단체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다른 단체로부터 인증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운영비를 농민이나 생산업체의 연회비로 운영함

표 3-19. Red Tractor 인증기관

NFS-CMI	Kiwa PAI	SAI GOLBAL	NIFCC	Acoura
				
www.nsf-cmicertification.com	www.kiwa.co.uk	www.saiglobal.com	www.nifcc.co.uk	www.acoura.com

- 식품안전 및 위생, 동물복지, 환경보전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 보증제도(Food assurance scheme)임

표 3-20. Red Tractor 인증 범위

농장 인증	가공 및 수송 인증
작물생산 과채류생산 소/양고기 생산 낙농 양돈 가금류, 산란, 육, 방목, 부화	육류가공 낙농제품 가금류 운송 및 도축 육류가공

- RedTractor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유럽연합의 인증기관 기준인 EN45011⁶⁴⁾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을 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하며, 인증기준 제작 시 Assurance scheme(보증제도)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참조하였음

표 3-21. 작물과 과채류의 인증기준 목록

작물 AFS, 2014d. Combinable Crops and Sugar Beet Standards	과채류 AFS, 2014f. Fresh Produce Standards
문서, 생산과정 직원 추적성 및 보증 상태 해충관리 농약잔류와 오염 환경보호 지속 가능성 통합작물관리시스템 토양관리 종자 가공과 저장 설비 점검 차량 및 농기계	위험관리 시스템 내부감사 문서 및 생산과정 직원 추적성과 보증 상태 해충관리 에너지 효율성 농약잔류와 오염 환경보호 지속 가능성 통합작물관리시스템 토양관리 관개 종자 품종 작물보호시설 수확과 포장 수확물 관리 가공 저장 GMO

64)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systems
<http://www.beuth.de/de/norm/din-en-45011/3357759>

- 신규로 인증 신청한 농가(또는 업체)는 모든 인증기준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원이 작성한 심사 보고서와 부적합 리스트는 인증기관에서 재평가를 실시함
- 중적합 사항⁶⁵⁾의 경우는 즉시 인증 취소, 개선이 가능한 부적합 사항 (경부적합 사항⁶⁶⁾)에 대해서는 농장(또는 업체)이 시정 조치를 통하여 재발 방지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함을 증명하도록 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한국의 무농약 인증은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등 투입 물질의 규제를 주요 기준으로 하는 반면, Red Tractor는 위생관리, 투입 물질의 위험 관리, 환경보전 등 식품의 위생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GAP 인증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음

65) Major Non-Conformity

66) Minor Non-Conformity

제4장

인증제도의 국제화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성격 규정

1.1. 제품 등의 인증⁶⁷⁾과 시스템 인증의 비교

- 인증제도(Scheme)는 크게 제품 등의 인증과 시스템 인증으로 구분
- 제품 등의 인증이란
 - 제품을 심사 및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기준 또는 생산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 제품 등의 인증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그 특질을 인지하여 구매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인증 마크 등을 표시하며, 이를 'B to C'⁶⁸⁾ 인증이라 함
 - 제품 등의 인증은 병행생산⁶⁹⁾을 할 수 있음. 즉 제품에 따라 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기준에 맞는 제품에만 인증 마크 등의 표시를 함
 -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전통식품, KS, Q마크 등이 있음

67) ISO/IEC 17065의 제목은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시스템 인증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나타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품 등의 인증’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제품 등의 인증’에는 제품 인증, 프로세스 인증, 서비스 인증이 있다.

68) Business to Consumer

69) 병행생산(Parallel Operation): 하나의 관리단위(Management Unit)에서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모두 생산 및 취급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

○ 시스템 인증이란

- 제품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회사 등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조직의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인증하는 것
- 시스템 인증은 제품에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 여부를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서는 도매업, 유통업 등의 사업자를 상대로 회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함. 이를 ‘B to B’⁷⁰⁾ 인증이라 함
- 시스템 인증은 전사적 조직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Scheme)이므로 일부만 인증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병행생산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병행생산을 관리하는 추가적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병행생산을 허용하고 있음
- ISO 9001, ISO 17065, ISO 22000, HACCP, GAP 등

○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인증 스킴(Scheme)은 모두 시스템 인증이며, 안전한 식품임을 인증마크를 통하여 표시하면 아니 됨

- 이는 식품의 안전성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식품으로서 품질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증표시를 통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HACCP와 GAP 인증에서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며, 해외의 경우 HACCP 또는 GAP 인증마크를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70) Business to Business

표 4-1. 제품 등의 인증과 시스템 인증 비교

	제품 등의 인증			시스템 인증
	제품 인증	프로세스 인증	서비스 인증	
사례	KS, Q마크, 전통식품 등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등	시설관리 인증, 휴양콘도 미니엄 등	ISO9001, ISO14000, ISO22000, 해외의 HACCP, 해외의 GAP 등
인증표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표시			제품에 인증표시 하지 않음. 회사의 홍보에만 이용
기준	최종제품의 기준 설정, 또는 제조과정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준 설정			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전사적 적용.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
목적	제품표시(라벨링)를 규제			회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또는 안전을 보장
이용자	소비자 B to C			사업자 B to B
병행생산	가능			불가

1.2. 제품 인증과 프로세스 인증의 비교

□ KS Q ISO/IEC 17065:2014 에서의 분류

- 제품 등의 인증은 제품 인증, 프로세스 인증, 서비스 인증으로 나뉨
- 제품(product)의 정의 (ISO 17065의 3.4항)
 - “프로세스의 결과”
 - “비고 2. 제품은 식물의 성장 및 기타 천연자원 형성과 같은 자연적 프로세스의 결과를 포함한다.”
- 프로세스/공정(process)의 정의 (ISO 17065의 3.5항)
 -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이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 “보기 : 용접 공학 프로세스, 열처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능력의 확인이 요구되는 제조 프로세스(예 :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운영 또는 제품 생산), 식품 생산 프로세스 및 식물 성장 프로세스”
- 서비스(service)의 정의 (ISO 17065의 3.6항)
 -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접점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활동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무형의 제품이다.”
- 프로세스 인증은 제품의 생산과정이 제품의 특질을 나타내며, 제품의 특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임
- 제품 인증은 최종 제품의 품질에 제품의 특질이 나타나 있는지 평가하는 것

표 4-2. 프로세스 인증과 제품 인증의 비교

	프로세스 인증	제품 인증
심사방법	제품의 생산과정이 제품의 특질을 나타내며, 제품의 특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평가	최종 제품의 품질에 제품의 특질이 나타나 있는지 평가 예) 형광등의 발광 시간 표본 검사, 과일의 당도 등

□ 프로세스 인증으로의 유기 인증 분류 사례

- 유럽연합 감사보고(2012)에서 유기 인증은 생산 과정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시

“유기 제품의 인증 시스템은 유럽연합의 규정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산과정을 보증(Guarantee)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유기적 특징을 보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품이 유기적인지 아니 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⁷¹⁾

- 유럽연합은 유기 인증의 심사방법이 (최종) 제품의 잔류농약 등의 특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과정(process)을 평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유기 기준에서는 토양의 잔류농약, 토양의 중금속, (최종) 제품의 잔류농약, 잔류항생제, 잔류GMO 등 성분의 검출 여부를 언급하지 않으며, 생산자가 유기적인 재배 과정을 거쳤는지와 가공 및 취급 사업자가 제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⁷²⁾)의 인증기관 인정기준(IAR⁷³⁾)에서 유기 인증은 제품 인증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시함

“IAR은 인증기관이 유기 인증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의 절차와 수행 내용을 포함한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IAR은 유기 인증이 프로세스 인증이라는 점에 유의한다.”⁷⁴⁾

71)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2). AUDIT OF THE CONTROL SYSTEM GOVERN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IMPORTS OF ORGANIC PRODUCTS

“The control system for organic products as set out in the EU regulations aims at guaranteeing the production processes but not the organic character of the products themselve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cientific way to determine whether a product is organic or not.”

7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73) 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s

74) IFOAM Accreditation Requirement. page 86.

INTRODUCTION

Generally speaking, the IAR establishes requirements for the conduct of organic

1.3. 프로세스 인증으로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 유기식품 등의 인증은 프로세스 인증으로서 상품의 제조과정이 일반적인 상품과 차별화된 생산 및 제조과정을 갖추었음을 상품에 인증표시를 하여 나타내는 제도(Scheme)
- 제품 인증은 최종 상품이 일반적인 상품에 비하여 독특한 특징을 갖추었음을 상품에 인증표시를 하여 나타내는 제도이나, 유기식품은 그 자체가 지닌 유기적 순수성(Organic Integrity)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유기식품은 재배 및 사육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Organic Integrity)이 형성되고,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된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제품에 인증을 발행하게 됨
- 이는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 농축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즉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서 농약의 검출이 제로(0)인 것이 아니라,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제품에 무농약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프로세스 인증으로 규정하여 정책, 규정, 기준 등을 그러한 성격에 맞게 일관되게 적용하여 해외의 유기 인증 제도와 동등한 방향을 갈도록 할 필요가 있음

certification by the certification body, including procedures and practices of the operator that the certification body must verify. The IAR consider organic certification to be a process certification.

2. 국제 사회와 현저히 다른 유기 인증 규정

2.1. 재배토양 내 잔류농약

□ 현행 기준

법 시행규칙 별표3 2.나.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 4-3. 토양의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황	토양에서 유기합성 농약의 성분이 검출 되면 안 됨	(기준 없음)	토양 내 잔류 성분 검사는 인증 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음	(기준 없음)
차이점	토양의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토양의 유해성분 검사 없이 인증가능		

□ 검토 결과

○ CODEX, CAC GL 32 ANNEX 1. A

파종 전 2년(다년생의 경우 수확 전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야 하며, 토양 내 유해 성분의 잔류 상태는 언급하지 않음

○ US CFR, NOP⁷⁵⁾ § 205.202

토양 전환 기간이 3년이며, 인증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심사원의 재량에 따라 토양 내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음

○ (EC⁷⁶⁾) No 889/2008, Article 36

유기농업을 위하여 토양 환경이 조성되는 전환 기간을 2~3년 동안 거쳤다면, 토양 내에 유해 성분의 잔류 상태를 언급하지 않음

□ 평가 및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재배 토양 기준에 따르면 토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세계적으로 토양 내에 잔류농약을 언급하는 유기농업 기준은 없음

○ 토양 내 잔류농약 성분은 유기농업의 전체 생산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농약 사용이 의심되거나 신규농가 등 현장 심사원의 위험평가(risk assesment) 결과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토양 내 잔류농약이 검출 시, 생산자가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부적격 판정,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토양의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타당함

75) 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National Organic Program

76) European Commission

2.2. 버섯배지

: 버섯류와 싹을 직접 튀워 먹는 농산물 및 어린 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

□ 현행 기준

농관원 고시 2015-55. 별표 1의 2. 나.

1)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략)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표 4-4. 버섯 배지에 대한 기준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황	버섯 배지에서 중금속 검출 한계 설정 배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안 됨	(기준 없음. 토양관리 기준과 양분관리 기준을 적용)	(기준 없음. 토양관리 기준과 양분관리 기준을 적용)	배지의 조건은 유기농산물 기준에 맞게 생산된 물질을 사용하거나, 허용된 물질을 사용하여야 함
차이점	배지의 유해성분 검사 실시	배지의 유해성분 검사 없이 인증 가능		

□ 검토 결과

○ CODEX, CAC GL 32 ANNEX 1. A

버섯과 배지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토양 관리와 양분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US CFR, NOP §205.203

미국은 버섯배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유기 농산물을 생산 시 토양관리와 양분 공급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EC) No 889/2008, Article 6

버섯배지 원료의 기준은 유기농에서 유래한 부산물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한국 기준과 동등하나, 배지에서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은 없음

□ 평가 및 개선방향

○ 농관원 고시(2015-55)에서 요구하는 배지의 중금속 기준과 잔류농약 기준은 미국,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기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조건임

○ 또한 시험분석을 통한 배지의 검사는 버섯 재배과정이 유기적인지를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지 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음이 공급자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면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3. 용수 기준

□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3의 2.나.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표 4-5. 용수에 대한 기준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 황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 요구됨	(수질기준 없 음) 농업 활동으로 수자원의 보호 및 오염이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수질기준 없 음) 농업 활동으로 수자원의 보호 및 오염이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수질기준 없 음) 농업 활동으로 수자원의 보호 및 오염이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차 이 점	용수의 수질 검사 실시	용수의 수질 검사 없이 인증 가능		

□ 검토 결과

○ CODEX, CAC GL 32 SECTION 2

수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수질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US CFR. NOP §205.203

수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유기 농산물 생산시 수질오염이 발생하
지 않도록 농업환경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EC) No 889/2008 Article 3, (EC) No 834/2007 (15)
유럽연합도 수질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투입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로 인해 수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용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 및 개선방향

- 농업생태계와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용수 기준의 골자로 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한국의 유기농업용수 기준은 시험분석을 통한 수질을 규제하고 있음
- 수질분석은 유기농업 생산과정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해외에서 적용하는 방법과 같이 수자원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기농업 기준으로서 바람직함
- 하천, 저수지, 댐 등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용수의 수질분석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공장지대, 광산 등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이거나, 신규 지하수 개발 시에는 심사원 위험평가에(risk assessment) 따라 분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축분을 과용하거나, 용수 저장탱크에 대한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경우 유해 미생물로 인한 용수의 오염 우려가 높음. 이 경우 심사원의 위험평가에 따라 식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대장균, 일반 세균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일반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염소계 소독제⁷⁷⁾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용수로 인한 세균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수질 기준은 심사원의 위험평가에(risk assessment) 따라 수질 분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농업인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수립·실천하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77) 국립환경과학원(2010).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

2.4. 관행 종자

□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3의 2.나.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관원고시 2015-55. 별표 1의 2. 나.6)

일반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볍씨는 사용할 수 없다.)

표 4-6. 종자에 대한 기준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황	관행 종자 사용 시에 화학적 처리를 허용하되, 생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관행 종자 사용 시에 화학적 처리 금지 다만 비처리 종자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부속서 2의 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한 종자를 허용할 수 있음	관행 종자 사용 시에 화학적 처리 금지, 다만 식물방역을 위하여 주 정부가 허용할 수 있음	관행 종자 사용 시에 화학적 처리 금지, 다만 식물방역을 위하여 회원국이 허용할 수 있음
차이점	화학 처리된 종자 사용시,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실시	“예외 적으로” 화학 처리된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고 인증 가능		

□ 검토 결과

○ CODEX, CAC GL 32

관행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적으로 처리가 된 종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비처리 종자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US CFR, NOP §205.204

관행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적으로 처리가 된 종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연방 또는 주정부의 식물 위생 규정에 속하는 경우 유기합성 농약 처리 종자를 사용할 수 있음

○ (EC) No 889/2008 Article 45

관행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적으로 처리가 된 종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서 식물방역을 위하여 2000/29/EC에 따라 화학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 평가 및 개선방향

○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 모두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⁷⁸⁾ 유기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행 종자를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관행 종자 사용 시에도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유기 종자 데이터베이스(Organic Seed Databases)⁷⁹⁾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생산자가 원하는 유기 종자를 검색하여 구입이 가능하도록 함

78) 미국과 유럽연합은 상업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 유기종자를 상업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함

1.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2.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79)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production/seeds-database/index_en.htm

- 다만, 화학적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에는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식물 병 관리를 위하여 종자소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우에만 인정됨
- 반면, 한국은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화학적으로 처리된 관행 종자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그 농도가 유기농의 본질을 훼손할 만한 중요성을 갖지 않으므로, 최종 생산물에 대하여 종자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방법은 유기농업 생산과정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화학적 처리된 종자를 사용함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진국과 같이 식물 병 통제가 필요한 품목을 고시하여 화학적 처리된 종자가 사용 가능한 품목을 규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고시에서 법씨의 경우 화학적 처리된 종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듯이, 다른 품목들에도 확대 적용하여 자가채종이 가능하거나 유기 종자로 구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선별하여 화학적 처리된 종자의 허용 여부를 고시하도록 함

2.5. 축분 사용

□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3의 2.다.5)

가축 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 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 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 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 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 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 규격을 따른다.

□ 검토 결과

-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모든 축분이 퇴비화 공정을 거쳐야 하며⁸⁰⁾, 공장형 축분을 퇴비화하는 공정은 미국의 기준과 유사함
- CODEX, CAC GL 32 ANNEX 1. A
공장형 축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공장형 축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US CFR. NOP §205.203
 - 공장형 축분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퇴비화 공정을 준수한 퇴비는 작물 형태와 사용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됨
 - 퇴비화 공정을 거치지 않은 퇴비는 작물 형태에 따라 사용 시기를 규제함(수확 전 120일, 수확 전 90일)

80) 본 연구에서 '부숙'은 퇴비화 공정으로 본다.

○ (EC) No 889/2008 Article 3

유럽연합은 공장형 축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축분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ha당 170kg으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음

표 4-7. 축분 사용에 대한 기준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황	<p>축분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p> <p>퇴비의 부속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p> <p>퇴비에 항생물질이 검출되면 안 됨</p>	<p>공장형 축분 사용 금지</p> <p>비공장형⁸¹⁾ 축분을 사용하는 경우 축분사용 필요성을 인증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p> <p>퇴비화 축진을 위해 미생물 또는 식물유래 제품 사용 가능</p>	<p>퇴비화된 축분만을 사용</p> <p>퇴비화 기준: - 탄질율 25~40:1 - 55~75°C 유지 (설비식 3일, 자연식 15일) - 자연식은 5회 뒤집기</p> <p>퇴비화되지 않은 축분은 안전기간 내 사용금지 - 가식부가 토양에 접촉: 120일 - 기타 90일</p>	<p>공장형 축분⁸²⁾ 사용 금지</p> <p>축분사용량 규제: ha 당 질소 170kg</p>
차이점	<p>공장형 축분 사용시 잔류항생제 검사 실시</p>	<p>“예외적으로” 공장형 축분 사용시 잔류항생제 검사 없이 인증 가능</p>	<p>공장형 축분 사용시 잔류항생제 검사 없이 인증 가능</p>	<p>공장형 축분 사용할 수 없음</p>

81) 비공장형 축분은 공장형으로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말한다.

82) 공장형 축분은 동물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축산물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하지 않은 축분을 일컫는다.

□ 평가 및 개선방향

- 우리나라에서 공장형 축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 유기 생산자가 퇴·구비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게 작용하므로, 공장형 축분을 허용하는 미국의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퇴비 내 항생제의 잔류 문제는 퇴비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해소되므로 불필요한 기준으로 항생제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6. 생산물의 잔류 농약

□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3의 2.라.8)

(생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중략)

- 가) 인근 관행 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 검토 결과

○ 한국 기준 검토 (농관원고시 2015-55)

다음의 경우에 생산물의 잔류성분 검사를 실시함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 GMO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 심사 결과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단체 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 신규 개인 신청농가

○ 신규농가, 단체의 표본농가, 화학적 처리된 종자의 사용 등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지만 대부분 생산자가 잔류농약 검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 규정은 검사 결과 1/20 이하로 검출이 되더라도 행정조치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유기농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 비의도적인 원인에 의한 유해 성분 검출이 선진국의 유기 인증 절차보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CODEX, CAC GL 32-199
코덱스에서는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며 전문(Foreword)에서 “환경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었으므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더라도 생산물의 잔류물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유기농업은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이다.”라고 명시하여 유기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오염물질이 제거된 농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음
- US CFR, NOP §205.670~671
 - 인증기관의 인증 건 5% 이상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 검사 결과 EPA 기준의 5%를 초과하면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없음
 - EPA 기준의 5% 이하일 때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잔류성분 검출의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생산자에게 요구함
- (EC) No 889/2008 Article 65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원 판단에 의하여 잔류성분 검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며, 실제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임

표 4-8. 생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 황	생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안 됨	(기준 없음)	인증기관은 정기적인 시료 검사를 실시 (인증 건의 5% 이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비용은 반드시 인증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EPA ⁸³⁾ 기준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유기농으로 판매금지	시료 검사를 할 수 있음 (강제성 없음)
차 이 점	생산물의 잔류농 약 검사 실시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없이 인증 가능		

83)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

□ 평가 및 개선방향

- 미국은 인증 건의 5%에 대해 잔류성분 검사를 하고, 유럽연합은 검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 이에 비해, 한국은 신규농가, 유기합성농약 처리 종사 사용, 단체의 표본 심사 등의 경우에 반드시 잔류농약 검사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심사를 받는 대부분의 생산자가 잔류농약 검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잔류농약 검사는 유기적 생산과정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방법이며, ‘심사 결과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나 외부 환경에 의하여 잔류농약 검출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단체 표본인 경우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경우를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은 관행 농산물 기준의 5%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인증정지 등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생산자가 유해성분의 잔류가 최소화되도록 시정조치를 한다면 유기 인증의 지위를 유지하게 함
- 유럽연합은 잔류성분 검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사용한 농약 성분의 토양 내 장기 잔류, 소규모 필지의 밀집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때도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유기적 생산 과정과는 무관하게 검출되므로, 자신이 직접 농약을 살포한 경우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잔류농약이 검출되더라도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 처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예컨대, 전환 기간의 연장, 완충지의 확대 등)

2.7. 유기가공식품 기구 및 설비의 세척

□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 1.다.2)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다 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전략)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다르게 된 「공중위생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종 세척제만 사용할 수 있다.

표 4-9. 가공시설 기구 및 설비의 세척제 기준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 황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기구 및 설비의 세척제는 식품의 표면을 세척할 때 허용되는 1종 세척제만을 사용하여야 함	허용된 방법과 물질을 사용하여 저장소와 운반 용기를 세척함 식품 가공용 기구 및 설비의 세척제 성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식품 가공용 기구 및 설비의 세척제 성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식품 가공용 기구 및 설비의 세척제 성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차 이 점	2,3종 세척제 사용 불가	2,3종 세척제 사용 가능		

□ 검토 결과

○ 한국 기준 검토 (법 시행규칙 별표 1)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구·설비의 세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1종 세척제⁸⁴⁾로 제한하고 있음

○ CODEX, CAC GL 32 ANNEX 1. C

코덱스에서는 허용된 방법과 물질을 이용하여 저장소와 운반 용기를 세척하도록 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이는 국가별 허용 방법과 물질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함

○ US CFR, NOP §205

- 식품 제조 시설 내 병해충 관리용 살균제 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원칙은 나타나 있지만, 식품 가공용 기구 및 설비의 세척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이는 관행 식품의 제조 시설에서 사용이 허용된 세척제라면 유기식품 제조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EC) No 889/2008

- 유기식품의 가공 전에 적절한 세척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척제 성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이는 관행 식품의 제조 시설에서 사용이 허용된 세척제라면 유기식품 제조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별표 3]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1. 정의

세척제라 함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 2)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 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 3)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 평가 및 개선방향

- 유기 가공을 위한 도구와 설비의 세척제를 1종 세척제로 제한하는 경우 자동세척 시스템을 갖춘 제조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치세척(CIP)⁸⁵⁾ 공법 등 세척 효율이 높은 공법을 도입할 수 없게 되어 제조 시설에서 유기가공식품 도입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됨

- 관행 식품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는 2종 및 3종 세척제를 유기식품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더라도, 과학적인 행균 공정이 후속되므로 식품에 세척 성분의 잔류 우려가 낮아 유기 가공을 위한 도구와 설비의 세척제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85) 정치세척: Cleaning in Place, 해체세척: Cleaning out of Place

2.8. 사후관리(생산과정 조사 등)

□ 현행 기준

농관원고시 2015-55 별표 5의 1. 나.

조사 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단체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를 1회 조사로 간주한다)
- 2) 1)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표 4-10.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NOP)	EU (EC834 & EC889)
기준 현황	인증 건 전부에 대하여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기준 없음	인증기관의 자율에 따라 불시 심사 실시	인증기관의 자율에 따라 불시 심사 실시 (위험평가에 따라 무작위로 실시)
차이점	인증 건 전부(100% 이상)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인증 건의 일부(5~10%)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검토 결과

- 한국 기준 [별표 5]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하며 최근 3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거나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
- CODEX, CAC GL 32 SECTION 6.
인증심사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 US CFR. NOP §205.403
 - 인증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고지 심사⁸⁶⁾를 할 수 있으며, 불시 심사의 빈도와 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통상 인증 건의 5% 또는 10%로 자율 설정하고 있음
- (EC) No 889/2008 Article 65
 - 인증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고지 심사를 하며,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하여 기준 위반의 확률이 높은 생산자를 분류하여 무작위 방문
 - 불시 심사의 빈도와 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통상 인증 건의 5% 또는 10%로 자율 설정하고 있음

86) 고지심사(정규심사): announced inspection, 불시심사(사후관리): unannounced inspection

□ 평가 및 개선방향

- 미국과 유럽연합은 위험(Risk) 정도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모든 인증 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빈도가 국제적 규정보다 매우 높은 편임
-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혼입 또는 오염 등의 위험(Risk)이 높은 생산자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⁸⁷⁾에 따르면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생산자의 인증기준 위반율이 줄어들어, 현재의 인증기준 위반율은 전체 인증 건수의 3%이며 2020년까지 위반율을 1%로 줄이고자 함⁸⁸⁾
- 사후관리는 농가와 인증기관 모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비율을 10%로 줄여 위험이 낮은 생산자는 사후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이 큰 생산자에게 사후관리 빈도를 높여 자원의 투입량을 위험(Risk)의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8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8)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16)

2.9. 부적합사항의 관리

□ 현행 기준

농관원고시 2015-55 별표 2의 1. 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표 4-11. 부적합사항 관리에 대한 규정 비교

적용 국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Part 205- NOP)	EU (EC834 & EC889)
기 준 현 황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사업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함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의 로트(lot) 또는 생산품 전체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없음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인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함	인증기관은 반드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생산자에게 요구하고 재평가하여야 함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인증 부적격으로 판정함	생산자는 부적합 사항이 명시된 심사 보고서에 서명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
차 이 점	부적합사항이 있 으면 인증 불가	부적합사항을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인증 불가		

□ 검토 결과

- 농관원 고시 2015-55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 농관원 고시에 따르면 현장심사 후 인증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이 적합”할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할 수 있음
 - 이는 사후관리 시에도 준용되어, 인증기준의 어떠한 항목이라도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의 ‘위반자’로 인정되어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CODEX, CAC GL 32 SECTION 6.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유기제품으로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US CFR, NOP §205.662
 - 미국의 부적합 사항 처리 절차는 통지(Notification) → 해소(Resolution) → 중지 또는 취소(Proposed suspension or revocation) 순서로 진행됨
 -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유기 생산자가 부적합 사항이 재발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요구함
 - 시정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 부적격 처리, 또는 인증의 정지 및 취소를 결정함

- (EC) No 889/2008 Article 63
 -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원과 생산자가 상호 확인한 후 심사 보고서에 서명하고, 생산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하여야 함
 - 생산자가 시정 조치를 수행하였다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함

□ 평가 및 개선방향

- 한국의 인증 절차에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원의 현장평가 결과만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함. 현장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는 ‘위반자’로 간주되어 유기 및 친환경 생산 기회를 상실
- 부적합 사항을 관리하는 일은 인증의 핵심적 기능이자 인증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도, 현재의 규정에서는 생산자의 개선 노력보다는 생산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이는 심사(inspection 또는 audit)의 공식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심사를 사업자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하여 생산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심사의 개념을 용어 정의를 통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심사의 개념에는 생산자의 유기적 생산과정을 평가(risk assessment)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합 사항을 통해 나타난 기준 이탈의 위험(risk of non-conformity)을 생산자와 공유하며 생산자가 시정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는지를 재평가(re-assessment)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함
- 재평가(Rea-Assessment)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생산자는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시정이 불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사용을 즉시 금지하도록 하고, 시정이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하도록 함(재평가 시에 시정과 시정 조치 모두 평가하여야 함)⁸⁹⁾
- 또한 법 시행규칙 또는 관련 고시에서 생산자가 인증 적격 판정을 받거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심사원에게 보고 및 재평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함

89) 시정(Correction)이란 당해 문제 상황을 바로잡는 일을 말하며,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말함

3. 유기식품 등의 인증 규정 개선 제안

3.1. 개선 제안 요약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나. 1)에서 재배 포장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은 위험 평가에 따라 분석을 하도록 하며, 토양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농관원 고시 제2015-55호 별표 1의 2. 나. 1)에서 버섯배지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은 금지 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분석을 하지 않도록 개정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나. 5)에서 수질 기준을 폐지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실천하도록 개정함
- 농관원 고시 제2015-55호 별표 1의 2. 나. 6)에서 관행 종자를 사용함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를 폐지하고, 화학적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고시하도록 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다. 5)에서 관행 축산업 유래의 축분을 허용하고, 축분의 항생제 잔류 기준을 폐지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라. 8) 및 농관원고시 제 2015-55호 1.다. 5)가)(2)에서 잔류농약 검사는 의도적 농약 사용과 오염관리가 태만히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도 관행 농산물 기준의 5% 이하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1. 다. 2)에서 유기가공을 위한 도구와 설비의 세척제를 1, 2, 3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 농관원고시 제2015-55호 별표 5의 1. 나.에서 인증 건 전수(全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인증 건 10% 이상의 수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선정 방법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을 선정하도록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에서 “인증심사”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인증심사”란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문서와 기록, 물리적 관찰, 인터뷰, 시험분석 등의 방법으로 생산과정과 시정 조치 등을 평가하는 일로 정의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에서 “시정조치”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여 “시정조치”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적합한 사항의 발생 원인을 개선하는 일로 정의함
- 농관원 고시 제2015-55호 별표 2의 1. 바.에서 생산자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인증기관은 생산자에게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함

3.2. 개선 제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친환경농어업 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12.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개선안

법령	현행 규정	제·개정안
시행규칙	별표 3의 2. 나.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의 2. 나.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u>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토양의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충분히 시행되기 전까지 인증표시할 수 없다.</u>

법령	현행 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5-55	<p>별표 1의 2. 나. 1)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략)</p> <p>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 목 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p>	<p>(가 항 삭제)</p> <p>별표 1의 2. 나. 1)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 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p>

법령	현행 규정	제·개정안
시행규칙	<p>시행규칙 별표 3의 2. 나. 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후략)</p>	<p>시행규칙 별표 3의 2. 나. 5) <u>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용수로서 공급되는 수자원 및 수질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수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기준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u>용수원 및 관개시설로 인한 미생물학적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용수의 총대장균 및 일반 세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세균 등이 검출된 경우에는 염소계 소독제 사용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농관원고시 2015-55	<p>별표 1의 2. 나. 6) 일반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볍씨는 사용할 수 없다.)</p>	<p>별표 1의 2. 나. 6) 일반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u>다만, 식물병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X에서 정한 품목에 한하여 화학적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X 신설)</u></p>

법령	현행 규정	제·개정안
시행규칙	<p>별표 3의 2. 다. 5) 가축 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 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 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 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 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p> <p>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 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 규격을 따른다.</p>	<p>별표 3의 2. 다. 5) 가축 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 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u>가축 분뇨 퇴비를 부숙시키는 과정에서 퇴비 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u></p> <p>(나항 삭제)</p>

법령	현행 규정	제·개정안
시행규칙	<p>시행규칙 별표 3의 2. 라. 8) (생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중략)</p> <p>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p>	<p>시행규칙 별표 3의 2. 라. 8) (생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유기농산물로 표시할 수 없다.</p>
농관원고시 2015-55	<p>별표 2의1. 다.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 산물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 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p>	<p>별표 2의 1. 다.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 산물 (2) 생산물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p>

법령	현행 규정	제·개정안
시행규칙	<p>별표 1의 1. 다.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전략)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다르게 된 「공중위생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종 세척제만 사용할 수 있다.</p>	<p>별표 1의 1. 다.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전략)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다르게 된 「공중위생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u>1종, 2종, 3종</u>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p>
농관원고시 2015-55	<p>별표 5의 1. 나. 조사 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단체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를 1회 조사로 간주한다) 2) 1)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p>	<p>별표 5의 1. 나. 조사 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u>개인 생산자에 대한 인증 건수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u> 2) <u>단체의 경우 연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하되, 별표 2 제 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를 1회 조사로 간주한다.</u> 3) 1)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u>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1)의 10%에 포함되지 않는다.</u> (이 조항은 단계적 적용 검토가 필요)</p>

법령	현행 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5-55	<p>별표 2의 1. 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p>	<p>별표 2의 1. 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 및 생산자의 <u>시정 조치 결과 보고</u>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p>
시행규칙	<p>별표 3의 1. (“인증심사”, “시정조치”의 용어 정의가 없음)</p>	<p>별표 3의 1. 러. “인증심사”란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문서와 기록, 물리적 관찰, 인터뷰, 시험분석 등의 방법으로 생산과정과 시정조치 등을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p> <p>며. “시정조치”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적합한 사항의 발생 원인을 개선하는 일을 말한다.</p>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1. 등급제 도입의 목적과 적용 방안

1.1.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 친환경 인증기관은 농관원 고시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인증기관 지정기준은 인증기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인증기관 간의 품질 및 신뢰성의 격차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인증기관 중에는 신뢰성이 높고 사업의 성장성 및 안정성 등 조직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이 있어도 시장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으며, 구매자도 신뢰성이 더 높은 인증품을 선택하려 해도 인증서, 인증표시 등을 동일하게 사용함에 따라 차별화된 구매 행동을 할 수 없음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국가 간 동등성 인정제도가 시행되면서 해외 유수의 인증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인증기관들의 육성이 요구되며,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 역량의 강화와 사업적 규모화가 필요함

- 경쟁력이 높은 인증기관의 육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와 발전의 바탕이 됨

1.2. 등급제의 활용 목적

- 기존의 인정제는 인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인증기관의 부적합성을 제기하고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등급제는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 등급이 높은 인증기관은 공시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인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면 인증기관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및 차등 관리를 통해 기관 발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1.3. 적용방안

- 우수인증기관의 정의: 인증기관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한 인증기관
- 인증기관 등급 분류 기준의 최초 설정값은 표와 같음. 최초 설정값은 등급평가 지표 및 배점기준과 함께 검토하여 교정을 실시하기 위한 초기 설정으로 인증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될 것임

표 5-1. 인증기관 등급분류 기준 값의 초기 설정

구 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분류기준	85점 이상	70~85점 미만	55~70점 미만	55점 미만

- 100점 만점 중 기관별 획득 점수에 따라 우수~미흡 부여
- 참고: '15년 RPC 경영평가의 경우 A~F등급으로 6단계 적용

○ 우수기관의 육성(안)

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증기관 집중 육성: '우수'등급 인증기관

- 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SO 17065 인정 추진비 및 갱신비 지원
 - ⇒ 컨설팅비 및 인정비 등
- 전문 인력(심사원 및 심의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 ⇒ IOIA(인증심사원), IOAS(인증심의관)

○ 차등 관리(안)

- 등급에 따라 인증기관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빈도를 차등 적용
 - ※ 식약처 소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경우 사후관리 빈도 차별화⁹⁰⁾
- 인증기관 등급에 따라 농관원 이중체크 대상 건수를 차별화하는 방안
 - ※ 이중체크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된 심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농관원에서 모니터링 하여, 부실 인증을 적발하는 방법임

90) 식약처 고시 제2016-3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제⑥항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
2.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
3.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실시
4.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 지원(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 지원 실시
5.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 지원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 지원 실시

표 5-2. HACCP 조사·평가 빈도

전번 평가 점수(%)	조사·평가의 빈도	기술지원 빈도	비고
95 이상	2년간 면제	없음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
90~95 미만	1년간 면제	없음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
85~90 미만	연1회 이상	없음	
70~85 미만	연1회 이상	연1회 이상	학교급식은 연2회 이상 조사·평가
70 미만	연1회 이상	연2회 이상	학교급식은 연2회 이상 조사·평가

○ 인증기관 등급 공시(안)

인증기관 등급 평가 및 공시를 통하여 기관의 신뢰성 개선 동기부여

- 우수인증기관을 공시하여 수요를 높임으로써 인증품질 향상 유도
 - 등급이 낮은 인증기관을 공시하는 것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적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미흡” 등급의 기관을 공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
 - 우수 인증기관은 인증서에 표시하여 유기식품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이어에게 정보 제공
- ⇒ 우수인증기관의 수요 증대 효과

○ 등급제의 활용(안) 요약

- 우수 인증기관의 육성
- 등급에 따라 지도점검 주기 및 이중체크의 건수를 차등화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⁹¹⁾에서 우수인증기관을 상위권에 검색되도록 배치
- 우수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도 표시하도록 하여 우수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도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표 5-3. 인증기관 등급제 활용 방안 예시

구 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지원방법	ISO65 비용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교육비	교육비	미지원	미지원
지도점검 주기	2년	연1회	2년 3회	연2회
이중체크	인증건의 3%	인증건의 5%	인증건의 8%	인증건의 10%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공시	인증기관 검색시 상위권 배치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인증서에 표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91) www.enviagro.go.kr

2. 인증기관의 조직 성격 규정

2.1. 조직 성격의 일반

- 인증기관의 등급 지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조직적 성격을 규정하고 핵심가치를 세움으로써, 조직 성격에 맞도록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평가 비중을 적절히 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윤창출이지만,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한 영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사회가치가 강조됨
- 김순양(2008)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제시하였음⁹²⁾

그림 5-1. 비영리 기관 - 기업의 스펙트럼. 김순양(2008)



92) 김순양. 2008.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 조직 성격 스펙트럼에서 네 가지 유형의 정의
 -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하며⁹³⁾,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음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⁹⁴⁾
 - 사회적 책임기업: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함. 하지만 최근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음

2.2.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의 조직 성격

- 민간 인증기관은 2002년 1월부터 제1호 지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제94호 인증기관이 지정되었고, 실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인증기관은 65개임
- 인증기관의 조직 성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대학의 산하 기관들로서 영리법인이 65개 중 36개로서 과반을 차지함(56%)

표 5-4.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의 법인형태 분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대학	기타	합계
36	11	3	13	2	65
56%	16%	5%	20%	3%	100%

93) 민법 제32조

9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의 주요 업무인 인증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사회적 책임이 강하에 요구되는 업종임
 - 유기식품 등의 인증의 목적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KS Q ISO/IEC 17065:2014 개요

인증의 최종목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KS Q ISO/IEC 17065:2014 개요

인증의 가치는 제3자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충족함을 공평하고 역량 있는 증명을 통하여 정립되는 신뢰와 믿음의 정도이다.

- 인증기관은 유기식품 등의 순수성(Organic Integrity)을 보호하여 유기식품 등의 표시(Labeling)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국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 및 관리를 받고 있음
- 인증업무는 정부기관이 시작하여 민간에게 이양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속성이 수익성 및 경제적 가치보다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에 가까움을 의미

표 5-5.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 발전 과정

년도	관련법	의미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환경농산물 표시제 실시
1998년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 시행	가공식품에 대한 국가인증 시작(식품의약품안전청)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개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작
2007년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유기가공식품 인증으로 확대
2012년	친환경농어업법 전면개정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근거 마련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 발전 과정은 국가가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제를 도입(1997년) 한 후 인증제도로 발전하였으며(2001년), 민간 인증기관이 성장 및 발전하여 인증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농관원이 인증업무를 병행하기로 함
- 국가기관인 농관원이 인증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인증 업무의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므로, 인증 업무의 민간 자율과 사업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증기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증업무는 조직 성격 스펙트럼에서 경제적 가치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통적인 기업 양식이 아닌 ‘사회적 책임기업’의 성격이 강함

3. 평가지표의 초기 설정

3.1. 평가지표의 구성

- 인증기관의 조직 성격을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업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적정 비율로 구성함
- 표 5-6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가치 중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높게 두어 65%와 35%로 구성하여 초기 설정하였음
- 사회적 가치는 신뢰성, 생산자 관리, 전문성 부문으로 구성하여 인증기관이 사회적 책임으로서 인증업무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음
- 사회적 가치 중 신뢰성은 ISO 17065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요인 중 공정성, 역량, 책임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는 인증업무의 독립성, 책임성, 품질관리, 전문성 관리를 지수화하여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음

KS Q ISO/IEC 17065:2014 부속서 A. 제품인증기관 및 인증활동에 대한 원칙

A.1.2. 신뢰를 높여주는 원칙은 A.2절에서 A.6절에 명시된 요소들이다.

A2. 공정성

A3. 역량

A4. 기밀유지 및 개방성

A5.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성

A6. 책임

- 생산자 관리 부문은 인증 서비스에 대한 생산자의 만족도와 생산자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 경제가치는 인적 가치와 기업 가치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인적 가치는 고용안정성, 노동 가치, 핵심역량 관리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기업 가치는 경영의 규모, 안정성, 생산성, 성장성, 무형자산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표 5-6.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항목의 초기 설계

분야	평가 주제		지표
사회가치 (65%)	신뢰성	인증업무 독립성	인증사업 매출비율
		책임성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품질관리	인증 생산자 잔류농약기준(관행의 5%) 초과비율
	전문성 관리	교육훈련비 투입량	
	생산자 관리	생산자 만족도	인증 갱신율
		생산자 역량강화	생산자 교육 실적
		관리 효율성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리 효과성	생산자당 투입 노력양
	전문성	심사 수행능력	심사보고서의 정확도
심의 수행능력		이중체크 적발 비율	
경제가치 (35%)	인적 가치	고용 안정성	상근심사원 퇴사율
		노동 가치	노동소득분배율
		핵심역량	핵심역량 보유 현황
	기업 가치	경영 규모	전년도 매출액
		사업의 안정성	부채비율
		생산성(능률)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사업의 성장성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무형자산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ISO17065, ISO17025, ISO9001, USDA-NOP, IFOAM, GLOBALG.A.P.)

표 5-7. 평가지표별 설정 의미

분야	평가 주제	평가지표	의미
사회 가치	인증업무 독립성	인증사업 매출비율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자재 공시, GAP 등 전문 인증업무에 따른 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타 업무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객관적 업무처리가 가능함
	책임성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인증기관이 농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연간 횟수와 처분 수위의 곱으로서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지표
		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인증기관이 농관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연간 횟수와 과태료 총액의 곱으로서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지표
	품질관리	인증생산자 잔류농약기 준 초과비율	인증을 받은 생산농가 중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하는 생산자의 발생 빈도는 인증기관이 평가 및 사후 관리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전문성 관리	교육훈련비 투입량	핵심역량 양성, 심사원 및 직원의 직무교육 등 인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투자하는 비율은 인증 품질의 향상과 유지에 필요한 요소
	생산자 만족도	인증 갱신율	생산자가 같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로서, 생산자가 인증기관을 신뢰하는 척도
	생산자 역량강화	생산자 교육 실적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규정, 주의사항 등을 생산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킴으로써, 사고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관리 효율성	관할지역 인증 비율	총 인증 건수 중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광역지역(시·도)의 인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관리의 효율성과 인증기관의 영향에 대한 지표
	관리 효과성	생산자당 투입 노력양	한 생산자를 평가 및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투입된 노력양으로서 심사의 구체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줌
	심사 수행능력	심사보고서 정확도	보고서는 인증심사 활동의 결과물로서, 현장에서 발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각 기준에 대한 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심의를 수행능력	이중체크 적발 비율	농관원 이중 체크 결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심의 과정에서 부실한 처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 체크로 인한 인증 취소 처분의 비율을 통하여 신뢰성을 평가	

분야	평가주제	평가지표	의미
경제 가치	고용 안정성	상근심사원 퇴사율	고용안정성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됨
	노동가치	노동소득분 배율	노동집약적(지적 노동) 성격이 강한 인증업무에서 타업종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함. 상근심사원 등 피고용인에 대한 노동가치는 인재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
	핵심역량	핵심역량 보유 현황	친환경 인증 업종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재, 기술 등의 보유 상태로서 경쟁력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경영규모	전년도 매출액	매출액은 사업 규모를 반영하므로 경쟁력 기반 확보의 지표. 인증 외의 사업(교육, 출판 등 인증에 영향이 낮은 사업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으로 측정
	사업의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으면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으로 인하여 무리한 단기 매출 향상에 집중할 수 있어 인증의 공정성에 관계됨
	생산성 (능률)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심사원, 심의관, 행정요원 등은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길어질수록 업무의 양과 질이 향상되며, 이는 인증기관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됨
	사업의 성장성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장성 지표
	무형자산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인증기관이 업무에 관련된 국제적 인정(Accreditation)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서비스 아이템의 확정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있음 (ISO 17065, ISO 17025, ISO 9001, USDA-NOP, IFOAM, GLOBALG.A.P. 등)

3.2. 세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배점의 초기 설정

○ 정량 평가

- 정량 평가는 인증기관의 관리 및 경영에 대한 계량화된 실적을 지수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각 지수별 점수 구간을 설정하는 절대평가 방법과 지수의 순위를 매겨 상대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상대평가의 경우 1위만 만점을 얻고 최하 점수는 0점 이상이 되며, 평균은 만점의 2분의 1에 근접하는 점수가 됨

표 5-8. 세부지표별 정량 평가방법 및 배점의 초기 설정

code	평가 지표	평가 방법 (前 회계연도의 데이터 적용, 저농약 제외)	정량 측정의 근거	배점
TS0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재무제표, 매출증빙	80% 이상 7
				70~80% 미만 5
				60~70% 미만 3
				60% 미만 1
TS02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행정처분 횟수)*(영업정지 개월수 합계)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0이면 7
				3이면 5
				6이면 3
				9이면 1
TS03	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과태료부과 횟수)*(과태료 총액) ※ 100만원을 1로 환산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0이면 3
				1~2이면 2
				3이상 1
TS04	인증 생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비율	[(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수)}/2]/(잔류농약기준 초과 건수) ※ 농관원의 시료채취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 실적만을 적용	농관원 생산과정 조사 및 시판품 조사 실적	1위: 8점 2위이하: $8-8*\{(순위-1)/(\Sigma-1)\}$ ※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Σ =(등급평가 대상 인증기관의 총수)

code	평가 지표	평가 방법 (前 회계연도의 데이터 적용, 저농약 제외)	정량 측정의 근거	배점
TS05	교육 훈련비 투입량	(교육훈련비)/[(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 ※ 10,000원 → 1로 환산	재무제표,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100 이상 5 50~100 미만 4 20~50 미만 3 10~20 미만 2 10 미만 1
TS06	인증 갱신율	(연간 인증갱신농가수)/(연초 인증농가수)*100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85% 이상 5 70~85% 미만 4 55~70% 미만 3 30~55% 미만 2 30% 미만 1
TS07	생산자 교육실적	(농가 교육 총시간)/[(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수)]/2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친환경 인증관리정보 시스템	1위: 5점 2위이하: $5-5 * \{(\text{순위}-1)/(\Sigma-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TS08	관할 지역 인증비율	(관할지역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 ※ 가공품 인증건은 제외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1위: 5점 2위이하: $5-5 * \{(\text{순위}-1)/(\Sigma-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TS09	생산자당 투입 노력량	{(연초상근심사원수)+(연말상근심사원수)}/[(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수)] ※ 상근심사원이 타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상근자수의 1/2 적용	인증사업계획서, 고용보험등록증,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1위: 5점 2위이하: $5-5 * \{(\text{순위}-1)/(\Sigma-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TS10	이중체크 적발비율	{[(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수)]/2}/(이중체크로 인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농관원 데이터	1위: 10점 2위이하: $10-10 * \{(\text{순위}-1)/(\Sigma-1)\}$ ※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Σ =(등급평가 대상 인증기관의 총수)

code	평가 지표	평가 방법 (前 회계연도의 데이터 적용, 저농약 제외)	정량 측정의 근거	배점
TE01	상근 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인증사업계획서, 고용보험등록증	10% 미만 5
				10~20% 미만 4
				20~30% 미만 3
				30~40% 미만 2
TE02	노동소득 분배율	(인건비)/(부가가치)*100	재무제표	40% 이상 1
				55% 이상 5
				50~55% 미만 4
				45~50% 미만 3
TE03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 총액)	재무제표	40~45% 미만 2
				10억원 이상 5
				5~10억원 미만 4
				2~5억원 미만 3
TE04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 기자본)]*100	재무제표	1~2억원 미만 2
				50% 미만 4
				50~100% 미만 3
				100~200% 미만 2
TE05	부가가치 기준 노동 생산성	[(부가가치)/{(연초 종업원 수)+(연말 종업원수)}/2]*100	재무제표, 고용보험등록증	200% 이상 1
				1위: 5점
				2위이하: 5-5*{(순위-1)/(Σ -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TE06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당기말 인증매출액)/(전기말 인증매출액)}*100-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 에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 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재무제표, 매출증빙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 정성 평가

- 정성 평가는 인증기관의 관리 및 경영에 대한 실적 중 계량화되지 않은 사항을 지수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정성평가를 통하여 평가하는 지표에는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심사 수행능력), 핵심역량 보유 현황,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무형자산)이 있음

표 5-9. 세부지표별 정성 평가 방법 및 배점의 초기 설정

code	평가지표	평가 기준 (前 회계연도의 자료 적용)	평가 방법	점수 부여방법
LS01	심사보고서의 정확도	심사보고서에 적합 및 부적합의 근거 작성 사항 점검 ※ MS 엑셀의 RANDOM 명령어를 사용하여, 무작위 2건의 심사보고서 선정	기 작성된 심사보고서 검토	평가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건별 -2점 (만점 5점, 최하 1점)
LE01	핵심역량 보유 현황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장기 경력자(베테랑)의 유무 ※ 상근자 중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경력을 말함	농관원 데이터	10년이상 경력자가 관련자격증 소지: 5 10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4 5년이상 경력자가 관련자격증 소지: 3 5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2 5년이상 경력자 없음: 1점
LE02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국제 인정서 및 인증사업 승인 현황 (ISO 17065, ISO 17025, ISO 9001, USDA-NOP, IFOAM, GLOBALG.A.P. 등) ※ 직접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인정서, 승인서 등	있으면 3점, 없으면 1점

4. 평가지표의 초기 설정값의 검증 및 교정

4.1. 예비조사(Pilot Evaluation) 실시

○ 예비조사 개요

- 설정한 세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하였음
- 예비조사는 인증기관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하였고, 조사표는 부록 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이며, 65개 인증기관에 이메일로 배포하여 49개의 인증기관이 응답하였음⁹⁵⁾
- 응답한 자료는 자발적인 작성 사항에 따른 것으로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향후 실제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재무제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며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
- 제출한 자료 중에서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신뢰성이 없는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수 배정에서 중간 점수를 부여하였음

○ 예비조사 결과 평균 65.58, 최고점은 76.33, 최하점은 48.65였음

○ 예비조사 결과 등급 분포는 ‘우수’가 없으며, ‘양호’ 12개, ‘보통’ 33개, ‘미흡’ 4개로 나타났음

○ 세부지표 초안에 따라 채점한 결과에서 인증기관들의 품질과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어, 우수인증기관 육성을 위해서는 점수 배정의 교정이 필요함

95) 1차 교정(2016.4.15.) 까지 49개의 인증기관이 조사표를 제출하였고, 2차 교정(2016.4.29.) 까지 55개의 인증기관이 조사표를 제출하였음. 여기서 말하는 예비조사는 1차 교정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임.

표 5-10. 예비조사 결과 인증기관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분류 기준	85~100	70~84	55~69	55점 미만	
기관 수	0	12	33	4	49
비율(%)	0	24.5	67.3	8.2	100

4.2. 평가지표의 1차 교정

- 이상 설정한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에 따라 인증기관들에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별력이 있는지 검토하였음
- 설문은 국내 소재 인증기관 65개에 배포하여 회수된 49개의 인증기관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인증기관 중에는 전체 조사항목 중 응답을 누락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응답을 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의 중간 점수를 적용하였음. 예컨대, TE1. 상근심사원 퇴사율에 관계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무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만점 5점과 최하 점수 1점의 중간인 3점을 부여하였음
- 변별력의 타당성은 응답 분포도에서 과편중된 응답률을 나타내는 문항은 현실적으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과편중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점 및 감점의 내용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평가지표의 초기 설정값을 예비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표 5-11과 같이 교정함 (교정 과정은 부록 10 참조)

표 5-11.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1차 교정 내역 - 배점 조정

분류	지표	배점	
		초기 설정	교정
정량/사회	인증사업 매출비율	7	0
정량/사회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7	10
정량/사회	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3	5
정량/사회	잔류농약기준 초과비율	8	8
정량/사회	교육훈련비 투입량	5	5
정량/사회	인증 갱신율	5	5
정량/사회	생산자 교육 실적	5	5
정량/사회	관할지역 인증 비율	5	3
정량/사회	생산자당 투입 노력양	5	7
정성/사회	심사보고서의 정확도	5	5
정량/사회	이중체크 적발 비율	10	10
정량/경제	상근심사원 퇴사율	5	5
정량/경제	노동소득분배율	5	5
정성/경제	핵심역량 보유 현황	5	5
정량/경제	전년도 매출액	5	8
정량/경제	부채비율	4	3
정량/경제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5	5
정량/경제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3	3
정성/경제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3	3
	합계	100	100

※ 음영이 들어간 셀은 교정된 결과임

○ 1차 교정 결과 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득점 기준의 변경 내역은 표 5-12와 같음

표 5-12.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1차 교정 내역 - 평가 방법 조정

code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초기 설정	교정
TS0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80% 이상 7	
				70~80% 미만 5	
				60~70% 미만 3	
				60% 미만 1	
TS02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행정처분 횟수)*(영업정지 개월수 합계)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변경하지 않음	0이면 7	0이면 10
				3이면 5	3이면 7
				6이면 3	6이면 4
				9이면 1	9이면 1
TS03	인증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과태료부과 횟수)*(과태료 총액) ※ 100만원을 1로 환산	변경하지 않음	0이면 3	0이면 5
				1~2이면 2	1~2이면 3
				3이상 1	3이상 1
TS04	인증생산자 잔류농약기준 초과비율	[[(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수)}/2]/(잔류 농약기준 초과 건수) ※ 농관원의 시료채취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 실적만을 적용	[[(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수)}/2]/(1+(잔류농약기준 초과 건수)) ※ 농관원의 시료채취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 실적만을 적용	1위: 8점	변경하지 않음
				2위이하: 8-8*(순위-1)/(Σ-1)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Σ=(등급평가 대상 인증기관의 총수)	

code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초기 설정	교정
TS05	교육훈련비 투입량	$(\text{교육훈련비}) / [(\text{연초 상근직원 수}) + (\text{연말 상근직원 수})] / 2 + (\text{전년도 퇴사자 수})$ ※ 10,000원 → 1로 환산	변경하지 않음	100 이상 5 50~100 미만 4 20~50 미만 3 10~20 미만 2 10 미만 1 0 이면 0	100 이상 5 50~100 미만 4 20~50 미만 3 10~20 미만 2 10 미만 1 0 이면 0
TS06	인증 갱신율	$(\text{연간 인증갱신농가수}) / (\text{연초 인증농가수}) * 100$	변경하지 않음	85~100% 5 70~85% 미만 4 55~70% 미만 3 30~55% 미만 2 30% 미만 1	변경하지 않음
TS07	생산자 교육 실적	$(\text{농가 교육 총시간}) / [(\text{연초 인증농가 증농가수}) + (\text{연말 인증농가수})] / 2$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1 + (\text{농가교육 총시간}) / [(\text{연초 인증농가수}) + (\text{연말 인증농가수})] / 2\}$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1위: 5점 2위이하: 5-5* $\{(\text{순위}-1) / (\Sigma-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변경하지 않음
TS08	관할지역 인증 비율	$(\text{관할지역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 / (\text{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 ※ 가공품 인증건은 제외	변경하지 않음	1위: 5점 2위이하: 5-5* $\{(\text{순위}-1) / (\Sigma-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위: 3점 2위이하: 3-3* $\{(\text{순위}-1) / (\Sigma-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code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초기 설정	교정
TS09	생산자당 투입 노력양	$\{(\text{연초상근심사원수})+(\text{연말상근심사원수})\}/\{(\text{연초인증농가수})+(\text{연말인증농가수})\}$ ※ 상근심사원이 타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상근자수의 1/2 적용	변경하지 않음	1위: 5점 2위이하: 5-5*{(순위-1)/(Σ-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위: 7점 2위이하: 7-7*{(순위-1)/(Σ-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TS10	이중체크 적발비율	$\{[(\text{연초인증농가수})+(\text{연말인증농가수})]/2\}/\{(\text{이중체크에의해인증취소된생산자수})\}$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text{연초인증농가수})+(\text{연말인증농가수})]/2\}/\{(\text{이중체크에의해인증취소된생산자수})+1\}$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1위: 10점 2위이하: 10-10*{(순위-1)/(Σ-1)} ※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Σ=(등급평가 대상 인증기관의 총수)	변경하지 않음
TE01	상근심사원 퇴사율	$(\text{상근심사원 퇴사자 수})/(\text{연초상근심사원 수}) * 100$	변경하지 않음	10% 미만 5 10~20% 미만 4 20~30% 미만 3 30~40% 미만 2 40% 초과 1	변경하지 않음
TE02	노동소득 분배율	$(\text{인건비})/(\text{부가가치}) * 100$	변경하지 않음	55% 이상 5 50~55% 미만 4 45~50% 미만 3 40~45% 미만 2 40% 미만 1	변경하지 않음

code	평가지표	평가 방법		특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초기 설정	교정
TE03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 총액)	변경하지 않음	10억원 이상 5 5~10억원 미만 4 2~5억원 미만 3 1~2억원 미만 2 1억원 미만 1	10억원 이상 8 5~10억원 미만 6 2~5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2 1억원 미만 1
TE04	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 자본}) * 100$	변경하지 않음	50% 미만 4 50~100% 미만 3 100~200% 미만 2 200% 이상 1	100% 미만 3 100~200% 미만 2 200% 이상 1
TE05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text{부가가치})/(\text{연초 종업원 수})+(\text{연말 종업원수})/2] * 100$	변경하지 않음	1위: 5점 2위이하: $5 - 5 * \{(\text{순위}-1)/(\Sigma-1)\}$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변경하지 않음
TE06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text{당기말 인증매출액})/(\text{전기말 인증매출액})\} * 100 - 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 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변경하지 않음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변경하지 않음
LS01	심사보고서의 정확도	심사보고서에 적합 및 부적합의 근거 작성 사항 점검 ※ MS 엑셀의 RANDOM 명령어를 사용하여, 무작위 2건의 심사보고서 선정	변경하지 않음	평가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건별 -2점 (만점 5점, 최하 1점)	변경하지 않음

code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초기 설정	교정
LE01	<p>핵심역량 보유 현황</p>	<p>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장기 경력자(베테랑)의 유무 ※ 상근자 중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경력을 말함</p>	<p>변경하지 않음</p>	<p>10년이상 경력자가 관련자 격중 소지: 5 10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4 5년이상 경력자가 관련자격 중 소지: 3 5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2 5년이상 경력자 없음: 1점</p>	<p>변경하지 않음</p>
LE02	<p>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p>	<p>국제 인증서 및 인증사업 승인 현황 (ISO17065, ISO17025, ISO9001, USDA-NOP, IFOAM, GLOBALG.A.P. 등) ※ 직접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p>	<p>변경하지 않음</p>	<p>있으면 3점, 없으면 1점</p>	<p>변경하지 않음</p>

○ 1차 교정 결과 표 5-13과 같이 인증기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음

표 5-13.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교정 결과 (1차 교정)

분야	평가주제	code	지표	배점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사회 가치	책임성	TS02	인증기관 행 정처분 빈도· 강도	10	(행정처분 횟수)*(영업정지 개월수 합계)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 짜 기준	0이면 10 3이면 7 6이면 4 9이면 1
			신뢰성	TS03	과테료 부과 빈도·강 도	5
	전문성	TS04	인증생산자 잔류농약기준 (관행의 5%) 초과비율	8	[(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 수)]/2/[1+(잔류농약기준 초과 건수)] ※ 농관원의 시료채취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 실적 만을 적용	1위: 8점 2위이하: 8-8*{(순위-1)/(Σ-1)}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Σ=(등급평가 대상 인증기관수)
			전문성 전 문 성 관 리	TS05	교 육 훈 련 비 투 입 량	5

분야	평가주제	code	지표	배점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사회 가치	생산자 만족도	TS06	인증 갱신율	5	(연간 인증갱신농가수)/(연초 인증농가 수)*100	85% 이상 5
						70~85% 미만 4
	생산자 역량강화	TS07	생산자 교육 실적	5	{1+(농가교육 총시간)/[(연초 인증농가 수)+(연말 인증농가수)]/2}	2위이하: 5-5*{(순위-1)/(Σ-1)}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1일은 8시간으로 환산
	관리 효율성	TS08	관할지역 증 비율	3	(관할지역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 ※ 가공품 인증건은 제외	1위: 3점 2위이하: 3-3*{(순위-1)/(Σ-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관리 효과성	TS09	생산자당 투입 노력양	7	{(연초상근심사원수)+(연말상근심사원수)}/{(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수)}	1위: 7점 2위이하: 7-7*{(순위-1)/(Σ-1)}
						※ 상근심사원이 타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상근자수의 1/2 적용
	심사 수행능력	LS01	심사보고서의 정확도	5	심사보고서에 적합 및 부적합의 근거 작성 사항 점검 ※ MS 엑셀의 RANDOM 명령어를 사용하며, 무작위 2건의 심사보고서 선정	평가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건별 -2점 (만점 5점, 최하 1점)
심사 수행능력	TS10	인증체크 발 비율	10	[(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농가 수)]/2 /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1}	1위: 10점 2위이하: 10-10*{(순위-1)/(Σ-1)}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사회가치 소계			63			

분야	평가주제	code	지표	배점	평가 방법	득점 기준
경제 가치	인적 가치	고용 안정성	상근심사원 퇴사율	5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10% 미만 5 10~20% 미만 4 20~30% 미만 3 30~40% 미만 2 40% 이상 1
			노동소득분배율	5	(인건비)/(부가가치)*100	55% 이상 5 50~55% 미만 4 45~50% 미만 3 40~45% 미만 2 40% 미만 1
	기업 가치	경영 규모	전년도 매출액	8	(전년도 매출 총액)	10억원 이상 8 5~10억원 미만 6 2~5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2 1억원 미만 1
			부채비율	3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5	[(부가가치)/(연초 종업원 수)+(연말 종업원수)]/2*100	1위: 5점 2위이하: 5-5*{(순위-1)/(Σ-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3	{(당기말 인증매출액)/(전기말 인증매출액)}*100-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10% 미만 3 -10~10% 2 -10% 미만 1

분야	평가주제	code	지표	배점	평가 방법	득점 기준
경제 가치	인적 가치	핵심역량 LE01	핵심역량 보	5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장기경력자(베테 랑)의 유무 * 상근자 중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경력을 말함	10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소지: 5
			유 현황			10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4
	기업 가치	무형자산 LE02	인증기관 국	3	국제 인정서 및 인증사업 승인 현황 (ISO17065, ISO17025, ISO9001, USDA-NOP, IFOAM, GLOBALG.A.P. 등) * 직접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5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소지: 3
			제적 인정 보 유			5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2
경제가치 소계			37		5년이상 경력자 없음: 1점 있으면 3점, 없으면 1점	
총계			100			

4.3. 등급 분류 기준 초기 설정값의 조정 (1차 조정)

- 각 인증기관의 총점 분포를 보면, 초기 설정한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면 ‘우수’가 없고 ‘양호’(12), ‘보통’(33), ‘미흡’(4)으로 전반적인 득점이 낮은 편임(표 5-10)
- 이에 등급 분류 기준을 조정하여 각 등급의 점수 범위를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고 등급분류 기준을 3단계로 줄이면, ‘우수’ 5개(10.2%), ‘보통’ 33개(67.3%), ‘미흡’ 11개(22.5%)의 결과를 얻게 됨

표 5-14. 등급 분류 기준의 조정 (1차)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점수 기준	초기 설정	85~100	70~85 미만	55~70 미만	55점 미만
	조정값	70~100	55~70 미만	55점 미만	삭제

표 5-15. 등급 분류 기준의 1차 조정 후 등급 분포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70~100	55~70 미만	55점 미만	
기관 수	5	33	11	49
비율(%)	10.2	67.3	22.5	100

4.4. 평가지표의 2차 교정

□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검토

- 평가지표는 평가 방법과 득점 기준의 설정에 따라 인증기관별 총점 순위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표의 변경 및 설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인증기관 중에는 기존의 인증기관 지정제(accreditation)로 인증기관의 관리가 가능하므로, 등급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는 해외에서 유기인증기관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 등급제로 인하여 하위 등급의 인증기관은 부적격한 인증기관으로 인식되어 사업자들에게 기피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일부 인증기관들의 우려는 하위 등급의 인증기관이 공개되었을 때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등급제 시행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등급제 시행의 목적은 우수 인증기관을 공개하고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하위등급의 인증기관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등급의 인증기관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중간보고회, 2016.3.30.)
- 1차 교정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과제의 중간보고회 및 2회의 전문가회의⁹⁶⁾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적정 평가지표 도출을 위하여 평가지표를 재교정하게 되었음

96) 1차 전문가회의(2016.4.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오씨케이;
2차 전문가회의(2016.4.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 검토 방식은 각 평가지표의 취지와 평가 방법에 대하여 객관성, 현실성,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교정을 실시하는 과정을 취하였음
- 평가지표 중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빈도가 낮은 ‘기관 과태료’, ‘핵심역량⁹⁷⁾’, ‘국제적 인정 보유’에 대해서는 주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가·감점 요인으로 변경하였음
- 주요 평가지표는 총 20개 항목으로 하고, 각 지표는 5점씩 배점하여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음
- 기존 평가지표 중에서 ‘잔류농약기준 초과 비율’,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제외하였음
- ‘인증사업자 수’, ‘인증 부적합율’, ‘자체 행정처분 실적’,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사후관리 빈도’,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상근심사원 비율’을 신규로 포함하였음
- ‘교육훈련비 투입량’은 ‘교육훈련 투입량’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으로 변경하였음
- 평가지표의 1차 교정 값을 재교정하여 표 5-16과 같이 2차 교정 완료 (교정 과정은 부록 11 참조)

97) 핵심역량 보유 현황은 1차 교정까지는 최장 근무자의 근속연수와 해당 자격증 보유 현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평가 기준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2차 교정에서 평가 기준을 IOIA 심사원 교육 수료자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인증기관이 많지 않아 가점요인으로 전환된 것임

표 5-16.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2차 교정 내역 - 지표 항목 및 배점 조정

*음영은 변경된 사항임

지표	배점		
	초기 설정	1차 교정	2차 교정
인증 건수 (신규)	0	0	5
인증사업자 수 (신규)	0	0	5
인증사업 매출비율	7	0	5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7	10	5
관류농약기준 초과비율 자체 행정처분 실적 (변경)	8	8	5
인증 부적합율 (신규)	0	0	5
교육훈련비 투입량 교육훈련 투입량 (변경)	5	5	5
기관장의 역량강화 노력 (신규)	0	0	5
인증 갱신율	5	5	5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5	5	5
관할지역 인증 비율	5	3	5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5	7	5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 (삭제)	5	5	0
사후관리 빈도 (신규)	0	0	5
이중체크 적발 비율	10	10	5
상근심사원 퇴사율	5	5	5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신규)	0	0	5
노동소득분배율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변경)	5	5	5
전년도 매출액	5	8	5
부채비율	4	3	5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삭제)	5	5	0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3	3	5
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3	5	(감점 지표)
핵심역량 보유 현황	5	5	(가점 지표)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3	3	(가점 지표)
합계	100	100	100 + α

○ 2차 교정 결과와 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득점 기준의 변경 내역은 표 5-17과 같음

표 5-17.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2차 교정 내역 - 평가 방법 조정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인증 건수		(총인증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600건 이상 5 400~600건 미만 4 200~400건 미만 3 100~200건 미만 2 100건 미만 1
인증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로 간주		1,500명 이상 5 1,000~1,500명 미만 4 500~1,000명 미만 3 200~500명 미만 2 200명 미만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90~100% 5 75~90% 미만 4 50~75% 미만 3 35~50% 미만 2 35% 미만 1
인증기관 행정처분	(행정처분 횟수)*(영업정지 개월수 합계)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전년도 업무정지 총개월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0이면 10 3이면 7 6이면 4 9이면 1	0이면 5 3이하 4 6이하 3 9이하 2 9초과 1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인증생산자 간류농약기준 초과비율	$\frac{[(\text{연초 인증농가수})+(\text{연말 인증농가수})/2]}{1+(\text{간류농약기준 초과 건수})}$ <p>※ 농관원의 시료채취에 의한 간류농약 검출 실적만을 적용</p>	(삭제)	1위: 8점 2위이하: $8-8 * \{(\text{순위}-1)/(\Sigma-1)\}$ ※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Σ =(등급평가 대상 인증기관의 총수)	(삭제)
자체 행정처분 실적		$\frac{(\text{행정처분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2]*100}{2}$ <p>※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p>		1.0% 이상 5 0.5~1% 미만 4 0.2~0.5% 미만 3 0.2% 미만 2 0 이면 1
인증 부적합율		$\frac{(\text{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text{15년 인증 건수})+(\text{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2}$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교육훈련 투입량	$\frac{[(연초\ 인증농가수)+(연말\ 인증\ 농가수)]/2}{\{1+(잔류농약기준\ 초\ 과\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의 시료채취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 실적만을 적용 	$\frac{(\text{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 수)+(연말 상근직원 수)]/2}{2+(\text{전년도 퇴사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 한함 * 인증기관의 교육은 제외 	<p>100 이상 5</p> <p>50~100 미만 4</p> <p>20~50 미만 3</p> <p>10~20 미만 2</p> <p>10 미만 1</p> <p>0 이면 0</p>	<p>1.5 이상 5</p> <p>1.0~1.5 미만 4</p> <p>0.5~1.0 미만 3</p> <p>0.5 미만 2</p> <p>0.0 이면 1</p>
기관의 역량강화 노력		$\frac{(\text{인증개신농가수})/(\text{연초 인증농가수}) * 100}{\text{변경하지 않음}}$	<p>85% 이상 5</p> <p>70~85% 미만 4</p> <p>55~70% 미만 3</p> <p>30~55% 미만 2</p> <p>30% 미만 1</p>	<p>2회 이상 5</p> <p>1회 3</p> <p>미참가 1</p>
인증 갱신율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frac{\{1+(\text{농가교육 총시간})\} / \{(\text{연초 인증농가수})+(\text{연말 인증농가수})\} / 2}{2}$ <p>※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포함</p>	$\frac{(\text{인증사업자교육 총시간})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2} * 100$ <p>※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포함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된 과목에 투여한 총시간을 합산</p>	<p>1위: 5점 2위이하: 5-5*{(순위-1)/(Σ-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p>	<p>30 이상 5 20~30 미만 4 10~20 미만 3 10 미만 2 0 이면 1</p>
관할지역 인증 비율	$\frac{(\text{관할지역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 / (\text{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text{가공품 인증건은 제외}}$	$\frac{(\text{관할지역 인증건수})}{(\text{총인증 건수})}$ <p>※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 까지 인정</p>	<p>1위: 3점 2위이하: 3-3*{(순위-1)/(Σ-1)}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p>	<p>80~100% 5 60~80% 미만 4 40~60% 미만 3 20~40% 미만 2 20% 미만 1</p>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frac{\{(\text{연초상근심사원수})+(\text{연말상근심사원수})\}}{\{(\text{연초인증농가수})+(\text{연말인증농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심사원이 타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상근자수의 1/2 적용 	$\frac{\{(\text{심사원 총투입일수}) * 8\}}{\{(\text{연초인증사업자수})+(\text{연말인증사업자수})\}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심사원 포함 * 8시간을 1일로, 4시간을 0.5일로 환산 	1위: 7점 2위이하: $7 - 7 * \{(\text{순위} - 1) / (\Sigma - 1)\}$ ※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이상 5 3~4 미만 4 2~3 미만 3 1~2 미만 2 1 미만 1
사후관리 빈도		$\frac{(\text{사후관리 건수})}{\{(\text{연초인증건수})+(\text{연말인증건수})\} / 2}$		120% 이상 5 110~120% 미만 4 100~110% 미만 3 90~100% 미만 2 90% 미만 1
이중체크 적발 비율	$\frac{[\{(\text{연초인증농가수})+(\text{연말인증농가수})\} / 2]}{\{(\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frac{(\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text{연초인증사업자수})+(\text{연말인증사업자수})\} / 2]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1위: 10점 2위이하: $10 - 10 * \{(\text{순위} - 1) / (\Sigma - 1)\}$ ※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Σ=(등급평가 대상 인증기관 의 총수)	0.5% 미만이면 5 0.5~2.0% 미만이면 4 2.0~4.0% 미만이면 3 4.0~6.0% 미만이면 2 6.0% 이상이면 1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변경하지 않음	10% 이하 5 10~20% 미만 4 20~30% 미만 3 30~40% 미만 2 40% 이상 1	20% 미만 5 20~30% 미만 4 30~40% 미만 3 40~50% 미만 2 50% 이상 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연말상근심사원수)		7년 이상 5 5~7년 미만 4 3~5년 미만 3 1~3년 미만 2 1년 미만 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인건비)/(부가가치)*100	(상근심사원 인건비)/(인증사 업 매출액)*100	55% 이상 5 50~55% 미만 4 45~50% 미만 3 40~45% 미만 2 40% 미만 1	50% 이상 5 40~50% 미만 4 30~40% 미만 3 20~30% 미만 2 20% 미만 1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 총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10억원 이상 8 5~10억원 미만 6 2~5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2 1억원 미만 1	4억원 이상 5 2~4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3 0.5~1억원 미만 2 0.5억원 미만 1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 자본)*100	변경하지 않음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100% 미만 5 100~200% 3 200% 초과 1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frac{[(\text{부가가치})/((\text{연초 종업원 수})+(\text{연말 종업원수})/2)] * 100}{\text{중업원}}$	(삭제)	1위: 5점 2위이하: 5-5*{(순위-1)/(Σ-1)} ※소수들째 자리에서 반올림	(삭제)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frac{\{(\text{당기말 인증매출액})/(\text{전기말 인증매출액})\} * 100 - 100}{\text{증가율}}$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 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변경하지 않음	10% 이상 3 -10~10% 미만 2 -10% 미만 1	10% 이상 5 -10~10% 미만 3 -10% 미만 1
기관 과태료 부과	$(\text{과태료부과 횟수}) * (\text{과태료 총액})$ ※ 100만원을 1로 환산	(과태료부과 횟수)	0이면 5 1~2이면 3 3이상 1	1 건당 -1점 감점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차교정후	2차교정후	1차교정후	2차교정후
<p>핵심역량 보유 현황</p> <p>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장기 경력자(베테랑)의 유무 ※ 상근자 중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경력을 말함</p>	<p>(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IOIA 교육, ISO 심사원 교육, HACCP 교육,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교육의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p>	<p>10년이상 경력자가 관련자 격증 소지: 5 10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4 5년이상 경력자가 관련자격 증 소지: 3 5년이상 경력자가 자격증 없음: 2 5년이상 경력자 없음: 1점</p>	<p>1건당 1점 가점</p>	
<p>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p> <p>국제 인정서 및 인증사업 승인 현황 (ISO17065, ISO17025, ISO9001, USDA-NOP, IFOAM, GLOBALG.A.P. 등) ※ 직접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p>	<p>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p>	<p>있으면 3점, 없으면 1점</p>	<p>5점 가점</p>	

○ 2차 교정 결과 표 5-18과 같이 인증기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음

표 5-18.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안 (2차 교정 결과)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 유기농식품의 건수 합계	600건 이상 5
		400~600건 미만 4
		200~400건 미만 3
		100~200건 미만 2
		100건 미만 1
인증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로 간주	1,500명 이상 5
		1,000~1,500명 미만 4
		500~1,000명 미만 3
		200~500명 미만 2
		200명 미만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90% 이상 5
		75~90% 미만 4
		50~75% 미만 3
		35~50% 미만 2
		35% 미만 1
인증기관 행정처분	(전년도 업무정지 총개월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0이면 5
		3이하 4
		6이하 3
		9이하 2
		9초과 1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	1.0% 이상 5
		0.5~1.0% 미만 4
		0.2~0.5% 미만 3
		0.2% 미만 2
		0 이면 1
인증 부적합율	('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5년 인증 건수')+('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 수)+(연말 상근직원 수)]/2+(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1.5 이상 5
		1.0~1.5 미만 4
		0.5~1.0 미만 3
		0.5 미만 2
		0.0 이면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기관장의 역량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의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 증에 한함	2회 이상 5
		1회 참가 3
		미참가 1
인증 갱신율	(연간 인증갱신농가수)/(연초 인증농 가수)*100	70~100% 5
		55~70% 미만 4
		30~55% 미만 3
		15~30% 미만 2
		15% 미만 1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총시간)/[(연초 인증 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100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한 과목에 투여한 총 시간을 합산	30 이상 5
		20~30 미만 4
		10~20 미만 3
		10 미만 2
		0 이면 1
관할지역 인증 비 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80~100% 5
		60~80% 미만 4
		40~60% 미만 3
		20~40% 미만 2
		20% 미만 1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심사원 총투입일수)*8}/[(연초 인증 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 ※ 비상근심사원 포함 ※ 8시간을 1일로, 4시간을 0.5일로 환산	4 이상 5
		3~4 미만 4
		2~3 미만 3
		1~2 미만 2
		1 미만 1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건수)+ (연말 인증건수)]/2	120% 이상 5
		110~120% 미만 4
		100~110% 미만 3
		90~100% 미만 2
		90% 미만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이면 5
		0.5~2.0% 미만이면 4
		2.0~4.0% 미만이면 3
		4.0~6.0% 미만이면 2
		6.0% 이상이면 1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20% 미만 5
		20~30% 미만 4
		30~40% 미만 3
		40~50% 미만 2
		50% 이상 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연말상근심사원수)	7년 이상 5
		5~7년 미만 4
		3~5년 미만 3
		1~3년 미만 2
		1년 미만 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상근심사원 인건비)/(인증사업 매출액)*100	50% 이상 5
		40~50% 미만 4
		30~40% 미만 3
		20~30% 미만 2
		20% 미만 1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4억원 이상 5
		2~4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3
		0.5~1억원 미만 2
		0.5억원 미만 1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100% 미만 5
		100~200% 3
		200% 초과 1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당기말 인증매출액)/(전기말 인증매출액)}*100-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10% 이상 5
		-10~10% 미만 3
		-10% 미만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횟수)	1 건당 -1점 감점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IOIA 교육, ISO 심사원 교육, HACCP 교육,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교육의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	1건당 1점 가점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5점 가점

4.5. 등급 분류 기준의 초기 설정값의 재조정 (2차 조정)

- 평가지표의 2차 교정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의 점수를 보면, 평균 66.73이며 최고 87점, 최하 37점의 분포를 보임 (부록 5 참조)
- 표 5-19와 같이 등급분류기준을 재교정(2차 교정)한 결과를 등급 분류 기준의 1차 조정 결과에 적용하면 ‘우수’ 16개(29%), ‘보통’ 29개(53%), ‘미흡’ 10개(18%)의 분포를 보임

표 5-19. 등급분류기준의 1차 조정값에 적용하는 경우 등급 분포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합계
등급분류기준	70 이상	55~70 미만	55 미만	
기관 수	16	29	10	55
비율(%)	29	53	18	100

- ‘우수’(우수인증기관)의 비율(29%)을 전체 인증기관 64개에 적용하면 18~19개의 인증기관이 ‘우수’로 평가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 및 육성해야 할 민간 인증기관의 수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의 수⁹⁸⁾ 보다 많아짐
- 이에 등급분류기준을 표 5-20과 같이 재조정하여 각 등급의 점수 범위를 강화하고 등급분류기준을 4단계로 하면, ‘우수’ 7개(14%), ‘양호’ 20개(36%), ‘보통’ 14개(25%), ‘미흡’ 14개(25%)의 결과를 얻게 됨 (표 5-21)

98) 1차 및 2차 전문가 회의에서, 등급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광역 행정구역별 1개소의 전문 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체 인증기관 64개 중 6~10개(10~15%)의 인증기관을 우수인증기관으로 평가되도록 등급분류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2016.4.15. 및 2016.4.29.)

- 따라서, 등급분류기준을 1차 조정된 설정값에서 다시 조정하여 표 5-20과 같이 2차 조정한 기준을 제안함

표 5-20. 등급분류기준의 재조정 (2차)

구 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점수 기준	1차 조정	70점 이상	55~70점 미만	55점 미만	(없음)
	2차 조정	80점 이상	70~80점 미만	60~70점 미만	60점 미만

표 5-21. 등급분류기준의 2차 조정 후 등급 분포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분류 기준	80 이상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	
기관 수	7	20	14	14	55
비율(%)	14	36	25	25	100

4.6. 평가지표의 3차 교정

□ 평가항목별 점수 배정의 타당성 검토

- 2차 교정으로 조정된 20개의 기본지표와 3개의 가·감점지표의 평가 분야별 분포와 점수 비중을 재검토하였음⁹⁹⁾
- 2차 교정에서 평가지표의 추가 및 삭제 후 가치 분야와 평가 주제를 분류하면 다음 표 5-22와 같음
- 2차 교정에 따른 평가지표 23개를 분류하면 아이템의 수는 사회가치 부문이 13개, 경제가치 부문이 10개로서 57:43의 비율을 나타냄
- 배점이 된 20개의 아이টে에 대한 점수 비율은 사회가치가 60점, 경제가치가 40점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규정한 인증기관의 조직 성격에 비추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표 5-23과 같이 배점을 조정하고 아이টে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가치 분야별 점수 비율을 계산하면, 사회가치 부문이 68점 경제가치 부문이 32점으로 조정됨

99) 3차 전문가회의(2016.6.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표 5-22. 2차 교정에 따른 평가지표 분류

분야	평가 주제	지표명	배점
경제가치	인증실적	인증 건수	5
경제가치	인증규모	인증사업자 수	5
사회가치	인증업무 독립성 (공정성)	인증사업 매출비율	5
사회가치	책임성	인증기관 행정처분	5
사회가치	품질관리	자체 행정처분 실적	5
사회가치	품질관리	인증 부적합율	5
사회가치	전문성	교육훈련 투입량	5
사회가치	전문성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5
사회가치	고객 만족도	인증 갱신율	5
사회가치	사업자 역량강화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5
경제가치	효율성	관할지역 인증 비율	5
사회가치	효과성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5
사회가치	품질관리	사후관리 빈도	5
사회가치	정확성	이중체크 적발 비율	5
경제가치	고용안정성	상근심사원 퇴사율	5
사회가치	전문성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5
경제가치	노동가치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5
경제가치	사업규모	전년도 매출액	5
경제가치	안정성	부채비율	5
경제가치	성장성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5
사회가치	책임성	기관 과태료 부과	(감점)
경제가치	핵심역량	핵심역량 보유 현황	(가점)
경제가치	무형자산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가점)

표 5-23.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3차(최종) 교정 내역 - 배점 조정

지표명	배점	
	2차 교정	3차 교정
인증사업 매출비율	5	4
인증기관 행정처분	5	9
기관 과태료 부과	(감점)	(감점)
자체 행정처분 실적	5	5
인증 부적합율	5	5
사후관리 빈도	5	7
교육훈련 투입량	5	5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5	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5	7
인증 갱신율	5	4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5	5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5	7
이중체크 적발 비율	5	7
소계	60	68
인증 건수	5	4
인증사업자 수	5	4
전년도 매출액	5	5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5	3
부채비율	5	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5	5
상근심사원 퇴사율	5	5
관할지역 인증 비율	5	3
핵심역량 보유 현황	(가점)	(가점)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가점)	(가점)
소계	40	32
총계	100	100

○ 3차 교정 결과 표 5-24와 같이 인증기관 평가지표가 최종 도출되었음

표 5-24.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3차 교정 결과)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75~100% 4
		50~75% 미만 3
		35~50% 미만 2
		35% 미만 1
인증기관 행정처분	(전년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0이면 9
		1~3이면 7
		4~6이면 5
		7~9이면 3
		9초과 1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횟수)	1 건당 -1점 감점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	1.0% 이상 5
		0.5~1.0% 미만 4
		0.2~0.5% 미만 3
		0.2% 미만 2
		0 이면 1
인증 부적합율	('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5년 인증 건수}+{'15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건수)+(연말 인증건수)}/2]	120% 이상 7
		110~120% 미만 5
		100~110% 미만 3
		100% 미만 1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심사원 총투입일수)*8}/[{(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 ※ 비상근심사원 포함 ※ 8시간을 1일로, 4시간을 0.5일로 환산	4 이상 7
		3~4 미만 5
		2~3 미만 3
		2 미만 1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 7
		0.5~2.0% 미만 5
		2.0~4.0% 미만 3
		4.0% 이상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1.5 이상 5
		1.0~1.5 미만 4
		0.5~1.0 미만 3
		0.5 미만 2
		0.0 이면 1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의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2회 이상 3
		1회 참가 2
		미참가 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연말상근심사원수)	7년 이상 7
		5~7년 미만 5
		3~5년 미만 3
		3년 미만 1
인증 갱신율	(연간 인증갱신농가수)/(연초 인증농가수)*100	70% 이상 4
		55~70% 미만 3
		30~55% 미만 2 30% 미만 1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총시간)/[(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된 과목에 투여한 총시간을 합산	30 이상 5
		20~30 미만 4
		10~20 미만 3
		10 미만 2
		0 이면 1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400건 이상 4
		200~400건 미만 3
		100~200건 미만 2
		100건 미만 1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로 간주	1,000명 이상 4
		500~1,000명 미만 3
		200~500명 미만 2
		200명 미만 1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4억원 이상 5
		2~4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3
		0.5~1억원 미만 2
		0.5억원 미만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text{당기말 인증매출액})/(\text{전기말 인증매출액})\} * 100 - 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IOIA 교육, ISO 심사원 교육, HACCP 교육,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교육의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	1건당 1점 가점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5점 가점
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 100$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text{상근심사원 인건비})/(\text{총매출액}) * 100$	50% 이상 5
		40~50% 미만 4
		30~40% 미만 3
		20~30% 미만 2
		20% 미만 1
상근심사원 퇴사율	$(\text{상근심사원 퇴사자 수})/(\text{연초 상근심사원 수}) * 100$	20% 미만 5
		20~30% 미만 4
		30~40% 미만 3
		40~50% 미만 2
		50% 이상 1
관할지역 인증 비율	$(\text{관할지역 인증건수})/(\text{총인증건수})$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60% 이상 3
		40~60% 2
		40% 미만 1

4.7. 등급 분류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 분포 (최종 결과)

- 인증기관 등급 평가지표의 3차 교정 후 인증기관의 점수 분포를 보면 (부록 6 참조), 총점 평균은 64.25, 총점 최고점수는 88, 최저점수는 37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3차 교정 후에 다음 표 5-25와 같이 ‘우수’ 8개(14%), ‘양호’ 12개 (22%), ‘보통’ 18개(33%), ‘미흡’ 17개(31%)로 분포함

표 5-25. 인증기관 등급 평가지표 3차 교정 값에 따른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 이상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	
기관 수	8	12	18	17	55
비율(%)	14	22	33	31	100

4.8. 최종 설정된 평가지표의 분류 및 의미 검토

인증기관 등급 평가지표에 대한 3차 교정 결과 23개의 최종 지표가 설정되었으며(표 5-27), 최종 지표의 구성과 지표별 의미를 재검토 하였음 (지표항목의 초기 설계시 검토한(표 5-7) 내용을 최종 재검토하는 것임)

4.8.1. 평가영역의 분류

□ 사회가치와 경제가치의 점수 비율

- 인증기관은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유기식품등의 사회적 신뢰 구축이라는 사회가치와 적정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경제가치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함. 이에 ‘사회적 책임기업’의 성격에 따라 사회가치와 경제가치의 배점 비율을 65:35로 초기설정(표 5-6) 하였음
- 최종 평가지표의 수는 총 23개 항목으로, 사회가치 분야가 13개 경제가치 분야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에서 가·감점 지표를 제외한 배점지표는 20개의 항목으로 사회가치 분야가 12개, 경제가치 분야가 8개로 구성됨
- 최종 평가지표의 점수는 가·감점 지표를 제외하고 총 100점으로, 사회가치 분야가 68점 경제가치 분야가 32점으로 구성됨. 이는 초기 설정 비율(65:35)과 큰 차이 없이 ‘사회적 책임기업’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5-26. 인증기관 등급제 지표의 구성 비율 분석

대분류	지표의 총 수	배점지표의 수 (가·감점 지표 제외)	배점	비고
사회가치	13	12	68	
경제가치	10	8	32	
합계	23	20	100 + α	가·감점 지표에 의해 총점은 100 이상이 가능

□ 세부지표의 구성 검토

-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친환경인증기관의 가치를 사회가치와 경제가치로 대분류한 다음 인증기관의 성격에 맞게 지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사회가치에 대한 지표는 크게 ‘책임성’과 ‘전문성’으로 분류됨
 - 책임성은 인증업무의 독립성,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성, 사후관리 및 심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바탕이 됨
이에는 인증사업 매출비율, 기관 행정처분, 기관 과태료 부과, 자체 행정처분 실적, 인증 부적합율, 사후관리 실적, 사업자당 자원투입량, 이중체크 적발율이 해당됨
 - 전문성은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과 역량에 대한 지표로서,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임
이에는 교육훈련, 기관장의 역량, 심사원의 경력, 인증 갱신율, 사업자 교육이 해당됨

- 경제가치에 대한 지표는 크게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분류됨
 - 경제성은 인증기관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가 됨
이에는 인증 건수, 사업자수,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핵심역량, 무형자산(국제 인정)이 해당됨
 - 안정성은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직이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이에는 부채비율, 심사원의 인건비, 퇴사율, 관할지역 인증 비율이 해당됨

표 5-27. 인증기관 평가지표(최종안)의 영역별 분류

대분류	분류	지표명	지표의 의미	배점
사회 가치 (68점)	책임성 (44점)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업무의 독립성	4
		인증기관 행정처분	인정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성	9
		기관 과태료 부과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성	(감점)
		자체 행정처분 실적	사후관리의 적극성	5
		인증 부적합율	인증심사의 정확성	5
		사후관리 빈도	인증사업자 관리의 노력	7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인증심사의 정밀성	7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인증심의의 정확성	7
	전문성 (24점)	교육훈련 투입량	직원의 역량	5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전문성	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심사원의 전문성	7
		인증 갱신율	고객 만족도	4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사업자 역량 관리	5
	경제 가치 (32점)	경제성 (16점)	인증 건수	인증기관의 효율적 규모
인증사업자 수			인증기관의 실질적 규모	4
전년도 매출액			인증기관의 경제적 규모	5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인증사업의 성장성	3
핵심역량 보유 현황			경쟁력 향상의 주도	(가점)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국제 경쟁력	(가점)
안정성 (16점)		부채비율	사업체의 안정성	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심사원의 업무 가치	5
		상근심사원 퇴사율	고용 안정성	5
		관할지역 인증 비율	인증사업자 관리의 효율성	3

4.8.2. 평가 지표별 의미

□ 책임성

○ 인증사업 매출비율

- 인증사업 매출비율은 인증업무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인증기관이 인증사업 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전체 매출 중에서 인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본 지표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인증 외에도 자재 공시, GAP, 기타 국제적 인증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여 전문적 인증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검토하는 것임

○ 인증기관 행정처분

- 인증기관이 농관원으로 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개월 수를 지표에 반영한 것으로서,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지정기준) 준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이 길수록 인증기관의 책임성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관 과태료 부과

- 인증에 대한 정보 관리, 기록 미흡, 신고 누락 등과 같이 인증 절차에 직접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행정 실무에서의 과실이 발생할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평가지표로 함
- 2015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증기관은 2개의 인증기관으로, 대부분은 이 지표가 적용되지 않아 감점지표로 설정하였음

○ 자체 행정처분 실적

- 자체 행정처분 실적이란 인증기관이 인증 사업자를 관리하여 부적격한 사업자를 적발해 낸 실적으로서, 사후관리 시에 현장 평가의 정확성과 적극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 인증 부적합율

- 인증 부적합율은 인증심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심사원의 전문성과 심사 의지에 따라 생산자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준이 결정되므로 부적합율이 높을수록 심사의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원이 부적합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과대 해석하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부적합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본 지표의 만점 기준은 부적합율 2%로 낮은 수준으로 하였음(부적합율 평균 6.2%)

○ 사후관리 빈도

- 사후관리 빈도는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를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횟수를 인증건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서, 인증기관의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의 횟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인증사업자 관리에 대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은 인증기관이 사업자 1인당 심사 및 사후 관리에 투입한 시간으로서,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정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심사 및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생산자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할 수 있으므로 투입시간은 심사의 정밀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중체크 적발 비율

- 이중체크는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인증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된 인증기관의 심사보고서 등 인증 판정에 관련된 문서를 무작위 선정하여 인증심의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효율적인 인정관리 (Accreditation) 프로그램임
- 이중체크에서 적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인증기관의 인증심의회가 부실하게 이루어 졌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됨

□ 전문성

○ 교육훈련 투입량

- 교육훈련은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직원이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인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임
- 교육훈련 투입량은 상근심사원을 포함한 상근직원들이 업무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수료한 횟수로 평가함

○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인증기관장 중에는 인증업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대표직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인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대표가 인증에 대한 정책,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담당 직원들의 수행능력과 인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인증기관장의 역량은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식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나 문서를 통하여 평가함

○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상근심사원의 근속연수는 심사원들의 업무 경력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근무 경력이 높은 심사원이 많을수록 투입 시간에 대한 인증심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므로 인적자원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지표임

○ 인증 갱신율

- 인증 갱신율은 전년도 인증사업자 중에서 같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갱신한 비율을 말하며, 이는 사업자가 인증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업무 처리 속도, 인증 비용 등 다양한 면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냄

○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사업자 교육 실적은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규정, 주의사항 등을 인증사업자에게 교육하는데 투입된 시간을 말하며, 인증사업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증관련 사고의 발생율을 낮출 수 있음

□ 경제성

○ 인증 건수, 인증 사업자수, 전년도 매출액

- 인증 건수, 사업자수, 매출액은 인증기관의 규모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인증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수의 소규모 인증기관 보다는 영업실적이 높은 인증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증기관의 규모에 관한 지표를 총 13점(인증건수 4, 사업자수 4, 매출액 5)으로 배점하였음
- 인증 건수는 인증실적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개별 농업인, 농업인 단체, 가공사업자, 취급사업자 등에 발급한 인증서의 총 수를 말함
- 인증 건 중 농업인 단체의 경우에는 다수의 농업인이 한 건의 인증을 이루므로 인증 사업자수는 인증실적 중에서도 실질적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가 됨
- 인증 사업자수가 실질적인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나, 인증 사업자수의 전부가 심사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되지 않고 표본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관리 단위인 '인증 건수'도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을 평가하는데 필요하여 인증 사업자수와 인증 건수 둘 다 평가 지표에 포함시킴
- 전년도 매출액은 인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 실적으로, 인증기관의 경제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임

○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 매출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때에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증사업을 통한 매출의 증가율은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 핵심역량 보유 현황

- 핵심역량이란 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재, 기술 등을 보유한 상태로서 경쟁력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 인증기관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핵심역량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음
- 핵심역량에 대한 배점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수료한 인재로서 IOIA, ISO, HACCP, IFOAM, USDA-NOP, EC834/2007, JAS 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총횟수 당 1점씩 가점하도록 함

○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업무를 시행하지만, 인증기관 중에는 인증기관의 국제기준(ISO 17065)에 따른 인정을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인증기관들이 있음
- 이렇게 ISO 17065 인정서를 보유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안정성

○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으로 인하여 무리한 단기 매출 향상에 집중할 수 있어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상근심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이는 친환경농산물 심사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은 농업 및 식품공학의 기술적 지식,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현장 수행능력, 소통 능력 등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인으로서, 인증의 신뢰도는 심사원의 전문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인증영업의 실적에 대해 심사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상근심사원 퇴사율

- 상근심사원 퇴사율은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업은 고용이 안정되어야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안정된 고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됨
- 인증기관의 경우 심사원의 잦은 교체는 인증심사의 품질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주므로 심사원의 퇴사율이 낮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할지역 인증 비율

- 관할지역 인증 비율은 총 인증 건수 중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광역지역(시·도)의 인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동 시간 및 출장 경비 등 사업자 관리에 대한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을수록 상위 득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관할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9개로 분류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한 자치도와 같은 구역으로 분류함

표 5-28. 관할지역의 분류

경기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강원
충남지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충북
전북지역	전북
전남지역	광주, 전남
경북지역	대구, 경북
경남지역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제주

5.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의 법제화

5.1. 인증기관 지정제와 등급제의 차이

- 등급제의 개념 정립
 - 인증기관 등급제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¹⁰⁰⁾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함
 - 등급제의 목적은 민간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으로 인증기관별 차등 지원, 차등 관리, 우수기관 육성 등 인증기관 신뢰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향상
- 인증기관 지정제(Accreditation)에서는 평가 결과를 인증기관의 적격성 판정에 반영하여 인증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인증기관 등급제(Grading)는 적격한 인증기관들 중에서 경쟁력과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겨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증기관 지정제에서 인증기관에 부적합한 사항이 나타나면 평가 결과를 인증기관의 업무 정지, 지정 취소 등 제재에 적용하는 반면, 인증기관 등급제에서는 우수한 인증기관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의 우선권, 인증서에 우수인증기관 표시, 농관원 친환경 인증 정보 시스템에 우수인증기관 표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인증기관 등급제의 평가 결과는 인증기관 지정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등급에 따라 인증기관 사후관리(지도점검)의 빈도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음

100) 인증기관을 지정 및 사후관리하는 제반 업무를 인정(認定, Accreditation)으로 칭함

표 5-29. 기존의 인증기관 지정제와 등급제의 비교

	인증기관 지정제	인증기관 등급제
목적	인증업무에 적합한 법인의 지정 을 통해 인증 실시	우수인증기관 육성 및 국제경쟁 력 향상
영문 명칭	Accreditation	Grading
평가 결과 적용	부적격한 인증기관의 제재 예) 업무 정지, 지정 취소 등	적격한 인증기관 중에서 우수 인증기관의 육성 및 지원 예) 인증서에 우수인증기관 표 시 등
근거 규정	친환경농어업법 ¹⁰¹⁾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 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 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 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 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두 제도의 공조	차등관리 예) 인증기관 등급제를 통하여 인증기관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빈도 결정. 예컨대, A등급: 2년 1회, B등급: 2년 3회, C등급: 1년 2회	

10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5.2.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기존 법령의 검토

□ 인증기관 육성에 관한 규정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 친환경농어업법 제7조에서는 농식품부¹⁰²⁾ 장관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함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 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 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함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4. 환경친화형 농업·축산업·임업(이하"농업"이라 한다)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5. 농산물의 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6. 유기식품 등 또는 무농약농산물 등의 품질관리 방안
 7.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9.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2) 농림축산식품부를 약칭함

- 인증기관을 양성하는 방안으로서 인증기관 등급제를 도입한다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육성계획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여 등급제를 언급할 수 있음
- 이는 등급제의 시행 목적이 인증기관의 관리·통제라기보다는 인증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인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인정업무(Accreditation)와 뚜렷하게 구별해야 함
- 등급제를 시행규칙에 언급할 수 있는 방법은 ①관련된 내용을 법 시행규칙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명시하거나, 또는 ②제4조의 제10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인증기관 양성을 위한 등급제 도입 방안을 기술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법 제7조 제10항에서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위 두 가지 방법 중에는 ①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 제4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법체계에 따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 법 제16조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
 -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 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 어업 자재
- 시행령 제2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 인증기관의 인증 실적과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인증기관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원칙과 방법론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인증기관 등급제는 현행법(제16조)과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차등 지원을 근거로 하여 시행규칙에 이를 시행할 때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고시를 통하여 세부 시행 요령을 규정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임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Accreditation)에 관한 규정

○ 인정업무에 관한 규정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인정업무에 관한 여러 규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음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제28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34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 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 [별표9]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별표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이상은 인증기관 지정제에 관계된 시행규칙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하위법령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 농관원 고시¹⁰³⁾ 제2015-56호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은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 농관원 고시(2015-56)의 내용은 ①인증 기관의 지정, ②인증 기관의 사후관리, ③인증심사원의 관리로서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기관의 등급 평가와 육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0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기존의 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서는 인증기관의 등급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인정업무와 육성방안으로서 등급제는 그 목적과 업무 성격이 다르므로, 등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인정업무와 구별하여 등급제에 관한 고시를 신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등급제 시행을 위한 고시안을 제시함

표 5-30.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련된 친환경농어업 법령 조항 분석

code	친환경농어업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검토사항
GA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0.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0.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법에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인증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음
GB		제4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농식품부 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지정 갱신 업무를 다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대학 또는 그 소속 법인 - 한국농수산대학 - 그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GC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항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농관원에 위임하고 있음
GD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또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인증기관의 경우 시행령 제2조에서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을 차등의 근거로 하고 있음

code	친환경농어업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검토사항
GE	제2절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제26조 ~ 제29조 제3절 유기식품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2조 ~ 제33조		제3장 제2절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제26조 ~ 제35조 제38조	<p>법에서 인증기관의 인정업무(Accreditation)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시행규칙에서 인증기관의 지정, 사후관리 등 인정업무(Accreditation)에 대한 주요 원칙을 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인증업무의 범위 -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GF			[별표 9]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나타냄
GG			[별표 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인증기관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 절차를 나타냄
GH		제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인증기관, 생산자, 자재공시 등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정하고 있음

□ 등급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GA.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인증기관의 육성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육성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시행규칙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서 인증기관의 육성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등급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

GB 및 GC.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인정업무, Accreditation)에 대한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정업무의 전반을 농관원이 담당하면서도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평가 업무(Assessment)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인정업무 중에 주요 기능인 평가 업무를 농관원 외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외부기관은 ISO17065¹⁰⁴⁾ 인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ISO17011¹⁰⁵⁾ 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 등급제에 관해서는 본 조항들과 별도로 신설하여 평가의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등급제 평가 목적: 인증기관 육성
- 인정제 평가 목적: 인증기관 통제

GD.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나타나 있는 조항들로서,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시행령에서는 평가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증 실적과 사후관리 실적을 명시하여 인증기관의 양적 실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인증의 품질과 신뢰성이라는 질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차등 지원을 위해서는 등급제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규칙에 신설될 필요가 있음

104) ISO/IEC 17065:2012.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 and services

105) ISO/IEC 17011:2004.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GE, GF, GG, GH. 인정업무에 관한 조항들로서 인증기관의 지정, 사후관리, 제재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 등급제와는 그 목적과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이 조항들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고 등급제에 관한 조항은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5.3. 등급제 시행을 위한 친환경농어업 법령 개정 방안

- 법 제16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인증기관을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나, 기여도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경쟁력, 가치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차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조항을 개정함
-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언급하고 있는 법 제32조에 이어 등급평가 시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시행령 제2조에서 인증기관을 평가할 때에 인증 실적과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함께 평가하여 양과 질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도록 함
- 시행규칙에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인증기관 지원을 위한 평가로서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의 인정제에 대한 고시와 구분하여 등급제를 위한 별도의 고시를 신설하도록 함

표 5-31.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을 위한 기존 법령의 제·개정안 요약

법령	현행	개정안
법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 2 제 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신설)	<p>제32조의 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 향상 및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 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 결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법령	현행	개정안
시행령	<p>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또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p>	<p>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의 2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또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실적, 신뢰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p>
시행규칙	(신설)	<p>제29조의 2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p>

제6장

표준심사관리비의 개선

1. 현행 표준심사관리비 적용에 따른 투입시간 분석

1.1. 인증기관 실질 수입

- 현 인증수수료 체계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¹⁰⁶⁾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농산물의 경우)
 - 신청수수료(F_a)
인증 신청비는 인증 신청에 따른 접수 수수료로서 신청 건별 5만 원으로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의되어 있음
 - 심사관리비(F_m)
심사관리비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드는 비용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 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에 대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임
 - 출장비(F_d)
심사원이 현장을 왕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이는 5급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적용함
 - 시험분석비(F)
토양, 수질, 생산물 등에 대한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1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F_t = F_r + F_l + F_d \quad \dots\dots\dots (1)$$

$$F_r = F_a + F_m = 50+157 = 207^{107)} \quad \dots\dots\dots (2)$$

- F_t = 1농가당 인증수수료 총액
- F_r = 1농가당 평균 인증비(인증기관의 실질 수입)
- F_l = 1농가당 시험분석비
- F_d = 1농가당 출장경비
- F_a = 1농가당 인증신청수수료
- F_m = 1농가당 평균 인증심사관리비

-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증수수료의 비목들 중에서 인증기관의 실질 수입에 이바지하는 비목은 신청비와 심사관리비임. 그중에서 신청비는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비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인증기관이 업무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목은 심사관리비(F_m)임
- 심사관리비도 인증기관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 편향을 보이지 않고 인증 신청인의 비용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관원 고시에서 표준심사관리비를 제시하고 있음

표 6-1. 현행 표준심사관리비

농가수	1~5	6~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0 이상
농산물 심사관리비 (천원/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축산물 심사관리비 (천원/농가)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 농가 수에 따라 심사관리비의 표준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체 인증에서 표본 심사가 가능하므로, 농가 수가 많아질수록 단위 농가별 인증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임

107) 표준 심사관리비는 농가수가 1~5명인 경우를 적용한 것임

- 개별 농가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신청수수료(50천원)와 더불어 207천원의 수입이 발생함.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실질 수입은 농가당 약 188천원이 됨

1.2. 인증기관의 적용 실태

- 표준 심사관리비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 1 농가 인증 시에 207천원(=신청수수료 50천원 + 심사관리비 157천원)의 수수료가 계산되나, 개별 인증기관이 정하여 공시한 심사관리비는 평균 266천원으로 표준 심사관리비의 약 169%에 이름¹⁰⁸⁾
- 기관 유형별 심사관리비 체계를 살펴보면 표 6-2와 같음. 기관 유형에는 영리법인이 전체 인증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55%)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학(22%), 비영리기관(17%), 공공기관(5%), 기타(1%) 순서임
- 심사관리비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영리법인이 314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학(234천원), 비영리기관(184천원), 기타(250천원), 공공기관(157천원) 순서임

표 6-2. 기관 유형별 심사관리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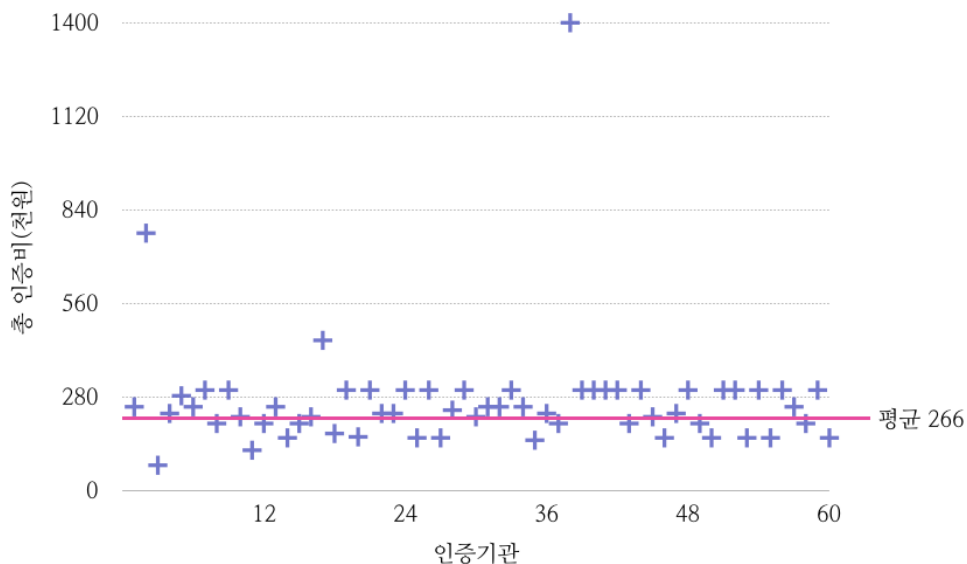
요인 구분	서류심사 (천원)	현장심사 (천원)	심사 보고서 작성 (천원)	생산과정 조사 (천원)	금액 평균 (천원)	표준비용 과 차이 (천원)	사후관리 비용의 비중(%)	기관 유형별 수
전체평균	55	90	50	71	266	109	28	60
영리법인 평균	68	108	61	77	314	157	25	33
비영리 법인평균	35	60	36	52	184	27	31	10
대학평균	44	81	38	72	234	77	29	13
공공기관 평균	34	34	24	65	157	0	42	3
기타평균	50	100	50	50	250	93	20	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108) www.enviagro.go.kr 에 공시된 63개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

- 전체 심사관리비에서 사후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공기관이 42%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비영리 법인(31%), 대학(29%), 영리법인(25%), 기타(20%) 순서임
- 표 6-2. 기관유형별 심사관리비 체계에서 수수료 금액의 평균과 표준 심사관리비와의 차이가 영리법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사후관리비용은 기관 유형 중 영리법인이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수수료가 높다고 하여 사후관리 비용이 높은 것은 아님

그림 6-1. 민간인증기관 수수료 분포



- 민간인증기관 심사관리비의 표준편차는 176.13411이며 수수료는 최소 90천원에서 최대 442천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
- 가장 높은 심사관리비는 1,400천원으로 표준 심사관리비 보다 1,243천 원 많음. 기본 1일 투입비용을 책정하여 인증을 위하여 투입되는 일수 만큼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함¹⁰⁹⁾

109) 서비스에 소요되는 투입일수에 투입일금액(man-day 혹은 person-day라고 함)을

- 가장 낮은 인증 수수료는 75천원으로 표준 심사관리비보다 82천원 적었으며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친환경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평균 매출액은 252,585천원이며, 평균 인증 건수는 345.3, 평균 인증 농가 수는 1,118명이며, 평균 상근심사원 수는 4명임
- 상근 심사원 인건비 총액의 평균은 160,225천원이고, 상근 심사원 1인당 인건비의 평균은 32,670천원임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투입시간은 평균 274일이고, 사후관리 투입시간은 평균 168일임
- 사후관리에 투입된 총 방문 횟수는 인증기관 당 평균 780회이며, 이는 한 건당 2.3회, 한 농가당 0.7회임
- 단체 인증 시 표준 심사관리비와 인증기관 공시 심사관리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6-3과 같음. 단체인증 시 표준 심사관리비와 비교하면 인증기관 공시 심사관리비 부과기준은 평균 178%임

표 6-3. 단체 인증 시 표준 심사관리비와 인증기관 공시 심사관리비 비교

농가수	1~5	6~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0 이상
표준 관리비 (천원/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인증기관 공시 심사관리비 (천원/농가)	266	211	204	196	190	184	180	175	170	165
표준관리비 대비 인증기관 공시 금액(%)	169	179	182	181	181	180	180	179	175	174

자료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추가비용 징수 사례

전체 인증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아니며 인증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면적, 품목, 필지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 하고 있음

- 면적 당 추가비용 징수

24개 민간인증기관이 면적당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평균 1ha 당 49천원 추가 부과

표 6-4. 면적 당 추가비용 징수

구분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1ha 당	3개 인증기관	2개 인증기관	15개 인증기관	3개 인증기관

자료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필지 당 추가비용 징수

2개 민간인증기관이 필지 당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10필지 초과 시 필지 당 5천원 추가, 5필지 초과 시 필지 당 1만원을 추가하는 인증기관 존재

- 품목 당 추가비용 징수

2개 민간인증기관이 품목 당 추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6품목 이상 시 품목당 1만원 추가, 3품목 이상 시 품목 당 3만원을 추가하는 인증기관 존재

1.3. 투입시간 분석

□ 건당 투입시간

- 본 연구에서 농산물 인증 1건당 투입시간 분석은 농가 수가 1인인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함. 즉, 전 농가가 심사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되며 표본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인증기관의 경영은 수수료와 심사관리비에 의한 수입을 통하여, 인건비 등 경상비 등의 지출을 충당하고 수익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유사계통인 사업서비스¹¹⁰⁾ 분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67.9%¹¹¹⁾로서 인증기관들의 평균값 70.0%(표 6-6 참조)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이를 준용할 수 있음. 이 경우 1건당 매출액 207천원에서 인건비에 드는 금액은 약 140천원임

$$S_t = F_r \times r_s = 207 \times 0.679 = 140 \quad \dots\dots\dots (3)$$

S_t = 1건당 인건비 소요액

r_s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사업서비스업종 준용)

- 예상 소요 인건비 140천원은 심사원의 2회 현장 파견뿐만 아니라, 행정요원, 인증심의관의 판정, 대표이사와 임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총 인건비가 됨. 이 중에서도 심사원에 해당하는 비중은 약 69%(표 6-6 참조)로서 심사원의 인건비는 농가당 66천원이 됨

$$S_i = S_t \times r_{si} = 140 \times 0.69 = 96.6 \quad \dots\dots\dots (4)$$

S_i = 1건당 심사원 인건비 소요액

r_{si} = 인건비 중 심사원인건비 비중

110)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

광범위한 아웃소싱 활동 중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기능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가 되는 서비스 산업. 가치사슬상 중간 투입물로 활용되며 예컨대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인력개발, 마케팅, 리서치 등이 있다.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1) 한국노동연구원(2008). 임금제도 실태조사

- 심사원은 정규심사(신규 및 갱신)와 사후관리로 인증 건당 2회의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심사원 1인의 1회 심사에 투입되는 단위 관리비는 건당 48.3천원이라고 할 수 있음¹¹²⁾

$$C_i = S_i \div N_i = 96.6 \div 2 = 48.3 \quad \dots\dots\dots (5)$$

C_i = 1회 심사(또는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단위 관리비
 N_i = 심사 및 사후관리 투입 횟수

- 중소기업체의 업종 중에서 인증심사원과 동등 수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업종인 기타공학 품질관리원의 경우 일급 기준 노임 단가는 93.7천원으로서¹¹³⁾, 이를 인증심사원에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1건에 대하여 1회의 심사관리에 투입되는 심사원의 인건비 48.3천원은 1일 노임의 52%로서 약 4.2시간의 심사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비용임

$$T_i = (C_i \div C_{id}) \times 8 = 48.3 \div 93.7 \times 8 = 4.16\text{시간} \quad (6)$$

T_i = 건당 1회 심사(또는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심사원의 시간
 C_{id} = 일급 기준 노임단가(기타공학품질관리원의 단가 준용)

- 심사원 1인의 1회 심사 (또는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4.2시간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 이동시간이 포함됨

$$T_i = T_p + T_{s1} + T_r + T_{s2} + T_d \quad \dots\dots\dots (7)$$

T_p =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심사 준비)
 T_{s1} =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T_r =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T_{s2} =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서류심사 및 보고서 작성 포함)
 T_d = 이동 및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112) 표본 심사가 아닌 전 사업자가 심사 및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113) 중소기업중앙회(2014).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서 ‘기타공학 품질관리원’을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1회의 현장 투입(4.2시간)에는 이동시간(T_d)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표준심사관리비를 적용하는 경우 장거리 출장의 실제현장 투입시간(T_s)은 더욱 단축될 것임
-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기관이 한 건에 투입하는 시간은 심사관리(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 이동시간), 행정관리, 심의 및 판정에 투입되는 총 시간이며, 한 건당 인건비 소요액(S_t)에 유사업종의 일급 기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인증기관의 총 투입시간을 추정할 수 있음

$$T_a = T_i \times N_i \quad \dots\dots\dots (8)$$

$$T_t = T_a + T_o + T_c \quad \dots\dots\dots (9)$$

$$T_t = (S_t \div C_{id}) \times 8 = 140 \div 93.7 \times 8 = 12\text{시간} \dots (10)$$

T_t = 1건에 투여되는 인증기관의 총 시간

T_a = 1건에 투여되는 심사원의 총 시간

T_o = 1건에 투여되는 행정관리 시간

T_c = 1건에 투여되는 심의 및 판정 시간

□ 농가당 투입시간

- 단체 인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농가가 심사 및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에 대한 단체 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표본 심사가 시행되므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 대상이 되지 않는 농가가 다수 있음
- 단체 인증의 표본 심사로 인하여, 실제 농가당 평균 방문 빈도는 연간 0.7회가 됨

$$N_f = N_t \div N_f = 20,282 \div 29,020 = 0.70 \quad \dots\dots (11)$$

N_f = 농가당 연간 방문 횟수
 N_t = 연간 총 방문 횟수
 N_f = 총 농가수

- 단체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1 농가당 연간 방문 횟수(N_f)가 2회가 되어 농가당 12시간이 투입되는 것이지만, 실제 농가당 방문 횟수는 $0.7(N_f)$ 회로서 실제 농가당 투입되는 시간은 식(10)의 인증기관이 한 건에 투입하는 총 시간(12시간)의 N_f/N_i 로 감소됨

$$T_f = T_t \times N_f/N_i = 12 \times 0.7/2 = 4.2\text{시간} \quad \dots\dots (12)$$

T_f = 실제 농가당 투입되는 시간

- 결론적으로, 인증기관이 한 농가당 연간 투입하는 시간은 평균 4.2시간이며, 이를 총 인건비 대비 심사원 인건비 비중 r_{si} (69%)를 적용하면 심사원이 한 농가당 연간 투입하는 시간은 평균 약 3시간임

$$T_a = T_f \times r_{si} = 4.2 \times 0.69 \approx 3\text{시간} \quad \dots\dots\dots (13)$$

T_a = 한 농가에 투여되는 심사원의 총 시간

표 6-5. 인증기관 수수료 체계(농산물 개인 농가 인증비용)

인증기관 업시코드	신청 수수료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	총 금액	표준 비용과 차이
FA01	50	30	52	84	84	250	93
FA02	50	220	330	110	110	770	613
FA03	50	7.5	15	15	37.5	75	-82
FA04	50	46	69	46	69	230	73
FA05	50	28.3	141.5	28.3	84.9	283	126
FA06	50	58	59	58	75	250	93
FA07	50	60	120	90	30	300	143
FA08	50	50	50	50	50	200	43
FA09	50	60	120	30	90	300	143
FA10	50	40	100	44	36	220	63
FA11	50	20	30	20	50	120	-37
FA12	50	20	50	30	100	200	43
FA13	50	50	100	25	75	250	93
FA14	50	19	31	75	32	157	0
FA15	50	20	80	40	60	200	43
FA16	50	44	110	22	44	220	63
FA17	50	100	100	20	229	449	292
FA18	50	30	80	20	40	170	13
FA19	50	60	90	60	90	300	143
FA20	50	40	40	40	40	160	3
FA21	50	60	120	30	90	300	143
FA22	50	46	92	46	46	230	73
FA23	50	50	100	50	30	230	73
FA24	50	60	120	30	90	300	143
FA25	50	21	40	26	70	157	0
FA26	50	60	120	30	90	300	143
FA27	50	15.7	62.8	47.1	31.4	157	0
FA28	50	40	100	50	50	240	83
FA29	50	60	120	45	75	300	143
FA30	50	44	88	11	77	220	63
FA31	50	50	100	50	50	250	93
FA32	50	75	100	25	50	250	93
FA33	50	50	100	100	50	300	143
FA34	50	70	50	100	30	250	93
FA35	50	30	50	20	50	150	-7
FA36	50	23	46	115	46	230	73
FA37	50	30	70	30	70	200	43
FA38	50	350	350	350	350	1,400	1,243
FA39	50	60	120	30	90	300	143
FA40	50	90	90	30	90	300	143
FA41	50	60	120	30	90	300	143
FA42	50	75	105	30	90	300	143
FA43	50	50	80	30	40	200	43
FA44	50	100	100	50	50	300	143
FA45	50	44	66	44	66	220	63
FA46	50	31	47	47	32	157	0
FA47	50	46	69	69	46	230	73
FA48	50	60	120	30	90	300	143
FA49	50	50	50	50	50	200	43
FA50	50	31.4	23.55	23.55	78.5	157	0
FA51	50	60	120	30	90	300	143
FA52	50	50	80	80	90	300	143
FA53	50	31.4	31.4	15.7	78.5	157	0
FA54	50	60	120	45	75	300	143
FA55	50	31.4	31.4	15.7	78.5	157	0
FA56	50	60	90	90	60	300	143
FA57	50	50	100	75	25	250	93
FA58	50	40	100	30	30	200	43
FA59	50	60	120	30	90	300	143
FA60	50	39.3	39.2	39.3	39.2	157	0
평균	50	55	90	50	71	266	109

자료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표 6-6. 인증기관의 매출 및 심사관리 실적

(단위:천 원)

기관 입시 코드	인증 건수	인증 농가수	친환경 인증사업 매출	상근 심사원 인건비/ 매출액	농가별 평균 인증비	간별 평균 인증비	상근심사원 1인당 인건비평균	2015말 상근심사 원수	2015말 정규직원 수	정규심사 총건수	사후관리 총건수	총 방문 건수	상근 심사원 정규심사 건수	상근 심사원 사후관리 건수	상근 심사원 총방문 건수
F01	475	2,015	327,908	0.53	163	690	43,059	4	7	783	408	1191	458	159	617
F02	362	496	24,610	0.11	50	68	23,475	4	10	354	354	708	313	354	667
F03	343	1,200	323,245	0.40	269	942	32,168	4	6	343	400	743	343	400	743
F04	246	317	338,663	0.45	1,068	1377	38,070	4	6	354	374	728	301	359	660
F05	385	1,239	299,674	0.19	242	778	19,364	3	3	346	1,007	1353	329	959	1,288
F06	147	434	173,266	0.48	399	1179	17,195	5	5						0
F07	251	419	111,140	0.01	265	443	42,667	3	5	266	266	532	261	266	527
F08	1,120	2,430	770,720	0.05	317	688	14,752	3	7	1,120	381	1501	95	82	177
F09	124	599		0.41			46,916	4	9	124	119	243	124	119	243
F10	94	272	81,133	0.54	298	863	15,133	3	3	71	239	310	68	239	307
F11	443	1,867		0.30	0.55		27,247	6	6	417	444	861	417	444	861
F12	291	363	77,620	0.21	214	267	5,400	3	4	306	47	353	306	47	353
F13	326	1,465	0	0.49	0.49		46,286	5	7	326	326	652	326	326	652
F14	199	729	82,964	0.26	114	417	44,499	7	18	225	319	544	225	319	544
F15	270	1,222	379,000	0.54	310	1404	29,076	7	8	307	210	517	298	210	508
F16	308	1,004	295,923	0.15	295	961	10,800	4	7	447	239	686	428	219	647
F17	475	1,010		0.68	0.74		68,706	5	7		452	452		452	452
F18	1,405	1,771		0.26	0.41		33,042	9	14	1,556	1,929	3485	1,437	1,810	3,247
F19	267	2,033	231,035	0.20	114	865	24,000	5	5	267	184	451	265	184	449
F20	965	1,670	564,226	0.38	338	585	53,675	4	7	965	1,933	2898	965	1,933	2,898
F21	511	1,229	317,322	0.51	258	621	33,374	5	6	562	505	1067	561	505	1,066
F22	460	1,855	550,000	0.36	296	1196	33,333	6	6	523	1,455	1978	460	1,455	1,915
F23	267	1,338	354,710	0.32	265	1329	38,333	3	3	267	168	435	267	168	435
F24	306	591	150,323	0.24	254	491	18,295	5	5	326	232	558	323	232	555
F25	649	1,174	513,311	0.47	437	791	56,000	5	10	639	968	1607	447	713	1,160
F26	71	71	0	0.05	0.55		32,385	17	17	77	101	178	77	101	178
F27	571	1,169	375,133	0.40	321	657	49,865	3	6	571	217	788	546	217	763
F28	222	541	152,282	0.91	281	686	31,358	5	7	272	424	696	271	424	695
F29	52	375	141,810	0.42	378	2727	19,671	3	9	52	188	240	46	170	216

기관 입시 코드	인증 건수	인증 농가수	친환경 인증사업 매출	상근 심사원 인건비/ 매출액	농가별 평균 인증비	간별 평균 인증비	상근심사원 1인당 인건비평균	2015말 상근심사 원수	2015말 정규직원 수	정규심사 총건수	사후관리 총건수	총 방문 건수	상근 심사원 정규심사 건수	상근 심사원 사후관리 건수	상근 심사원 총방문 건수
F30	195	1,213	381,508	0.45	315	1956	24,668	7	7	195	402	597	195	402	597
F31	292	1,532	476,605	0.49	311	1632	46,299	5	7	309	224	533	308	224	532
F32	252	346	252,000	0.32	728	1000	20,000	4	5	184	198	382	184	198	382
F33	12	12	10,868	0.01	906	906	46,667	3		12	12	24	12	12	24
합계	12,605	34,710	7,879,919		9,207	25,518	1,085,778	163	232	12,566	14,725	27,292	10,656	13,702	24,358
평균	360	992	254,191	0.35	341	945	32,902	5	7	405	460	853	344	428	738

※ 이 표는 인증기관 현황조사 시 인건비 등의 질문에 대하여 의미 있는 답변을 한 33개 인증기관의 데이터임

2. 표준 심사관리비 개선의 필요성

2.1. 표준 심사관리비 도입 과정

- 1998년 환경농산물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농관원에 환경농산물 표시를 신고하는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없었음
-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인증심사 및 심의 등 업무량이 증가하여 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이 나타났음
 - 이에 인증신청 시 ‘인증신청수수료’를 3만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유효기간연장 신청수수료는 15천원이었음(2001년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8)
 - 수수료는 농관원에 납부할 시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내도록 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경우 온라인 입금 등의 방식으로 납부하였음
- 2002년 민간인증기관이 최초 설립되어 (당시 사단법인 흙살림) 인증기관의 경영 수지를 감안하여, 민간인증기관은 신청수수료 외에도 운영비 징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음
 -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를 인증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인증기관별로 다양한 징수 방법과 비용이 적용되었음
(예컨대. A인증기관은 1농가당 5만원의 운영비 징수, B인증기관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징수)
- 2003년 신청수수료(3만원)는 바뀌지 않았으나,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또한 운영실비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하였음(당시 법 시행규칙)
 - 2003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8의 1.다. 인증기관의 운영실비

- (1) 인증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2) (1)의 운영실비는 농림부 장관이 그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 2007년 신청수수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2011년 농식품부장관이 ‘운영실비의 상한액’을 고시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농관원장이 ‘표준 심사관리비’를 고시하도록 하였음
- 2013년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서 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표준 심사관리비가 고시되었으며, 농관원 홈페이지에 인증기관별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하였음
- 2013년 고시된 표준 심사관리비(1농가의 경우 157천원)는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인상이 요구되고 있음

2.2. 표준 심사관리비와 실제 부과액의 격차

- 현재 인증기관에서 공시한 심사관리비는 평균 266천원으로 농관원 고시에서 표준 심사관리비로 제시된 157천원보다 109천원(69%) 높게 적용되고 있음
- 인증기관의 실질 징수액은 1농가당 평균 224천원으로, 인증기관의 심사관리비 공시액 평균 266천원의 84%를 부과하고 있으며, 표준 심사관리비의 143%를 부과하고 있음 (표 6-5 및 표 6-6)
- 인증기관의 실질 징수액이 그들이 공시한 부과 기준과 다른 이유는 농업인 단체 인증의 경우 표본 심사를 실시하여 농가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부과액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인증기관이 실제 부과한 심사관리비에 따른 인증기관의 경영 실태는 인증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252,585천원이며 상근심사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9,791천원으로서, 인증기관이 경영 실정에 맞게 조정된 심사관리비보다 낮은 현행의 표준 심사관리비를 적용하는 경우 경영 악화가 우려됨
- 인증기관이 실제 부과한 심사관리비에 따른 심사관리 실적은 평균 345건에 대하여 780회의 방문을 통하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건당 2.26회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인증기관의 공시 금액보다 낮은 현행의 표준 심사관리비를 적용하는 경우 심사관리 실적이 하향화 될 것임
- 표준 심사관리비와 실제 부과액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 1안: 실제 부과액을 표준 심사관리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
 - 2안: 표준 심사관리비를 실제 부과액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
- 1안과 같이 인증기관들에게 현행 표준 심사관리비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경영 및 관리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2안의 표준 심사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2.3. 인증기관 운영 규정의 변화

- 2013년 현재의 표준심사관리비가 고시되던 당시에는 인증기관이 상근심사원 2인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상근심사원 5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음
- 또한 심사원 1인이 관리하는 사업자가 최대 500인까지 가능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심사원 1인당 4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인증할 수 없어 농가 1인당 투입되는 비용에 변화가 생겼음
- 현재의 표준심사관리비를 책정할 당시에는 인증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에 5~7인의 인증위원회의 검토회의를 통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 인증기관들의 46%는 인증심의관 방식¹¹⁴⁾을 채택하였으므로 인증심의관의 인건비를 고려하여야 함

114) 1인의 전문 심의관이 심사 절차 및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

- 현재의 표준심사관리비를 고시한 후 물가인상율이 반영되지 않아, 2013년도 이후의 물가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함. 2013~2015년 물가 인상율은 3.3%임

표 6-7.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물가	3	4	2.2	1.3	1.3	0.7
- 농축수산물	10	9.2	3.1	-0.6	-2.7	2
- 공업제품	3.2	4.9	2.8	0.9	1.3	-0.2
- 집세	1.9	4	4.2	2.7	2.3	2.5
- 공공서비스	1.2	-0.4	0.5	0.7	0.8	1.2
- 개인서비스	2.2	3.7	1.1	1.6	1.7	1.9
근원물가	1.8	3.2	1.6	1.6	2	2.2
생활물가	3.4	4.4	1.7	0.7	0.8	-0.2

2.4. 해외의 인증비 수준과 비교

- 유럽의 인증기관들의 경우 표 6-8과 같이 한 농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시간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2.5시간이며¹¹⁵⁾, 이는 이동시간과 행정 및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것임

$$T_{eu} = 1\text{농가당 인증관리 총 투입시간(유럽연합)} = 12.5\text{시간}$$

115) Lizzie Melby Jespersen(2011). "ORGANIC CERTIFICATION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CONTROL FEES AND SIZE OF THE SECTOR"

- 유럽연합의 인증제도(EC834/2007 & EC889/2008) 및 개별 프로그램들(Soil Association 및 BioSwiss 등)에서는 인증기관이 사업자를 사후관리하는 빈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기관별로 자율 시행(예컨대, Skal 및 CUC의 경우 총 인증 건수의 5~10%)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1회의 심사에 투입되는 노력량(시간)은 50% 이하로 분산되어 더욱 낮아질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유럽연합의 1회 심사와는 질적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됨
-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한 건당 총 투입시간은 유럽 인증기관의 96% 수준으로(12시간) 투입되는 시간은 비슷하지만, 인증비는 유럽 인증기관의 29% 수준으로(207천원) 유럽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같은 투입시간에 대해 유럽의 인증 건당 방문 빈도가 평균 1.1회로 추정¹¹⁶⁾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 인증에서는 건별 2.0회 이상임. 인증 건별로는 우리나라의 방문 빈도가 높지만, 우리나라 인증에는 단체 인증에 속한 농가들에 대한 표본 심사가 적용되어 농가당 방문 빈도는 0.7회(표 6-11 참조)로서 유럽의 64% 수준임
- 표 6-8에서 유럽 인증기관들의 농가당 평균 인증비용은 535.2 EUR(채소류)과 617 EUR(낙농)로 보고되었음. 이는 우리나라 표준 인증 수수료의 약 3.3배의 수준

116) 유럽,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건에 대한 사후관리 빈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증기관의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증건수의 5% 또는 10%를 무작위 또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따라 선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음

표 6-8. 유럽의 국가별 농가당 평균 인증비 및 인증관리 투입시간

	채소류 농장		낙농	
	투입비용 (단위:유리)	투입시간	투입비용 (단위:유리)	투입시간
독일	420	5	367	4
이탈리아	375	14	346	13.5
영국	526	11	571	12
스위스	811	7	1,003	7
터키	544	25.5	798	34
평균	535.2	12.5	617	14.1

자료 : Lizzie Melby Jespersen(2011)

표 6-9. 유럽의 국가별 가공사업자당 평균 인증비 및 인증관리 투입시간

	밀가루 공장	
	투입비용 (단위:유리)	투입시간
독일	543	6
이탈리아	277	7.5
영국	718	16.5
스위스	762	5.5
터키	415	20.5
평균	543	11.2

자료 : Lizzie Melby Jespersen(2011)

표 6-10. 우리나라와 유럽의 한 사업자당 인증비 및 투입시간 비교

(단위:천 원)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F_r = 친환경농산물 신청 수수료 + 표준심사관리비	207	258	510
F_{eu} = 유럽 인증기관 평균 인증비	705	812	715
T_t = 1농가당 인증기관의 총 투입시간	12	-	-
T_{eu} = 유럽 1농가당 인증관리 총 투입시간	12.5	14.1	11.2
$F_r : F_{eu}$ (인증비용의 비교)	0.29 : 1	0.32 : 1	0.71 : 1
$T_t : T_{eu}$ (1농가당 투입시간 비교)	0.96 : 1	-	-

- 이를 유럽연합의 투입시간과 비교하면 유럽연합의 1 농가당 투입시간 (12.5시간)의 34%에 해당하는 시간(4.2시간)이 투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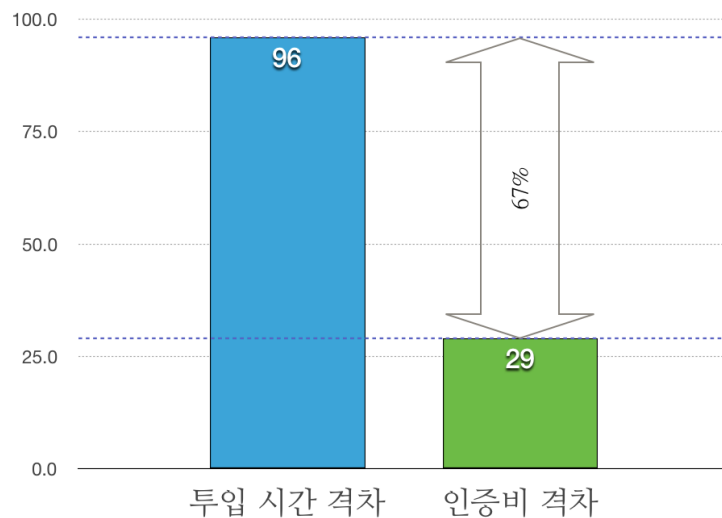
표 6-11. 인증기관의 투입시간 비교 (한국:유럽)

투입시간 비교	투입시간 비율	유럽 대비 투입시간 비율	비고
$T_t : T_{eu}$	12 : 12.5	96%	건당 투입시간
$T_f : T_{eu}$	4.2 : 12.5	34%	농가당 투입시간
$N_r : N_{eu}$	0.7 : 1.1	64%	농가방문 빈도의 비교

$$N_{eu} = 1.1 = \text{유럽 인증기관의 농가당 방문 빈도}^{117)}$$

- 또한 우리나라 1 건당 인증비가 유럽연합의 인증비(705천원)의 29%(207천원) 수준이나, 투입시간은 유럽연합의 96%에 달하고 있어 인증비와 투입시간이 67%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유럽 인증기관을 비교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그림 6-2. 유럽 인증기관에 대한 투입시간 및 인증비의 격차(%)



- 또한 농가당 투입시간은 4.2시간으로 유럽 인증기관의 34%에 머물러 있어 농가에 대한 투입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편임
- 농가에 대한 투입노력량(투입시간)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인증비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인증비 수준을 인상하여 투입시간에 맞게 인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17) 유럽의 유기 인증 제도에서는 사후관리를 인증 건 100%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 자율에 따라 인증건수의 5~10%를 사후관리하고 있어 방문 빈도를 1.1로 가정한 것임

3. 선행연구에서의 인증 수수료 책정 안 검토

3.1. 이덕만¹¹⁸⁾ 외(2011). 전문인증기관 운영실비 징수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이덕만은 인증기관의 한 달 운영비의 가정치를 설정하여 농가 1호당 적정 인증수수료를 제시하였음
- 연구 당시 인증심사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농가 수가 5백 명이었던 점을 계산에 반영하였고, 1,000농가/145건을 심사원 2인이 관리할 때를 가정하였음

표 6-12. 전문인증기관 사무실 한 달 운영비 산출 근거. 이덕만(2011)

구분	항목	단위	금액	비고
인건비	대표자	1인	3,750,000	상근 : 대표, 행정직, 심사원 비상근 : 심의위원
	행정직	1인	1,500,000	대표 : 300만원X12개월X300%=375만원/월
	심사원	2인	5,000,000	행정직:120만원X12개월X300%=150만원/월, 심사원:200만원X12개월X300%=250만원/월, 3천만원/년
	심의위원	6인	600,000	
소계			10,850,000	행정직의 경우 연간 관리농가가 1,000농가 이상일 경우 총원 예정
사무실	임대료		1,087,200	사무실 50 m ² (1인당 10 m ² 적용) 회의실 40 m ²
	관리비	20%	217,440	₩15,100X90m ² =₩1,359,000(한국부동산연구원)
	통신비		300,000	심사원 총원 시 1인당 10m ² 적용
	차량유지비	2대	1,500,000	통신비(인터넷망, 유무선 전화, 팩스)
	일반관리비		2,000,000	차량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할부금) 일반관리비 (4대보험료(급여의 11.6%),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소계			5,104,640	
총계			15,954,640	

118)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표 6-13. 인증심사원의 증가에 따른 가상의 전문인증기관 한 달 운영비와 농가당 인증수수료 변화. 이덕만(2011) (단위: 원)

구분	항목	단위	인증심사원 수(인)			
			2	4	6	8
인증농가	농가 수	호	1,000	2,000	3,000	4,000
인건비	대표자	1인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행정직		1,5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심사원	인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심의위원	6인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소계			10,850,000	17,350,000	22,350,000	27,350,000
사무실	임대료		1,087,200	1,328,800	1,570,400	1,812,000
	관리비	20%	217,440	265,760	314,080	362,400
	통신비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차량유지비		1,500,000	3,000,000	4,500,000	6,000,000
	일반관리비		2,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소계			5,104,640	7,494,560	9,884,480	12,774,400
총계	지출액	월	15,954,640	23,054,640	30,154,640	37,754,640
인증수수료	농가별		191,456	148,467	128,138	120,073

표 6-14. 친환경농산물 농가당 인증심사관리비(안). 이덕만(2011) (단위: 천원)

구분		친환경 인증심사관리비				사후 관리	변경
		수수료	서류 심사	현장 심사	계		
농산물	유기*	50	200	150	400	100	100
	무농약	50	200	150	400	100	100
축산물	유기*	50	200	150	400	100	100
	무항생제	50	200	150	400	100	100

- 이덕만(2011)에 따르면, 한 달 운영비 분석에서 월 15,954,640원이 지출되어, 연간 요구되는 지출비용에 대하여 1,000 농가를 통한 인증 수입은 농가당 191,456원 이상이어야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하지만, 최종 인증심사관리비를 45만원으로 제안하였는데, 그렇게 제안한 분석과정이나 근거가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음.(표 6-14)
- 인증심사관리비의 비목은 수수료, 서류심사, 현장심사로 구성하였고, 사후관리는 심사관리비와 별도로 책정하였음. 이는 현행 인증수수료 체계가 수수료 및 인증심사관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로 구성된 것과 분류체계가 다르므로, 현행 체계에 따라 제안한다면 인증심사관리비는 45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됨

3.2. 신용광¹¹⁹⁾ 외(2013). 친환경인증기관 운영·관리 방안

- 신용광은 인증기관이 1,450농가를 관리할 때를 가정하여 연간 수입과 지출에 예상치를 추정하였음
- 신용광은 심사원 1인이 300 농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5인의 상근심사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신용광은 수수료와 심사 및 관리비를 합하여 15만원을 징수할 때 3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16만원을 징수할 때부터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적정 인증심사관리비를 11만원으로 제시하였음

119) 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통학과

표 6-15. 인증기관 표준실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신용광(2013)

수입	수수료	5만원/농가	7,250만원
	심사 및 관리비	10만원/농가	14,500만원
	계		21,750만원
지출	인건비	1200만원/사무직 2500만원/인증심사원	13,700만원
	심의비		300만원
	기타비용		1,900만원
	고정비	고정인력 증가에 따른 가상의 비용증가 및 대표자 자가 인건비 4200만 원	6,200만원
	계		22,100만원

표 6-16. 인증수수료 변화에 따른 손익분기점 및 경영이익 변화. 신용광(2013)

단위: 호, 만원

농가 수	인증 수수료	수입	비용			손익분 기점매 출액	이익
			계	유동비	고정비		
1,450	9	13,050	22,100	15,900	6,200		-9,050
1,450	11	15,950	22,100	15,900	6,200		-6150
1,450	13	18,850	22,100	15,900	6,200		-3,250
1,450	15	21,750	22,100	15,900	6,200	23,051	-350
1,450	16	23,200	22,100	15,900	6,200	19,704	1,100
1,450	17	24,650	22,100	15,900	6,200	17,466	2,550
1,450	18	26,100	22,100	15,900	6,200	15,865	4,000

3.3. 선행연구의 시사점

- 친환경인증기관의 적정 심사관리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덕만(2011)과 신용광(2013)은 표 6-17과 같이 운영조건을 설정하였음
- 이덕만과 신용광은 인증매출에서 신청수수료(5만원)과 심사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1 농가에 대한 총수수료를 계산하였으나, 단체인증 시 1건당 농가 수가 평균 6.9명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수수료 수입이 계산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이덕만의 연구 당시 인증기관 지정기준에서 상근심사원 최소 인원은 2명이었으나, 현행 기준에서 5명으로 개정되어 인원의 재설정이 필요함
- 이덕만은 심사원 1인이 관리하는 사업자 수를 최대 500명으로 설정 하였으나, 현재 심사원 1인당 최대 사업자 수는 400명으로 개정되었으며, 실제 심사원 1인당 농가는 평균 202명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중간값 300명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는 신용광이 설정한 심사원 1인당 사업자 수와 같음
- 선행 연구에서는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심의 절차로서 인증심의위원회 방식만 고려되었으나, 실제 심의 절차에는 인증심의관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증심의관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임.
※ 인증심의관 방식 46%, 인증위원회 방식 54%
- 선행연구 당시(2011년 및 2013년)에 설정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2012년~2015년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5.6% 인상 적용할 필요가 있음

표 6-17. 심사관리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설정값 비교 (단위:천원)

	이덕만 (2011)	신용광 (2013)	비고
심사원 1인당 사업자 수	500	300	
인증사업자 수	1,000	1,450	
인증 건수	145건	(설정값 없음)	인증 1건당 평균 6.9명의 사업자 인증
상근심사원 수	2인	5인	
행정직원 수	1인	1인	
상근심사원 1인당 인건비	30,000	25,000	
행정직 인건비	18,000	12,000	
인증심의 수당	7,200	3,000	
대표자 인건비	45,000	42,000	
인건비 합계	130,200	182,000	
인건비 外 경상비	61,256	39,000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68%	82%	
친환경인증 관련 연간 지출액	191,456	221,000	
신청수수료(건당)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심사관리비 제안금액(농가당)	450	110	신청수수료를 제외한 심사관리비
현행 농관원 고시 금액 (157,000원)과 차이	+293	-47	

3.4. 인증기관 운영 수지분석에 따른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안

□ 인증기관의 운영조건 설정

- 심사원 1인당 사업자 수는 현재 규정에서 심사원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수를 최대 40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¹²⁰⁾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임계값에 맞추어 운영할 수 없으므로, 임계값(400명) 추월 시에 신규 심사원을 고용하여야 하므로 심사원 5인에 이해 2,001 농가를 인증하면, 신규 심사원을 합하여 실제 인원은 6명이 됨. 따라서, 본 설정에서는 최댓값의 83.5%인 334명으로 설정하였음.

- 심사원 1인당 최대 사업자 수 $B_{max} = 400$
- 인증기관의 심사원 최소인원 $I_{min} = 5$
- 인증심사원 5인에 의한 임계 사업자 수 $B_{cri} = 2,000$
- 임계값 초과시의 심사원수(실제 필요한인원) $I_r = 6$
- 따라서 심사원 1인당 경제적 사업자수(B_{eco})는 334명임

$$B_{eco} = (B_{cri} + 1) \div I_r = 2001 \div 6 = 334\text{명} \dots (14)$$

- 인증사업자 수는 심사원 1인당 사업자 수(B_{eco})에 심사원 최소인원(I_{min})을 곱하여 1,670명으로 설정하였음

$$B_{eco} \times I_{min} = 1,670\text{명} \dots (15)$$

- 인증 건수는 인증 1건당 평균 6.9명으로¹²¹⁾ 적용하여, 인증사업자가 1,670명인 경우 242건으로 하였음. 인증기관이 단체인증 1건당 소속된 농가 수를 적게 하거나 단체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농가 수에 대하여 매출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 경영자는 인증 건수와 인증사업자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경영의 기술이라 할 수 있음

120) 농관원 고시 제2015-56호

121) 이덕만(2011). 전문인증기관 운영실비 징수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상근심사원수는 현행 규정에서 5인 이상의 심사원을 상근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5인으로 설정하였음
- 행정직원 수는 이덕만(2011), 신용광(2013)의 설정과 같이 1인으로 설정하였음
- 상근심사원 1인당 인건비는 이덕만(2011)의 인건비 설정값인 30,000천원에 2012~2015년 물가인상률 5.6%를 적용하여 31,680천원으로 설정하였음
- 행정직 인건비는 이덕만(2011)의 인건비 설정값인 18,000천원에 2012~2015년 물가인상률 5.6%를 적용하여 19,000천원으로 설정함
- 인증심의관 인건비는 선행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고,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시의 회의비만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증심의관제가 인증기관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심의관의 급료가 반영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 인증심의관 인건비는 상근심사원의 인건비와 같이 31,680천원으로 설정하였음
- 대표자 인건비는 법인의 성격 및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영업이익에 따라 배정하도록 하고, 본 표준심사관리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이덕만(2011)이 도출한 인증기관의 비용산출식에서 나타난 68%를 같이 적용하였음
 - 이는 한국노동연구원(2008)의 조사에서 유사 계통 산업 분야인 사업서비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70.0%로 나타난 것과 매우 비슷한 비중임¹²²⁾
 - 이는 상근심사원 최소인원을 2인에서 5인으로 바뀔에 따라 인건비 외의 경상비 또한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상비의 인상 폭을 산출하기 위하여 인건비 비중을 적용하는 것임

122) 한국노동연구원(2008). 임금제도 실태조사

표 6-18. 표준심사관리비 도출을 위한 조건 설정

(단위: 천원)

인증기관 운영조건	재설정값 (2016)	비고
심사원 1인당 사업자 수	334명	경제적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수	1,670명	
인증 건수	242건	인증 1건당 6.9명으로 이덕만(2011)과 같은 비율
상근심사원 수	5인	개정된 규정에 따름
행정직원 수	1인	
상근심사원 1인당 인건비	31,680	이덕만(2011)의 인건비 설정값에 물가인상률 적용
행정직 인건비	19,000	이덕만(2011)의 인건비 설정값에 물가인상률 적용
인증심의관 인건비	31,680	
대표자 인건비	(제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68%	이덕만(2011)과 같은 비율 적용

□ 인증기관 운영비 총액의 도출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¹²³⁾이 개정됨에 따라 상근심사원의 최소인원이 애초 2명이었으나 현재는 5명으로 운영 조건이 강화되었고, 심사원 1인이 관리하는 사업자의 최대 인원이 500명에서 400명으로 바뀌는 등 인증기관 운영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증기관 운영비 총액을 다음 표 6-19와 같이 도출함
- 인증기관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인건비와 기타경상비로 구분하였으며, 수익률과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총 투입비용이 연간 총수입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음
- 인건비는 상근심사원 5인, 행정직원 1인, 인증심의관 1인에 대한 인건비 총합은 209,080천원임
- 운영비 총액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68%를 인건비 총합에 역산하여 구하였으며, 연간 운영비는 총 307,470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표 6-19. 인증기관 연간 운영비 산출

구분	항목	단위	금액(천원)	비고
인건비	상근심사원 인건비	5인	158,400	31,680*5인
	행정직 인건비	1인	19,000	
	인증심의관 인건비	1인	31,680	
소계			209,080	
기타 경상비	임대료, 관리비,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98,390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68% 적용하여 도출
총계			307,470	

123) 농관원 고시 제2015-56호 (2015.11.30.)

□ 농가 1인당 심사관리비 산출

- 인증기관의 운영조건을 상근심사원 5인, 행정직원 1인, 인증심의관 1인으로 하는 경우 연간 운영비 총액은 307,470천원으로 계산되었음
- 인증사업의 매출은 인증건별로 받는 신청수수료와 인증농가별로 받는 심사관리비로 구성됨. 이 밖에도 시험분석비와 출장경비가 매출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실비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실질 수입은 신청수수료와 심사관리비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는 시험분석비와 출장경비를 고려하지 않음
- 수익률과 세금지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연간 운영비 총액은 연 매출 (Revenue)과 같으며, 인증 건(N_p)에 의한 신청수수료(F_p)와 사업자 (N_b)에 대한 심사관리비(F_b)의 합과 같음

$$R = (N_p \times F_p) + (N_b \times F_b) = 307,470 \dots\dots (14)$$

- 표 6-18에서 인증기관이 242건의 1,670 농가를 인증실적으로 가정하였으며, 인증신청수수료는 현행 규정과 같이 50천원으로 정하였음

$$F_b = \{ R - (N_p \times F_p) \} \div N_b \dots\dots\dots (15)$$

$$= \{ 307,470 - (242 \times 50) \} \div 1,670 = 177\text{천원}$$

$$N_p = 242$$

$$N_b = 1,670$$

$$F_p = 50$$

- 따라서 한 농가당 심사관리비는 177천원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157천원의 12.7%인 20천원이 인상되어야 함

- 한 농가에 대한 심사관리비를 177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한 건의 농가 수가 1~5명인 경우, 즉 농가당 객단가가 가장 높은 경우를 가정하여 정한 것임
- 따라서, 인증기관의 실제 농가당 수입은 단체인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177천원보다 감소하게 됨. 이는 기존의 표준심사관리비 보다 2만원을 인상하는 177천원을 설정하더라도, 농가 등 인증사업자의 납입금액 증가분은 실제로 2만원보다 크지 않음을 뜻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상안은 인증의 품질 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표준심사관리비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수료 정책을 세우도록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6-20. 표준심사관리비 산출 프로세스

(단위: 천원)

프로세스	산출값	비고
(1) 인건비 합계	209,080	심사원 5인, 행정직원 1인, 심의관 1인
(2) 연간 지출총액 = 연 매출액	307,470	인건비 합계에 인건비 비중(68%) 역산
(3) 신청수수료 수입	12,100	50천원 × 242건
(4) 심사관리비 수입	295,370	(연매출액) - (신청수수료 수입)
(5) 농가당 심사관리비	177	(심사관리비 수입) ÷ (농가수)

표 6-21. 산출된 표준심사관리비의 지표

지표	금액(천원)	비고
한 농가에 대한 제안금액	177,000원	
기존 고시 금액에서 인상액	+20,000원	현재 한 농가에 대한 표준 심사관리비는 157,000원
기존 고시 금액에서 인상율	12.7%	
연간 표준 매출액	307,470,000원	
인증 1건당 객단가	1,270,000원	
농가 1인당 객단가	184,000원	

□ 표준심사관리비 개정안

- 표준심사관리비의 12.7% 인상하였을 때, 금액은 177천원으로 이는 단체 인증 시 농가수 1~5명일 때의 금액이며, 농가 수가 변할 때에도 같은 비율(12.7%) 만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축산물, 가공품, 취급자도 인증기관의 경영환경 변화는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적용되므로, 이들도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결론적으로 농관원 고시¹²⁴⁾에 제시된 표준심사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현행 수준에서 12.7% 인상된 개선안을 제안함

1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표 6-22. 농산물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안

금액 \ 농가수	1~	6~	16~	25~	36~	49~	64~	81~	100~12	121
	5	15	24	35	48	63	80	99	0	이상
천원/농가 (현행)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천원/농가 (개선안)	177	133	126	122	118	115	113	110	109	107

표 6-23. 축산물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안

금액 \ 농가수	1~	6~	16~	25~	36~	49~	64~	81~	100~	121
	5	15	24	35	48	63	80	99	120	이상
천원/농가 (현행)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천원/농가 (개선안)	234	168	157	149	143	139	134	132	128	124

표 6-24. 유기가공식품 등의 표준심사관리비 개선안

구 분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천원/업체 (현행)	510	342
천원/업체 (개선안)	575	385

제7장

ISO 17065의 도입

1. ISO/IEC 17065:2012의 개요

- ISO/IEC 17065는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프로세스 인증인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은 본 국제기준에 해당됨
- ISO 17065는 가이드라인(ISO/IEC Guide 65:1996)에서 2012년 9월에 국제기준으로 상향 등재되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서는 ISO 17065 인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인증기관 조직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ISO 17065는 제품 및 프로세스 인증을 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국제기준)을 나타냄

표 7-1. ISO/IEC 17065 인정현황

지역	인증기관 수	비고
국영 인증기관 ¹²⁵⁾	74	전 세계 범위 내
유럽	974	
독일	91	GS마크
일본	199	JIS, JAS, PSE, PSC, PAL
중국	35	
뉴질랜드, 호주	36	70종의 인증 스킴
미국	120	
브라질	70	
한국	21	

자료: 국제표준화기구

- 우리나라 법인으로서 ISO 17065 인정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3개 기관이 있음

125) 국영인증기관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인증기관을 말하며, 그 수는 전 세계에서 ISO 17065 인정을 받은 국영기관의 수를 말한다.

표 7-2. ISO/IEC 17065 콘텐츠

<p>1. 적용범위</p> <p>2. 인용표준</p> <p>3. 용어 및 정의</p> <p>4. 일반 요구사항</p> <p>4.1. 법적 및 계약적 사항</p> <p>4.2. 공정성 관리</p> <p>4.3. 배상책임 및 재정</p> <p>4.4. 비차별적 조건</p> <p>4.5. 기밀유지</p> <p>4.6.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p> <p>5. 조직 요구사항</p> <p>5.1. 조직구조 및 최고 경영진</p> <p>5.2. 공정성 보장 매커니즘</p> <p>6. 자원 요구사항</p> <p>6.1. 인증기관 인원</p> <p>6.2. 평가를 위한 자원</p> <p>7.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p> <p>7.1. 일반사항</p> <p>7.2. 신청</p> <p>7.3. 신청검토</p> <p>7.4. 평가</p>	<p>7.5. 검토</p> <p>7.6. 인증 의사 결정</p> <p>7.7. 인증문서</p> <p>7.8. 인증제품 목록</p> <p>7.9. 사후관리</p> <p>7.10. 인증에 영향을 주는 변경</p> <p>7.11.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취소</p> <p>7.12. 기록</p> <p>7.13. 문제제기 및 이의제기</p> <p>8. 경영시스템 요구사항</p> <p>8.1. 선택사항</p> <p>8.2. 일반 경영시스템 문서</p> <p>8.3. 문서관리</p> <p>8.4. 기록관리</p> <p>8.5. 경영검토</p> <p>8.6. 내부심사</p> <p>8.7. 시정조치</p> <p>8.8. 예방조치</p> <p>부속서 A. 제품인증기관 및 인증활동에 대한 원칙</p> <p>부속서 B.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 적용</p> <p>참고문헌</p>
---	---

2. KS Q ISO/IEC 17065:2014

○ 한국제품인정제도(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343호)에 근거하여 2001년 7월에 설립된 국가기술표준으로 ISO/IEC17065 인정기관

○ 국내 KAS 인정 현황

국내 ISO/IEC 17065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21곳¹²⁶⁾의 인증기관이 인정을 받았으며, 대부분 전자, 전기, 섬유, 화학제품 등에 한정되어있음. 현재까지 농림축산 및 식품 관련 분야의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사례는 없음

제62호 전문인증기관 컨트롤유니온이 2015년 12월 ISO17065 인정을 받았으나 인정분야는 농림축산식품이 아닌 화장품 분야임

○ 인정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KAS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이며, 12개월 마다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 인증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

126) 참조: KAS 한국제품인정제도, KAS 공인제품인증 인증기관 참조

표 7-3. KAS 인증기관 현황

번호	인증기관명	인정분야
1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및 광학기기, 전기변환장치 등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 및 광학기기, 전기변환장치 등
3	신재생에너지센터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광학기기 등
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가죽, 펄프 제조업 등
5	(재)FITI시험연구원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가죽, 펄프 제조업 등
6	한국가스안전공사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7	한국전기연구원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
8	한국세라믹기술원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가죽, 펄프 제조업 등
11	사단법인 한국선급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업 등
1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코스크 연탄 및 석유정 제품 등
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섬유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14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기장비 제조업 등
15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기장비 제조업 등
16	(재)부산테크노파크	전기장비 제조업 등
17	한국신발피혁연구원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번호	인증기관명	인정분야
1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19	KOTITI시험연구원	섬유제품 제조업 등
20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구제조업 등
21	주식회사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	섬유 및 화학제품(염료 등) 제조업

그림 7-1. KAS 인정절차



출처: KAS홈페이지

3. ISO/IEC 17065 도입의 필요성

□ 인증프로세스의 국제화

- ISO 17065에서는 인증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별로 적용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신청 → 신청검토 → 평가 → 검토 → 인증 의사 결정 → 인증문서 → 인증제품 목록 → 사후관리 → 인증에 영향을 주는 변경 →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취소 → 문제제기 및 이의제기
- 이러한 단계별 원칙 중에는 우리나라의 인증절차와 다른 부분이 있음
 - 예컨대, 평가(심사) 단계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ISO 17065에서는 다음 원칙을 요구하고 있음
 - 7.4.7. 하나 이상의 부적합이 발생하고 의뢰자가 인증프로세스를 계속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인증기관은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평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7.4.8. 만일 의뢰자가 추가적 평가 업무의 완료에 동의하는 경우, 그 추가적 평가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7.4에 규정된 평가절차가 반복되어야 한다.
 - 이 두 조항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 절차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을 검증하는 절차를 갖지 않고 의뢰자를 부적격 판정하는 프로세스와 상반됨
-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국제화 및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ISO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도입하여, 다른 나라의 인증제도와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ISO 17065는 해외의 유기농 인증기관들이 국가 규정에 의하여(유럽연합, 캐나다 등) 인정서를 받거나, 기관의 자율에 의하여 인정서를 받는 보편적인 기준임

- 유기농식품 인증의 국가 간 동등성 협약들이 진행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세계 공통의 원칙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도 수용하여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세계화되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시스템 발전을 위한 도입

- ISO 17065에서는 인증기관이 다음 부문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 경영시스템의 문서화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경영검토
 - 내부심사
 - 시정조치
 - 예방조치
- 이 가운데 경영시스템의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관리 등은 친환경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경영검토, 내부심사, 시정조치, 예방조치 등은 우리나라 인증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임
- 경영검토는 인증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검토, 경영 시스템에서 개선사항의 검토 등을 경영자가 직접 수행하는 연례 활동으로, 품질경영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 내부심사는 인증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에 위탁한 전문가를 통하여 기관의 운영 및 인증프로세스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말함. 이를 수행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기관이 부실인증을 하게 될 위험(Risk)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임

- 시정조치와 예방조치는 인증기관이 운영 및 프로세스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Risk)을 낮추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예방조치) 또는 후(시정조치)에 인증기관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함. 이는 내부심사를 통하여 분석될 수도 있고, 인정기관(농관원 등)의 외부심사를 통하여 도출될 수도 있음
- 인증기관의 경영시스템에 요구되는 ISO 17065의 기준 중에서 인증의 품질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검토, 내부심사, 시정조치, 예방조치 등의 사항을 우리나라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도입하는 것은 인증기관들의 품질경영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친환경인증기관 조직의 체계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¹²⁷⁾을 보면, 인증기관은 ISO 17065의 기준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조직은 ISO 17065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ISO 17065 기준 중 조직 요구사항은 다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5. 조직 요구사항
 - 5.1. 조직구조 및 최고 경영진
 - 5.2. 공정성 보장 메커니즘
- 조직구조는 다음 기능들을 담당하는 인원이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함
 - 5.1.3. 인증기관 경영진은 각각의 다음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이사진, 집단 또는 개인을 식별하여야 한다.
 - a)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방침의 개발
 - b) 방침 및 절차의 이해에 대한 감독
 - c) 인증기관 계정에 대한 감독

127) 농관원 고시 제2015-56호 [별표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1.가.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d) 인증 활동의 개발
 - e) 인증 요구사항(기준)의 개발
 - f) 평가(심사)
 - g) 검토(심의)
 - h) 인증에 관한 의사결정
 - i)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위임에 관한 사항
 - j) 계약 체결
 - k) 인증활동을 위한 자원의 제공
 - l)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 m) 인원의 역량 요구사항
 - n) 인증기관의 경영 시스템
- 인증기관의 조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원이 배정될 필요는 없으나,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담당자가 명확히 배정되어야 함
- 공평성 보장 메커니즘이란 인증기관의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Risk)을 관리하는 기관 내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기관¹²⁸⁾이 자회사 또는 그룹 경영의 일원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요구되고 있음
- ISO 17065의 제5장에서 인증기관의 조직에 요구되는 두 부문은 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조직도 이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농관원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임

128) 이 보고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을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칭함

- 하지만, 인증기관의 실제 운영에서는 심사원 및 심의관의 자격 요건, 인원수, 업무 범위의 제한 등을 다루지만 ISO 17065의 제5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
 - 예컨대, 대부분 인증기관에서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고 있음

- 이미 우리나라 친환경인증기관의 조직 부문에 요구되고 있는 ISO 17065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4. ISO/IEC 17065 도입의 방안

친환경인증기관에 ISO 17065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면 표 7-4와 같음

1 유형: ISO 17065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유럽연합, 캐나다

2 유형: ISO 17065의 각 규정을 재해석하여 자체 규정에 포함한 경우: 미국

표 7-4. ISO 17065 도입 유형의 비교

	1유형	2유형
도입 방식	인증기관이 ISO 17065 인정서를 획득하는 방안	ISO 17065 인정 기준을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반영
적용 국가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비용	인증기관에 납입하는 연간 인정비가 발생 - KAS: 400~600만원 - IOAS: 1,500~2,000만원	농관원 인정비 외에 추가 인정비는 발생하지 않음
실무투입	농관원의 인정(사후관리 등) 외에 별도의 인정 실무가 인증기관에게 육됨	인증기관은 농관원의 인정에 대한 실무 역량만으로 운영이 가능
규정의 일관성	농관원과 다른 인정기관의 원칙 및 규정이 불일치 및 상충 관계에 있을 가능성	농관원에서 일관된 원칙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도 개선	기존의 인정기관을 활용하므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음	ISO 17065를 운영할 수 있도록 농관원의 운영 시스템 및 인정 제도 개선 필요

□ 1 유형 도입의 효과 검토

○ 유럽연합, 캐나다와 같이 ISO 17065 인정을 의무화하는 경우의 효과

⇒ 인정 비용 발생. 국내 인정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KAS¹²⁹⁾에서 시행 시 400~600만원/년 예상, 해외의 기관 IOAS에서 시행 시 1,500~2,000만원/년 예상

⇒ 인정기관의 이원화. 현재 국가기관 중에 농관원이 단일한 인정기관이나, KAS 등 다른 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중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인정기준과 규정 등의 격차로 인한 일관성 부재의 우려. ISO 17065를 도입할 경우 농관원 고시에 따른 인정규정과 상이점을 극복하기 어려움.

예1) 농관원의 규정은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의 개념이 없어, ISO 17065의 부적합사항 개념에 상충

예2) ISO 17065에서는 시험분석기관이 ISO 17025 인정을 받도록 요구¹³⁰⁾하고 있으나, 국내 농산물 분야의 시험분석기관 중 해당 인정을 받은 경우는 매우 희박함

129) Korea Accreditation System

130) 6.2.1 내부 자원

인증기관이 내부 자원 또는 인증기관의 직접 관리하에 있는 기타 외부 자원으로 평가활동을 수행할 때, 인증기관은 관련 국제표준의 적용 요구사항과 인증스킴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기타 문서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험의 경우는 KS Q ISO/IEC 17025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감사의 경우는 KS Q ISO/IEC 17020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영 시스템 심사의 경우는 KS Q ISO/IEC 17021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관련 표준에 명기된 평가 인원에 대한 공평성 요구사항은 항상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6.2.2 외부 자원(아웃소싱)

6.2.2.1 인증기관은 관련 국제표준의 적용 요구사항과 인증스킴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기타 문서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관에게만 평가활동을 아웃소싱하여야 한다. 시험의 경우는 KS Q ISO/IEC 17025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감사의 경우는 KS Q ISO/IEC 17020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영 시스템 심사의 경우는 KS Q ISO/IEC 17021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관련 표준에 명기된 평가 인원에 대한 공평성 요구사항은 항상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2 유형 도입의 효과 검토

○ 미국과 같이 ISO 17065 조항들을 관련 법규(National Organic Program)에 반영하는 경우의 효과

- ⇒ 관련 법령(법,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
ISO 17065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현행 농관원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상이점을 분석하여 개정이 필요
예컨대, 부적합사항을 처리하는 절차와 시정조치, 내부감사(Internal Audit) 시스템 등
- ⇒ 관련 법령을 ISO 17065 수준으로 상향 개정하는 경우, 인정기관을 농관원으로 단일화할 수 있음
KAS는 농업 분야의 인정 경험이 없어, 농업 생산 프로세스의 특성에 맞는 평가 프로그램으로 전문화하기가 어려우므로 농관원이 전문 인정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함
- ⇒ 이 경우 농관원이 인정기관의 국제기준 ISO 17011¹³¹⁾에 적합하도록 평가사를 양성하고 기관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ISO 17065 수준으로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경우, 인증기관에는 인정비의 추가 부담이 없음
다만, KAS의 경우 인증기관 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 평가사 제도를 통하여 시행하므로 심사비용이 평균 400~600만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인정비의 인상을 고려하여야 함

131) ISO/IEC 17011:2004,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 농관원이 전문적인 인정기관으로 발전함으로써 GAP¹³²⁾ 등 유사한 인증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유기식품 인증의 동등성 등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2 유형의 단계적 적용

- 친환경인증기관이 농관원의 인정 시스템과는 별도로 ISO 17065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농관원이 ISO 17065에 따라 인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2 유형이 인정비용을 절감하고 인정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ISO 17065에 따르는 인정제도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관원이 인정기관의 국제기준 ISO 17011 적합하도록 조직 개편 추진(친환경, GAP 등 다양한 인증제도에 적용)
 - 농관원이 국제인정협회(IAF)¹³³⁾에 가입. 국제인정협회는 인정기관들의 협의회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제품인정제도(KAS), 네덜란드 국영 인정기관인 RvA 등이 가입되어 있음¹³⁴⁾
 - ISO 17065에 따르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령의 보완
 - 인증기관에 대한 전문 평가사 육성
 - 인증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ISO 17065에 따르는 인정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32) Good Agricultural Practice

133)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134) 인정업무에 대한 국제기구는 IAF(www.iaf.nu) 외에도 ISEAL Alliance (www.isealliance.org)가 있음. IAF는 전 산업 분야의 인정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ISEAL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인증제도를 위주로 함. IFOAM 인정기관인 IOAS는 ISEAL에 소속되어 있음

표 7-5. ISO 17065의 단계적 도입 방안

추진 과제	세부 사항	추진 년도
현행 인정제도의 평가	ISO17011 및 ISO17065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인정제도와와의 차이점 분석	2017
ISO17065 요건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친환경농어업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	2018
전문 평가사 육성	평가사 자격기준 제정 평가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9
인증기관 교육	인증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2019
농관원 인정시스템 개편	ISO17011에 따른 농관원 인정시스템 개선 인정 기준 및 절차의 수립 GAP 등 국가인증제도의 공동 운영 검토	2019
인정업무 시행	기존 인정기준에서 전환 유예 기간 설정 신규 시스템에 따른 인정업무 시작	2020
국제인정협회(IAF) 가입	IAF 가입 검토 및 실무 추진	2020

5. ISO 17065 도입을 위한 법령의 보완

- ISO 17065를 국내 인증기관에 적용하는 방안 중 제2유형과 같이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ISO 17065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보완 사항이 요구됨 (부록9 참조)
 -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절차 신설
 - 인증기관 외 별도 법인(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등)이 공평성을 손상하지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
 - 전 인증기관이 법령에서의 인증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
 - 신청자의 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 구체화
 - 업무 담당자의 역량 평가 및 업무수행도 모니터링 절차 신설
 - 인증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인증기관 자체의 역량 검토 절차 신설
 -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잠재적 부적합에 대한 예방조치 규정 신설
 - 인증에 대한 제재 규정에서 복원 절차 신설

○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절차 신설

- ISO 17065의 요구사항

4.2.3. 인증기관은 지속해서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의 관계 또는 인증기관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로 인증기관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비고1. 인증기관의 공평성을 위협하는 관계는 소유권, 지배권, 경영, 인사, 자원 공유, 재정, 계약, 마케팅(상표 포함), 판매 수수료의 지급 또는 새로운 의뢰자 소개를 위한 장려 등에 근거할 수 있다.

4.2.4. 만일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가 파악된다면, 인증기관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설

공평성을 손상하는 상업적, 재무적 또는 다른 압력으로써 나타나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의 파악에 관한 요구사항임

“지속적”이라 함은 1. 지속하여 2. 정기적으로 3. 필요에 따라서의 세 가지의 의미임

리스크는 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요원과 다른 기관 또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발생함

관계를 갖는 것이 반드시 공평성의 리스크라고 할 수는 없음

- 개선방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갖도록 규정을 개선

이는 절차적 규정으로 기술적 문제가 없으며, 도입이 타당함

○ 인증기관 외 별도 법인(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등)이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

- ISO 17065의 요구사항

4.2.7.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그 일부를 구성하는 법인과 관계가 있는 별도 법인의 활동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해설

대상이 되는 것은 인증기관과 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 또는 인증기관이 그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인과 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 모든 관련 기관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된 위험을 배제하고 금지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시킨다고 하는 의미임

- 개선방안

현재 농관원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서는 인증기관과 동일한 법인인 경우 컨설팅, 유통, 영농자재 등 사업의 제한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과 다른 법인이면서도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인으로부터 인증업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전 인증기관이 법령에서의 인증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

- ISO 17065의 요구사항

4.4.4. 인증기관은 요구사항, 평가, 검토,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 (있는 경우)를 인증범위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 해설

인증활동이라고 하여 인증 범위 외 사항에 관한 요구를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인증활동을 인증 범위 내 사항에 한정하는 요구 사항임

- 개선방안

현행 인증기준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서 인증기준 및 세부 적용 방침을 정해놓았으나, 인증기관이 자체 기준을 법령의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법령에 따른 인증기준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인증기관별로 추가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임¹³⁵⁾

ISO 17065는 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인증품의 품질이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며, 인증기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인증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5) 농관원 고시 제2015-56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표1] 3.나. 1) 인증기준은 규칙 제9조 또는 제40조의 인증기준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라.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신청자의 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 구체화

- ISO 17065의 요구사항

4.5.2. 인증기관이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계약 때문에 권한을 부여받으면, 의뢰자 또는 관련자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제공된 정보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¹³⁶⁾

- 해설

기밀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법률의 요구 또는 계약상의 약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있음
이러면 인증기관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제삼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을 의뢰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됨

- 개선방안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에서는 인증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기밀로 다루어지도록 하여 생산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다만, 법적 요구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생산자의 경영, 기술, 영업 등에 관계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인증생산자에게 정보의 활용 상태를 통보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생산자의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부가 개선 사항〉

인증생산자의 정보보호 외에도, 인증생산자가 관리 및 생산한 자료와 기록의 소유권은 인증생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36)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요구되는 내용임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현행 인증기관 중에는 생산자가 만든 기록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생산자가 자기 소유의 기록을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품질관리의 기본적인 원칙¹³⁷⁾을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심사원 등 인증기관은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문서 및 기록의 소유권자에게 승인받고 복사본을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137) ISO/IEC 9001:2008 4.2.4.기록관리

○ 업무 담당자의 역량 평가 및 업무수행도 모니터링 절차 신설

- ISO 17065의 요구사항

6.1.2.1. 인증기관은 인증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역량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인증기관에게 다음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b) 훈련 니즈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및 기타 관련 인증 스킴 요구사항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e) 인원의 업무 수행도 모니터링

- 해설

6.1.2.1은 신청서의 접수, 검토 등을 포함하여 인증 프로세스에 관한 인원의 역량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임

b)에서는 역량 기준과 인원의 역량의 차이를 기초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특정하여 필요에 따라서 인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 활동 및 기타의 관련하는 인증 스킴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e)에서는 인증기관 인원의 수행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모니터링 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임

- 개선방안

각 업무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에 포함하도록 함

현재는 심사원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인증심사원의 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심의관, 행정보조원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심사원에 대해서도 인증기관 자체의 역량평가와 필요성을 특정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증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인증기관 자체의 역량 검토 절차 신설

- ISO 17065의 요구사항

7.3. 신청 검토

7.3.1.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보된 정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e) 인증기관이 인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해설

7.3은 인증기관의 능력이 해당하는 신청서를 다루는데 충분한지 확인을 포함하여 신청의 검토 단계에서 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7.3.1은 신청 정보의 검토에 관한 요구사항임

e)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요구사항임

- 개선방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서는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의 누락 또는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인증기관의 역량에 비추어 인증프로세스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절차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신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부적합사항¹³⁸⁾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잠재적 부적합에 대한 예방조치 규정 신설

- ISO 17065의 요구사항

7.4.6. 인증기관은 모든 부적합사항을 의뢰자에게 알려야 한다.

7.4.7. 하나 이상의 부적합이 발생하고, 의뢰자가 인증프로세스를 계속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인증기관은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음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평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해설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의 요구사항으로, 7.4.6에 기초하여 부적합의 통지, 7.4.7에서 의뢰자에 의한 부적합의 시정 및 신청 지속의 의사 확인, 추가 평가 업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업무의 흐름을 규정하였음

- 개선방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서는 인증심사 후에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의 기회가 없이 인증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하고 있음

ISO 요구사항은 부적합사항이 평가되면 시정조치를 통하여 의뢰자의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게 하여 의뢰자의 생산·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USDA-NOP, EC834/2007 등 해외의 인증제도에서도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생산자의 시정조치를 재평가하게 하는 것을 심사원의 주요 역할로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적합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개념을 도입하여 ISO 규정과 해외 인증제도의 사례와 동등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138) ISO 17065에서 부적합사항이란 신규인증, 갱신, 사후관리 등 어떠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합사항이라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잠재적 부적합사항에 대한 예방조치는 심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평가 업무를 '인증심사'와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적합사항에 대한 절차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활동으로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모두에 적용되어야 함

○ 인증에 대한 제재(행정처분) 규정에서 복원 절차 신설

- ISO 17065의 요구사항

7.11.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7.11.1. 사후관리 또는 그 밖의 결과에 따라 인증 요구사항과 부적합이 입증되었을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비고. 해당하는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a) 인증기관이 규정한 조건으로 인증을 계속
(예를 들면, 사후관리 빈도를 늘린다.)
- b) 부적합 제품의 변형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범위를 축소
- c) 의뢰자에 의한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인증 정지
- d) 인증 취소

- 해설

7.11.1은 사후관리, 요구사항 변경 또는 의뢰자에 의한 변경 등이 발단이 되는 기타 평가의 결과로써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이 판명될 경우, 범위의 축소, 일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하여 그 취급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 인증취소, 인증표시 제거, 인증표시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인증기관은 인증표시 제거 및 인증표시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인증표시 정지 처분 후에 정상적인 인증 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현행 시행규칙으로 개정¹³⁹⁾하기 전까지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3개월, 6개월 등 표시사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인증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 등이 요구되지 않고, 표시사용 정지 기간을 수동적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었음

13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1호, 2015.11.16. 일부개정

현행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으로부터 복원시키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존의 관행을 따를 수 있어, 처분된 생산자의 인증 복원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ISO 17065 또는 해외의 유기인증제도에서는 인증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사업체는 시정조치와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음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에서도 표시사용 정지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시정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인증 사업자의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8장 결론

1. 인증기관 발전 방향

- 2001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민간 인증기관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왔음
- 그동안 인증기관들의 어려움은 첫째, 인증 시행 초기부터 농관원이 인증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농관원과 경쟁을 하면서도 농관원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구조를 극복하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으며, 둘째, 문서화, 기록체계 등 인증제도의 수용 능력이 발전되지 않은 영세 소농들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인증제도를 적용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음
- 농관원은 농산물 인증의 경험이 일천한 인증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인증제도의 꾸준한 개선을 통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인증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현재는 인증 제도의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그동안 농관원은 국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인증제도 정착에 기여하여 국내에 65개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증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하기로 하여 인증기관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일부 인증기관은 아직도 부실한 인증 업무로 인하여 농관원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유기가공식품의 국가 간 동등성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국내의 지리적, 기후적, 사회통념적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인증 기준과 관리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기간(2016~2020)에 인증업무의 전면 민간 이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국제화, 인증기관의 전문화 및 규모화, 인증기관 경영합리화가 요구됨
- 인증제도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인증 기준과 관리 규정을 국제기준(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Guide Line #32) 및 선진국의 유기 인증제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검토하여 기준과 규정의 개선을 제안하였음
- 인증기관의 전문화 및 규모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높은 인증기관을 선발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도록 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적 육성을 위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제안하였음
- 인증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증 수수료의 현실화가 요구되었으며, 현행 수수료 체계가 고시되었던 2013년도의 인증기관 경영 환경으로부터 변화된 물가, 고용인원, 심사원의 활동 규제 등을 고려하여 개선된 수수료 체계를 제안하였음

2. 인증 기준과 규정의 개선

- 유기식품등의 인증 기준과 규정이 국제적 규범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국의 인증기관들(Skal, OFDC, OneCert Asia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적 인증제도들(CAC GL 32, USDA-NOP, EC834/2007 등)과 비교하였음
- 우리나라의 친환경·유기농 인증은 생산과정 보다는 상대적으로 결과물(제품)에서 검출되는 유해 성분을 강조하여 많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제품 인증’의 성격이 강함. 반면 유럽연합, IFOAM 등에서는 유기농 인증을 ‘프로세스 인증’으로 규정하여, 생산과정을 조사하는 심사 방법론이 발전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시험분석에 의존하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유기농 인증이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인증의 성격을 ‘제품 인증’에서 ‘프로세스 인증’으로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성격을 ‘프로세스 인증’으로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험분석을 필요로 하는 인증기준들을 폐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토양 내 잔류농약 검출 기준
 - 버섯 배지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출 기준
 - 농업용수의 기준
 - 관행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잔류농약 검출 기준
 - 관행축분을 사용하는 경우 항생제의 검출 기준
 -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의 재고
 - 단체 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등 일곱 가지 경우

- 우리나라 인증제도와 국제적 규범과 가장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방법임. ISO 17065,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GL 32, USDA-NOP, EC834/2007 등 대부분의 해외 인증 규범에서는 생산자 및 인증기관에게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생산자 또는 인증기관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적합사항을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표시사용 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 처벌 위주로 대응하여 문제를 가진 주체가 개선의 기회를 가지는 데 한계가 있음
- 부적합사항을 처벌 위주로 대응하기 보다는 위험(Risk)이 높은 생산자에게 위험을 낮추는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건이 불리한 환경에 있는 생산자들이 친환경·유기농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인증 기준과 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정뿐만 아니라, 제도를 적용하는 인증기관의 인식과 기술이 기존의 ‘제품 인증’ 방식에서 ‘프로세스 인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한 대응 기술이 교육 및 훈련 되어야 함
- 인증제도가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운용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들도 국제적 수준을 갖추도록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ISO 17065의 도입 등 국제적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함

3. 인증기관 등급제

- 인증기관 등급제는 인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인정제(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와 구별하여, 적격한 인증기관들 중에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민간 인증기관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임
- 등급제 시행 초기에는 인증기관들이 낮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어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등급제가 낮은 등급의 인증기관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높은 등급의 인증기관을 육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등급제의 지표는 ‘사회적 책임기업’이라는 인증기관의 성격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인증기관의 책임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음. 다만, 이 지표들이 적용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규 시행에 앞서 시범적 적용이 필요함
- 등급제는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우수한 인증기관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인증서와 인증 표시 등에 우수한 인증기관에 의하여 시행된 인증임을 나타내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등급은 4 단계(우수, 양호, 보통, 미흡)로 나누어 농관원이 인증기관을 사후관리(지도점검, 이중체크)할 때에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의 강도(強度)와 빈도(頻度)를 조정하여 적용한다면 사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4. 표준 심사관리비의 개선

- 인증기관은 사실상 인증심사비를 자율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농관원은 표준 심사관리비를 고시하여 인증기관 별로 편차가 크지 않게 적정 수준으로 징수 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의 표준 심사관리비는 2013년도에 고시되었고, 그 후에 인증기관의 운영 환경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표준 심사관리비의 개정 고시가 필요한 상황임
 - 3년간의 물가인상
 - 심사원 1인당 관리 사업자 수가 500인에서 400인으로 강화
 - 인증기관이 의무 고용해야 하는 상근심사원 수가 2인에서 5인으로 강화
- 표준 심사관리비의 개정 고시를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인증기관 운영비용을 재검토하여, 변화된 인증기관 운영 환경에 맞게 대입한 결과 현행의 농가 1인의 총 인증비 207,000원에서 227,000원으로 인상되어 약 9.6%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음
- 현재 인증기관은 이미 표준 심사관리비보다 68.6% 높은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표준 심사관리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물가의 변화, 인증제도의 개정 등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사관리비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음
- 인증 업무의 민간이양을 전면 시행하는 경우, 인증기관들 간에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심사관리비가 조정이 될 수 있음. 다만, 과도한 인증비의 징수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 심사관리비보다는 심사관리비의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영실비의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한 법 시행규칙이 '표준 심사관리비'를 고시하도록 개정됨. 2011년 10월)

5. ISO 17065의 도입

- ISO 17065에 나타난 인정기준은 해외의 유기농 인증 제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인증기관이 ISO 17065의 인정서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 유럽연합, 캐나다 등
 - ISO 17065 인정서를 획득할 필요는 없으나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ISO 17065 기준을 반영하여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미국 등

- ISO 17065 인정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하고 있어, 유럽연합과 같이 인정서를 획득하게 한다면 인증기관에게는 하나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인정기관이 두 개가 되어 인정기관의 관리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컨대, 부적합 사항의 관리 규정이 농관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에 서로 다른 경우 인증기관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ISO 17065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ISO 17065의 내용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임

- ISO 17065를 도입하는 것은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기관(농관원)이 국제기준 ISO 17011에 맞게 개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그래야만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 흐름에 맞게 제도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농관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록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로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운영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여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인증기관 활성화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개발에 이용될 뿐이며, 개별 인증기관에 어떠한 직접적인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도록 비밀로 취급되오니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

※ 인증기관별로 1 부를 실무 책임자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인증기관 일반 현황

※ 인증기관의 확정된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이라도 추정치를 기재하여 주세요.

인증기관명		인증기관 지정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인증기관 지정받은 연도		회사 설립연도	
자산 총액	천원	자기자본 총액	천원
인증업무의 범위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유기/무농약농산물 <input type="checkbox"/> 유기/무항생제축산물 <input type="checkbox"/> 유기가공식품/취급자/비식용유기가공품 <input type="checkbox"/> GAP <input type="checkbox"/> 그밖에 농산물 인증 () <input type="checkbox"/> 그밖에 식품 인증 () <input type="checkbox"/> 그밖에 산업분야 인증 ()		

II. 경영실적

※ 인증기관의 확정된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이라도 추정치를 기재하여 주세요.

2014 년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수/건수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생산자 ※ 저농약 포함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해외소재 생산자	()농가 / ()건	
2015 년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수/건수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생산자 ※ 저농약 포함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해외소재 생산자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인증기관 소재 도내 생산자	()농가 / ()건	
2015 인증갱신 총 농가수 (2015.1.1. ~ 2015.12.31.)		()농가	
2014 년도 회사 총매출액	천 원	2015 년도 회사 총매출액	천 원
2014 년도 인증사업 총매출액 (친환경농산물, 자재, GAP, 해외인증 등 모든 인증사업류)	천 원	2015 년도 인증사업 총매출액 (친환경농산물, 자재, GAP, 해외인증 등 모든 인증사업류)	천 원
2015 년 부가가치 (재무제표 상의 자료, 발행 전이면 예상 수치)	경상이익	천 원	
	인건비	천 원	
	순금융비용	천 원	
	임차료	천 원	
	조세공과	천 원	
	감가상각비	천 원	
2015 년말 유동부채	천 원	2015 년말 고정부채	천 원

III. 인력 관리

※ 인증기관의 확정된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이라도 추정치를 기재하여 주세요.

2015말(12월 31일) 상근심사원 수	()명	2014말 상근심사원 수	()명
2015 말 정규직원 수	()명	2014 말 정규직원 수	()명
2015 교육훈련비 지출액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	()천 원		
2015 상근심사원 중 퇴사자 수	()명		
상근직원 현황 (2015.12.31. 기준) * 심사원 성명은 기재하지 말 것	A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B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C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D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E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F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G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비상근심사원 현황 (2015.12.31. 기준)	인원	명	
	친환경심사경력	평균()년차	
	비상근심사원 총지불액	천 원	
심의관 수 (또는 인증위원수)	* 심 의 관 : 상근 ()명 비상근 ()명 * 인증위원 : 상근 ()명 비상근 ()명		

IV. 인증품질 관리

인증심사 (2015년도)	정규심사 건수 (신규인증 + 인증갱신)	상근 ()건	비상근 ()건
	사후관리 건수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사원 교육 건수(자체)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사원 교육 건수(외부)	상근 ()건	비상근 ()건
인증심의	심의 방법	<input type="checkbox"/> 인증심의관제	<input type="checkbox"/> 인증위원회제
	심의관 및 인증위원 교육 건수(자체)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의관 및 인증위원 교육 건수(외부)	상근 ()건	비상근 ()건
2015 시험분석비 지출 총액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사후관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직접분석, 위탁분석포함>한 것으로서, 잔류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분야에 무관하게 총금액)		() 천원	
2015 시험분석 현황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사후관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직접분석, 위탁분석포함>으로서, 잔류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분야에 무관하게 총건수)		총 ()건	
2015 부적합사항이 포함된 심사보고서 건수		()건	
2015 인증부적격 판정 건수		()건	
2015 농가교육 총 투입일수 (8시간을 1일로 환산)		()일	
2015 인증기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횟수	()회	
	업무정지 총 개월 수 합	총()개월	
2015 인증기관 과태료	과태료 징수 횟수	()회	
	과태료 총합계	총() 천원	
잔류농약 기준초과 건수 (농관원의 시료채취 건에 한함)		식약처 고시 관행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의 1/20을 초과한 건수 ()건	

5-3. 기밀유지 및 개방성

1) 현재 귀사의 기밀유지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자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가 잘된다.
- ② 비밀유지 방침이 세워져 있으나 실천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③ 비밀유지를 하려고는 하지만 방침이 세워져 있지 않다.
- ④ 비밀유지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침도 세워져 있지 않다.

2) 귀사가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에 표시하세요.

- 인증상태(승인,유지,정지,취소 등)
- 인증기관의 평가 결과(심사보고서 전부)
- 심사·인증 추진 상황
- 부적합사항에 대한 인증기준 조항
- 관련 절차, 규정, 기준서

5-4.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성

1)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는 잘 운용됩니까?

- ① 절차서 또는 매뉴얼 대로 잘 운용되는 편이다.
- ② 절차서는 있으나 실제 이용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어 누락이 많다.
- ③ 절차서는 형식적이므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④ 절차서가 없다.

2)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는 필요하다.
- ② 있으면 좋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 ③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필요 없다.

5-5. 책임성

1) 인증 결정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에 표시하세요.

-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결정을 유보한다.
- 다소 증거는 없으나 생산자가 신뢰감을 주므로 인증을 승인한다.
- 많은 생산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편적인 문제이므로 인증 승인한다.
- 문제가 있어도 다음에 개선을 약속받고 인증 승인한다.

2) 생산자에게 비의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을 때, 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 ① 무조건 부적격 처리 또는 인증취소
- ② 원인분석 후 수위에 따라 정지처분 또는 인증취소
- ③ 원인분석 후 시정조치, 예방조치까지 정지처분

6. 기타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인증기관 관리를 하는 기관과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기밀유지를 철저히 기할 것입니다.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부록2. 기업 재무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

평가분야	세부지표	정의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자산총액 증가율로 기업의 성장규모를 측정
	유형자산증가율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의 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총자산이 늘어날 경우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총자산증가율에 비해 자기자본증가율이 작게 나타나는데, 자기자본증가율이 높으면 유상증자나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금으로 조달한 것임
	매출액증가율	회사의 영업활동이 어느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회사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유동비율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당좌비율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고정비율	고정자산을 고정성 자본 중 하나인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조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고정장기적합율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고정성 자금(자기자본+고정부채)을 어느 정도 조달 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부채비율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안정성 지표
	유동부채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
	고정부채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고정부채의 비율로 자본구성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차입의존도	총자본 중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조달한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매출채권/매입채무비율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대비시킨 비율
	매입채무/재고자산비율	외상매입대금의 상환기간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기간과의 비율
	순운전자본/총자본비율	단기간 지급능력의 기초가 되는 순운전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평가분야	세부지표	정의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투입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자기자본에 대한 이용이 효율성을 나타냄
	경영자산회전율	영업에 직접 투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경영자산(총자산에서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자산을 차감하여 순수 경영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지표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액에 대한 유형자산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를 보여주는 지표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름을 의미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상으로 구입한 자재에 대한 결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지급능력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수익성	총자산경상이익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경상적인 수익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기업경상이익율	자금원천에 관계없이 기업에 투입된 총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경영자산영업이익율	총자산 중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들(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을 제외하고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된 경영자산과 경영자산의 운용결과로 획득한 영업이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 영업실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
	자기자본순이익율	손익계산서상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금의 수익력을 측정하는 지표
	매출액총이익율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
	매출액영업이익율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매출액경상이익율	기업의 경상적인 수익력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 아니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에 대한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품이나 상품의 최종적인 수익력을 측정하는 지표
	적립금비율	자기자본 중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
	사내보유율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들의 배당금을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내에 자금을 축적시켜 미래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내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배당률	주식발행총액(납입자본금)에 대해 회사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에서 어느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평가분야	세부지표	정의
생산성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노동 1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말한다.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표는 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종업원1인당부가가치증가율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액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
	종업원1인당매출액증가율	매출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1인당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종업원1인당인건비증가율	종업원 한 사람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어느정도 상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노동장비율	생산과정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설비자산(유형자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기계장비율	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종업원 1인당 보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자본집약도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정도의 자산액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총자본투자효율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으로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액을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설비투자효율	기업에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는 설비자산이 어느정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기계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부가가치의 생산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부가가치율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된 노동력, 설비, 자금 등의 생산요소에 대해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소득율이라고도 함
	노동소득분배율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경상이익,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및 감가상각비)별로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

부록3.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데이터 (초기설정)

임시 ID	인증 매출비	행정 처분	과태료	잔류 농약	교육 투자	갱신율	생산자 교육	관할지역 인증비율	생산자당 투입량	퇴사율	노동소득 분배율	매출액	부채 비율	생산성 (능력)	인증매출 증가율	보고서 정확도	인증취소 처분비율	해심 역량	국제 인정	총점	순위	등급
G06	7.00	7.00	3.00	6.00	3.00	3.00	4.79	2.60	3.83	5.00	5.00	4.00	1.00	1.04	1.00	3.00	9.79	5.00	3.00	78.06	1	B
G12	7.00	7.00	3.00	8.00	3.00	4.00	3.23	2.50	1.46	5.00	5.00	2.00	4.00	1.15	3.00	3.00	10.00	4.00	1.00	77.33	2	B
G35	7.00	7.00	3.00	8.00	3.00	3.00	4.17	5.00	2.92	3.00	1.00	3.00	4.00	3.65	2.00	3.00	9.58	2.00	1.00	75.31	3	B
G29	1.00	5.00	3.00	7.50	3.00	4.00	3.65	5.00	4.38	5.00	5.00	3.00	4.00	3.33	3.00	3.00	9.38	2.00	1.00	75.23	4	B
G33	7.00	7.00	3.00	5.83	4.00	2.00	5.00	5.00	1.56	5.00	5.00	3.00	4.00	3.75	3.00	3.00	4.79	1.00	1.00	73.94	5	B
G24	7.00	7.00	3.00	8.00	1.00	5.00	1.56	5.00	2.40	5.00	5.00	1.00	4.00	1.77	3.00	3.00	8.33	1.00	1.00	73.06	6	B
G47	7.00	5.00	3.00	8.00	2.00	4.00	1.35	3.33	1.60	5.00	1.00	3.00	4.00	4.79	3.00	3.00	8.54	4.00	1.00	72.62	7	B
G21	7.00	7.00	3.00	6.83	3.00	5.00	0.94	3.23	0.43	3.00	5.00	3.00	2.00	1.98	3.00	3.00	9.17	5.00	1.00	72.57	8	B
G02	7.00	7.00	3.00	7.83	3.00	4.00	2.29	4.27	2.02	1.00	1.00	3.00	4.00	3.13	3.00	3.00	8.75	4.00	1.00	72.29	9	B
G19	7.00	5.00	3.00	5.00	5.00	2.00	1.67	2.08	4.48	1.00	5.00	5.00	2.00	3.02	2.00	3.00	8.96	4.00	3.00	72.21	10	B
G17	7.00	7.00	3.00	7.67	3.00	4.00	1.88	4.79	0.94	5.00	5.00	4.00	4.00	4.06	2.00	3.00	1.04	3.00	1.00	71.38	11	B
G41	7.00	5.00	3.00	3.67	5.00	2.00	4.38	2.71	3.54	5.00	5.00	3.00	4.00	3.96	3.00	3.00	4.17	2.00	1.00	70.42	12	B
G08	7.00	7.00	3.00	5.17	1.00	4.00	3.54	5.00	0.00	5.00	2.00	2.00	4.00	3.23	3.00	3.00	7.50	3.00	1.00	69.44	13	C
G04	7.00	3.00	3.00	8.00	5.00	3.00	1.77	5.00	3.85	3.00	5.00	3.00	3.00	2.81	2.00	3.00	3.33	3.00	1.00	68.77	14	C
G38	7.00	7.00	3.00	7.00	4.00	2.00	3.44	3.54	3.23	1.00	5.00	2.00	4.00	2.92	3.00	3.00	3.54	3.00	1.00	68.67	15	C
G32	7.00	1.00	3.00	3.17	5.00	4.00	4.06	4.90	3.75	5.00	5.00	3.00	4.00	4.48	3.00	3.00	1.88	2.00	1.00	68.23	16	C
G34	7.00	7.00	3.00	8.00	3.00	5.00	4.48	5.00	0.73	5.00	3.00	1.00	3.00	0.31	2.00	3.00	5.00	1.00	1.00	67.52	17	C
G48	3.00	7.00	3.00	6.17	1.00	3.00	3.75	2.81	1.98	5.00	5.00	4.00	4.00	4.17	2.00	3.00	5.42	2.00	1.00	67.29	18	C
G05	7.00	7.00	3.00	6.50	2.00	3.00	1.04	3.85	1.35	5.00	3.00	2.00	3.00	0.52	3.00	3.00	10.00	2.00	1.00	67.27	19	C
G26	7.00	7.00	3.00	3.33	4.00	2.00	0.52	2.08	2.66	5.00	3.00	4.00	4.00	3.54	3.00	3.00	6.04	2.00	1.00	66.18	20	C
G18	7.00	7.00	2.00	6.33	1.00	5.00	2.60	2.08	0.52	1.00	1.00	3.00	4.00	5.00	3.00	3.00	6.46	5.00	1.00	66.00	21	C
G46	7.00	7.00	3.00	4.00	1.00	3.00	2.81	5.00	2.13	5.00	5.00	4.00	3.00	2.60	2.00	3.00	3.13	2.00	1.00	65.67	22	C
G44	1.00	5.00	3.00	8.00	1.00	2.00	4.90	2.08	3.44	3.00	3.00	5.00	1.00	4.90	1.00	3.00	10.00	3.00	1.00	65.31	23	C
G49	7.00	7.00	3.00	8.00	3.00	1.00	2.71	2.08	1.77	4.00	5.00	4.00	4.00	2.08	2.00	3.00	2.29	2.00	1.00	64.94	24	C

G22	1.00	7.00	3.00	7.33	1.00	5.00	2.92	2.92	1.15	4.00	5.00	5.00	1.00	2.71	3.00	3.00	6.67	2.00	1.00	64.69	25	C
G42	3.00	7.00	3.00	8.00	1.00	3.00	2.19	5.00	3.96	5.00	3.00	3.00	3.00	0.31	2.00	3.00	6.88	1.00	1.00	64.33	26	C
G14	7.00	7.00	3.00	2.67	2.00	2.00	4.69	3.13	0.21	5.00	3.00	5.00	2.00	2.19	3.00	3.00	5.21	3.00	1.00	64.08	27	C
G07	1.00	7.00	3.00	8.00	2.00	1.00	4.27	3.44	5.00	5.00	1.00	5.00	4.00	4.69	2.00	3.00	1.25	2.00	1.00	63.65	28	C
G13	7.00	5.00	3.00	5.50	1.00	3.00	3.13	2.40	4.68	1.00	5.00	3.00	4.00	1.25	2.00	3.00	5.63	3.00	1.00	63.58	29	C
G40	7.00	7.00	3.00	4.33	3.00	3.00	0.52	5.00	2.71	5.00	1.00	1.00	4.00	0.83	3.00	3.00	7.08	2.00	1.00	63.48	30	C
G10	7.00	7.00	3.00	4.67	1.00	3.00	2.40	2.19	2.55	4.00	5.00	3.00	1.00	2.29	3.00	3.00	5.83	2.00	1.00	62.93	31	C
G23	7.00	5.00	3.00	4.17	1.00	2.00	2.08	5.00	4.27	5.00	5.00	5.00	4.00	2.40	1.00	3.00	2.92	2.00	1.00	62.83	32	C
G03	7.00	3.00	3.00	3.50	3.00	1.00	1.15	4.38	1.17	5.00	5.00	5.00	4.00	2.50	3.00	3.00	8.13	1.00	1.00	62.82	33	C
G30	7.00	5.00	3.00	8.00	3.00	3.00	0.52	3.02	4.69	5.00	5.00	5.00	1.00	1.56	3.00	3.00	1.67	2.00	1.00	62.46	34	C
G25	1.00	7.00	3.00	8.00	1.00	3.00	0.52	2.08	4.36	5.00	3.00	3.00	2.00	3.44	3.00	3.00	4.38	2.00	1.00	61.78	35	C
G16	7.00	5.00	3.00	2.50	3.00	5.00	3.85	2.08	2.08	5.00	4.00	2.00	1.00	1.67	3.00	3.00	4.58	3.00	1.00	61.77	36	C
G45	1.00	7.00	3.00	5.67	2.00	3.00	3.02	4.17	3.51	1.00	5.00	3.00	3.00	1.35	3.00	3.00	6.25	2.00	1.00	60.97	37	C
G01	7.00	7.00	3.00	4.50	1.00	3.00	4.58	2.08	0.11	1.00	5.00	2.00	1.00	4.38	3.00	3.00	7.29	1.00	1.00	60.94	38	C
G31	7.00	7.00	3.00	5.33	1.00	1.00	3.33	4.48	0.31	5.00	3.00	3.00	4.00	3.85	1.00	3.00	2.50	2.00	1.00	60.81	39	C
G39	1.00	7.00	3.00	8.00	1.00	5.00	0.52	4.06	4.17	4.00	3.00	3.00	4.00	0.31	3.00	3.00	3.75	2.00	1.00	60.81	40	C
G27	7.00	7.00	3.00	8.00	1.00	2.00	1.46	4.69	0.42	3.00	3.00	3.00	3.00	1.88	3.00	3.00	3.96	1.00	1.00	60.40	41	C
G28	7.00	5.00	3.00	3.00	3.00	3.00	2.50	4.58	1.88	1.00	1.00	3.00	4.00	4.58	3.00	3.00	0.83	5.00	1.00	59.38	42	C
G15	7.00	7.00	3.00	8.00	1.00	1.00	0.52	2.08	3.02	4.00	5.00	3.00	3.00	1.46	2.00	3.00	0.63	2.00	1.00	57.71	43	C
G36	7.00	5.00	3.00	6.67	1.00	1.00	0.63	3.96	3.19	1.00	3.00	2.00	3.00	0.31	2.00	3.00	7.71	1.00	1.00	55.46	44	C
G37	7.00	7.00	3.00	4.83	1.00	1.00	3.96	2.29	0.10	3.00	1.00	3.00	4.00	4.27	2.00	3.00	1.46	2.00	1.00	54.92	45	D
G43	7.00	3.00	3.00	3.83	1.00	2.00	1.25	3.65	0.32	5.00	1.00	3.00	4.00	0.94	1.00	3.00	7.92	3.00	1.00	54.90	46	D
G11	7.00	5.00	3.00	8.00	1.00	1.00	0.73	3.75	2.60	3.00	1.00	3.00	1.00	0.73	3.00	3.00	2.71	2.00	1.00	52.52	47	D
G20	7.00	1.00	3.00	7.17	3.00	1.00	1.98	2.08	0.83	3.00	5.00	3.00	4.00	0.42	1.00	3.00	1.46	1.00	1.00	49.94	48	D
G09	7.00	1.00	3.00	2.83	1.00	1.00	0.83	2.08	2.19	5.00	3.00	3.00	4.00	0.63	3.00	3.00	2.08	1.00	1.00	46.65	49	D
평균	5.98	5.90	2.98	6.09	2.22	2.82	2.53	3.54	2.34	3.84	3.65	3.04	3.16	2.51	2.47	3.00	5.43	2.39	1.08	64.97		
만점	7.00	7.00	3.00	8.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00	5.00	3.00	5.00	10.00	5.00	3.00	100.00		

부록4.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데이터 (1차교정)

임시 ID	행정 처분	과테료	잔류 농약	교육 투자	개신율	생산자 교육	관할지역 인증비율	생산자당 투입량	퇴사율	노동소득 분배율	매출액	부채 비율	생산성 (농물)	인증매출 증가율	보고서 정확도	인증취소 처분비율	핵심 역량	국제 인정	총점	순위	등급
G06	10.00	5.00	4.67	3.00	3.00	4.79	0.94	5.40	5.00	5.00	6.00	1.00	1.04	1.00	3.00	9.79	5.00	3.00	76.63	1	A
G12	10.00	5.00	5.67	3.00	4.00	3.23	0.88	6.42	5.00	5.00	2.00	3.00	1.15	3.00	3.00	8.54	4.00	1.00	73.88	2	A
G35	10.00	5.00	6.50	1.00	5.00	2.92	1.13	5.83	4.00	5.00	8.00	1.00	2.71	3.00	3.00	6.67	2.00	1.00	73.75	3	A
G29	7.00	5.00	7.33	3.00	4.00	3.65	2.75	0.00	5.00	5.00	4.00	3.00	3.33	3.00	3.00	9.38	2.00	1.00	71.44	4	A
G33	10.00	5.00	6.83	3.00	3.00	4.17	2.69	3.21	3.00	1.00	4.00	3.00	3.65	2.00	3.00	9.58	2.00	1.00	70.13	5	A
G24	10.00	5.00	6.67	3.00	5.00	0.94	1.31	0.58	3.00	5.00	4.00	2.00	1.98	3.00	3.00	9.17	5.00	1.00	69.65	6	B
G47	10.00	5.00	4.17	4.00	2.00	5.00	2.94	2.48	5.00	5.00	4.00	3.00	3.75	3.00	3.00	4.58	1.00	1.00	68.92	7	B
G21	7.00	5.00	2.67	5.00	2.00	1.67	0.63	5.98	1.00	5.00	8.00	2.00	3.02	2.00	3.00	7.92	4.00	3.00	68.88	8	B
G02	10.00	5.00	7.67	3.00	4.00	2.29	1.94	2.77	1.00	1.00	4.00	3.00	3.13	3.00	3.00	8.96	4.00	1.00	68.75	9	B
G19	7.00	5.00	8.00	2.00	4.00	1.35	1.38	2.19	5.00	1.00	4.00	3.00	4.79	3.00	3.00	8.75	4.00	1.00	68.46	10	B
G17	10.00	5.00	7.00	0.00	5.00	1.56	2.56	4.67	5.00	5.00	1.00	3.00	1.77	3.00	3.00	8.13	1.00	1.00	67.69	11	B
G41	10.00	5.00	7.50	3.00	4.00	1.88	2.25	1.02	5.00	5.00	6.00	3.00	4.06	2.00	3.00	0.63	3.00	1.00	67.33	12	B
G08	10.00	5.00	4.00	1.00	4.00	3.54	2.81	4.38	5.00	2.00	2.00	3.00	3.23	3.00	3.00	7.29	3.00	1.00	67.25	13	B
G04	10.00	5.00	5.00	1.00	3.00	3.75	1.06	1.31	5.00	5.00	6.00	3.00	4.17	2.00	3.00	5.21	2.00	1.00	66.50	14	B
G38	10.00	5.00	5.17	2.00	3.00	1.04	1.69	5.10	5.00	3.00	2.00	3.00	0.52	3.00	3.00	10.00	2.00	1.00	65.52	15	B
G32	10.00	5.00	1.83	4.00	2.00	0.42	0.56	3.79	5.00	3.00	6.00	3.00	3.54	3.00	3.00	5.83	2.00	3.00	64.98	16	B
G34	7.00	5.00	3.33	1.00	2.00	4.90	0.56	7.00	3.00	3.00	8.00	1.00	4.90	1.00	3.00	6.04	3.00	1.00	64.73	17	B
G48	10.00	5.00	6.00	1.00	3.00	2.19	2.38	5.69	5.00	3.00	4.00	3.00	0.31	2.00	3.00	6.46	1.00	1.00	64.02	18	B
G05	7.00	5.00	2.17	5.00	2.00	4.38	1.00	3.06	5.00	5.00	4.00	3.00	3.96	3.00	3.00	3.96	2.00	1.00	63.52	19	B
G26	10.00	5.00	3.67	3.00	5.00	4.48	2.50	6.71	5.00	3.00	1.00	3.00	0.31	2.00	3.00	3.54	1.00	1.00	63.21	20	B
G18	10.00	5.00	4.33	2.00	3.00	3.02	1.88	4.96	1.00	5.00	4.00	3.00	1.35	3.00	3.00	5.63	2.00	1.00	63.17	21	B
G46	10.00	5.00	2.83	1.00	3.00	2.81	3.00	2.92	5.00	5.00	6.00	3.00	2.60	2.00	3.00	2.92	2.00	1.00	63.08	22	B
G44	10.00	5.00	1.17	2.00	2.00	4.69	1.25	3.35	5.00	5.00	4.00	2.00	2.19	3.00	3.00	4.79	3.00	1.00	62.44	23	B
G49	10.00	5.00	5.83	1.00	3.00	2.40	0.69	3.65	4.00	5.00	4.00	1.00	2.29	3.00	3.00	5.42	2.00	1.00	62.27	24	B

G22	4.00	5.00	4.83	5.00	3.00	1.77	2.44	6.27	3.00	5.00	4.00	3.00	2.81	2.00	3.00	2.29	3.00	1.00	61.42	25	B
G42	10.00	5.00	0.67	1.00	3.00	0.42	0.56	6.13	5.00	3.00	8.00	2.00	3.44	3.00	3.00	4.17	2.00	1.00	61.38	26	B
G14	10.00	5.00	0.83	2.00	1.00	4.27	1.44	6.85	5.00	1.00	8.00	3.00	4.69	2.00	3.00	0.00	2.00	1.00	61.08	27	B
G07	10.00	5.00	6.17	4.00	2.00	3.44	1.50	1.90	1.00	5.00	2.00	3.00	2.92	3.00	3.00	3.13	3.00	1.00	61.04	28	B
G13	10.00	3.00	5.50	1.00	5.00	2.60	0.56	0.88	1.00	1.00	4.00	3.00	5.00	3.00	3.00	6.25	5.00	1.00	60.79	29	B
G40	10.00	5.00	4.50	1.00	1.00	3.33	2.06	4.08	5.00	3.00	4.00	3.00	3.85	1.00	3.00	2.08	2.00	1.00	58.92	30	B
G10	7.00	5.00	3.50	1.00	3.00	3.13	0.81	6.56	1.00	5.00	4.00	3.00	1.25	2.00	3.00	5.00	3.00	1.00	58.25	31	B
G23	10.00	5.00	2.33	3.00	3.00	0.00	2.88	5.25	5.00	1.00	1.00	3.00	0.83	3.00	3.00	6.88	2.00	1.00	58.17	32	B
G03	7.00	5.00	1.00	3.00	5.00	3.85	0.63	4.23	5.00	4.00	2.00	1.00	1.67	3.00	3.00	4.38	3.00	1.00	57.75	33	B
G30	7.00	5.00	7.17	3.00	3.00	0.42	1.19	4.81	5.00	5.00	2.00	1.00	1.56	3.00	3.00	1.25	2.00	1.00	56.40	34	B
G25	10.00	5.00	0.67	1.00	5.00	0.42	1.81	5.54	4.00	3.00	4.00	3.00	0.31	3.00	3.00	3.33	2.00	1.00	56.08	35	B
G16	10.00	5.00	3.17	1.00	3.00	4.58	0.63	0.15	1.00	5.00	2.00	1.00	4.38	3.00	3.00	7.08	1.00	1.00	55.98	36	B
G45	1.00	5.00	1.67	5.00	4.00	4.06	2.31	0.73	5.00	5.00	4.00	3.00	4.48	3.00	3.00	1.46	2.00	1.00	55.71	37	B
G01	4.00	5.00	2.00	3.00	1.00	1.15	2.00	1.60	5.00	5.00	4.00	3.00	2.50	3.00	3.00	8.33	1.00	1.00	55.58	38	B
G31	10.00	5.00	0.67	3.00	1.00	2.71	0.56	2.04	4.00	5.00	6.00	3.00	2.08	2.00	3.00	1.88	2.00	1.00	54.94	39	C
G39	7.00	5.00	3.00	0.00	2.00	2.08	2.63	3.94	5.00	5.00	4.00	3.00	2.40	1.00	3.00	2.71	2.00	1.00	54.75	40	C
G27	7.00	5.00	1.50	3.00	3.00	2.50	2.13	1.46	1.00	1.00	4.00	3.00	4.58	3.00	3.00	0.42	5.00	1.00	51.58	41	C
G28	10.00	5.00	3.83	1.00	1.00	3.96	0.75	1.17	3.00	1.00	4.00	3.00	4.27	2.00	3.00	1.04	2.00	1.00	51.02	42	C
G15	7.00	5.00	5.33	1.00	1.00	0.63	1.75	4.52	1.00	3.00	2.00	3.00	0.31	2.00	3.00	7.50	1.00	1.00	50.04	43	C
G36	10.00	5.00	0.67	1.00	2.00	1.46	2.19	0.29	3.00	3.00	4.00	3.00	1.88	3.00	3.00	3.75	1.00	1.00	49.23	44	C
G37	7.00	5.00	7.83	1.00	1.00	0.73	1.63	2.63	3.00	1.00	4.00	1.00	0.73	3.00	3.00	2.50	2.00	1.00	48.04	45	C
G43	10.00	5.00	0.67	1.00	1.00	0.42	0.56	3.50	4.00	5.00	4.00	3.00	1.46	2.00	3.00	0.21	2.00	1.00	47.81	46	C
G11	4.00	5.00	2.50	0.00	2.00	1.25	1.56	0.44	5.00	1.00	4.00	3.00	0.94	1.00	3.00	7.71	3.00	1.00	46.40	47	C
G20	1.00	5.00	6.33	3.00	1.00	1.98	0.56	1.75	3.00	5.00	4.00	3.00	0.42	1.00	3.00	0.83	1.00	1.00	42.88	48	C
G09	1.00	5.00	1.33	1.00	1.00	0.83	0.56	2.33	5.00	3.00	4.00	3.00	0.63	3.00	3.00	1.67	1.00	1.00	38.35	49	C
평균	8.31	4.96	4.02	2.15	2.81	2.46	1.57	3.46	3.81	3.63	4.10	2.63	2.54	2.50	3.00	4.90	2.33	1.08	60.27		
만점	10.00	5.00	8.00	5.00	5.00	5.00	3.00	7.00	5.00	5.00	8.00	3.00	5.00	3.00	5.00	10.00	5.00	3.00	100.00		

부록5.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테이터 (2차교정)

임시 ID	인증 건수	인증 사업자수	인증사업 매출비율	행정 처분 합율	부적 처분 합율	자체행정 처분실적 적발률	2중체크 적발률	교육훈련 투입량	기관장의 역량강화	갱신율	사후관리 빈도	사업자 교육실적	관할지역 인증비율	사업자당 투입량	심사원 심사율 투자율	심사원 인건비 비중	매출액 비율	부채 비율	매출 증가율	핵심 역량	ISO 17065	과테료	총점	순위	등급
G14	4	4	5	5	5	5	5	5	3	4	5	3	3	5	5	4	5	4	3	5	0	0	87	1	A
G50	4	4	5	5	5	5	5	5	3	2	5	5	2	5	5	2	5	1	5	0	0	0	83	2	A
G12	3	2	5	3	5	5	5	4	3	5	4	5	1	5	5	3	4	5	5	3	0	0	82	3	A
G52	5	5	5	5	5	2	5	5	3	4	5	5	1	4	5	3	5	1	5	0	0	0	82	4	A
G13	4	2	5	3	5	3	5	5	3	4	5	5	1	5	5	4	4	5	3	1	0	0	81	5	A
G38	4	4	5	5	5	2	5	5	3	3	5	5	4	1	1	3	5	5	5	1	0	0	80	6	A
G51	2	2	4	5	5	4	5	5	3	3	5	5	5	4	5	1	2	5	5	0	0	0	80	7	A
G53	5	5	5	5	4	5	5	1	3	4	5	3	3	4	2	5	1	5	5	0	0	0	79	8	B
G02	5	4	5	5	2	4	4	2	3	5	5	3	5	5	1	5	4	5	5	0	0	0	78	9	B
G33	3	4	5	5	3	5	3	5	3	3	3	5	5	2	5	1	5	3	5	0	0	0	78	10	B
G34	2	1	5	5	5	3	3	5	3	5	5	5	5	5	5	1	1	3	5	0	0	0	77	11	B
G28	4	4	5	3	5	1	3	3	3	4	1	4	5	3	2	4	5	5	5	0	0	0	76	12	B
G01	5	5	5	5	5	4	5	5	3	4	1	5	1	5	1	2	5	3	5	0	0	0	75	13	B
G22	2	3	1	5	5	4	3	3	3	5	5	4	2	5	5	1	3	1	5	3	0	0	75	14	B
G29	3	5	1	3	1	3	4	5	3	5	1	5	5	2	5	5	4	5	5	0	0	0	75	15	B
G41	5	4	5	3	5	2	5	5	3	2	5	5	1	1	5	1	5	5	5	0	0	0	75	16	B
G06	3	2	5	5	3	1	5	5	3	4	3	5	1	5	5	1	5	1	1	1	5	0	74	17	B
G17	4	5	5	5	4	5	1	2	3	4	5	3	5	2	5	3	5	1	3	0	0	0	74	18	B
G31	3	4	5	5	5	1	4	4	3	2	1	5	5	2	5	4	4	5	1	0	0	0	74	19	B
G48	4	5	3	5	3	3	5	5	3	4	2	5	2	1	5	1	5	5	3	0	0	0	74	20	B
G05	1	3	5	5	5	4	1	1	3	4	5	2	5	2	4	1	3	5	5	1	0	0	73	21	B
G54	2	2	1	5	5	3	5	5	3	5	1	5	5	1	3	4	3	5	3	2	0	0	73	22	B
G21	4	5	5	5	1	4	4	1	3	5	2	2	3	2	4	3	5	4	3	1	0	0	71	23	B
G24	2	2	5	5	3	1	4	3	3	5	3	4	5	5	5	1	2	5	5	0	0	0	71	24	B
G39	3	3	1	5	5	2	1	1	3	5	1	1	5	4	5	5	3	5	5	0	0	0	71	25	B
G49	3	5	5	5	5	1	3	3	3	2	5	4	1	1	5	1	5	5	3	0	0	0	71	26	B
G40	3	2	5	5	5	1	4	1	3	4	1	1	5	5	5	2	2	5	5	2	0	0	70	27	B

부록6. 인증기관 예비조사 로테이터 (3차 교정)

임시 ID	인증 인준 기업 수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비율	행적성 실적	부정행위 합계	자체행정 차관실적	2중체크 2차발표	교육훈련 투입량	기관장의 역량강화	경신율	사용관리 빈도	사업자 교육실적	관할지역 인출비율	사업자당 투입량	신사업 퇴사율	신사업 근무연수	신사업 인건비 비중	매출액	부채 비율	매출 증가율	핵심 역량	ISO 17065	과테코	총점	순위	등급
G14	3	3	4	9	5	2	2	5	2	5	5	2	5	2	7	5	5	5	5	4	2	3	0	0	88	1	A
G51	1	1	3	9	5	2	2	5	2	5	2	7	5	3	5	5	7	7	5	2	3	3	0	0	83	2	A
G50	3	3	4	9	5	2	2	7	5	2	1	7	5	1	7	5	1	1	4	5	1	3	0	0	83	3	A
G12	2	1	4	9	2	3	4	7	4	2	4	5	4	1	7	5	7	7	3	4	3	3	0	0	83	4	A
G52	4	4	4	9	5	2	3	5	5	2	3	7	5	1	5	5	5	5	3	5	1	3	0	0	82	5	A
G13	3	1	4	5	4	2	3	5	5	2	3	7	5	1	7	5	7	4	4	4	3	2	1	0	81	6	A
G53	4	4	4	9	4	5	7	1	3	2	3	7	2	2	5	2	7	7	2	5	3	3	0	0	81	7	A
G22	1	2	1	9	5	2	4	5	3	2	4	7	4	1	7	5	7	7	2	3	1	3	0	0	80	8	A
G06	2	1	4	9	3	1	7	5	5	2	3	3	5	1	7	5	7	7	1	5	1	1	5	0	79	9	B
G02	4	3	4	9	2	4	5	2	2	2	4	7	3	3	7	1	7	7	1	4	3	3	0	0	78	10	B
G33	2	3	4	9	3	5	3	5	5	2	2	3	5	3	1	5	7	4	5	5	2	3	0	0	76	11	B
G38	3	3	4	9	5	2	1	5	5	2	2	7	5	3	1	1	5	3	5	5	3	3	1	0	76	12	B
G34	1	1	4	9	5	5	3	5	5	2	4	7	5	3	7	5	3	1	1	1	2	3	0	0	76	13	B
G05	1	2	4	9	5	5	5	1	1	2	3	7	2	3	1	4	5	5	5	3	3	3	1	0	74	14	B
G01	4	4	4	9	5	5	5	5	5	2	3	1	5	1	7	1	1	1	5	5	2	3	0	0	73	15	B
G48	3	4	2	9	3	5	3	5	5	2	3	1	5	1	1	5	7	3	5	5	3	2	0	0	72	16	B
G41	4	3	4	5	5	5	1	5	5	2	2	1	5	1	1	5	7	5	5	5	3	3	0	0	72	17	B
G17	3	4	4	9	4	5	1	2	3	2	3	7	3	3	1	5	5	3	5	5	1	2	0	0	72	18	B
G24	1	1	4	9	3	1	5	3	3	2	4	3	4	3	7	5	3	5	2	3	3	0	0	0	71	19	B
G49	2	4	4	9	5	5	1	3	3	2	1	7	4	1	1	5	5	1	5	3	2	0	0	0	70	20	B
G54	1	1	1	9	5	5	3	5	5	2	4	1	5	3	1	3	5	4	3	3	3	2	0	0	68	21	C
G28	3	3	4	5	5	5	1	3	3	2	3	1	3	3	3	2	7	4	5	3	3	0	0	0	68	22	C
G40	2	1	4	9	5	1	5	1	1	2	3	1	1	3	7	5	5	2	2	3	3	2	0	0	67	23	C
G43	2	3	4	1	3	5	5	1	1	2	2	7	2	3	7	5	5	1	4	3	1	0	0	0	66	24	C
G29	2	4	1	5	1	3	5	5	5	2	4	1	5	3	1	5	7	2	4	3	3	0	0	0	66	25	C
G44	1	1	1	5	5	5	5	5	5	2	2	5	5	1	7	5	7	7	1	1	1	1	0	0	66	26	C
G18	2	4	4	5	5	1	4	1	1	3	4	1	1	5	5	5	4	2	2	5	5	2	0	-1	70	27	C

G21	3	4	4	4	5	2	5	1	5	1	5	5	2	5	2	5	5	3	4	1	5	0	0	0	0	69	28	C
G04	1	1	4	4	5	4	4	1	5	2	5	5	1	4	1	4	4	3	5	5	3	0	0	0	0	69	29	C
G31	2	3	4	4	1	3	4	4	2	5	3	5	2	5	2	5	3	4	4	1	5	0	0	0	0	68	30	C
G37	2	3	4	4	1	4	5	1	2	5	3	5	1	5	1	5	5	4	4	5	1	0	0	0	0	68	31	C
G32	2	3	4	4	1	3	5	4	1	5	2	4	5	5	5	4	4	1	4	5	1	0	0	-4	68	32	C	
G07	1	1	1	4	5	2	5	3	2	1	3	1	3	2	5	4	4	5	5	1	5	0	0	0	0	67	33	C
G55	2	1	4	4	5	5	5	4	3	2	4	5	4	2	3	1	3	1	3	1	5	0	0	0	0	66	34	C
G39	2	2	1	1	5	5	5	1	5	2	5	3	5	5	4	1	1	1	5	3	1	0	0	0	0	64	35	C
G23	1	3	4	4	5	1	5	2	2	1	3	5	5	1	5	5	5	2	1	3	0	0	0	0	63	36	C	
G03	2	3	4	4	3	5	5	1	1	2	2	4	3	4	5	1	1	4	1	5	0	0	0	0	62	37	C	
G45	1	2	1	1	5	5	1	1	1	3	1	1	1	1	1	1	1	5	5	5	1	5	0	0	0	62	38	C
G11	2	3	4	4	3	5	5	1	1	2	1	1	1	5	3	1	1	4	5	5	0	0	0	0	61	39	D	
G26	4	2	4	4	5	3	1	1	1	3	1	5	1	1	1	1	1	4	5	5	1	0	0	0	0	60	40	D
G09	4	2	4	4	3	5	5	4	5	4	5	1	5	5	5	5	1	1	1	1	1	0	0	0	0	60	41	D
G27	4	4	4	4	5	1	5	3	3	1	4	5	3	1	4	1	4	1	3	1	5	0	0	0	0	58	42	D
G46	4	4	4	4	5	5	1	1	1	3	1	5	1	1	1	1	1	1	4	1	3	0	0	0	0	56	43	D
G19	1	1	4	4	5	2	1	1	1	3	1	5	1	1	1	1	1	3	5	5	0	0	0	0	55	44	D	
G25	4	2	1	1	3	1	1	1	1	3	1	3	1	1	1	1	1	5	5	5	0	0	0	0	55	45	D	
G20	1	1	1	4	1	4	5	1	2	3	3	1	1	4	3	4	3	4	3	5	1	0	0	0	0	54	46	D
G08	2	2	4	4	5	1	1	1	1	3	1	1	1	1	1	1	1	5	3	3	4	5	0	0	0	51	47	D
G47	4	3	4	4	5	3	1	1	1	3	1	5	1	1	1	1	1	4	5	3	0	0	0	0	51	48	D	
G10	2	4	4	4	5	5	1	1	1	3	1	1	1	1	1	1	1	5	3	5	2	0	0	0	0	50	49	D
G35	2	2	4	4	5	4	1	1	1	3	1	1	1	1	1	1	1	5	1	5	0	0	0	0	49	50	D	
G30	2	2	4	4	3	3	2	4	1	3	2	5	3	1	1	1	1	3	1	3	0	0	0	0	49	51	D	
G36	2	1	4	4	3	5	1	1	1	3	1	1	1	1	1	1	1	3	1	5	0	0	0	0	48	52	D	
G16	2	2	4	4	5	5	1	1	1	3	1	2	1	1	1	1	1	4	1	5	0	0	0	0	48	53	D	
G15	2	3	4	4	5	1	1	1	1	3	1	1	1	1	1	1	1	4	1	3	0	0	0	0	43	54	D	
G42	1	1	2	2	5	2	1	1	1	3	1	5	1	1	1	1	1	1	1	1	3	0	0	0	0	37	55	D
평균	2.29	2.44	3.47	3.47	7.69	3.71	3.64	2.82	2.76	2.00	2.35	3.65	3.00	2.11	3.18	3.27	4.24	2.47	3.80	2.16	2.53	가점	가점	가점	감점	64.25		
만점	4.00	4.00	4.00	4.00	9.00	5.00	5.00	7.00	5.00	3.00	4.00	7.00	5.00	3.00	7.00	5.00	7.00	5.00	5.00	3.00	3.00	0.00	0.00	0.00	0.00	100		

부록7. 한국-미국-유럽연합 유기기준 비교표

- 유기생산기준을 나타내는 시행규칙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한 것임. 즉, 농식품부 또는 농관원의 고시, 또는 USDA NOP의 announcement 등 세부 기준은 비교하지 않았음
- 비교하는 것이 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음. 일반적인 기준, 예컨대 유기농식품은 유기원료가 95% 이상이라는 것과 같이 보편적 기준은 비교하지 않았음
- 생산 및 취급 기준을 비교한 것이며, 인증, 인정, 표시방법 등 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가공 부분은 취급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음
- 허용물질 목록은 비교하지 않았음. 허용물질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물질의 세부 기준의 변경이 비교적 빈번한 편이므로 구체적 물질의 허용 여부는 별도로 비교하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농식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축산, 사료, 수산물에 제외하였음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분뇨의 과다사용, 유실·용탈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비 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비 저장 및 취급 시설은 토양이나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않도록 설계되고, 축조되고, 운영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사업장의 토양과 수질 등 자연자원을 유지 개선 • 동식물 유래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작물, 토양, 수자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 선정시 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고려 • 영농자재 사용을 통하여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것 •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축분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질소의 양은 170kg/ha/yr를 초과하면 안 됨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생산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인증신청서(농산물, 임산물) • [별지 제6호서식]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인증절차는 검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자가 작성하는 연간 농업계획서(a yearly description of the agricultural enterprise)를 바탕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P 작성시 필수적 내용 • 운영 방법, 절차, 빈도 • 생산·취급시 사용될 물질의 목록 (출처, 사용처, 성분, 상업적 조달가능성) • 계획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절차 빈도 • 기록 방법, 절차 • 오염과 혼입을 방지하는 방법 • 그밖에 기준에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다음 사항에 대한 문서를 실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지에 대한 완전한 기술서 - 유기 생산 기준을 지키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의 실행 계획 • 오염과 혼입을 방지 할 수 있는 예방적 방법 • 다음 내용을 약속하는 확인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겠음 -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관련 기관의 조치를 받겠음 -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더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생산 계획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생산계획서와 가공품을 위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는 인증신청시 제출, 심사 전에 인증기관이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전에 인증기관이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함 • 품질시스템의 최초 작성 내용은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함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경중 관련 문서·기록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4]경영 관련 자료 · 재배포장의 재배사항 기록한 자료, 재배포장에 투입된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유기 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병행생산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문서 대장은 구입한 원재료의 원산지, 특성, 양, 용도를 공인 인증기관이나 인증인이 추적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함. 또한 그 기록, 문서 대장에는 판매한 모든 농산물의 특성, 판매량, 판매처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 · 충분히 구체적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와 전환기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둘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 · 토양관리 및 양분 공급을 위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자체 사용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문서 · 유기와 비유기 농산물을 동시에 수확하는 경우, 수확일시, 유통, 판매일자 등 · 비료 사용에 대한 기록: 사용 일자, 비료의 유형과 사용량, 사용량 필지 · 농약 사용에 대한 기록: 사용한 사유 및 날짜, 제품의 유형, 사용 방법 · 자체 구매에 대한 기록: 구매 날짜, 제품의 유형, 구매량 · 수확에 대한 기록: 수확 날짜, 유형, 유기 및 전환기 제품의 수확량
취급 관련 문서·기록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4]경영 관련 자료 · 원료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인증품의 취급 과정에 대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된 원료, 첨가물 및 생산보조제의 출처, 특성, 수량 등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 · 충분히 구체적인 것 · 시설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허용/비허용)에 대한 성분, 사용방법, 오염 방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공정에 따른 관리절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방지 방안 - 적절한 청소절차, 모니터, 기록 체계 - 비유기제품이 유기제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 · 유기와 비유기 농산물을 동시에 수확하는 경우, 수확일시, 유통, 판매일자 등 · 유기제품 반입 절차에 따른 검수 기록 · 원료의 수급, 가공, 포장, 표시, 저장, 운송에 대한 모든 기록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문서·기록 의 보존성, 추적성, 검 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쌀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알채소, 버섯류는 최근 6개월 이상 기록 제조·가공 및 취급자: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간으로 함 인증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가능 취급관련 기록을 작업장에 비치 취급관련 기록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문서 대장은 구입한 원료의 원산지, 특성, 양, 용도를 추적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받을 수 있을 것 방목시기에 가족 방목을 통해 30% 이상 급여하였음을 계산하여 보여줄 수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받을 기록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품의 공급자, 판매자, 수출자 유기 제품의 상태, 수량, 원료의 조성 지장하고 있는 유기제품의 상태와 수량 판매된 제품의 수량, 구매자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투입/산출이 적정히 계산되어야 함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분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를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인증기관이 요구 시에는 이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해생산을 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형과 상황 기록 보관하고 인증기관이 요구시에는 이를 제공 혼입방지를 위한 일반 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 운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유기제품의 오염과 혼입을 방지한다는 일반 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병해운영 금지 경종, 축산, 수산 등에서 서로 다른 품종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유기와 비유기 농산물을 동시에 수집하는 경우 혼입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식별 체계 등을 도입해야 하며, 수집 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와 비유기 생산지가 명확히 분리되고 식별할 수 있을 것 유기 작물 수확 48시간 이전에 인증기관에 통보할 것 유기 작물 수확 직후에 수확량을 통보하고, 구분관리 방법을 알릴 것 비유기 제품 가공 및 저장에 대한 시·공간적 구분 유기가공 시 마다 인증기관에 가공수량을 보고 비유기 제품과 혼입 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로트 식별 체계 시행 유기가공 전에는 설비 청소 실시
제품 식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품에는 표준비코드 또는 전자 태그(RFID)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 제품에 대한 모든 식별 체계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 제품에 대한 모든 식별 체계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 제품에 대한 모든 식별 체계가 요구됨
합성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물질 목록에 있지 않은 한 합성농약 금지 합성비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물질 목록에 있지 않은 한, 농업과 축산업에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물질 목록에 있지 않은 한, 농업과 축산업에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물질 목록에 있지 않은 한, 농업과 축산업에 사용할 수 없음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허용 성분	<p>Positive 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물질 •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 기구·철비의 세척·살균·소독제 <p>시설에서 허용된 병해충 방제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p>	<p>Positive 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 토양비옥화 및 개량에 사용하는 물질 • 식물 해충 및 질병 관리 물질 	<p>Positive List와 Negative List 병행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에 허용되는 합성물질 • 경종에 금지되는 비합성물질 • 축산에 허용되는 합성물질 • 축산에 금지되는 비합성물질 • 가공에 허용되는 비농업유래 물질 • 가공에 허용되는 농업유래 물질 	<p>Positive 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 보호 자재 • 비료 및 토양개량제 • 동물 영양 관리를 위한 식물·동물·광물 성분 • 사료첨가제 및 가공보조제 • 축산·수산업 시설의 세척 및 소독제 • 경종관련 시설의 세척 및 소독제 •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 농업유래의 비유기 원료
토양 양분 작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됨 • 정기적인 토양검정 • 토양비옥도 유지·개선 노력 • 윤작 실시 • 버섯류 재배시 양분공급 물질 중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유기농산물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부산물 • 어린잎채소는 수분공급 및 허용물질 외의 물질 투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의 원리를 통하여 토양의 유기물, 비옥도, 안정성, 생물다양성을 유지 개선 • 토양 경화, 토양 유실 방지 • 외부 투입자재 최소화 • 동식물 유래의 부산물을 자원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경종 방법을 실행 • 토양 유기물 함량을 개선하기 위한 동·식물 유래의 자재 사용 •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 • 윤작, 피복작물, 동·식물 유래의 자재사용을 통해 작물의 영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의 원리를 통하여 토양의 유기물, 비옥도, 안정성, 생물다양성을 유지 개선 • 토양 경화, 토양 유실 방지 • 외부 투입자재 최소화 • 동식물 유래의 부산물을 자원으로 사용 • 생명역동농법 자재 허용 • 질소질 미네랄은 사용금지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배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버섯류와 싹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외 채소에 사용 되는 배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의 검출되지 않아야 함 유기농산물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섯 기준을 별도로 요구함 축사에서 유래한 부산물: 유기생 산 기준에 따른 물질 또는 부속 I 에서 속한 물질, 배지의 전체 조성물질에서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유기농산물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화학처리 하지 않은 이탄(peat) 별목 후 화학처리 하지 않은 목재 부속 I 에서 정한 미네랄, 물 및 토양
윤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윤작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간의 윤작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윤작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의 상태를 개선·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요구됨
토양의 전 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생 작물(목초 제외): 수확 전 3년 다년생 외 작물: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 야생식물: 수확 전 3년 농장사용 경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가능: 최소 1년 이상 싹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 린외채소(토양재배 제외), 버섯류: 전환기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생외작물: 파종·정식 전 2년 다년생작물: 수확 전 3년 휴경지 등 예외 경우: 최소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작물에 대해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기간의 시작은 관련 기관의 관리를 받기 시작한 시점 다년생작물: 수확 전 3년 1년생작물: 파종·정식 전 2년 야생식물: 수확 전 3년 유기와 전환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 물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기록
묘목의 전 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묘목에 “유기” 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없음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야생 식물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예정구역도 작성 • 채취예정수량 조사서 • 채취시 관련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하며,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 • 병행품목을 채취하거 취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집 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전성이나 종의 보존을 고려시키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파괴 금지 • 채취 작물의 성장과 생산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인 서식지와 품종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수경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됨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물: 농업용수 • 짝을 티워 직접 먹는 농산물: 먹는다 • 농산물 세척: 먹는다 • 축산: 생활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공급되는 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공급되는 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공급되는 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종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종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종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종자 사용 • 1년생 작물의 경우 1세대 이상 유기적 관리를 실시한 모체에서 채종 • 다년생 작물의 경우 2회 이상의 생산기간을 반복한 모체에서 채취
비유기 종자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 싹틔워 먹는 농산물은 비유기 종자 허용 안 됨 •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씨 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인 증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 • 비처리 종자 • 비처리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처리된 종자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 금지된 물질로 처리한 종자는 사용 불가(전염병 방지를 위해 정부가 종자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 싹틔워 먹는 농산물은 비유기 종자 허용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 금지된 물질로 처리한 종자는 사용 불가(전염병 방지를 위해 정부가 종자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 파종 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비유기 모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인 증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 • 비처리 변식재(vegetative reproductive material) • 비처리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처리된 변식재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일시 적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사 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 금지된 물질로 제배한 모종은 사 용불가(전염병 방지를 위해 정부가 약품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 파종 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함
G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로서 금지 • 식물 유래의 거름에 대해 GMO 규제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로부터 생산된 모든 원료와 제품(채배, 제조, 가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학적 약품 외에는 모두 금지: 식품, 사료, 가공보조제,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종자, 모종, 미생물, 동 물 등 • GMO 유래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확인서) 필수
농장 경계 지 관리 및 생산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지·보호시설 • 포장 입구 또는 경계지에 표지판 설치 • 완충지에서 생산도니 농산물에 대 한 구분관리 계획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충의 천적을 보호하는 생태학적 완충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경계선 • 완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을 방지하는 일반적 기준에서 다루어짐
농축산물 생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과 기층에 접촉하는 부분에 약품 처리된 목재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축분 사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장, 정숙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의 축 분: 퇴비화 기준에서 제외 • 공장형 축분: 퇴비화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축산농가 축분: 퇴비화 여부 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비공장형 축분: 축분 사용의 필요 성을 인증기관에서 인정해야 함 • 공장형 축분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에만 사용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비화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용 작물의 재배토양: 퇴비 화 기준에서 제외 - 가식부가 토양에 접촉하는 작 물의 수확 120일 전 - 가식부가 토양에 접촉하지 않 는 작물의 수확 90일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형 축분 사용 금지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퇴비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형 축분의 경우에만 적용 15일 이상 55~75°C 뒤집기 5회 이상 항생물질 없어야 함 유해성분은 퇴비규격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비화 축분을 위하여 미생물 또는 식물유래 제품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종류의 동·식물 유래의 원료에 적용 C:N = 25~40:1 퇴비 가공설비에서 3일 이상 55~75°C 퇴비 적치식에서 15일 이상 55~75°C + 5회 이상 뒤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히 퇴비화 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작물체 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염 제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염 제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균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 	
경작지 병해충과 잡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의 원리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허용물질 목록에 있는 성분을 통해 방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의 원리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허용물질 목록에 있는 성분을 통해 방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방법을 통해 병해충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작 등 농경의 원리로 토양과 작물의 건강성 유지 병해충 발생 환경 차단 병해충에 강한 품종 선택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허용물질 목록에 있는 성분을 통해 방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됨 비닐 멀칭을 사용한 경우 수확 직후 제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해충에 강한 품종선택, 윤작, 친적 보호 등의 방법 사용 넛과 디스펜서는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 직후 회수
취급·가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결유지 오염방지 혼입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결유지 오염방지 혼입방지 가공공정은 적정제조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오염과 혼입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유기 식품과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 첨가물, 가공보조제, 원료 및 가공공정은 적정제조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원칙 적용
방사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취급시 금지 전리방사선 처리된 비유기 원료 허용 여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 위생의 목적으로 전리방사선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리방사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 전리방사선 처리된 비유기 원료 사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리방사선은 유기식품·유기사로 및 유기식품·유기사료에 사용되는 원료에 사용 금지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취급시 병 해충 관리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 • 예방적 방법 •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 허용물질 사용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 • 예방적 방법 •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 허용물질 사용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 • 예방적 방법 •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 허용물질 사용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 • 예방적 방법 •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 허용물질 사용
시설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 을 통한 병충해 관 리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등의 예방 조치 실시	취급, 저장, 운송, 가공시설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당국이 허용 해야하며, 유기제품과 접촉이 않도 록 함	인증기관이 성분, 사용방법, 유기 제품과 접촉을 막기 위한 방법을 승 인	유기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 실시
허용되지 않은 물질 의 간류 기준	농산물은 아래 경우에 한하여 관 행식품의 5% - 비산 - 농업용수 - 불가항력적인 요인	기준 없음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종자, 모종, 묘목에 약품 처리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처리할 수 있음	기준 없음
허용되는 가공/취급 방법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허용되는 가공/취급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유기 물질에 대한 허용 목록은 “비농업유래” 물질 목록으로만 구성 즉, 농업유래 물질이라면 5% 이내에서 품목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물질 목록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업유래” 물질 목록과 “가공보조제” 물질 목록으로 구성 착함료: 천연 향료 물질 또는 천연 향료 제제로 표시된 물질 및 제품 미생물 및 효소제제: GMO유래 물질을 제외한 식품가공에서 사용되는 물질 광물질, 비타민, 펙수지반산, 아미노산, 기타 질소화합물: 염적으로 허용된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물질 목록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업유래” 물질 목록과 “농업유래 물질” 목록으로 구성 즉, 농업유래 물질이라 할 지라도 목록에 있는 품목만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물질 목록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가물, 가공보조제” 목록과 “농업유래 물질” 목록으로 구성 즉, 농업유래 물질이라 할 지라도 목록에 있는 품목만 사용 가능
비유기 물질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적 조달 불가능 GMO 사용금지 전리방사선 처리된 원료의 사용 여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적 조달 불가능 GMO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적 조달 불가능 GMO, 전리방사선, 오페수 유래 물질이 사용된 것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적 조달 불가능 GMO 사용금지
유기체 제품의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급 일반 기준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급 일반 기준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급 일반 기준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체 제품을 저장할 때에는 식별체계를 통해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오염과 혼입 방지 유기체 제품과 다른 일반 농식품들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체 제품을 격리시킬 것 식별체계를 갖추고, 혼입 또는 교체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 유기체 제품을 보관하기 전에 청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것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코덱스 가이드라인 (CAC GL 32)	미국 (CFR Title7 Part 205, NOP)	유럽연합 (EC834/2007, EC889/2008)
포장,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 유기식품을 오염시킬 우려(risk)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 생물분해성, 재활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유기식품을 오염시킬 우려(risk)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식품을 오염시킬 우려(risk)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용기,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봉인된 상태로 제품 표시물이 훼손되지 않고, 혼입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발송자 구매자 모두 유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을 봉인하지 않아도 됨 제품 운송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동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유기제품'임을 표시하는 제품의 이름과 원료의 구성 인증기관의 이름과 코드 제품을 식별·추적할 수 있는 표시
반입 제품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되는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되는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되는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제품의 개봉상태와 동봉한 문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 수립 및 시행 제품 반입 절차에서 제품 자체와 동봉한 문서의 비교 확인 후 기록할 것

부록8. 한국-일본-중국-영국 저투입 농산물 인증 기준 비교표

- 무농약농산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음.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사료는 비교하지 않았음.
- 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 기준에 대하여 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며, 인증, 인정, 표시방법 등 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허용물질 목록은 비교하지 않았음. 허용물질은 국가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물질의 세부 기준의 변경이 비교적 빈번한 편이며 중국과 일본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적용됨.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중 무농약농산물 관련 사항)	일본 (특별재배농산물, 特別栽培農産物)	중국 (녹색식품, 绿色食品)	영국 (Red Tractor)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문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 (OGFDC), 전문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증기관
인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축산물, 산물,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및 수송
인증대상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농산물이 인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지역별 인증대상 농산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과채류
토양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무농약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 •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함 • 토양오염우려기준 (중금속 검출 한계 기준) • 잔류농약 검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기간 동안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관리한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주제	한국 (친환경농업법령 중 무농약농산물 관련 사항)	일본 (특별재배농산물, 特別栽培農産物)	중국 (녹색식품, 绿色食品)	영국 (Red Tractor)
토양 및 작물 양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토양검정 • 토양비옥도 유지·개선 노력 • 윤작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 토양비옥도 유지·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T395, 모니터링을 통한 토양품질 관리 • 토양비옥도 유지·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의 구조 유지와 침식 방지 노력 • 윤작 권장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물: 농업용수 • 수경재배: 먹는물 • 농산물 세척: 먹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T391-2000, 생산지환경기술조건, 6.1.관개용수 수질 기준, 벼짓과 가공식품은 6.4.가공용수 수질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처리 하수 사용 금지 • 미생물, 화학물질 등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평가 실시
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변형농산물 종자 사용금지, 유기합성처리된 벼씨 사용금지 • 모종을 구입하는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무농약 인증기준으로 재배된 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변형농산물 종자 사용 가능
화학처리된 종자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 싹틔워 먹는 농산물은 비 무농약 종자 허용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종자 사용가능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중 무농약농산물 관련 사항)	일본 (특별재배농산물, 特別栽培農産物)	중국 (녹색식품, 绿色食品)	영국 (Red Tractor)
화학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시비량의 1/3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 화학비료 질소성분의 50%이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등급은 사용금지, A등급은 비료사용규칙에 따라 사용가능 NT/T394-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화학비료, 토양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안전한 물질을 사용 • 화학비료 보관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가축분 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히 부숙시켜 사용, 과다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 생산지역별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작물별 사용량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T395, 모니터링을 통한 토양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일정한 온도로 부숙시켜 사용
유기합성농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 병해충 방제시에는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가 되지 않는 경우 허용물질(별표1 제1호가목2)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 절감대상농약의 사용횟수 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등급은 사용금지, A등급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 NT/T393-2000에 제시된 목록에 따라 병해충관리물질 을 사용하고, 허용물질을 사 용하여도 방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A등급에서는 기준에 서 제시하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 사용시 적절한 양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에 비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유기합성농약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위험평가, Local Environment Risk Assessment for pesticides) 실시

주제	한국 (친환경농어업법령 중 무농약농산물 관련 사항)	일본 (특별재배농산물, 特別栽培農産物)	중국 (녹색식품, 绿色食品)	영국 (Red Tractor)
허용물질	Positive List •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생산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 NT/T393-2000에 제시된 목록에 따라 사용	• 기준 없음
환경보전	• 가축 분뇨의 과다사용, 유실·용탈, 장마철 사용 금지	• 생산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 축분의 사용량 제시 • 환경의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 NT/T397 대기의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 환경의 끼치는 영향 최소화	• 위험평가를 통하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 최소화 • 잡초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거하고, 되도록 존치
경종 관련 문서·기록의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영농자재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에 사용되는 (병행생산 시) 영농자재의 구매·사용·보관 • 인증품 생산량	• 영농 관련 기록	• 영농 관련 기록	• 영농 관련 기록 • 해당 기록은 3년 이상 보관

부록9. ISO/IEC17065와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기준 비교

- 표는 ISO17065에서 요구되는 인증기관의 운영 규정들과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운영 요령과의 동등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9의 1,2,3 및 별표10에서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 있으나, 본 비교표는 더욱더 자세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 농관원의 관련 고시(2015-56)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 ISO 17065의 기준 중 일반화된 규정과 절차는 생략하였고 유의할 만한 규정만을 발췌한 자료임. 예컨대, “7.1.1 인증기관은 자신의 인증활동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인증스킴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도 일반화된 규정으로 본 비교표에서 다룰 필요 없음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ISO17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17065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별표1. 1.가.1)) 	공식적인 ISO17065의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함
법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또는 법인의 일부 조직이 인증기관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제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별표1. 1.가.3)) 	

- 140) ISO/IEC 17065 4.2.3의 비교1. 인증기관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관계는 소유권, 지배권, 지배권, 경영, 인사, 자원 공유, 재정, 계약, 마케팅(상표 포함), 판매 수수료의 지불 또는 새로운 의뢰자 소개를 위한 장려 등에 근거할 수 있다.
- 141) ISO/IEC 17065 4.2.6의 비교1. 이것은 다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 인증기관과 의뢰자 간의 정보(예: 부적합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 교환 가능성
 -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증제품의 사용, 설치 및 유지
- 142) 의뢰자가 불법 행위, 부적합의 반복 등의 경력이 있는 등 실증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음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인증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과 의뢰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 •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함 -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및 공개 - 문제 제기(complaint)에 관한 조사 - 심사원 외 관찰자의 입회 허용 - 인증품 표시에 관한 사항 - 인증 정지, 취소, 만료의 경우 조치 - 안내책자, 광고물 등에 인증품 언급 방법 - 문제 제기 기록의 유지 및 후속조치 문서화 - 의뢰자의 관리시스템상 주요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보고 	(인증기관과 신청자의 협약체결에 관한 요구 사항이 없음)	인증기관과 신청자 사이의 협약체결 규정 신설 필요
라이센스, 인증서, 마크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 원칙이 있어야 함 • 부정확한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별표1. 3.타.1)) • 시행규칙 별표 5 및 6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표시변경 하여야 함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p>공평성 (Impartia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기타 압력 금지 •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¹⁴⁰⁾ •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 도입 • 인증기관장은 공평성 보장을 선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함 	<p>공평성 리스크 평가, 리스크 취급에 대한 절차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하면 안 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하고자 하는 동일 종류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의 설계, 제조, 시행, 설치, 운영, 취급, 관리 등 - 의뢰자에게 자문 또는 내부심사를 제공하는 일¹⁴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하면 안 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축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자재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나) 유기농산물 등의 유통·판매 다)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내 또는 관계가 있는 별도 법인의 활동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하여야 하며, 인증의 승인·갱신, 유효기간연장, 정지 및 취소와 인증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별표1. 1.가.8)) •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함 	<p>인증기관 외의 별도법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의 업무가 공평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에 관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문한 제품에 대한 인증 결정에 일정기간 참여하면 안됨(통상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p>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배상책임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 • 재정적 안정과 자원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별표1. 1.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확보, 또는 - 책임보험 • 배상책임 등의 규정 보유 및 이행(별표1. 1.가.7)) 	
비차별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운영 방침, 절차, 행정 처리는 의뢰자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 • 모든 신청자가 인증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의뢰자의 규모, 협회 또는 그룹의 회원,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이 있으면 안됨¹⁴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별표1. 3.가.4)) • 인증대상 지역별위 및 인증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함(별표1. 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심사, 검토, 판정, 사후관리를 인증범위에 관련된 것에 한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서의 인증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별표1. 나.1)) 	ISO 17065는 인증기관의 독자적 기준을 추가 적용하지 않도록 함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기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자의 모든 정보는 소유권이 있는 정보로 간주하고 기밀 취급 • 인증기관이 비밀정보를 법률에 의하여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의뢰자 이외의 정보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도 기밀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인증서류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ISO17065에서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그 사항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정보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되어 있거나 요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절차,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취소, 거부 등에 관한 규정 및 절차 • 수수료 등 •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 • 문체제기 및 이의제기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지정서, 인증수수료, 인증기준, 사후관리 규정,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인증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함(별표1. 3.가.3))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갖출 것 • 책임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방침 - 방침 및 절차의 이행에 대한 감독 - 인증기관 재정에 대한 감독 - 인증 활동의 개발 - 인증 기준의 개발 - 평가(심사) - 검토(review) - 판정 - 위탁 또는 위원회 - 계약 체결 - 인증활동을 위한 자원의 제공 - 문제제기 및 이의제기 - 역량 관리 - 인증기관의 경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별표1. 1.가.2)) • 내부 부서별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할 것(별표1. 1.가.6)) 	
공평성 보장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성을 보장하는 내부 제도를 갖추고 문서화할 것 • 공평성이 훼손되는 인증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독립된 권한 부여 	(공평성 보장 메커니즘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공평성을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는 내부의 보장 시스템이 필요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인증기관의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수의 인원을 고용할 것 투입되는 인원은 기술적 판단, 방침을 수립 및 실행, 자신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원 5명 이상 확보 상근 심사원 1인당 최대 400 사업자 심사 비상근 심사원 1인당 최대 200 사업자 심사 심의회관 1인당 최대 150 사업자 심의 	
역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관리 절차의 수립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 시행자의 자격기준 설정 - 기능별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 - 기능별 시행자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의 업무 수행도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원 자격: 농, 임, 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경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심사경력 5년 이상인 자 심사원 교육: 30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과목 이수 외국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심의회관은 자격증 및 경력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기관 자체 교육을 인정 심의회관 자격: 관련 자격증+경력(관련 업무 5년 또는 심사원 3년)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의 필요성 파악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신규 인증심사원은 숙련된 인증심사원과 함께 최초 3건 이상을 심사 	
역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기록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 고용주, 직위 - 학력, 기술자격 - 경력, 교육훈련 사항 - 역량 평가 - 업무 수행도 모니터링 - 부여된 권한 - 기록의 갱신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정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명 및 주소 나)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다) 입사 및 퇴사일자 라)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 	<p>ISO 17065에서는 업무 담당자의 역량평가와 업무수행도 모니터링에 관한 내부 절차가 요구됨</p>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인원과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원의 계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밀 유지 및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 유지 - 부여될 업무와 과거/현재의 업무상 관련성 명시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 명시 • 내부 자원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은 ISO 17025 적용 - 심사는 ISO 17020 및 17021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이 지정되어 있음(별표1. 3.사.1)) 	
내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없음) 	시험기관의 ISO 17025가 요구되지 않음 심사원/심사기관의 ISO 17020 및 17021이 요구되지 않음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외부 자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자원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은 ISO 17025 적용 - 심사는 ISO 17020 및 17021 적용 	(시험기관은 공인받으면 되며, 심사원 및 심사기관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음)	시험기관의 ISO 17025가 요구되지 않음 심사원/심사기관의 ISO 17020 및 17021이 요구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위탁된 모든 활동의 책임은 인증기관에게 있음 수탁자 선정 기준, 평가, 모니터링 방침, 절차, 기록을 보유할 것 수탁자 목록 유지 의뢰자에게 위탁된 활동 내용을 미리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별표1. 2.나.3))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함(별표1. 2.나.7)) 	수탁자의 선정기준, 평가, 모니터링 방침, 절차, 기록에 관한 요구사항이 없음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신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경험이 없는 종류의 인증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형식 - 규범문서 - 인증스킵 • 인증수행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성 관련 기록을 유지 • 역량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인증 수행을 거절해야 함 	(업무역량에 따라 신청검토를 수행하는 절차가 없음)	농관원 고시 2015-55의 별표2에서 심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인증기관의 역량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모든 부적합사항을 의뢰자에게 알려야 함 • 인증기관은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평가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제10조의 5)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시정조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는 평가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 검토자가 판정까지 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권고가 문서화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인증심의관 및 주주는 인증심사원을 겸할 수 없다. 	ISO17065에서는 심사원이 심사한 건에 대해 검토/판정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을 규정함. 대표 등 임원의 심사원 활동에 대한 규제는 없음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은 평가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룹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됨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을 승인하지 않은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의뢰자가 인증프로세스를 계속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평가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p>부적합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시정조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함</p> <p>재심사는 부적격 판정 후 7일 이내 신청하며, 10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시정조치를 전제로 한 평가가 아님</p>
처리기한	(처리기한에 관한 요구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예. 신규인증 2개월)을 준수하여야 함 	처리기한으로 인한 심사의 부실화 우려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포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빈도가 규정되어 있음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p>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이 정지되면, 담당자를 정하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정지시키거나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조치 - 인증스킴에서 요구하는 기타 다른 조치 • 정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평가, 검토, 판정은 동일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증취소, 표시정지, 표시변경, 고발 등 해당 조치방법별 처리절차를 규정 •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 	<p>인증이 정지되는 경우, 복원시키는 절차가 요구됨 현재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서는 정지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통하여 적합한 상태로 복원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과정이 생략되어 있음</p>
<p>의뢰자에 대한 교육</p>	<p>(요구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별표1. 3.마.7))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p>문제제기 및 이의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제기 및 이의제기를 접수, 평가, 의사결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 • 특정 문제제기 사항에 관련이 되지 않은 자가 작성, 검토, 승인하여야 함 • 문제 제기자에게 최종 결과를 공식 통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사례별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 •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기록 가) 소속 나) 성명 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라) 조치결과 마) 기타 	<p>불만 처리는 특정 불만에 관련이 되지 않는 자가 처리하도록 함</p> <p>불만 제기자에게 최종 통지가 요구됨</p>

주제	ISO/IEC 1706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56호)	시사점
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경영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경영 시스템 문서(매뉴얼, 방침, 책임 등) - 문서 관리 - 기록 관리 - 경영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함 	경영검토 절차 도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심사 	(경영검토에 관한 규정 없음)	내부심사(내부감사)에 관한 규정 도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판정(제6조) • 원장은 인증기관이 위반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제12조) 	인증기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정조치 절차 도입이 필요 인증기관에 잠재적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예방조치 절차 도입이 필요

부록10.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의 1차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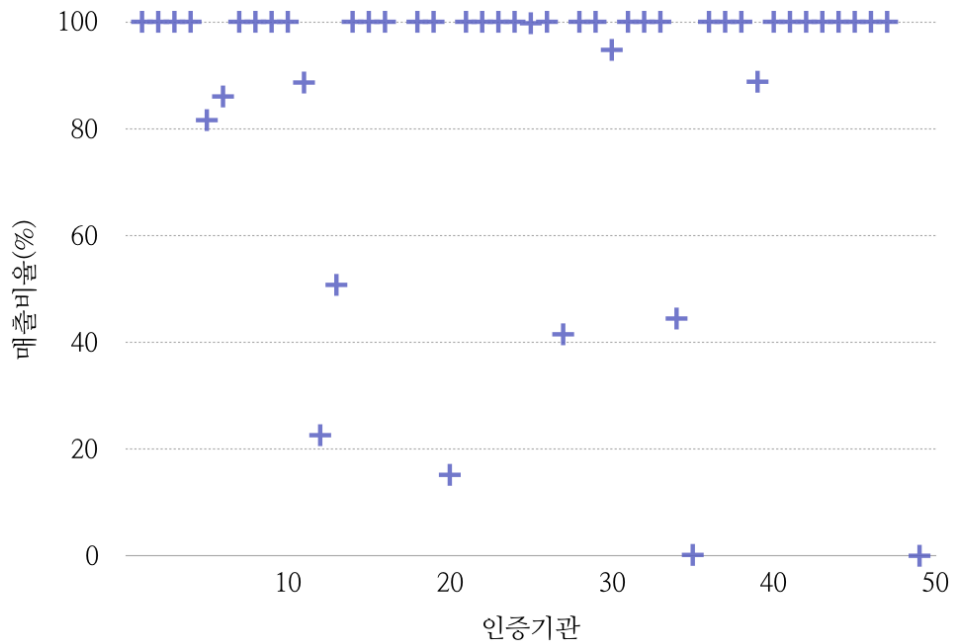
□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

- 인증사업 매출 비율은 인증사업 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체의 업무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자재 공시, GAP 등 전문 인증업무에 따른 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타 업무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객관적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초기 설정하였음
- 예비조사 결과 49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7점에 40개 기관, 3점 이하에 9개 기관으로 분포되었음
- 인증사업 매출 비율이 100%라고 응답한 인증기관이 30업체로 전체 응답 비율의 66.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대부분이 인증사업만을 하거나 인증사업에 매우 편중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함

표 10-1. 인증사업 매출 비율의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7점	5점	3점	1점
평가기준	80~100%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
인증기관 수	38	0	0	7
비율(%)	66.6%	0	0	33.4%

그림 10-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분포



- 인증사업의 매출 비율이 낮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증 외 사업의 내용이 인증사업과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인증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증 외 사업이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인 경우 오히려 인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인증사업 매출 비율이 높은 것이 부정적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은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도록 함

표 10-2. 인증사업 매출 비율 평가 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삭제
득점 기준	80~100% 7, 70~80% 미만 5, 60~70% 미만 3, 60%미만 1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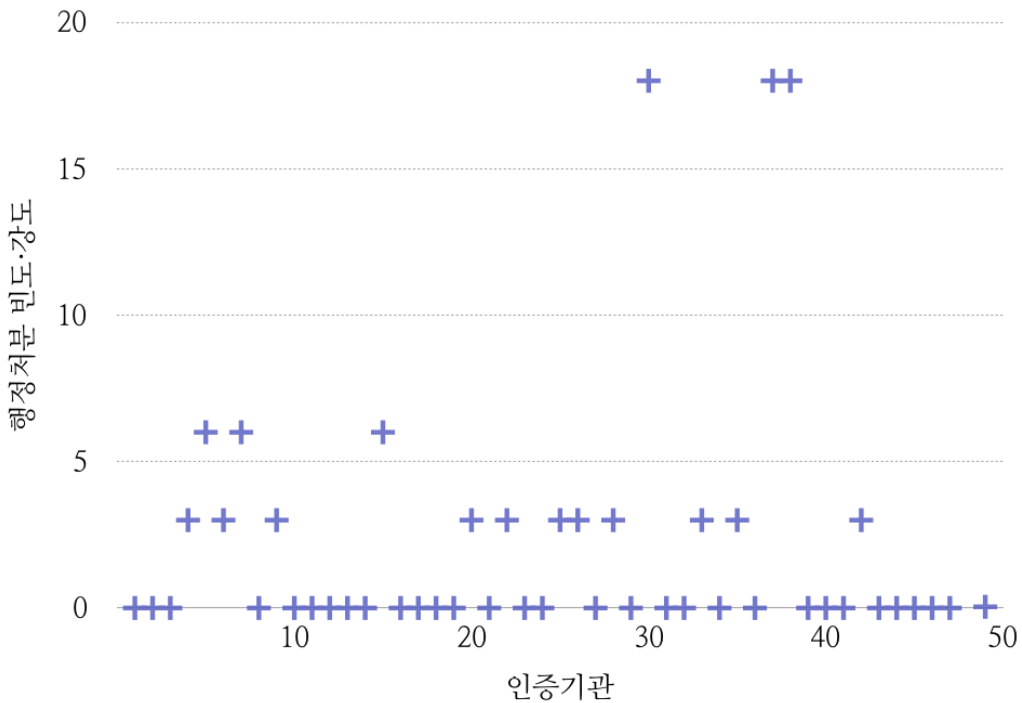
□ TS2.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 인증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지표로서, 농관원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연간 횟수와 처분 수위를 곱한 지수로 평가하도록 초기 설정하였음
- 49개 인증기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1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15개 인증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음

표 10-3.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의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7점	5점	3점	1점	합계
평가지수	0	3	6	9	
인증기관 수	31	12	3	3	49
비율(%)	63.3	24.5	6.1	6.1	100

그림 10-2.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 환산 값 분포



- 행정처분 평가 지수는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고 0에 편중된 형태를 보이지만, 농관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평가지표로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등에서 배점이 제외되어 총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배점과 득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표 10-4. 기관 행정처분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행정처분 횟수)*(영업정지 개월수 합계)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0이면 7, 3이면 5, 6이면 3, 9이면 1	0이면 10, 3이면 7, 6이면 4, 9이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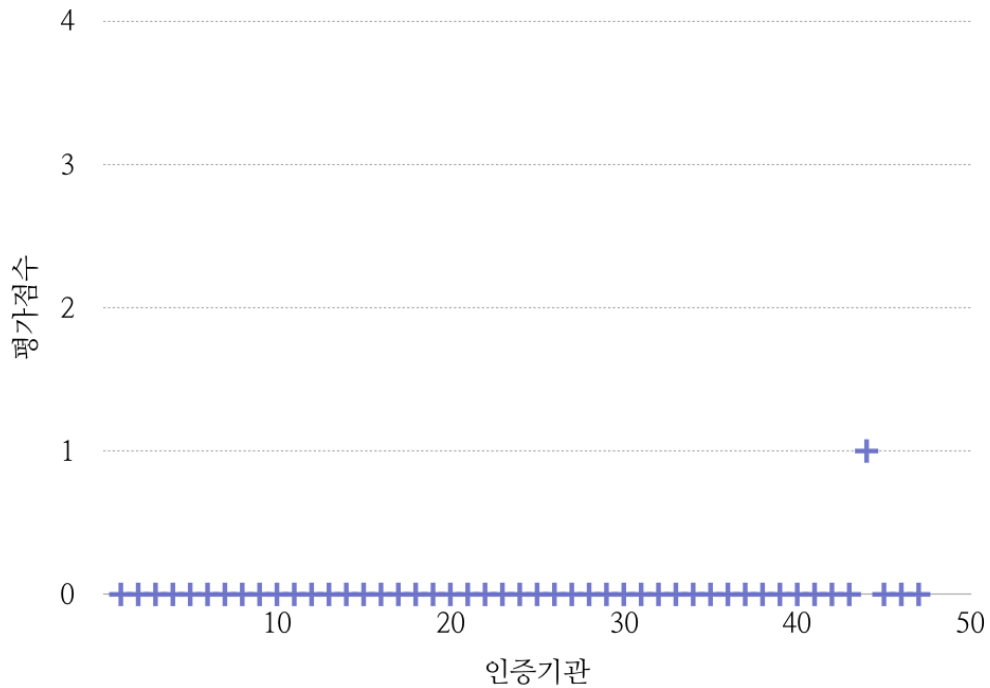
□ TS3. 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 인증기관이 농관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연간 횟수와 과태료 총액의 곱을 지수화한 지표로서, 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초기 설정하였음
- 친환경농어업 법령에서는 인증기관의 부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¹⁴³⁾

표 10-5. 인증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의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 점수	3점	2점	1점	합계
평가 기준	0	1 ~ 2	3 이상	
인증기관 수	48	1	0	49
비율(%)	98.0	2.0	0	100

그림 10-3. 인증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의 점수 분포



1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항

- 과태료 부과 지수는 대부분 0에 편중되어 있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게 되어 인증기관 간에 차별화된 점부 분포를 나타내기 어려우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점은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내용적 타당성이 있음
- 다만,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등에서 배점이 제외되어 총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배점과 득점 기준을 조정함

표 10-6. 기관 과태료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과태료부과 횟수)*(과태료 총액) ※ 100만원을 1로 환산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0이면 3 1~2이면 2 3이상 1	0이면 5 1~2이면 3 3이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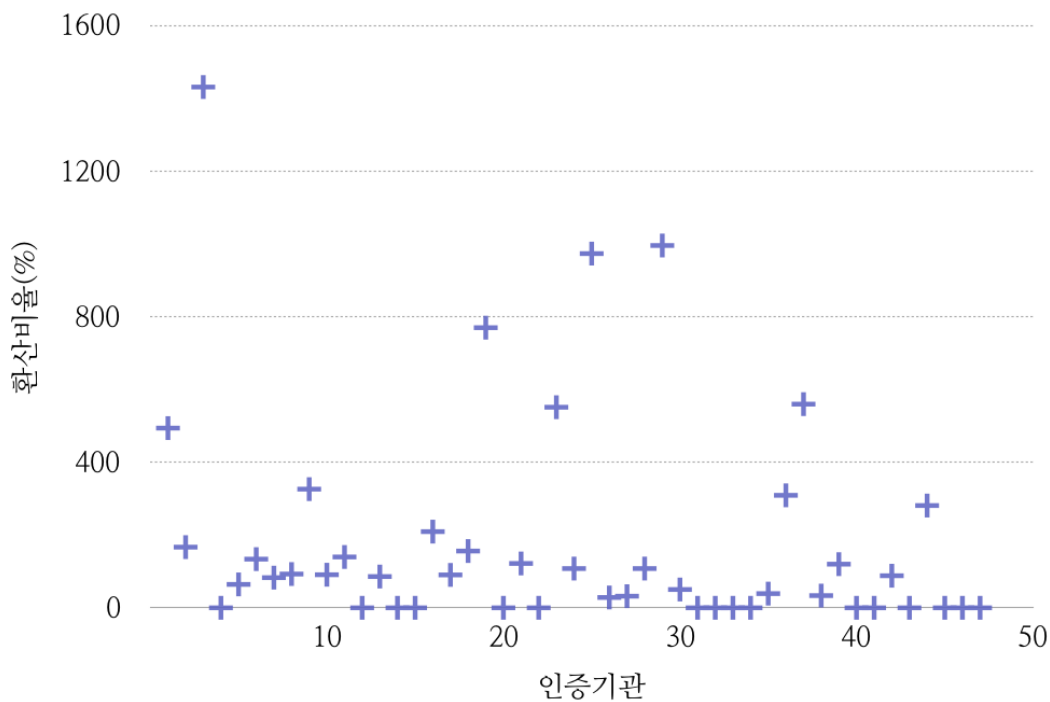
□ TS4. 인증 생산자 잔류농약기준 초과비율

- 인증을 받은 생산농가 중 잔류농약 기준치(관행농산물의 20분의 1)를 초과하는 생산자의 발생 확률은 인증기관이 심사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증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초기 설정하였음
- 응답자 중 잔류 농약기준 초과 건수가 없다고 응답한 인증기관이 16곳으로 34%를 차지하였음

표 10-7. 인증 사업자 잔류농약기준 초과 비율 순위 분포 (예비조사)

평가 점수	$8-8*\{(순위-1)/46\}$					
평가 기준	1위	2위	3위	4위	32위
인증기관 수	16	1	1	1	1
비율(%)	34	2.7	2.7	2.7	2.7

그림 10-4. 인증 사업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 비율 환산값 분포



- 이는 만점자들이 인증 농가 수에 무관하게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어 나타난 문제인데, 잔류농약 초과 건수가 없는 경우 인증 농가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TS4. 잔류농약 초과비율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교정함

표 10-8. 사업자 잔류농약 초과 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frac{[(\text{연초 인증농가수})+(\text{연말 인증농가수})]/2]}{(\text{잔류농약 기준 초과 건수})}$	$\frac{[(\text{연초 인증농가수})+(\text{연말 인증농가수})]/2]}{\{1+(\text{잔류 농약기준 초과 건수})\}}$
득점 기준	1위: 8점 2위이하: $8-8* \{(\text{순위}-1)/(\Sigma-1)\}$	변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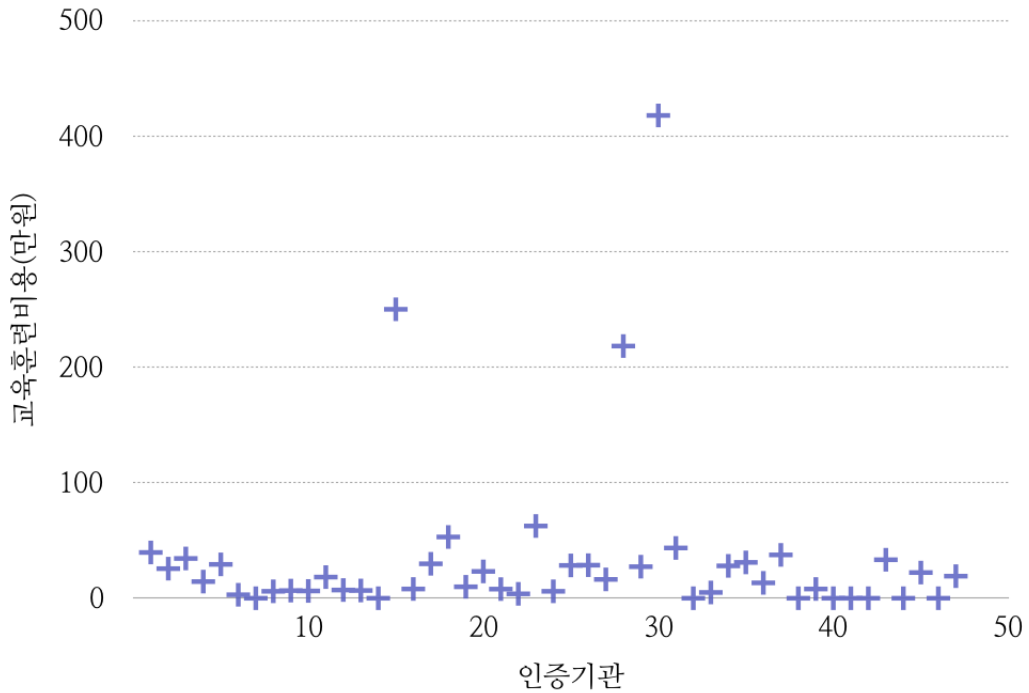
□ TS5. 교육훈련비 투입량

- 교육훈련비 투입량은 인증기관의 핵심역량을 양성하고 심사원 및 직원의 직무교육 등 인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투자하는 비율은 인증 품질의 향상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으로 보고, 평가지표로 설정하였음

표 10-9.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입량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100만원 이상	50~100만원 미만	20~5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10만원 이하
인증기관 수	3	2	15	5	22
비율(%)	6.4	4.8	31.9	10.6	46.8

그림 10-5. 1인당 교육훈련비 분포



- 응답자 중 교육훈련비가 없다고 응답한 인증기관의 수가 9곳으로 19%를 차지함. 이는 상당수의 인증기관들이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을 뜻함
- TS5. 교육훈련비 투입량은 교육훈련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는 인증기관과 소액이라도 투입하는 인증기관 사이에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다음과 같이 교정함

표 10-10. 교육훈련비 투입량 평가 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text{교육훈련비}) / [(\text{연초 상근 직원수}) + (\text{연말 상근 직원수}) / 2 + (\text{전년도 퇴사자수})]$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00만원 이상 5 50~100만원 미만 4 20~50만원 미만 3 10~20만원 미만 2 10만원 미만 1	100만원 이상 5 50~100만원 미만 4 20~50만원 미만 3 10~20만원 미만 2 10만원 미만 1 0원은 0점

□ TS6. 인증 갱신율

- 인증 갱신율은 생산자가 같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로서, 생산자가 인증기관을 신뢰하는 척도라 할 수 있음
- 득점 분포가 3점을 중심값으로 1점에서 5점까지 적절히 분산되어 있고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타당하므로, TS6. 인증 갱신율은 평가지표로서 초기 설정 기준을 채택함

표 10-11. 인증 갱신율 점수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85~100%	70~85% 미만	55~70% 미만	30~55% 미만	30% 미만
인증기관 수	7	7	15	8	10
비율(%)	14.9%	14.9%	31.9%	17%	21.3%

그림 10-6. 인증 갱신율 점수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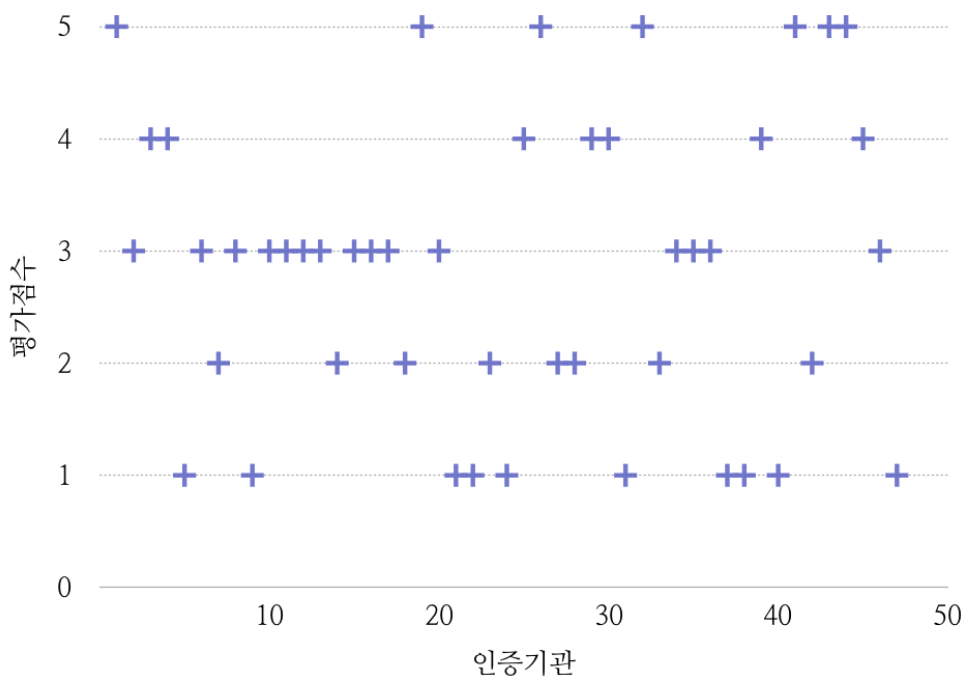


표 10-12. 인증갱신을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text{연간 인증갱신농가수}) / (\text{연초 인증농가수}) * 100$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85~100% 5, 70~85% 미만 4, 55~70% 미만 3, 30~55% 미만 2, 30%미만 1	변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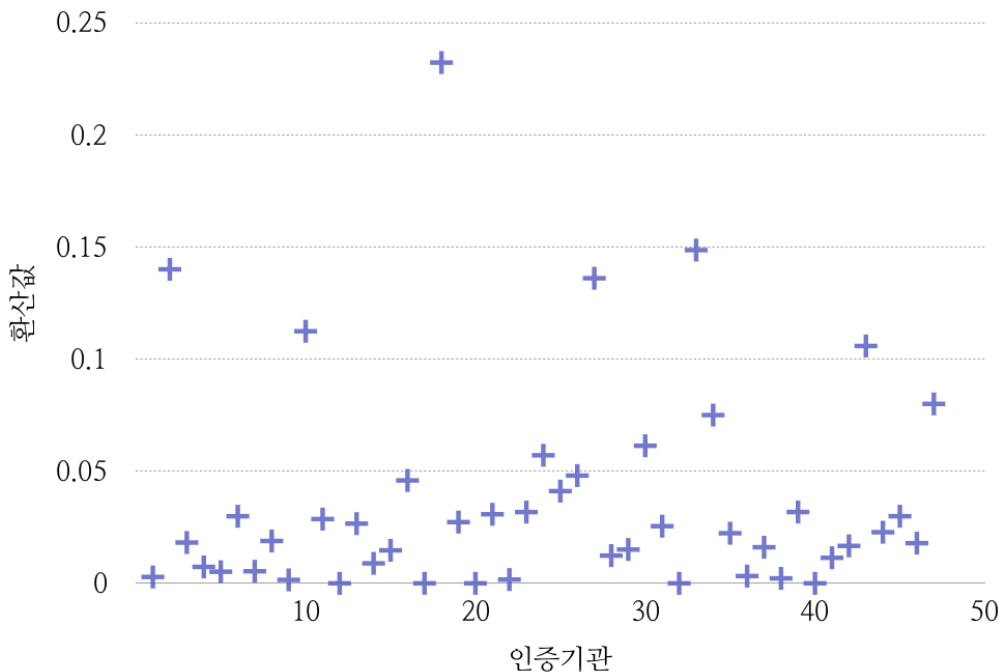
□ TS7. 생산자 교육 실적

- 생산자 교육 실적은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규정, 주의사항 등을 생산자에게 교육하는 투여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증 관련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생산자에 대한 교육활동은 생산자의 인증 이해도를 높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노력으로서, 본 지표에서는 생산자 1인에 투입되는 노력량을 투입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표 10-13. 인증사업자 교육 실적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5* \{(등수-1)/46\}$					
평가기준	1위	2위	3위	4위	43위
인증기관 수	1	1	1	1	5
비율(%)	2.7	2.7	2.7	2.7	11

그림 10-7. 인증사업자 교육 실적 환산값 분포



- 생산자에게 전혀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증기관이 총 5 곳으로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기존 평가 기준에 따르면, 생산자에 대한 투입시간이 0인 경우에 생산자의 수와 무관하게 여러 인증기관이 동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수에 따라 점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초기 설정 기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TS7. 생산자 교육 실적 지표를 다음과 같이 교정함

표 10-14. 생산자 교육 실적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text{농가교육 총시간}) / \{[(\text{연초 인증농가수}) + (\text{연말 인증농가수})] / 2\}$	$\{1 + (\text{농가교육 총시간})\} / \{[(\text{연초 인증농가수}) + (\text{연말 인증농가수})] / 2\}$
득점 기준	1위: 5점 2위이하: $5 - 5 * \{(\text{순위} - 1) / (\Sigma - 1)\}$	변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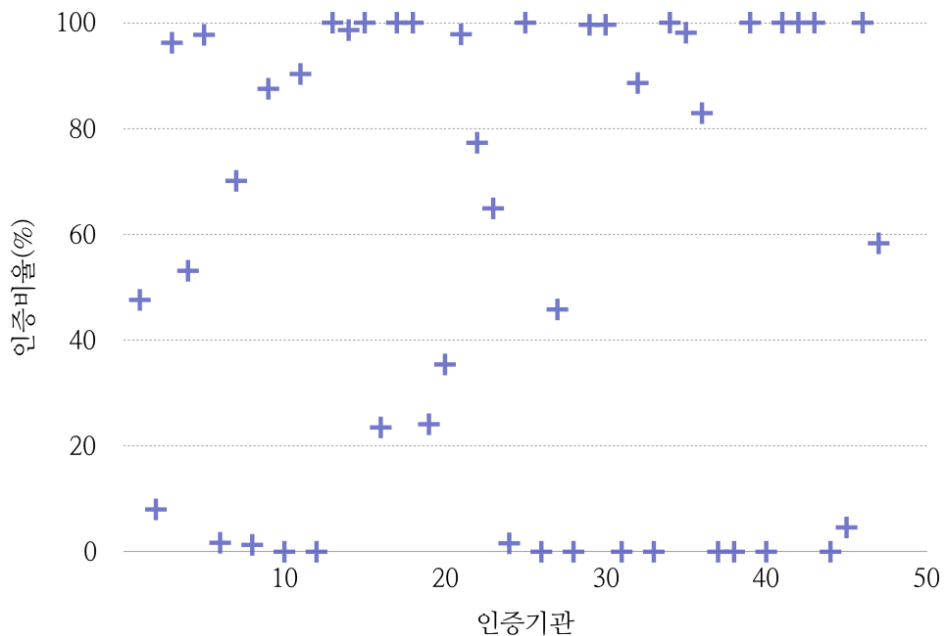
□ TS8. 관할지역 인증비율

- 관할지역 인증비율이란 총 인증 건수 중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광역지역(시·도)의 인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동 시간 및 출장 경비 등 사업자 관리에 대한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을수록 상위 득점을 부여하도록 함

표 10-15. 관할지역 인증 비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5* \{(\text{등수}-1)/46\}$					
평가 기준	1위	2위	3위	4위	43위
인증기관 수	11	1	1	1	10
비율(%)	23.4	2.7	2.7	2.7	21.3

그림 10-8. 관할지역 인증비율 분포



- 관할지역 인증비율을 100%로 응답한 인증기관이 11곳으로 23.4%이고, 관할지역 인증비율을 0%로 응답한 인증기관이 10곳으로 21.3%임
- 생산자의 위치가 인증기관의 근무처에 가까울수록 비용과 시간의 투입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관할지역 인증비율은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내용적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전남지역의 경우 약 99%의 인증이 관할지역에서 인증되어 지역 간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하향 조정함

표 10-16. 관할지역 인증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관할지역 친환경농산물인증건수)/(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위: 5점 2위이하: $5 - 5 * \{(\text{순위} - 1) / (\Sigma - 1)\}$	1위: 3점 2위이하: $3 - 3 * \{(\text{순위} - 1) / (\Sigma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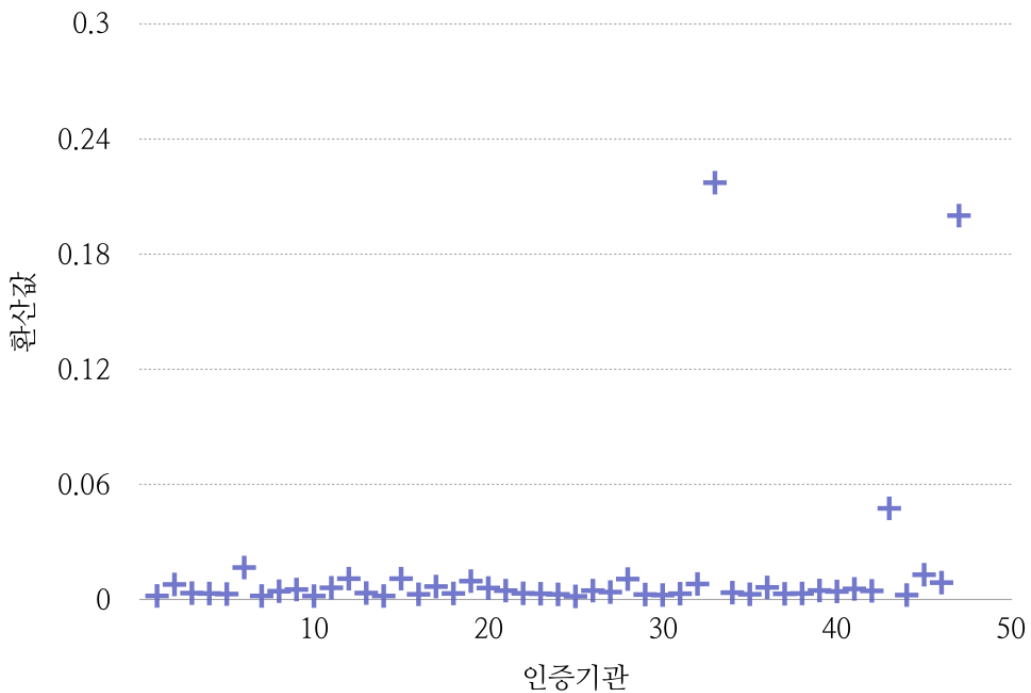
□ TS9. 생산자당 투입노력량

- 생산자당 투입노력량은 상근심사원 수와 인증사업자 수의 비율로서, 인증사업자들의 심사 및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의 비율을 평가지표로 한 것임
- 생산자당 투입노력량은 인증심사의 구체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명의 상근심사원이 책임지는 생산자의 수가 많을수록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심사 및 관리의 품질도 낮아질 수 있음

표 10-17. 생산자당 투입노력량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5* \{(등수-1)/46\}$					
평가기준	1위	2위	3위	4위	43위
인증기관 수	1	1	1	1	1
비율(%)	2.7	2.7	2.7	2.7	2.7

그림 10-9. 생산자당 투입 노력량 환산값 분포



- 단위 생산자 수에 대하여 투입되는 인력 수는 인증심사의 품질과 생산자 관리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타당하므로 지표로 채택하되,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등에서 배점이 제외되어 총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배점과 득점 기준을 조정함

표 10-18. 생산자당 투입노력량 평가 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text{연초상근심사원수})+(\text{연말상근심사원수})\}/\{(\text{연초인증농가수})+(\text{연말인증농가수})\}$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위: 5점 2위이하: $5-5* \{(\text{순위}-1)/(\Sigma-1)\}$	1위: 7점 2위이하: $7-7* \{(\text{순위}-1)/(\Sigm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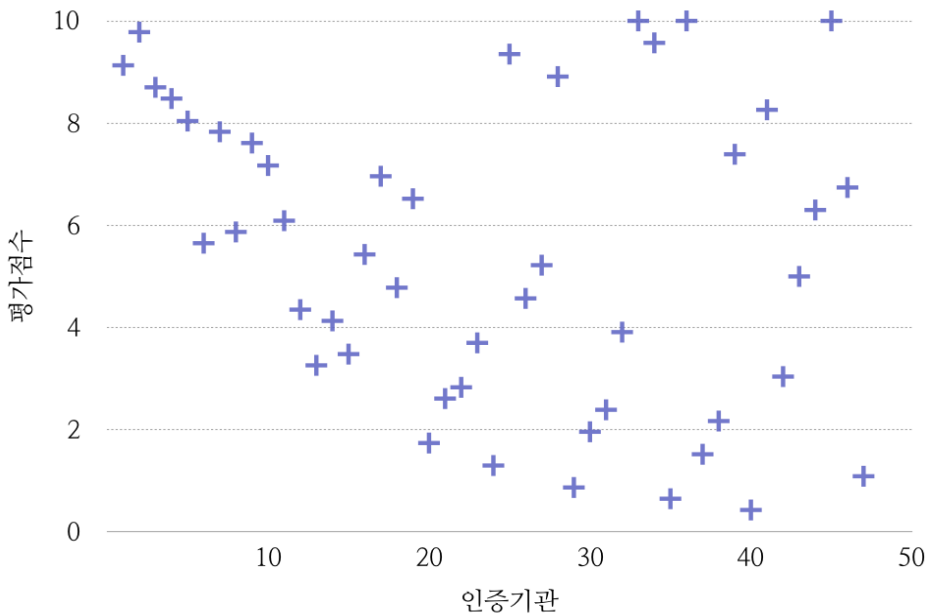
□ TS10. 이중체크¹⁴⁴⁾ 적발 비율

- 농관원 이중체크는 인증의 판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 보고서 등을 임의 선정하여 부적격한 사업자가 인증되는 일을 적발하는 것
- 이는 인증심의관(또는 인증위원회)이 심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부실인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인증심의관의 검토 수준과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함

표 10-19. 이중체크 적발비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점수 부여방법	$10 - 10 * ((\text{순위} - 1) / 46)$					
평가기준	1위	2위	3위	4위	45위
인증기관 수	3	1	1	1	1
평가점수	10	9.78	9.57	9.35	0.43

그림 10-10. 이중체크 적발비율 점수 분포 (인증취소 처분 비율로 대체)



14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데이터베이스(www.enviagro.go.kr)에 올려진 인증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임의 선정 및 열람하여 인증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던 건들에 대해서 인증취소 조치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체크라 함

-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의 예비조사가 아니라, 농관원의 2015년 행정 처분 결과(농관원 제공)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반영하였음
- 2015 행정처분 데이터에서 인증 취소된 농가 수 중에서 이중체크로 인한 행정처분을 분류하는 현재 데이터로는 불가능하여, 인증 취소 전부를 대체 입력한 결과임
- 인증 취소는 농관원의 지도점검이나 2중체크를 통하여 인증 취소 처분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인증기관의 자발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증 취소 처분되는 경우가 있음.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는 인증 취소 데이터 분포와 '이중체크로 인한 인증 취소' 데이터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당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되므로 이중체크 적발 농가 수를 인증 취소 처분 농가 수로 대체 입력한 것임
- 따라서 실제 인증기관 등급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이중체크로 인한 인증 취소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인증 취소 데이터를 대체 입력함
- 예비조사에 응한 49개 인증기관 중에 생산자에 대한 인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인증기관이 3곳임
- 이중체크 적발 비율은 심사 및 심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품질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함
- 다만, 인증 취소된 생산자가 없는 경우 인증 농가 수에 상관없이 동점을 얻게 되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TS10. 이중체크 적발 비율에 초기 설정된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교정함

표 10-20. 이중체크 적발 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frac{[(\text{연초 인증농가수})+(\text{연말 인증농가수})]/2}{(\text{인증취소된 생산자 수})}$	$\frac{[(\text{연초 인증농가수})+(\text{연말 인증농가수})]/2}{(\text{인증취소된 생산자 수})+1}$
득점 기준	1위: 10점 2위이하: $10-10* \{(\text{순위}-1)/(\Sigma-1)\}$	변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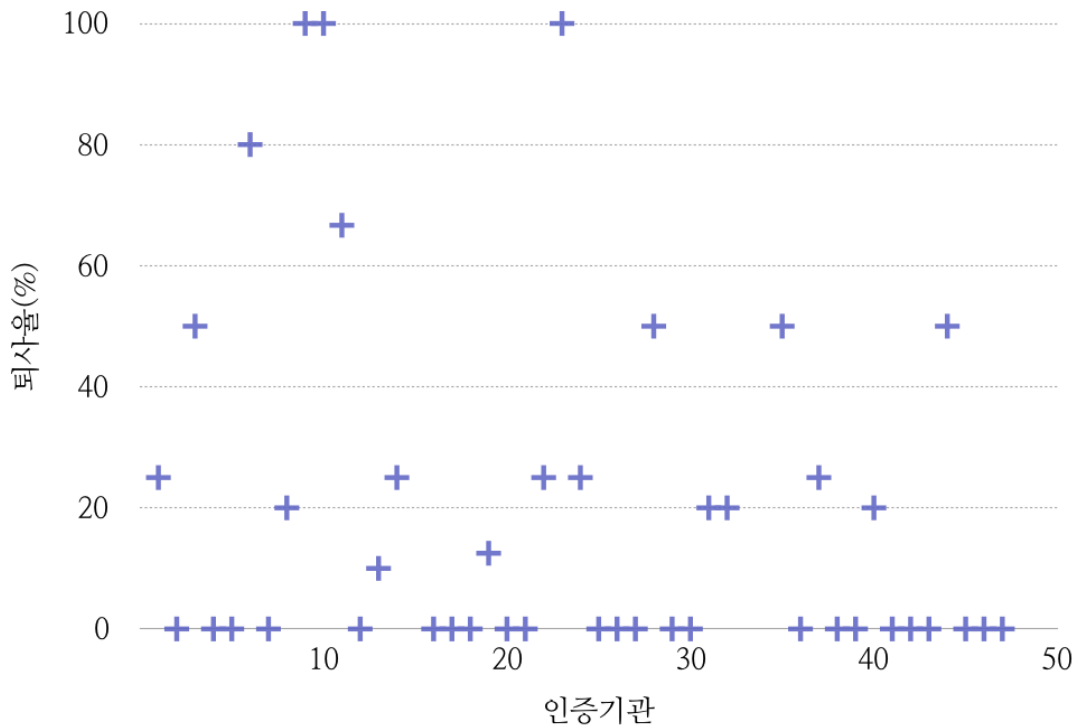
□ TE1. 상근심사원 퇴사율

- 상근심사원 퇴사율은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업은 고용이 안정되어야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중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안정된 고용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됨
- 상근심사원 퇴사율은 연초 상근심사원 중에서 퇴사한 상근심사원의 비율로 계산함

표 10-21. 상근심사원 퇴사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40% 초과
인증기관 수	25	5	5	0	9
비율(%)	58	11	11	0	20

그림 10-11. 상근심사원 퇴사율 분포



- 응답자의 55%에 해당되는 25개 인증기관은 퇴사한 상근심사원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상근심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의 안정성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평가지표로서 내용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TE1. 상근심사원 퇴사율은 평가지표로서 초기 설정 기준을 채택함

표 10-22. 상근심사원 퇴사율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 (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0% 미만 5, 10~20% 미만 4, 20~30% 미만 3, 30~40% 2, 40% 초과 1	변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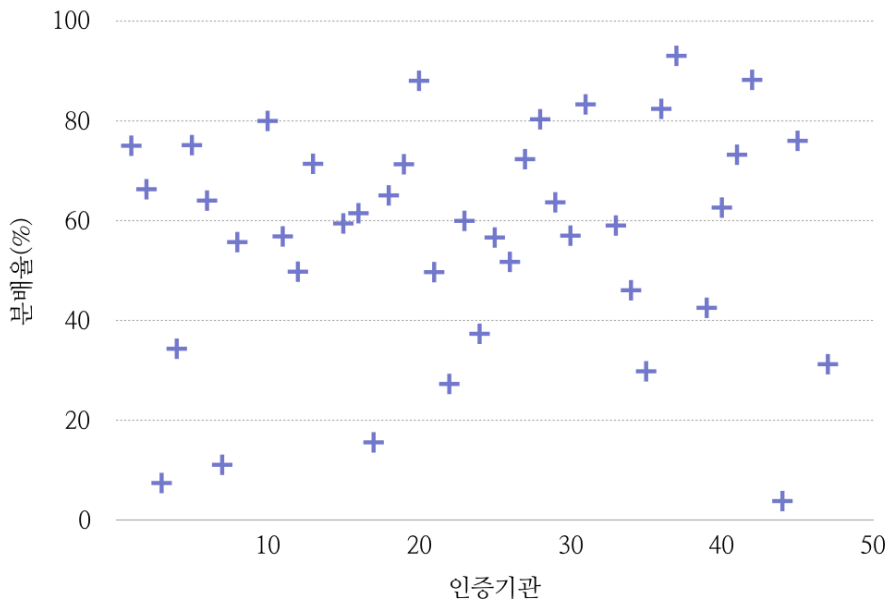
□ TE2. 노동소득분배율

- 인증업무는 지식노동으로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업종이므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사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음. 이는 상근심사원 등 피고용인에 대한 노동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일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주요 요건이 된다 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이 상근직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있는지를 노동소득분배율로 측정하고자 함

표 10-23. 노동소득분배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55% 이상	50~55% 미만	45~50% 미만	40~45% 미만	40% 이하
인증기관 수	25	1	3	1	10
비율(%)	62.5	2.5	7.5	2.5	25

그림 10-12. 노동소득분배율 분포



- 전체 응답자 중 62.5%에 해당하는 25명이 55% 이상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인다고 응답하였음
-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업무를 실행한 노동자에게 적절히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료로서 통상 50% 이상을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음
- 인증사업은 지식서비스로서 주로 하는 노동집약적 인증사업의 특징으로 전문 업무에 대한 타당한 대가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내용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TE2. 노동소득분배율은 초기 설정 기준을 채택함

표 10-24. 노동소득분배율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인건비)/(부가가치)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55% 이상 5, 50~55% 미만 4, 45~50% 미만 3, 40~45% 미만 2, 40% 미만 1	변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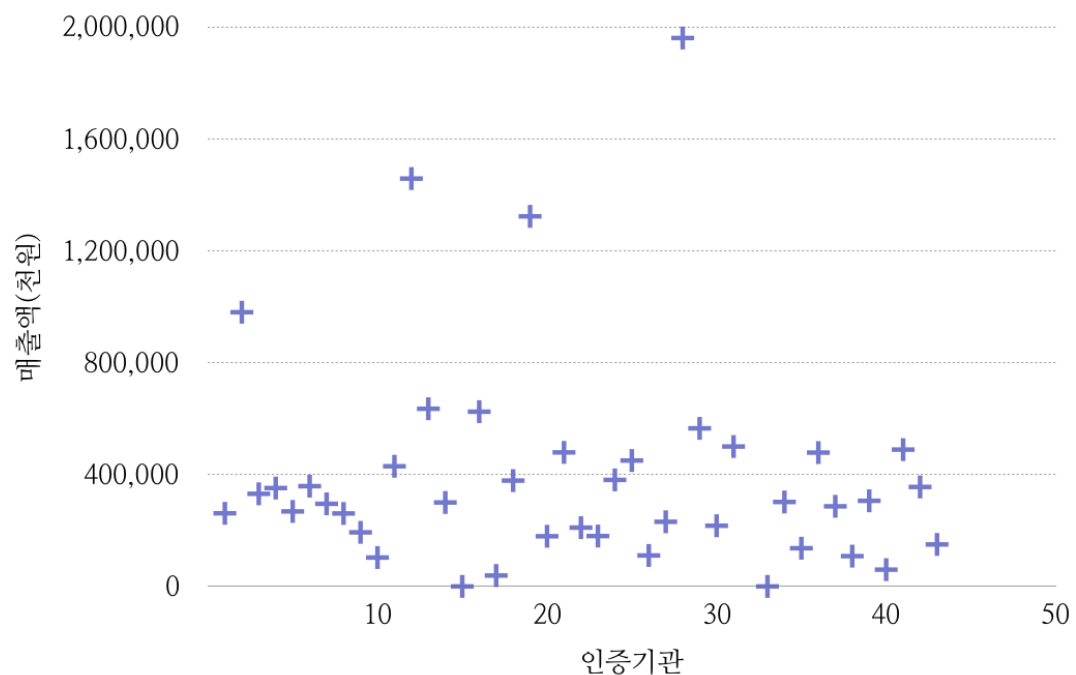
□ TE3. 전년도 매출액

- 매출액은 사업의 규모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경쟁력 기반 확보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본 지표는 인증기관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적 규모를 반영하여 교육, 출판, 연구 사업 등 인증 외 사업을 포함한 매출액으로 측정함. 컨설팅, 유통, 영농 자재 등 인증 사업과 이해의 상충 관계가 발생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인증 외 사업을 포함하여도 이해 상충 관계의 사업은 배제될 수 있음

표 10-25. 매출액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10억원 이상	5억~10억 미만	2억~5억 미만	1억~2억 미만	1억원 미만
인증기관 수	5	5	22	8	3
비율(%)	11.6	11.6	51.2	18.6	7

그림 10-13. 매출액 분포



- 조사 결과, 5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에 50% 이상의 인증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5억 원 미만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음
- 매출액은 사업 규모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높다고 하여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님.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경우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의 규모화가 필요한 실정 이므로 매출액은 기관 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다만,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등에서 배점이 제외되어 총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배점과 득점 기준을 조정함

표 10-26. 매출액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전년도 매출 총액)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0억원 이상 5, 5~10억원 미만 4, 2~5억원 미만 3, 1~2억원 미만 2, 1억원 미만 1	10억원 이상 8, 5~10억원 미만 6, 2~5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2, 1억원 미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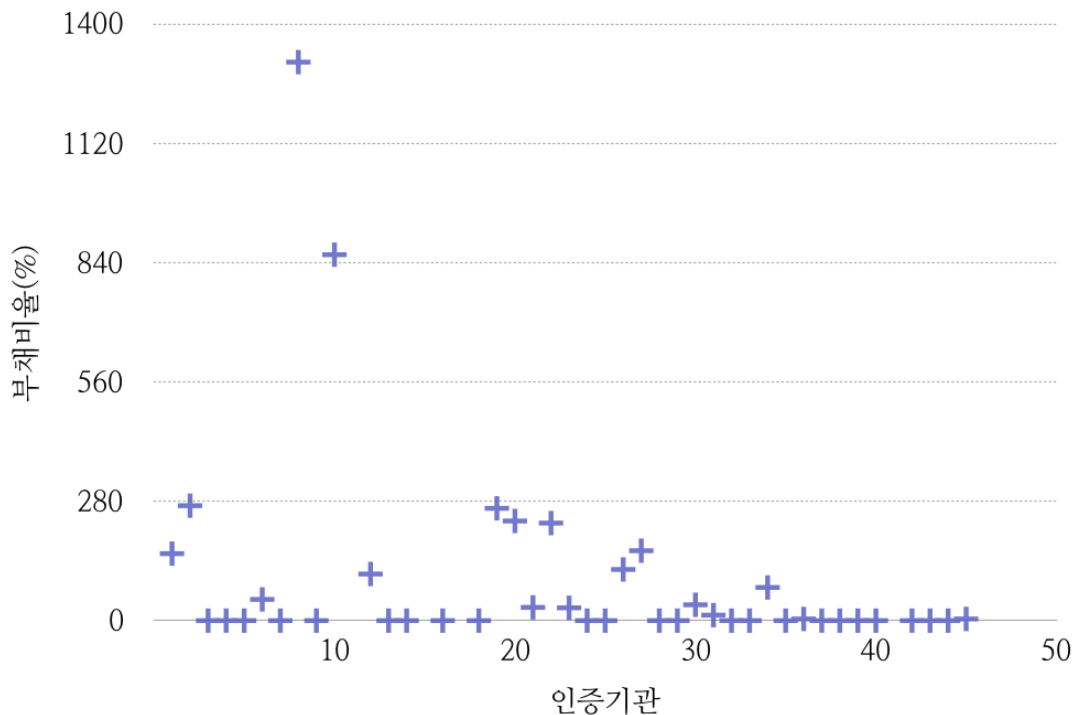
□ TE4.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으로 인하여 무리한 단기 매출 향상에 집중할 수 있어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부채비율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안정성에 대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데, 변제 압박이 없는 한 통상 200%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 10-27. 매출액 평가지표 1차 교정

평가점수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50% 미만	50~100% 미만	100~200% 미만	200% 이상
인증기관 수	25	1	4	8
비율(%)	67.8	2.6	10.5	21.1

그림 10-14. 부채비율 분포



- 응답자 중 23개 인증기관(52%)가 부채가 없다고 응답함
- 인증사업의 안정성은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인증기관 지표로서 내용적 타당성이 있음
- 다만,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등에서 배점이 제외되어 총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배점과 득점 기준을 조정함.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무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50%의 득점 기준을 삭제함

표 10-28. 부채비율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frac{[(\text{유동부채}) + (\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 100$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50% 미만 4, 50~100% 미만 3, 100~200% 미만 2, 200% 이상 1	100% 미만 3, 100~200% 미만 2, 200% 이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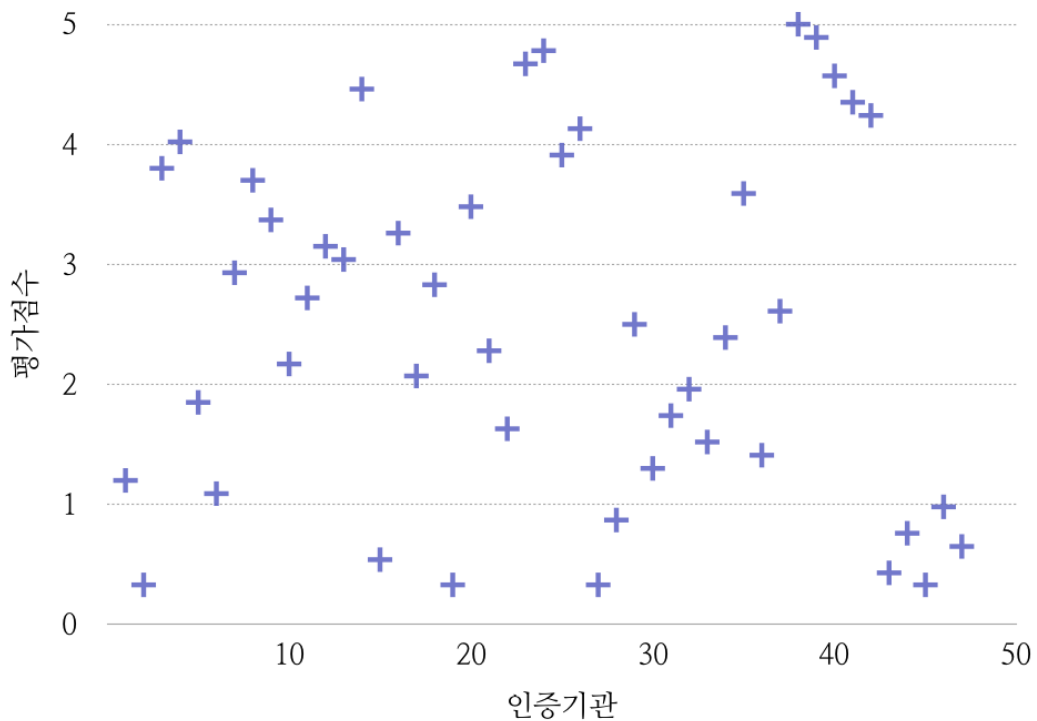
□ TE5.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 인증기관의 심사원, 심의관, 행정요원 등은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길어질수록 업무의 효율과 품질이 향상되므로,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인증기관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함

표 10-29. 노동생산성 점수 분포 (예비조사)

점수 부여방법	$5-5*((\text{순위}-1)/46)$					
평가 기준	1위	2위	3위	4위	44위
인증기관 수	1	1	1	1	3
평가점수	5	4.89	4.78	4.67	0.33

그림 10-15. 노동생산성 점수 분포



- 심사원, 심의관, 행정담당자 등 업무 처리자 능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며 내용적 타당성이 있음
- 다만, TS1. 인증사업 매출 비율 등에서 배점이 제외되어 총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배점과 득점 기준을 조정함

표 10-30. 노동생산성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text{부가가치}) / \{(\text{연초종업원수}) + (\text{연말종업원수})\} / 2] * 100$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위: 5점 2위이하: $5 - 5 * \{(\text{순위} - 1) / (\Sigma - 1)\}$	변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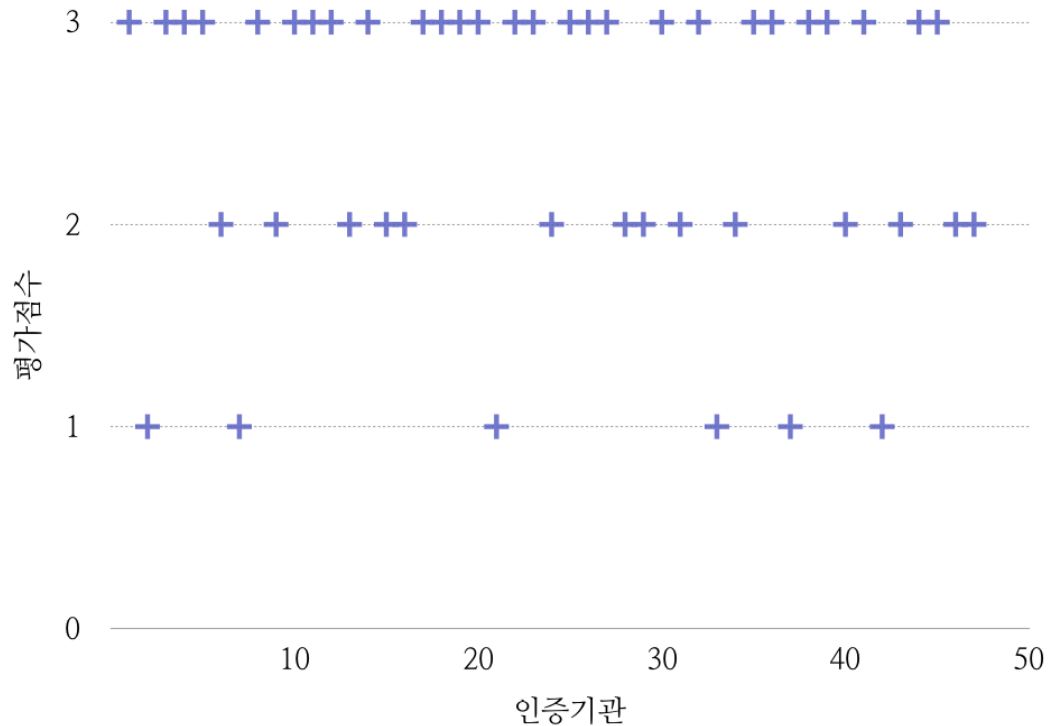
□ TE6.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을 통하여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함

표 10-31. 매출 증가율 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10% 초과	-10~10%	-10% 미만
인증기관 수	27	14	6
비율(%)	57.4%	29.8%	12.8%

그림 10-16. 매출 증가율 점수 분포



-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 이상이 1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음
- 매출액 증가율은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됨
-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인증사업의 매출 증가율은 인증사업에 대한 경쟁력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인증기관 평가 지표로 타당하므로, TE6.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은 초기 설정 기준을 채택함

표 10-32.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text{당기말 인증매출액})/(\text{전기말 인증매출액})\} * 100 - 100$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변경하지 않음

□ LS1.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

- 심사 보고서는 인증심사 프로세스의 결과물로서, 현장에서 발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각 기준에 대한 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는 현장심사 후에 심사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품질을 통하여 심사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무작위로 2건 선정하여 작성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보고서를 열람하기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인증기관에게 중간 점수인 3점을 부여하였음
- 심사 보고서의 품질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¹⁴⁵⁾
 - 구체성: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나타내야 함
 - 명확성: 심사원이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심사한 결과가 심의관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함
 - 객관성: 인증기준에 나타난 요구 사항을 심사원 주관에 의거 과도한 해석과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함
- 심사 보고서는 인증심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자료로서 인증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심사 보고서의 품질 측정은 인증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로 타당하며, LS1.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는 초기 설정 기준을 채택함

표 10-33.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심사보고서에 적합 및 부적합의 근거 작성 사항 점검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평가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건별 -2점 (만점 5점, 최하 1점)	변경하지 않음

145) 국제유기심사원협회/IFOAM. 국제유기심사매뉴얼

□ LE1. 핵심역량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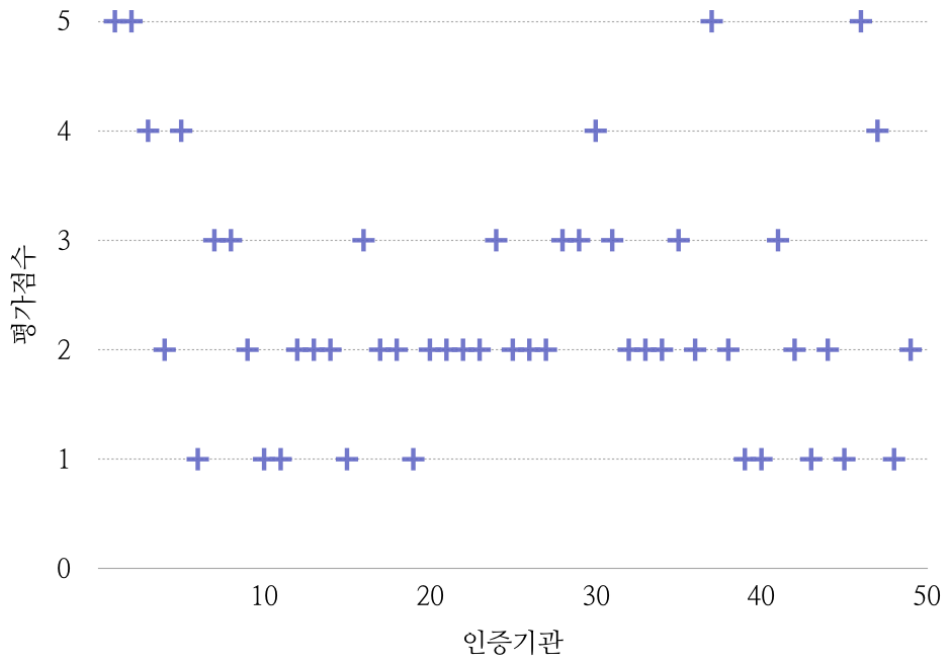
- 핵심역량이란 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재, 기술 등을 보유한 상태로서 경쟁력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 본 평가에서는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채택함
- 인증기관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집약적 업종이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은 경력과 지식을 갖춘 주요 담당자(Key Personnel¹⁴⁶)라고 할 수 있음

표 10-34. 핵심역량 보유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10년 이상 경력자, 자격증 보유	10년 이상 경력자, 자격증 미보유	5년 이상 경력자, 자격증 보유	5년 이상 경력자, 자격증 미보유	5년 이하 경력자	합계
인증기관 수	4	4	9	22	10	49
비율(%)	8.2	8.2	18.4	44.9	20.3	100

146) Key Personnel. 인증기관에서는 심사원(Inspector), 감사관(Auditor), 심의관(Certifier) 등을 일컬음

그림 10-17. 핵심역량 보유 점수 분포



- 핵심역량의 지표로서 10년 또는 5년의 직무 경력과 유기농업기사 등의 자격증 보유 여부는 핵심역량의 확보 여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가치 측정을 위하여 타당한 지표로서 LE1. 핵심역량 보유 현황은 초기 설정 기준을 채택함

표 10-35. 핵심역량 보유 현황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장기 경력자(베테랑)의 유무 ※ 상근자 중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경력을 말함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10년경력+자격증: 5 10년경력: 4 5년경력+자격증: 3 5년경력: 2 5년미만: 1	변경하지 않음

□ LE2.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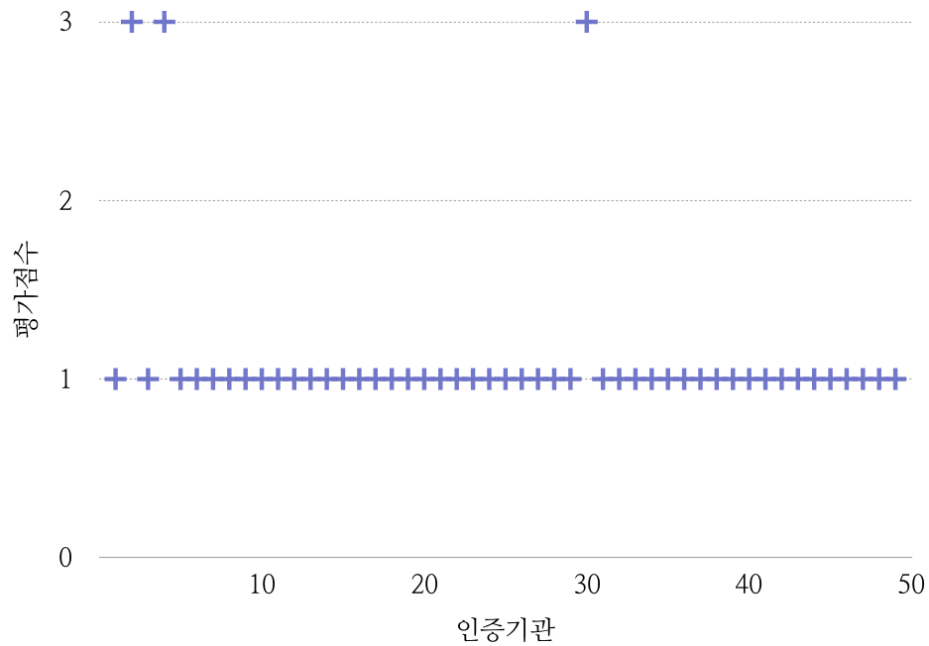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업무를 시행하지만, 인증기관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ISO 17065 등)으로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관련 고시¹⁴⁷⁾에서도 인증기관의 조직을 ISO 17065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ISO 17065 인정서를 확보하는 일은 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이는 객관적인 수단이 됨
- ISO 17065 외에도 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인정(accreditation) 프로그램으로는 ISO 17025, ISO 9001, USDA-NOP 등 해외 유기인증기관의 인정, IFOAM, GLOBALG.A.P. 등이 있음

표 10-36. 국제적 인정 보유점수 분포 (예비조사)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기준	인정서/ 인증사업 승인현황 4건 이상	인정서/ 인증사업 승인현황 3건 이상	인정서/ 인증사업 승인현황 2건 이상	인정서/ 인증사업 승인현황 1건 이상	인정서/ 인증사업 승인현황 없음	총 계
인증기관 수	0	0	3	0	46	49
인증기관 비율	0	0	6.1	0	93.9	100

147) 농관원 고시 제2015-56호

그림 10-18. 국제적 인정 보유점수 분포



- 인증기관이 업무에 관련된 국제적 인정(Accreditation)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업무의 전문화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인증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음
- 국제적 인정 획득여부는 인증기관의 가치 척도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LE2.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는 초기 설정 기준을 채택함

표 10-37. 국제적 인정 보유 평가지표 1차 교정

	초기 설정	교정 후 설정
평가 방법	국제 인정서 및 인증사업 승인 현황 (ISO17065, ISO17025, ISO9001, USDA-NOP, IFOAM, GLOBALG.A.P. 등) ※ 직접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하지 않음
득점 기준	있으면 3점, 없으면 1점	변경하지 않음

부록11.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의 2차 교정

○ 인증 건수 및 인증사업자 수

‘인증 건수’ 및 ‘인증사업자 수’는 인증사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인증 건수는 심사계획 및 사후관리 등 하나의 관리 단위가 되며 인증사업자 수는 인증관리에 포함되는 농가, 취급자, 가공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의 총합을 말함. 이는 규모화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지표로 신규 설정함

○ 인증기관 행정처분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의 지수를 적용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은 17개 인증기관은 모두 3개월 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총 개월 수의 합으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인증기관 행정처분 빈도×강도’는 ‘인증기관 행정처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가 방법은 인증기관이 업무정지를 받은 개월 수의 합으로 득점 기준을 나눔

○ 행정처분 실적

잔류농약기준 초과는 여러 가지 부적합사항을 포괄하는 대표성이 없으며, 검출 농도와 무관하게 금지 물질을 살포하는 문제나 그밖에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관리하는 실적을 포함하여야 함.

따라서, ‘잔류농약기준 초과비율’을 ‘행정처분 실적’으로 변경¹⁴⁸⁾

○ 인증 부적합율

인증 후에 사후관리를 통하여 행정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증심사시에 정확히 평가를 하여 인증 부적격자를 판정한 실적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인증 부적합율’을 평가지표로 신규 설정함¹⁴⁹⁾

148) 당초 부실한 심사와 심의로 인하여 인증실적을 높인 다음, 사후관리 시에 무더기로 인증취소를 하는 등의 부실 관리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사후관리 시스템이 잘 운영될 때 발생하므로 평가지표로 채택함

○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비 투입량은 회계상의 지출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수교육은 교육비 없이 받을 수 있는 등 비용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교육훈련비 투입량은 ‘교육훈련 투입량’으로 변경하여 실제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장이 형식적으로 대표를 맡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인증기관의 경우 품질 개선 또는 신뢰성 강화에 관심이 약할 수밖에 없음.

인증기관장의 적극성은 정부 또는 한국 친환경 인증기관협회가 주관하는 워크숍 등 인증기관장 행사에 대한 참여도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지표로 신규 설정함

○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

평가지표 초기 설정 시, 심사 보고서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작위 선정한 보고서를 열람하여 적합 및 부적합의 근거가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 방법은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될 수 있어 객관성이 낮으므로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사후관리 빈도

현행 규정에서 인증 건에 대하여 100% 이상을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기관 중에는 같은 인증 건에 2회 이상을 사후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증사업자 수 대비 실제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비율은 인증기관의 품질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타당하므로, ‘사후관리 빈도’를 평가지표로 신규 설정함

149) 주로 적격한 인증 신청인을 심사하는 경우에 심의 인증 부적합율이 낮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심사 및 심의를 수행하더라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적격 판정 비율이 높은 만큼 심사 및 심의 강도와 품질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로 채택함

○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고용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근심사원의 퇴사율을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근심사원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심사의 품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근심사원 근속연수'를 평가지표로 신규 설정함

○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평가지표의 초기 설정에서 심사원의 노동가치 및 고용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소득분률을 이용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피고용인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같은 취지의 평가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으로 변경하여 적용함

○ 평가지표의 초기 설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창출한 부가가치가 클수록 고평가를 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인건비용의 증가가 수반되고 수익성(경제성)에 편중된 평가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가·감점 지표

이상과 같이 주요 평가지표 20항을 구성하며, 다음 지표들은 적용되는 인증기관의 수가 적으므로 주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가·감점 지표로 활용함

- 기관 과태료 부과 빈도·강도

55개 인증기관 중 2개의 기관에서만 적용되어 감점지표로 변경

- 핵심역량 보유 현황

핵심역량 보유 현황은 1차 교정까지는 최장 근무자의 근속연수와 해당 자격증 보유 현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차 교정에서 현직 근무지 외의 유사 근무지에서의 경력이 반영될 우려가 높고 자격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므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차 교정에서 핵심역량은 IOIA 심사원

교육 수료자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인증기관이 많지 않아 가점요인으로 변경

- 국제적 인정 보유

초기 설정에서 ISO 17065 외에도 ISO 17025, ISO 9001, USDA-NOP, IFOAM, GLOBALG.A.P. 등 다양한 인정서를 평가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ISO 17065만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

부록12.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운영 요령(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인증기관등급제”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경영 상태, 신뢰성, 역량 등을 평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분류하여 공시, 지원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절차와 규칙을 말한다.
3. “우수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등급별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상위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4. “평가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별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방법과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등급분류기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한 점수의 총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때의 기준이 되는 총점의 수를 말한다.
6. “평가방법”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을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원칙을 말한다.
7. “특점기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8. “배점”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에 배정한 최고 점수를 말한다.
9.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고시를 통한 등급제는 국내에 본사가 소재하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등급 평가 기관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제5조(지정원칙)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3. 인증의 일반론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제6조(평가반) ①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5조의 제1항에서 제3항에 적합한 2인의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에는 선임평가자를 선정하며, 선임평가자는 평가의 계획과 결과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①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방법 및 기준

제8조(정보수집) 평가반은 인증기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

본을 열람

2.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열람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분석

제9조(평가의 계획) ①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일의 7일 전에 방문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열거하여 인증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게 평가계획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때에는 방문기간을 3시간 이하로 계획한다.

③ 인증기관이 방문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방법) 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빠짐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항목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②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1을 따른다.

③ 평가 항목별 평가방법과 점부부여는 별표2를 따른다.

④ 인증기관 등급 부여는 별표3을 따른다.

제11조(등급제의 거부) 인증기관이 등급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인증기관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제12조(평가의 보고)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등급별 지원방안) 인증기관 등급의 활용은 별표3을 따른다.

[별표 1]

인증기관 등급 평가의 지표 및 배점(제10조제1항 관련)

지표	배점
인증사업 매출비율	4
인증기관 행정처분	9
기관 과태료 부과	(감점)
자체 행정처분 실적	5
인증 부적합율	5
사후관리 빈도	7
사업자당 투입 노력양	7
이중체크 적발 비율	7
교육훈련 투입량	5
기관장의 역량강화 노력	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7
인증 갱신율	4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5
인증 건수	4
인증사업자 수	4
전년도 매출액	5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3
핵심역량 보유 현황	(가점)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가점)
부채비율	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5
상근심사원 퇴사율	5
관할지역 인증 비율	3
합계	100

[별표 2]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별 평가방법 및 득점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75% 이상 4
		50% 이상 3
		35% 이상 2
		35% 미만 1
인증기관 행정처분	(전년도 업무정지 총개월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0이면 9
		3이하 7
		6이하 5
		9이하 3
9초과 1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횟수)	1 건당 -1점 감점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100 ※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	1.0% 이상 5
		0.5% 이상 4
		0.2% 이상 3
		0.2% 미만 2
0 이면 1		
인증 부적합율	('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5년 인증 건 수)+'15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0.5% 이상 2
0.5% 미만 1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 건수)+(연말 인증 건수)}/2]	120% 이상 7
		110% 이상 5
		100% 이상 3
		100% 미만 1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심사원 총투입일수)*8}/[{(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 ※ 비상근심사원 포함 ※ 8시간을 1일로, 4시간을 0.5일로 환산	4 이상 7
		3 이상 5
		2 이상 3
		2 미만 1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이면 7
		0.5% 이상이면 5
		2.0% 이상이면 3
		4.0% 이상이면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1.5 이상 5
		1.0 이상 4
		0.5 이상 3
		0.5 미만 2
		0.0 이면 1
기관장의 역량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의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2회 이상 3
		1회 2
		미참가 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연말상근심사원수)	7년 이상 7
		5년 이상 5
		3년 이상 3
		3년 미만 1
인증 갱신율	(연간 인증갱신농가수)/(연초 인증농가수)*100	70% 이상 4
		55% 이상 3
		30% 이상 2
		30% 미만 1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총시간)/[(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100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한 과목에 투여한 총시간을 합산	30 이상 5
		20 이상 4
		10 이상 3
		10 미만 2
		0 이면 1
인증 건수	(총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400건 이상 4
		200건 이상 3
		100건 이상 2
		100건 미만 1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로 간주	1,000명 이상 4
		500명 이상 3
		200명 이상 2
		200명 미만 1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4억원 이상 5
		2억원 이상 4
		1억원 이상 3
		0.5억원 이상 2
		0.5억원 미만 1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text{당기말 인증매출액})/(\text{전기말 인증매출액})\} * 100 - 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10% 이상 3
		-10% 이상 2
		-10% 미만 1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IOIA 교육, ISO 심사원 교육, HACCP 교육,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교육의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	1건당 1점 가점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5점 가점
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 100$	100% 이하 3
		200% 이하 2
		200% 초과 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text{상근심사원 인건비})/(\text{총매출액}) * 100$	50% 이상 5
		40% 이상 4
		30% 이상 3
		20% 이상 2
		20% 미만 1
상근심사원 퇴사율	$(\text{상근심사원 퇴사자 수})/(\text{연초 상근심사원 수}) * 100$	20% 이하 5
		30% 이하 4
		40% 이하 3
		50% 이하 2
		50% 초과 1
관할지역 인증 비율	$(\text{관할지역 인증 건수})/(\text{총인증 건수})$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60% 이상 3
		40% 이상 2
		40% 미만 1

[별표 3]

등급분류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지원 방안 (제10조의제4항 및 제13조 관련)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분류기준	80점 이상	70~79	60~69	60 미만
지원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농관원 지도점검	2년 1회	연1회	2년 3회	연2회
농관원 이중체크	인증건의 3%	인증건의 5%	인증건의 8%	인증건의 10%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공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인증서에 표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참고 문헌〉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1999).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Marketing and Label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 Mukesh Gupta(2004). 「Organic Agriculture Development in India」
- European Court of Auditors(2012). 「Audit of the Control System Govern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Imports of Organic Products」
- Matthias Stolze 외(2012). 「Report on Total Costs of Three Organic Certification Systems in Six European Countries with Particular Focus on Organic Supply Chains」
- Lizzie Melby Jespersen(2011). 「Organic Certification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Control Fees and Size of the Sector」
- IFOAM(2014). 「The IFOAM NORM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
- Skal(2016). 「BETROUWBAAR BIO: TOEZICHT IN 2015」
- FiBL & IFOAM(2016). 「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동향」
- 이기훈(2005). 「지속가능성 경영과 기업가치 평가」
- 농수산물유통공사(2007). 「주요국 유기농시장동향」
- 신용광(2013). 「친환경인증기관 운영·관리 방안」
- 유병덕 외(2014). 「국산원료 원산지 인증제도 타당성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2016). 「제 4 차 친환경농업 육성 5 개년 계획」
- 최진봉(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정광화(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시 특성, 그리고 기업가치」
- 길해룡 외(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척도 개발」
- 한은경(200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지수화에 관한 연구」
- 이덕만 외(2011). 「전문인증기관 운영실비 징수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김순양(2006).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 이환범 외(2005). 「지방 공기업의 경영성과 관리와 평가지표 개발」

- 손상목 외(2003).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 지역농업네트워크(2014). 「품질인증제도 개편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은행(2007). 「기업 경영 분석 해설」
- 중소기업중앙회(2015).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서비스업 I, 서비스업 II
- 중소기업중앙회(2015).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2015). 「중소기업경영지표」
- 한국노동연구원(2008). 「임금제도 실태조사」
- 한국제품인정기구(2015). 「적합성 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 국립환경과학원(2010).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2016년 7월 인쇄

2016년 7월 발행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24-01

편저 · 발행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14번길 14

TEL:031-424-9792 FAX:031-424-9793

이 간행물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시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